2024.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Ⅳ)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 문화체육관광부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8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

Ⅱ. 사업별 검토 ····· 11

【일반회계】 ····· 11

<세 출> ····· 11

1.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교부 필요 ····· 11
2.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사업: 콘텐츠분쟁 조정 제도 개선 필요 ····· 15
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기존 센터에 집행 부적정 등 ····· 20
4.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등 ····· 26
5. 음악산업 육성 사업: 자부담 부과 방식 개선 필요 ····· 32
6.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 35

7.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 면밀한 실적 관리 필요 ····· 39
8.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사업(종료): 보조에서 직접수행으로 사업추진 방식 변경 필요 42
9. 장애인예술공연장 임차 및 운영 사업: 공연사업 추진 실적 제고 필요 ····· 45
10. 민간컨설팅 사업: 컨설팅업체와의 계약방식 개선 필요 ····· 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54

<세 출> ····· 54

11.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사업추진 지연 및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 54
12.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신규): 면밀한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 58

【문화예술진흥기금】 ·····61

<수 입> ····· 61

13. 입장료수입: 수익금 계상의 예산총계주의 위반 및 별도 적립 부적정 ····· 61

<지 출> ····· 66

14. 국제예술교류지원 및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사업: 기금 변경을 통한 미편성 사업 실시 부적정 등 ····· 66

【관광진흥개발기금】 ·····69

<지 출> ····· 69

15.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1차년도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 69
16.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및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이차보전 운영지원 집행실적 부진 등 ····· 73

【국민체육진흥기금】 ·····79

<지 출> ····· 79

17. 전통무예 진흥 사업: 사업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월 부적정 ····· 79
18.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사업: 엄격한 집행관리 필요 ····· 82

19.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 사업기간 내 사업완수 노력 필요 ····· 86
20.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융자 대비 이차보전 사업 불용 과다 ····· 90
21.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 환경친화 대중골프장 운영비 연례적 기금 변경 지양 필요 94

❖ 국가유산청 ····· 97

Ⅰ. 개 관 ····· 97

1. 결산 개요 ····· 9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02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3

Ⅱ. 사업별 검토 ····· 104

【일반회계】 ····· 104

<세 출> ····· 104

1.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사업: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불용규모 과다 ····· 104
2.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및 연례적 이월 주의 ····· 107
3.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교부 및 면밀한 사업점검 필요 ····· 112
4.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사전준비 여건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등 필요 · 116
5. 경복궁종합정비 사업: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 ····· 121
6.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사업: 사업 지연 방지 및 편성명목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126
7.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전년도 이월규모와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한 교부 필요 ···· 130

【국가유산보호기금(舊 문화재보호기금)】 ····· 136

<총 괄> ····· 136

8. 국가유산보호기금: 구조적 개선 필요 등 ····· 136

<지 출> ····· 142

9.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사업(신규): 사업추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 1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147

Ⅰ. 개 관 ····· 147

1. 결산 개요 ····· 14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153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4

Ⅱ. 사업별 검토 ····· 155

【일반회계】 ····· 155

<세 출> ····· 155

1.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사업: 충실한 사전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 155

2. 연구지원 및 기획 사업: 집행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필요 ····· 1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162

<세 입> ····· 162

3.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162

<세 출> ····· 165

4.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신규): 예산편성 오류로 인한 사업지연 주의 필요 ··· 165

5.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사업수요 부족 및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재검토 필요 ····· 168

6. 동물보호 복지대책 사업: 공모계획서 지연 등에 따른 사업실적 저조 주의 필요 ·· 172
7.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이 예산편성 주의 필요 등 ···· 177
8.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역 발생 및 연례적 실집행부진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등 ····· 182
9. 실증기업 지원 사업: 기업지원 실적 저조 및 중도 포기업체 증가로 인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등 ····· 187
10.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신규): 연내 완공 및 임대계약 체결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91
11.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사업 첫해 예산액 전액 이월 및 2년차 사업진척 연쇄적 부진 부적정 ····· 194
12.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시범온실 완공 지연으로 관련 교육훈련도 실적 전무 등 ····· 198
13. 국내채종 기반구축 사업: 예산집행 및 채종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4
14.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 사업추진 단계와 부합하지 않은 예산 배정 등 주의 필요 ····· 20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210

<세 출> ····· 210

15.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지자체의 사업수요 감소 및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등 ····· 2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

<세 출> ····· 216

16.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 관행화된 재이월 발생 방지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16

【양곡관리특별회계】 ·····219

<세 출> ····· 219

17.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사업(신규): 사업실적 저조 및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른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21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222

<지 출> ····· 222

18.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을 위한 민간 출자액비중 하락 등 ····· 222

19.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신규): 사업수요 미확보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에 따른 전액 불용 발생 ····· 225

【축산발전기금】 ····· 228

<지 출> ····· 228

20.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 사업: 예산편성 방향 정립 및 사업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 228

21.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및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 엄격하게 선정 필요 ····· 231

【농지관리기금】 ····· 235

<지 출> ····· 235

22. 임차임대 사업: 과다 편성 이후 집행단계에서 수정 반복하는 관행 시정 필요 ···· 235

❖ 농촌진흥청 ····· 239

Ⅰ. 개 관 ····· 239

1. 결산 개요 ····· 23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43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44

Ⅱ. 사업별 검토 ····· 245

【일반회계】 ····· 245

<세 출> ····· 245

1.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사업: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편성 및 국고보조금 교부 원칙 준수 필요 ····· 245
2.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소홀에 따른 주의 필요 ··· 248
3.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 센터 연구원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충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52
4.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사업: 기술이전건수 하락 및 연구과제의 예산실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256
5.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표준화 연구사업: 2년 연속 연구지연 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260
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사업: 국고 과다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체수입 예산편성 필요 ····· 263

❖ 산림청 ·····266

Ⅰ. 개 관 ····· 266

1. 결산 개요 ····· 266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70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71

Ⅱ. 사업별 검토 ····· 272

【일반회계】 ·····272

<세 출> ····· 272

1.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R&D)사업: 연구실적 부진 과제의 원인 분석 필요 ···· 272
2.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사업: 2년 연속 시스템 장애 발생 근본적인 원인 분석 필요 ····· 275
3. 산림과학연구(R&D)사업: 논문영향력 지수 및 기술이전료 하락 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77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 자체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사업진흥계정)】 ····· 282

<세 출> ····· 282

5.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 28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84

<세 출> ····· 284

6.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사업: 사업관리 강화 및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해소 필요 28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287

<세 출> ····· 287

7.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사전준비 철저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287

❖ 해양수산부 ····· 289

Ⅰ. 개 관 ····· 289

1. 결산 개요 ····· 28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294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95

Ⅱ. 사업별 검토 ····· 296

【총 괄】 ····· 296

1. 예비비 관련: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고려 미흡에 따른 예비비 불용 발생 등 ····· 296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과징금·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수납 관련 개선 필요 ····· 305

【일반회계】 ·····312

<세 출> ····· 312

3.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종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민간선박의 미확보로 인한 예산 전액 불용 ····· 312

4.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실집행단계에서 출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 등 · 315

5.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입한 장비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등 ····· 322

6.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 재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 재이월 부적정 등 ····· 3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3

<세 출> ····· 333

7.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저조한 외국인 지원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 ····· 333

8.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 보조금 교부 관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등 ····· 336

9.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 부정확한 지원대상 인원 추계에 따른 과다한 불용액 발생 ····· 341

【교통시설특별회계】 ·····345

<세 입> ····· 345

10. 전년도 세계잉여금·정부출자수입: 연례적인 세입예산 미반영 문제 등 ····· 345

<세 출> ····· 350

11.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총괄: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업 다수 발생 ·· 35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57

<세 출> ····· 357

12.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유류세 관련 세출예산안 편성 시 부처 간 협의 강화 필요 등 ····· 3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61

<세 출> ····· 361

13. 혁신어촌조성 사업·어촌신활력증진 사업(신규): 회계연도 불일치 관행의 개선 필요 등 ···· 361

【수산발전기금】 ·····366

<수 입> ····· 366

14.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에 대한 심층 논의 필요 ···· 366

<지 출> ····· 370

15.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상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 370

16. 비축사업: 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의 편성 및 집행 관련 개선 필요 ····· 374

17.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투자활성화 노력 및 기준수익률 하한규정 마련 필요 ···· 378

❖ 해양경찰청 ·····382

Ⅰ. 개 관 ····· 382

1. 결산 개요 ····· 38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386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87

Ⅱ. 사업별 검토 ····· 388

【일반회계】 ·····388

<세 입> ····· 388

1. 세입(건물대여료·기타관유물대여료·기타재산이자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잡수입):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388

<세 출> ····· 393

2. 노후 방독면 교체 사업: 예산의 편성 목적과 다른 집행 부적정 ····· 393
3.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설정 필요 ····· 395
4.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연례적인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 집행 부적정 ····· 397
5.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 사업: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399
6.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항공유 사업: 합리적인 예산 편성 기준 마련 필요 ····· 4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407

Ⅰ. 개 관 ····· 407

1. 결산 개요 ····· 40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412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13

Ⅱ. 사업별 검토 ····· 415

【총 괄】 ····· 415

1. 이차보전지원 4개 사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등 ····· 415
2.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한 보조금 교부원칙 준수 필요 ····· 421
3. 수지차보전 지원기관의 차기 및 차차기 결산잉여금 계상 문제 ····· 429

【일반회계】 ····· 435

<세 입> ····· 435

4. 토지매각대: 산업단지 내 유휴 국유부지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 필요 ····· 435

<세 출> ····· 438

5.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 출자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운용기간 연장 신중 검토 필요 등 ····· 438
6.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비비 편성 필요 ····· 444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비(非)R&D 사업 내 기평비 성격의 경비 반영 지양 필요 ··· 446
8.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 무역보험 보증 서비스의 이용실적 제고 필요 ····· 451
9.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 장비도입형 R&D 과제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454
10. 로봇산업진흥원 사업: 정부지원 사업으로 발생한 장비료 및 임대료 등 수익금의 직접비 투자 원칙 준수 필요 ····· 45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2

<세 출> ····· 462

11. 광해광업공단 출연 사업(종료): 수지차 지정해제에 따른 직전연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원칙 및 규정 정비 필요 ····· 462
12. 갱도굴진사업자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별도 관리 자금의 결산 공시 및 공론화 필요 ··· 470
13.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존중하는 집행 필요 ····· 474
14. 유전개발출자 사업: 해외 유망생산자산투자 출자금 불용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477
15. 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이관시점의 시가를 고려한 출자금 규모 산정 및 교부 필요 ··· 479
16.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 실증사업비를 기관운영비로 지출 부적정 ····· 48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484

<세 출> ····· 484

17.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일부 R&D 과제의 집행 부진 문제 ····· 484

【전력산업기반기금】 ·····488

<지 출> ····· 488

18.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재이월 승인 등 필요 ····· 488
19. 에너지캐시백 사업(신규, 종료): 당초 계획액을 초과한 예산집행 부적정 및 공공기관·전기 소비자 부담 전가 문제 ····· 494
20.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손금 정산 보조금의 집행 부적정 등 ····· 497

【무역보험기금】 ····· 502

<수 입> ····· 502

21. 기타경상이전수입: 미회수잔액에 대한 징수결정 및 수납관리 철저 필요 ····· 502

<지 출> ····· 508

22.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 부적정 및 자산취득비를 이용한 공사용역 추진 부적정 ····· 508

❖ 특허청 ····· 512

Ⅰ. 개 관 ····· 512

1. 결산 개요 ····· 512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516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17

Ⅱ. 사업별 검토 ····· 518

【총 괄】 ····· 518

1.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및 IP나래프로그램 사업: 국회 예산심의내역과 달리 지방비 매칭 보조금을 사업관리비로 충당 부적정 ····· 5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 523

<세 입> ····· 523

2.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특허료 및 수수료 징수행정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필요 · 523

<세 출> ····· 527

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회수전문기관 성과보수 지급체계 개편 및 사업출연금 이자수익·집행잔액 적정 사용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 527
4.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기관 고유사업과 보조사업간 구분 준수 필요 ····· 534
5. WIPO 국제분담금(ODA) 사업: 원화 편성에 따른 환차손 발생 문제 및 한국신탁기금 내 사업의 집행 부진 ····· 538
6.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 낙찰차액을 사용한 신규 용역 추진 부적정 ····· 542
7. 특허기술조사분석(R&D) 등: R&D 사업 내 정보화 용역 추진 시 낙찰차액 사용 관리 강화 필요 ····· 54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본계정)】 ····· 548

<세 출> ····· 548

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 책특회계 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지양 필요 ····· 548

❖ 중소벤처기업부 ····· 550

Ⅰ. 개 관 ····· 550

1. 결산 개요 ····· 550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 555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56

Ⅱ. 사업별 검토 ····· 557

【총 괄】 ····· 557

1. 연구개발(R&D) 사업: 기한 내 연구과제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 557

【일반회계】 ····· 566

<세 출> ····· 566

2.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 건물 공사지연에 따른 도입 장비 활용 부진 등 ··· 566

3.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사업단 구성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주의 ····· 570

4. 기술사관 육성사업: 사업 이탈률 증가 및 저조한 자격증 취득 실적 문제 ····· 575

5.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부진의 분석 및 점검 필요 ····· 5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83

<세 출> ····· 583

6. 지식산업센터(자율, 제주, 세종): 지식산업센터 실집행 부진 및 공실률 관리 필요 등 ···· 583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 589

<지 출> ····· 589

7.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병행사업의 적정 사업방식 검토 필요 589

8. 연수사업: 강원테크노파크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축 사업 보조금 전액 교부 부적정 ···· 594

9. 전북연수원 건립 사업: 연수원 구축사업 감리비의 부적정 편성에 따른 예산 미집행 ····· 597

【기술보증기금】 ····· 599

<지 출> ····· 599

10. 구상권 관리: 구상권 관리 계획액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를 통한 보증재원 관리 강화 필요 ·····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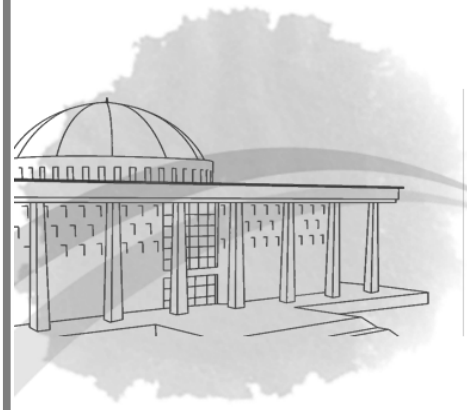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603

<지 출> ····· 603

11. 소상공인지원(융자): 소상공인 융자 부실률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 마련 필요 ····· 603

12.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부적정 등 …· 610
13. 소상공인성장지원: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쇄적인 ISP, ISMP 추진 및 본사업 지연 부적정 …… 614
14.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종료): 이미 보급된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의 장기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618
15.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적정 계획수립 및 집행 필요 등 …… 621
16.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복합청년몰 공실률 해소를 위한 사업 평가 환류체계 개선 필요 …… 626
17.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부진 등 …… 629
18.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쪼개기 집행 부적정 …… 63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16억 1,400만원(△0.9%)이 적은 3조 5,960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41억 8,800만원(17.1%)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3,389	83,389	243,074	159,685	96,449	96,449	137,611	41,162	△105,463
기 금	2,931,473	2,942,017	2,828,772	△113,245	3,531,160	3,531,199	3,458,423	△72,776	629,651
총수입	3,014,862	3,025,406	3,071,846	46,440	3,627,609	3,627,648	3,596,034	△31,614	524,188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559억 6,400만원(△2.3%)이 적은 6조 6,442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20억 1,300만원(△9.3%)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825,338	3,825,338	3,749,947	△75,392	3,494,095	3,494,095	3,390,540	△103,555	△359,407
기 금	3,666,641	3,681,224	3,576,296	△104,928	3,246,728	3,306,098	3,253,689	△52,409	△322,607
총지출	7,491,979	7,506,562	7,326,242	△180,320	6,740,823	6,800,193	6,644,229	△155,964	△682,013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465억 2,500만원으로 3,396억 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980억 1,800만원이 수납(수납률 87.8%)되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415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75,618	75,618	-	75,618	127,590	107,322	-	20,2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52,286	152,286	-	152,286	166,231	166,138	-	9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621	18,621	-	18,621	45,784	24,558	-	21,225
- 지역자율계정	14,338	14,338	-	14,338	35,576	22,013	-	13,564
- 지역지원계정	4,202	4,202	-	4,202	6,776	2,533	-	4,243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5	75	-	75	3,428	10	-	3,419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	6	-	6	3	3	-	-
합 계	246,525	246,525	-	246,525	339,605	298,018	-	41,58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8,391억 800만원으로, 이 중 3조 6,417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9%)되고 866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06억 3,3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303,513	3,303,513	50,202	19,375	9,287	3,382,377	3,231,750	72,908	77,7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52,286	152,286	6,444	-	-	158,730	138,806	11,704	8,22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8,001	298,001	-	-	-	298,001	271,232	2,075	24,694
- 지역지원계정	43,485	43,485	-	-	-	43,485	38,165	-	5,320
- 지역자율계정	249,616	249,616	-	-	-	249,616	228,167	2,075	19,374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125	4,125	-	-	-	4,125	4,125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75	775	-	-	-	775	775	-	-
합 계	3,753,800	3,753,800	56,646	19,375	9,287	3,839,108	3,641,788	86,687	110,63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5조 7,745억 400만원으로, 5조 7,903억 8,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조 7,852억 8,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51억 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39,637	539,676	575,596	575,596	-	-
영화발전기금	230,016	230,016	167,174	167,057	-	116
지역신문발전기금	9,832	9,832	12,070	11,978	-	92
언론진흥기금	45,193	45,193	58,842	58,734	-	108
관광진흥개발기금	1,729,262	1,729,262	1,600,209	1,595,518	-	4,691
국민체육진흥기금	3,220,525	3,220,525	3,376,496	3,376,400	-	96
합 계	5,774,465	5,774,504	5,790,386	5,785,283	-	5,103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조 7,851억 7,600만원으로, 이 중 5조 7,852억 8,3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0.0%)되고 13억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39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문화예술진흥기금	539,637	539,676	-	539,676	575,596	-	20,952
영화발전기금	230,016	230,016	635	230,651	167,057	192	3,958
지역신문발전기금	9,832	9,832	-	9,832	11,978	-	408
언론진흥기금	45,193	45,193	-	45,193	58,734	-	649
관광진흥개발기금	1,729,262	1,729,262	6,392	1,735,653	1,595,518	205	24,433
국민체육진흥기금	3,220,525	3,220,525	3,647	3,224,171	3,376,400	942	33,562
합 계	5,774,465	5,774,504	10,675	5,785,176	5,785,283	1,339	83,962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은 전년 대비 8,633억 3,100만원이 증가한 17조 3,324억 6,8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4,427억 3,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억 7,2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1조 1,699억 1,0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197억 1,100만원, 무형자산이 170억 1,3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886억 700만원 감소한 2조 6,426억 1,300만원으로 이는 장기차입부채 2,292억 2,900만원의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519억 3,800만원이 증가한 14조 6,898억 5,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조 1,889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90억 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5,428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55억 5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7,332,468	16,469,137	863,331	5.2 %
		유동자산	2,595,803	3,038,534	(442,731)	(14.6 %)
		투자자산	7,721,412	6,551,502	1,169,910	17.9 %
		일반유형자산	6,899,221	6,779,510	119,711	1.8 %
		무형자산	105,396	88,383	17,013	19.2 %
		기타비유동자산	10,636	11,208	(572)	(5.1 %)
	부 채		2,642,613	2,831,220	(188,607)	(6.7 %)
		유동부채	147,198	564,606	(417,408)	(73.9 %)
		장기차입부채	2,431,163	2,201,934	229,229	10.4 %
		장기충당부채	10,558	10,992	(434)	(3.9 %)
		기타비유동부채	53,694	53,688	6	0.0 %
	순자산		14,689,855	13,637,917	1,051,938	7.7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188,933	5,547,946	(359,013)	(6.5 %)
	재정운영순원가		5,368,114	5,716,875	(348,761)	(6.1 %)
	재정운영결과		2,542,827	3,318,332	(775,505)	(23.4 %)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207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74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25억원, 영화발전기금으로 800억원이 각각 전출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7억원이 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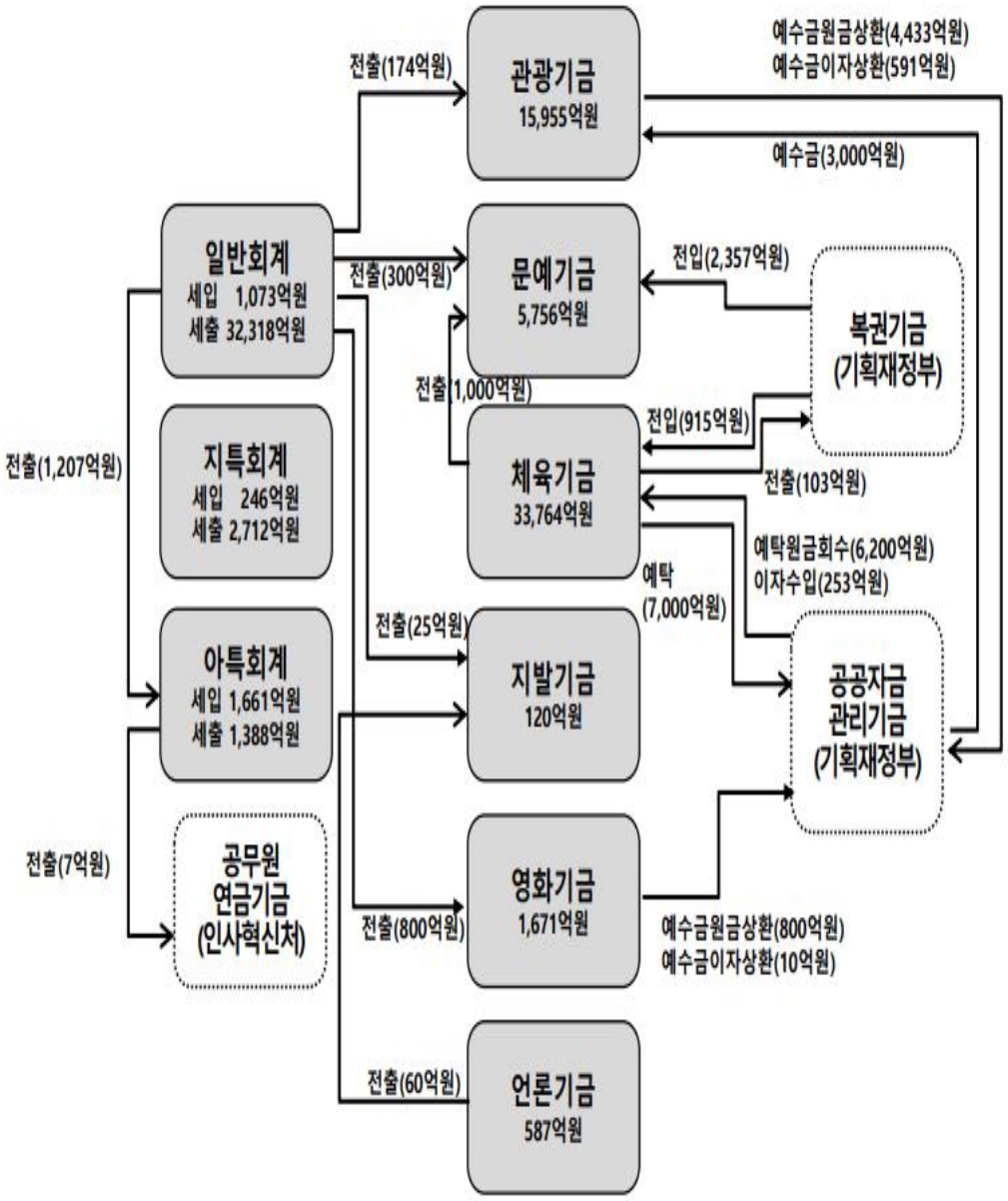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금간 거래를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0억원의 예수금을 받고 예수금원금 4,433억원과 예수금이자로 591억원을 상환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0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2,357억원을 전입받았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915억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사업 잔액 103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회수 6,20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253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7,000억원을 예탁하였음.

영화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원금 800억원 및 예수금 이자 10억원을 상환하였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60억을 전입받았음.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흐름도(총계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수출 위상 강화, 국제관광 주도,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확대를 2023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동반 성장, 방한 관광시장 회복 및 국민 문화향유와 지역문화 발전 기틀 마련, 국민일상 스포츠 활동 참여 증진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해외거점 운영’ 사업의 신규 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기존 센터에 사전배정하여 집행하였고,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의 동일한 보고서와 매거진에 대하여 2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집행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둘째,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해 연내 투자소진율이 부진하고, 2023년에 국회에 보고된 정부출자 규모를 초과하여 출자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규모의 예산편성과 자펀드 조기 결성을 통하여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출자규모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셋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이나 지방비가 매칭되지 못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서울CC 총 운영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만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입장료수입’으로 계상해왔고, 2021년부터 입장료수입 중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총계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기금 수입을 별도 적립하지 않아야 할 것임.

다섯째,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이차보전 운영지원’과 ‘신용보증기관 출연’의 2023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융자지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가 전환하기에 앞서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전에 ‘신용보증기관 출연’ 보증잔액 규모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교부 필요

가. 개 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전통사찰의 노후한 시설물 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36억 2,100만원이 모두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3)]

[2023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35,944	35,944	-	-	35,944	35,795	-	149	37,360
전통사찰 보존	27,495	27,495	-	-	27,495	27,346	-	149	27,781
전통사찰 보수정비	21,060	21,060	-	-	21,060	21,060	-	-	21,449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추가지원 (*자부담5% 추가지원)	2,865	2,865	-	-	2,865	2,865	-	-	2,905
전통사찰 보수정비	2,561	2,561	-	-	2,561	2,561	-	-	2,651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고, 전국 전통사찰을 간접보조사업자로 하는 자치단체보조(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사업임.[4)]

2023년에는 131개소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이 편성되었음.

---

2) 일반회계-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1131-301)(종무실)

3) 본문은 내역사업 ‘전통사찰 보존’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추가지원’(자부담 5% 추가지원)에 각각 포함된 ‘전통사찰 보수정비’ 내내역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4) 기본 지원비율(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에 자부담 추가지원(국비 및 지방비 각각 5%씩)을 포함 *자부담 추가지원: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초 반영

나. 검토의견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실집행 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예산은 최근 5년간 평균 21.2%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반면, 실집행률은 2021년 61.1%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22년에 77.9%로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2023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152.6% 수준으로 크게 증액[5]되자 실집행률은 62.1%까지 다시 떨어졌음.

[최근 5년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체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9	11,456	11,456	-	11,456	8,087	3,316	53	70.6
2020	12,154	11,894	3,316	15,210	9,793	5,417	-	64.4
2021	14,500	14,394	5,417	19,811	12,111	7,700	-	61.1
2022	15,480	15,480	7,700	23,180	18,048	5,132	-	77.9
2023	23,621	23,621	5,132	28,753	17,861	9,978	912	6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대구(실집행률 33.5%)는 장애인 시설 검토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이 발생하였고, 강원도(실집행률 42.0%)는 토지 및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자 선정 지연이 발생하였음.

경북(실집행률 49.0%)의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공사 자재 헬기 운반 등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지연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하였음.

5)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대상 사찰수(’22년 94개소→’23년 131개소)와 개소당 평균 지원 단가(’22년 146.5백만원→’23년 160.7백만원) 상승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은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나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 등 특정 행정절차 이행을 전제로 하고, 단년도 사업보다 다년도 연차사업 비중이 더 크며,[6] 입지 특성상 공사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의 사업특성에 주로 기인함.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문체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특별시	1,543	1,543	676	2,220	1,611	333	276	72.6
부산광역시	1,004	1,004	192	1,196	837	333	26	70.0
대구광역시	990	990	225	1,215	407	800	8	**33.5**
인천광역시	202	202	-	202	202	-	-	100.0
광주광역시	112	112	-	112	112	-	-	100.0
대전광역시	108	108	-	108	101	-	7	93.5
울산광역시	338	338	-	338	337	-	1	99.7
경기도	2,980	2,980	675	3,655	2,546	681	428	69.7
강원도	1,460	1,460	225	1,685	708	971	6	**42.0**
충청북도	3,040	3,040	677	3,717	2,824	865	28	76.0
충청남도	1,575	1,575	225	1,800	939	829	32	52.2
전라북도	2,014	2,014	450	2,464	2,056	408	-	83.4
전라남도	1,982	1,982	-	1,982	1,000	982	-	50.5
경상북도	3,562	3,562	180	3,742	1,834	1,889	19	**49.0**
경상남도	2,711	2,711	1,607	4,317	2,349	1,887	81	54.4
합계	23,621	23,621	5,132	28,753	17,863	9,978	912	6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보조사업자인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실집행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곳이 4개, 반대로 실집행률 50% 미만으로 저조한 곳이 3개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동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현장의 추진 상황을 적극 파악·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준비 여건 및 추진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6) 2023년의 경우 지원대상 131개 사찰 중 38개 사찰이 연차사업 추진대상임. 연차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까지 순연되면서 이월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 연속으로 동 사업의 예산액 전부를 기계적으로 교부(교부율 100%)하여 왔고, 이로 인해 매년 평균 32.0%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음.

이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한 보조금만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7]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 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민간보조사업/12. 자치단체보조사업-세부지침-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사업: 콘텐츠분쟁 조정 제도 개선 필요

가. 개 요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콘텐츠분쟁의 신속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에 대한 조정 및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억 4,2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

[2023년도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2,366	2,366	-	-	2,366	2,366	-	-	2,555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442	442	-	-	442	442	-	-	442

동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나. 검토의견

콘텐츠의 다양화로 콘텐츠분쟁조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실제 처리되는 유효 건수 비중이 낮은 문제, 게임분야 분쟁이 과다한 문제, 관련 기관으로의 자동이첩 불가, 집단분쟁 도입 요구 등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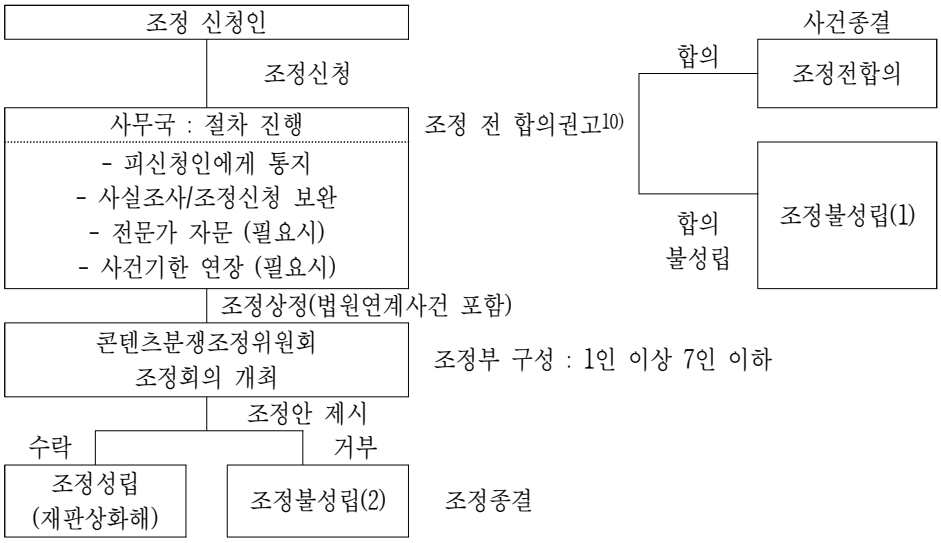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통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9)]에 따른 분쟁조정위

8) 일반회계-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콘텐츠정책국)

9)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 ⑤ (생략)
⑥ 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법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

원회(이하 “콘분위”라 함) 운영과 더불어 전문상담 콜센터 운영 및 분쟁조정포럼 실시 등 사전적 분쟁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처리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18년부터 콘분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총 71,065건을 살펴본 결과,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실제 처리되는 ‘유효’ 건수의 비중이 적은데, 형식요건 미달(조정거부), 당사자 연락 두절(조정불능) 등을 포함한 모든 신청건에 대해서 일일이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2018년 이후 조정전 합의, 조정회의를 통한 처리 등 실제로 처리된(또는 진행중인) 유효 건수는 28,894건으로 전체 사건의 40.7%에 불과하고, 나머지 42,171건(59.3%)는 조정거부, 조정불능, 유관기관 이첩 등11)에 따른 무효 건수임.

을 둔다.

10) 콘분위는 1차적으로 당사자 분쟁에 개입하여 양 당사자 간 의견을 전달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기법 중 ‘알선’에 해당하는 ‘조정 전 합의 권고’를 진행하고, 합의 권고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회의 개최 절차에 응할 경우,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을 처리함.

11) 콘분위는 접수된 사건 중 콘분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2018~2023년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이용자별, 처리결과별)]

(2024.3월 현재 기준, 단위: 건)

구분	조정신청				조정처리 결과									
	B2C	B2B	C2C	계	조정취하	조정거부	유관기관이첩	조정불능	조정불성립(1)	조정전 합의	조정회의 결과		진행	계
											성립	불성립(2)		
2018	4,839	225	20	5,084	706	1,186	125	1,536	609	813	41	68	-	5,084
2019	6,345	272	21	6,638	879	1,236	189	2,231	613	1,388	30	72	-	6,638
2020	16,967	222	13	17,202	3,335	2,369	85	6,210	1,668	3,475	12	48	-	17,202
2021	14,566	135	15	14,716	1,493	2,333	183	5,171	1,852	3,675	3	6	-	14,716
2022	12,133	84	31	12,248	1,177	1,872	87	3,099	1,868	4,093	19	33	-	12,248
2023	15,082	56	39	15,177	1,237	2,339	103	2,990	2,427	6,031	12	23	15	15,177
합계	69,932	994	139	71,065	8,827	11,335	772	21,237	9,037	19,475	117	250	15	71,065

주) (조정취하) 신청인의 조정 취하
(조정거부) 조정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당사자 불분명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등
(조정불능) 당사자 사망,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 조정절차 진행인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 불성립(1)) 1차 조정절차로서 합의를 권고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조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조정 불성립(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관기관이첩) 조정신청 내용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아닌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게임분야 콘텐츠산업자-이용자 간 결제 관련 분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콘텐츠분쟁 사전예방 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8년 이후 분쟁사건 중 당사자별[12] 구분에 따르면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사건이 69,932건이고,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게임 분야가 62,021건으로 전체 신청건수 중 각각 98.4% 및 8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또한 게임분야 2023년 접수 사건 중에서도 결제취소 및 해지(미성년자 결제 및 부당요금 포함) 관련이 4,428건으로 전체 접수건 중 3분의 1에 해당함.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게임분야 사건은 전체 분쟁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에 비하여, 주로 소액(少額) 사건으로 대부분 조정회의 개최 전 합의 권고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함.

따라서 미성년자 거래, 아이템 거래 피해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분야 분쟁 유형에 대해서는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는 등 콘텐츠분쟁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

12)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르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다루도록 하고 있음.

방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피해는 물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2018~2023년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접수내역(분야별)]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게임		3,849	4,788	15,944	13,255	10,850	13,335	62,021
영상	음악	40	57	73	63	34	48	315
	영화	34	34	122	71	27	29	317
	애니메이션	7	4	4	3	2	3	23
	방송	492	573	167	380	339	300	2,251
	광고	34	58	142	34	50	26	344
지식정보	지식정보	230	465	300	243	347	474	2,059
	콘텐츠솔루션	79	157	187	244	219	416	1,302
캐릭터등	만화	13	9	9	25	19	16	91
	캐릭터	9	7	1	25	5	5	52
	공연	25	65	27	12	7	6	142
	출판	15	4	2	11	19	43	94
기타		257	417	224	350	330	476	2,054
합계		5,084	6,638	17,202	14,716	12,248	15,177	71,06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접수내역(내용별)]

(단위: 건)

구분	게임	영상	지식정보	캐릭터등	기타	계
결제취소/해지/해제	**3,265**	87	329	37	22	3,740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227	10	15	0	49	301
미성년자 결제	**1,129**	11	13	0	1	1,154
부당한 요금 청구	**34**	64	63	2	15	178
사용자의 이용제한	3,452	58	95	1	5	3,611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192**	0	9	4	4	209
약관 운영정책	2,442	60	140	7	29	2,678
정보제공 요청 등	27	8	14	1	11	61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2,413	35	80	8	11	2,547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8	25	79	8	5	125
허위, 과장 광고	89	4	5	0	3	101
기타	57	44	48	2	321	472
합계	13,335	406	890	70	476	15,1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셋째,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건 중 콘텐츠 관련 사건은 콘분위로 이첩하고 있으나, 콘분위에서 관련 기관으로의 이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13]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집단분쟁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14]

콘텐츠산업 규모[15]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OTT, 게임 등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최근 콘텐츠 분쟁 조정 요청 규모가 상당한 추세로, 콘분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콘텐츠분쟁조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조정 유효 건수 비중이 낮은 문제, 게임분야 분쟁 과다 문제, 관련 기관으로의 자동이첩 불가, 집단분쟁 도입 요구 등의 현안에 대하여 행정절차의 자동화, 콘텐츠분쟁 예방 활동 강화, 유관기관 이첩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3) 신청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함.

14)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콘분위는 콘텐츠분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법 개정 필요). 이에 따라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게임분야 콘텐츠분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일괄 콘분위에 이관하고 있으나,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집단 배상요구와 관련해서는 콘분위가 전담하기 곤란하여 2024년 3월 한국소비자원-한국콘텐츠진흥원 간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참고로, 제22대국회에는 콘분위가 콘텐츠분야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6, 강유정의원 등 12인)」이 발의되어 있음.
※ 관련 언론보도
- “메이플스토리 피해자들,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연합뉴스TV, 2024.3.5. 방송)
-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피해자 5천명 집단분쟁조정 개시” (연합뉴스, 2024.4.29. 기사)

15) 2022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14,769개이고, 매출액은 151조 772억 4,500만원에 달함.(출처: 「2022 콘텐츠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기존 센터에 집행 부적정 등

가. 개 요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한류 확산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68억 4,400만원 중 567억 3,0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8%)하였고, 1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16)]

[2023년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54,439	54,439	-	745	1,660	56,844	56,730	-	114	74,233
콘텐츠 수출지원	32,332	32,332	-	-	-	32,332	32,332	-	-	43,869
해외거점 운영	10,173	10,173	-	-	-	10,173	10,173	-	-	21,950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5,248	5,248	-	-	-	5,248	4,851	-	397	5,248

내내역사업인 **‘해외거점 운영’**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더불어 비즈매칭·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1억 7,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내내역사업인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은 해외진출 상담·수출전시관 운영 및 온라인 상시 비즈매칭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2억 4,800만원 중 48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4%)되고, 3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

두 사업 모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16) 일반회계-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1231-303)(콘텐츠정책국)

나. 검토의견

(1) 해외거점 운영 사업: 신규 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기존 센터에 집행한 부적정 사례

‘해외거점 운영’ 사업은 신규 센터 개소 지연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그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기존 센터에 사전배정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센터의 조속한 개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연내 추진가능한 규모로 센터 확대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집행부진을 개선하고, 향후 신규 센터 개소를 위해 편성받은 예산을 기존 센터에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현지에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함) 등 해외 거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은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5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79.3%가 증액된 10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예산현액 101억 7,300만원 중 신규 센터 5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된 33억 9,000만원을 전부 교부(교부율 100%)하였음.

그러나 센터장 파견 지연·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인해 5개소 모두 연내 개소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실집행액은 1억 4,100만원(4.2%)에 불과하였음.

[최근 3년간 해외거점 운영 사업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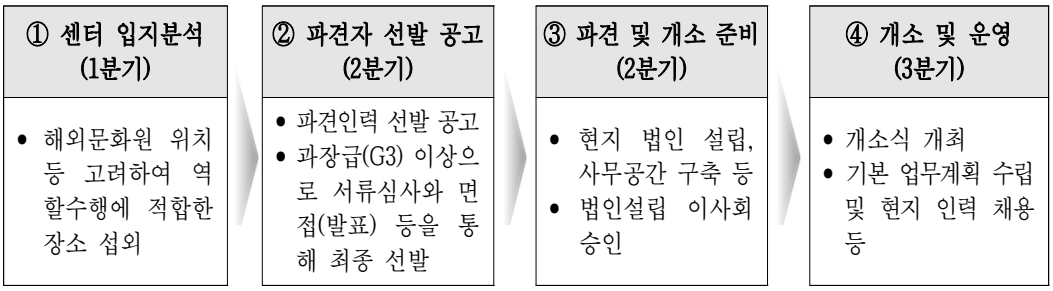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 (5,673백만원)	15개소 (10,173백만원)	25개소 (17,250백만원)
	미국(LA), 일본(도쿄), 중국(북경,심천), 프랑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UAE, 태국, 러시아	<추가설치 5개소:> 영국, 독일, 미국(뉴욕), 멕시코, 인도	<추가설치 10개소>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오사카), 싱가포르, 튀르키예, 호주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	-	-	1개소 - 일본 (4,7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안 심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해외거점 운영 일정에 따르면, 2023년 3분기부터 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연내 인도와 미국 센터장 파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영국 외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사무실 구축 및 개소가 지연되어 결국 실집행 부진으로 이어진 것임. 참고로, 5개소 모두 2024년 7월말 현재까지 개소하지 못하였고, 2024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17)]

[2023년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개소 일정(계획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2023년 신규 5개소 개소 현황]

구분	센터장		현지 법인 설립	사무실 구축	개소
	선발	파견			
영국(런던)	2023. 5. 12.	2023. 9. 25.	2023. 12. 12.	'24 하반기	'24 하반기
독일(프랑크푸르트)	2023. 5. 12.	2023. 10. 17.	2024. 6. 1.	'24 하반기	'24 하반기
멕시코(멕시코시티)	2023. 8. 28.	2023. 12. 5.	2024. 5. 10.	'24 하반기	'24 하반기
인도(뉴델리)	2023. 11. 20.	2024. 1. 12.	'24 하반기	'24 하반기	'24 하반기
미국(뉴욕)	2023. 10. 23.	비자 대기중	2024. 2. 8.	'24 상반기	'24 하반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국회 예산심의 당시 해외거점 개소 일정에 맞추어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18)]되었으나 정부안대로 반영된 것임을 고려할 때, 2023년 신규 센터 조성비용의 집행 부진은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 대비 과다편성된 데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도 신규개소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19)]되었으나, 역시 정부안대로 반영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 센터 10개소 설치를 준

17)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말 현재 법인 설립이 완료된 4개소의 경우, 별도의 개소식을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현지 네트워킹 등 일부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하고 있음.

1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 참고

1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참고

비중에 있음. 그러나 2024년 신규 10개소 중 2024년 5월말 현재 개소가 완료된 센터는 아직 없는 실정으로, 2024년에도 불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20]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소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신규 센터 예산 33억 9,000만원 전부를 교부한 후, 이 중 불용이 예상되는 29억 1,500만원을 당초부터 기존 10개소에 배정하여 집행하였음.[21]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2023년 신규 5개소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편성내역		독일			멕시코			영국			인도			미국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운영비 (578)	• 일반수용비 240 (현지채용직원 등)	39	15.3	23.7	41	8	33	56.3	16.7	39.6	32	5.2	26.8	40	5	35
	• 임차료 120 (사무실 임대 등)	24.5	13.7	10.8	18.6	3.9	14.7	10.3	10.3	-	40	0	40	27.5	-	27.5
	• 기타비용 158 (여비, 관리비 등)	19.5	9.8	9.7	30.4	15.5	14.9	16.9	9.9	7	18.5	4.9	13.6	23.5	0.1	23.4
	• 보수(파견수당) 60	12	8.4	3.6	5	3.4	1.6	11.5	10.9	0.6	4.5	-	4.5	4	-	4
사업비 (100)	• 쇼케이스 등 70 • 해외동향조사 30	-	-	-	-	-	-	-	-	-	-	-	-	-	-	-
합계 (1개소당 678)		95	47.2	47.8	95	30.8	64.2	95	47.8	47.2	95	10.1	84.9	95	5.1	8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실제 사용이 가능한 규모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후, 센터 신설 예산의 불용 예상액을 기존 센터로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예산 집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센터의 조속한 개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연내 추진가능한 규모로 센터 확대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집행부진을 개선하고, 향후 신규 센터 개소를 위해 편성받은 예산을 기존 센터에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 다만, 법인 설립은 2024년 신규 10개소 중 7개소가 완료되었음(2024년 7월 말 현재 기준).

21) 보조사업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5개소에 대한 TO확보 지연 및 센터장 선발에 난항을 겪자, 하반기 파견을 목표로 당초부터 신규 센터 1개소당 9,500만원만을 배정하고 나머지 29억 1,500만원은 기존 10개소에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신규 센터 개소 예산의 불용예상액은 기존 10개소 센터에서 사용되었음.

(2)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동일한 보고서 등에 대하여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집행한 사례 부적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와 콘텐츠산업 매거진 발간 예산을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과 '콘텐츠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에 각각 편성 및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고, 1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편성되거나 각각의 실적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콘텐츠 시장과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와 콘텐츠산업 매거진을 각각 연 1회 및 연 5회(통합본 포함) 발간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발간물 관련 예산이 동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22] 세부사업 내 '콘텐츠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23]에서도 편성·집행되었고, 보고서 및 매거진 발간 실적이 두 개 사업의 실적으로 중복 보고되고 있음이 나타났음.

[2023년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와 콘텐츠산업 매거진 발간 관련 결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보조사업자	2023년 편성내역	2023년 집행내역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해외콘텐츠 시장 분석 연구 위탁용역 351,000,000원 - 콘텐츠산업 매거진 발간 위탁용역 170,000,000원	- 해외콘텐츠 시장 분석 연구 위탁용역 200,000,000원 - 콘텐츠산업 매거진 발간 위탁용역 160,000,000원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콘텐츠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 해외콘텐츠 시장 분석 발간 70,000,000원 - 콘텐츠산업 매거진 발간 90,000,000원	- 해외콘텐츠 시장 분석 발간 65,818,330원 - 콘텐츠산업 매거진 발간 71,643,780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보고서 및 매거진 발간을 시작한 2017년에는 '콘텐츠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내역사업 내에 편성하여 추진하다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내역사업으로도 예산을 일부 편성하여 집행하게

22) 일반회계-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

23) '콘텐츠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은 콘텐츠 산업 정책수립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및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억 9,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 되었음.
※일반회계-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나의 실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조사업 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성과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동일한 보고서 발간 예산을 세부사업을 달리하는 사업들에 각각 편성 및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참고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도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콘텐츠기업에 대한 해외 수출정보 제공 관련 내내역사업 간 유사·중복이 지적되었음.[24)]

다만,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 발간은 2024년부터 콘텐츠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에서 관련 예산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콘텐츠산업 매거진 발간 예산도 1개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편성·집행하고, 1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편성·집행되거나 각각의 실적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참고
- <콘텐츠 해외시장 조사 관련 사업 비교표>

구 분	해외거점 운영	콘텐츠 해외동향 조사 및 정보제공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지원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 심층정보 제공
정보유형	거점별 동향보고	①한류 동향정보 ②해외 한류 수용실태 ③한류 파급효과 분석	①시장규모, 규제 등 해외진출 정책정보 ②기업별 해외진출 상담	①국가별 거시 데이터, 매력도, 경쟁력 분석 등 정례조사 (예정) ②기업 요구에 따른 수시조사
사업주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4.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등

가. 개 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영세한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9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5)]

[2023년도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190,000	190,000	-	-	190,000	190,000	-	-	270,000

주1) 동 세부사업은 2024년 예산부터 ‘K-콘텐츠 펀드 출자’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사업단위도 내역사업으로 변경), ‘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 및 ‘콘텐츠전략펀드출자’ 내역사업과 함께 ‘K-콘텐츠 펀드 출자’ 세부사업 내에 편제되었음

2) 2024년 ‘K-콘텐츠 펀드 출자’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3,400억원이고,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2,700억원임

모태펀드는 총 19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고, 총 13개 기관이 출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정·영화계정·관광계정 및 스포츠계정 총 4개 계정에 출자하고 있음.

동 사업을 포함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한국벤처투자가 펀드 운용기관으로서 매년 정부 예산을 받아 민간 운용사(벤처캐피탈)를 모집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조달·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한 후 콘텐츠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25) 일반회계-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231-322)(콘텐츠정책국)
※ 2024년부터 ‘K-콘텐츠 펀드 출자’ 세부사업 내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역사업으로 변경됨.

나. 검토의견

(1)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해 연내 투자소진율이 부진하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자펀드 조기 결성을 통하여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동 사업 예산현액 1,900억원을 모두 한국벤처투자로 집행하여 집행률이 100%로 나타남.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점, 예산 집행 이후 민간 운용사 모집 및 자펀드 결성 다음에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실적은 예산 집행률보다 실제 투자가 언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시기별 투자소진율)를 살핌으로써 알 수 있음.

이에 동 사업의 출자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3년 민간출자를 포함한 총 결성규모 4,220억원 대비 실제 투자액은 244억원에 불과하여, 연내 투자소진율이 5.8%로 저조하였음.[26)]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은 주로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23년 결성된 15개 자펀드 중 10개가 4/4분기 이후 결성되었고, 이 중 8개 자펀드가 연내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023년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별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자펀드명	펀드 결성일	최초 투자일	결성규모		투자 금액 (B)	투자 소진율 (B/A)
			정부 출자금	총액(A) (민간출자포함)		
크래프톤-코나 아이피 투자조합	’23.08.09.	-	150	300	-	-
가이아K콘텐츠IP투자조합	’23.08.09.	’23.10.19.	150	260	18	6.9
데브-크래프톤 문화투자조합 9호	’23.08.09.	’23.09.07.	150	300	61	20.3
대교 K-콘텐츠 스케일업 투자조합	’23.08.11.	’23.09.25.	100	200	16	8.0
케이제이앤케이씨K-콘텐츠IP투자조합	’23.08.22.	’23.09.15.	150	300	30	10.0
사우스뱅크 디스커버리 콘텐츠 제2호	’23.10.04.	’23.11.30.	150	290	23	7.9

26)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펀드별 투자기간은 통상 평균 4년으로 연간 투자소진율을 단순계산하면 평균 25%로(단순계산에 따른 투자소진율 1차년도 25%, 2차년도(누적) 50%, 3차년도(누적) 75%, 4차년도(누적) 100%), 2023년 1차년도 투자소진율은 연평균 소진비율의 4분의 1 수준임.

(단위: 억원, %)

자펀드명	펀드 결성일	최초 투자일	결성규모		투자 금액 (B)	투자 소진율 (B/A)
			정부 출자금	총액(A) (민간출자포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케이-문화 글로벌스케일업투자조합	'23.10.12.	-	100	285	-	-
로간 NEW콘텐츠가치평가투자조합	'23.10.17.	'23.10.31.	100	174	61	35.1
엠아이피(MIP)컬처테크융합투자조합	'23.11.13.	-	100	255	-	-
케이제이앤오픈워터K-문화상생투자조합	'23.11.07.	'23.12.11.	150	300	35	11.7
아이비케이 아이디브이 글로벌 콘텐츠 투자조합 2호	'23.11.10.	-	150	300	-	-
2023 IBK, 캡스톤 K-유니콘 투자조합	'23.11.28.	-	150	300	-	-
센트럴K-밸류콘텐츠레벨업투자조합	'23.12.04.	-	100	201	-	-
나우 K-문화 M&A 투자펀드 1호	'23.12.04.	-	200	335	-	-
에이티유컬쳐테크엠앤에이사모투자합자회사	'23.12.07.	-	200	420	-	-
(가칭)대성 K-콘텐츠 IP 투자조합	결성실패[27]	-	-	-	-	-
합계			2,100	4,220	244	5.8

주) 결성규모, 투자금액, 투자소진율은 2023.12.31.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

최근 큰 폭의 정부출자 예산 확대와 함께 자펀드 결성 지연 현상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28] 최근 5년간 정부출자 예산이 평균 34.7% 비율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29]에 따른 1차 결성 시한(운용사 선정 3개월 내) 내에 조합 결성을 완료한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2.2%에 불과하였음.

자펀드 결성 지연은 곧 출자 초기 투자저조로 이어져 최근 5년간 1차년도의 평균 투자소진율은 각각 12.1%에 머무르고 있음.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해 당해 회계연도 내 투자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는 2023년 이전에도 다수 발생해왔음.

27) 운용사로 선정된 ****투자에서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출자 포기(자진 철회)

28) 최근 5년간 연도별 출자액에 대한 자펀드결성 최종완료일
- ('19) '20.1. ('20) '20.11. ('21) '21.12. ('22) '22.10. ('23) '23.12.

29) 「2023년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중소벤처기업부)」
제18조(결성 시한) ① 자조합은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서 조합 결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모태조합 운용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계정별로 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결성시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계정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예산 (A)	회수액 (B)	정부 출자액 (A+B)	자펀드 조성 규모	선정 운용사 수	펀드 결성수	운용사 선정 후 펀드결성기간			투자소진율			
							1차 시한 (비중)	2차 시한 (비중)	추가 유예 (비중)	1차 년도	2차 년도 *누적	3차 년도 *누적	4차 년도 *누적
2019	630	450	1,080	1,968	10	10	3 (30.0%)	4 (40.0%)	3 (30.0%)	98 (5.0%)	425 (21.6%)	435 (22.1%)	354 (18.0%)
											*523 (26.6%)	*958 (48.7%)	*1,312 (66.7%)
2020	1,130	330	1,460	2,438	11	11	7 (63.6%)	4 (36.4%)	-	557 (22.8%)	626 (25.7%)	355 (14.5%)	309 (12.7%)
											*1,183 (48.5%)	*1,537 (63.1%)	*1,847 (75.8%)
2021	1,148	292	1,440	2,548	11	11	1 (9.1%)	8 (72.7%)	2 (18.2%)	433 (17.0%)	810 (31.8%)	507 (19.9%)	-
											*1,243 (48.8%)	*1,750 (68.7%)	-
2022	1,388	253	1,641	2,488	8	8	2 (25.0%)	6 (75.0%)	-	243 (9.8%)	1,071 (43.0%)	-	-
											*1,314 (52.8%)	-	-
2023	1,900	200	2,100	4,220	15	15	5 (33.3%)	1 (6.7%)	9 (60.0%)	244 (5.8%)	-	-	-

주 1) 펀드결성수, 투자소진율 2023.12.31. 기준

2) 1차 결성시한: 3개월 이내 / 2차 결성시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추가 유예기간: 6개월 초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

[2019~2022년 출자연도 당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펀드 사례]

(단위: 억원)

출자연도	자펀드명	펀드결성일	최초투자일	결성규모
2019	대교 콘텐츠 융합 전문 투자조합	2019.11.29.	2020.03.27.	200
	케이제이앤1호게임전문투자조합	2019.12.30	2020.01.23.	300
	보광 청년창업 콘텐츠 투자조합	2019.11.22	2020.06.30.	150
	디랩콘텐츠유니콘일자리투자조합1호	2020.01.29	2020.02.28.	275
	유니온K-문화콘텐츠투자조합	2019.11.25	2020.02.21.	300
2021	같이가자 카카오게임즈 상생 투자조합	2021.12.13.	2022.03.03.	259
	가이아방송콘텐츠투자조합2호	2021.11.11.	2022.02.17.	151
2022	케이앤 문화콘텐츠1호 투자조합	2022.08.23	2023.03.31.	4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펀드 출자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펀드 결성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자가 늦어지는 경우, 특히 출자연도에 전혀 투자되지 못한 자펀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인 유동성의 '적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임.

가치평가에 따른 선별적 투자를 위해서는 운용사 선정이나 펀드 모집 등의 절차를 조기 투자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단축해서도 안 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자펀드 결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함으로써 당해 출자금의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회에 보고된 금액을 초과하여 정부출자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자조합 결성 실패로 발생한 2023년 정부출자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국회 예산심의를 받은 정부출자 규모를 초과하여 출자하였으므로, 향후 국회 심의를 받은 출자규모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당해연도 출자 예산과 투자하여 회수된 금액을 합하여 정부출자액을 구성하고 있음.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 당해연도 예산과 재출자 예정액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30] 국회는 총 정부출자액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므로, 심의받은 총 정부출자액 규모 내에서 실제 정부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선정 자조합 중 1개(출자예정액 300억원)가 결성에 실패하자,[31] 이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2024년 재출자액에 포함하였음.

이에 당초 2024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정부출자액 3,400억원보다 300억원 더 큰 3,700억원 규모로 2024년 정부출자를 실시하였고, 이는 2024년 국회 예산심의 당시 감액된 200억원을 복구하는 결과를 가져옴.[32]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정부안 확대폭이 감액조정된 것은 정부출자의 필요성과 증액폭 급증에 따른 투자소진율 저조 및 상당규모의 투자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국

30)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회수재원의 재출자 시점·규모·분야 등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심의 시 신규출자 규모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이후 정부안 제출 시 회수재원을 함께 표시하고 있음.

31)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예산안 심의 당시 정부출자 계획액 2,400억보다 300억원 적은 2,100억원 규모로 정부출자를 실시하였음.

32) 문화체육관광부는 3,700억원의 정부출자액을 바탕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임.

회 예산심의 결과임.[33)]

따라서, 향후 정부는 국회 심의를 받은 출자규모를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2~2024년 5월말 현재까지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결산]

(단위: 억원, %)

연도	정부안 (A)	확정예산 (B)	국회 심의결과 (A-B)	집행액 (C)	집행률 (C/B)	회수 및 재출자	총 정부출자
2022	1,737	1,388	△349	1,388	100.0	253	1,641
2023	2,200	1,900	△300	1,900	100.0	200 (편성기준: 500)	2,100 (편성기준: 2,400)
2024 (5.31.기준)	2,900	2,700	△200	2,700	100.0	1,000 (편성기준: 700)	3,700 (편성기준: 3,4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3)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등 참조

5. 음악산업 육성 사업: 자부담 부과 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음악산업 육성’ 사업은 음악산업 종사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음악 제작지원・유통 및 홍보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68억 5,100만원 중 368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3년도 음악산업 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1,834	41,834	-	55	41,889	41,881	-	8	47,069
음악산업 육성	36,796	36,796	-	55	36,851	36,843	-	8	34,046

나. 검토의견

‘음악산업 육성’ 사업은 자부담 부과 여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지원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수혜자의 영세유무, 정책적 지원 필요 여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부담 여부 및 자부담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은 대중음악 제작 지원 223억 8,000만원, 대중음악유통 및 홍보 지원 51억 900만원,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62억 1,200만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 30억원, 음악산업 정책지원 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

이 중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자치단체보조, 파주시)과 음악산업 정책지원(직접수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 사업은 음악산업업체 등을 대상으로 앨범 제작・공연 개최 등을 지원하는 특성상 지원대상에게 일정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요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

34) 일반회계-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콘텐츠정책국)

때 자부담 여부 및 자부담률은 사업목적 및 수혜자 현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3년 음악산업 육성 사업 편성내역별 결산]

(단위: 백만원, %)

편성내역	사업추진방식 (사업수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대중음악 제작 지원	민간경상보조 (콘진원 등[35])	22,380	22,380	-	22,380	20,302	1,808	270	90.7
대중음악유통 및 홍보 지원	민간경상보조 (콘진원 등[36])	5,109	5,109	-	5,109	4,895	-	214	95.8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민간경상보조 (콘진원)	6,212	6,212	-	6,212	5,799	-	413	93.4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 (파주시)	3,000	3,000	-	3,000	-	3,000	-	-
음악산업 정책지원	직접수행	150	142						
합계		36,851	36,843	-	36,701	30,996	4,808	897	84.5

주) 콘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23년 동 사업의 자부담 부과 방식을 살펴본 결과,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부 내내역사업의 자부담 여부가 단순히 지원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앨범제작지원 등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직접지급하는 유형과 플랫폼기반 뮤지션 육성지원 등 위탁운영사를 통하여 간접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직접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을 부과하고, 위탁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수혜자에게 자부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임.

지원대상에게 일정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사업추진 방식이 아니라 수혜자의 영세유무 및 정책적 지원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자부담 여부 및 자부담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동 사업의 자부담 부과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5) 콘진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한가수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36) 콘진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라이브클럽협동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2023년도 음악산업 육성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추진방식별 자부담 부과 여부]

편성내역	사업내용	방식	자부담 비율
대중음악 유통 및 홍보 지원	(플랫폼기반뮤지션육성지원) 음악성과 잠재력을 지닌 신인 뮤지션 발굴 및 다각도 지원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뮤지션으로 육성 지원	간접 지원	-
	(대중음악앨범제작지원) 대중음악 제작사 대상 신규 앨범 제작비, 앨범 프로모션 비용 등 지원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우수뮤지션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영) 우수뮤지션 홍보 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직접 지원	-
	(서울 인디 뮤직 페스타) 인디 뮤지션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 개최를 통해 인디음악 재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기회공연, 공동 홍보 마케팅, 페스티벌 등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중음악 유통 홍보 기반 지원) 한국음악데이터센터 운영 및 씬디 티켓라운지 운영, 케이팝 기초음원자료 외국어표기 지원 사업 지원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중음악 제작지원	(하이브리드음악영상제작) 음악IP를 활용 대면 공연에 적합한 기술 요소 적용 음악·영상 콘텐츠 직·간접 제작 지원 - 기술 요소 활용 경험이 익숙한 공연제작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경험이 미숙한 중소음악기획사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사 활용 기획 및 컨설팅, 현장 적용까지 포함한 간접 지원 추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
	(대중음악온라인공연및영상제작지원) KOCCA뮤직스튜디오 기반 온라인 신기술 공연 및 차세대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온라인공연스튜디오운영및공연개최) KOCCA뮤직스튜디오 운영, 활용지원 및 기획공연 개최	간접 지원	-
	(ICT-음악(뮤직테크)콘텐츠제작지원) 음악과 ICT 신기술 융합된 뮤직테크 콘텐츠 기획 및 고도화 지원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공간기획형공연개최지원) 공연 기획사, 제작사 등 대상 다양한 공간 활용한 중소형, 대형 공연 개최 지원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대중음악 콘서트 개최 지원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지원) 다수의 소규모 공연장에서 인디음악 등 비주류 장르 공연을 집중 개최 지원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K-뮤직 시즌) 특정시기에 다양한 대중음악 공연을 관광과 연계 개최 및 k팝 방송콘텐츠 제작 등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 국내 뮤지션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쇼케이스 및 비즈니스 행사 개최(엔터테인먼트산업박람회 연계)	간접 지원	-
	(현지인프라활용해외진출지원) 해외 현지에서 개최하는 Korea Spotlight 쇼케이스 및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간접 지원	-
	(우수대중음악해외유통지원) 유럽(독일) 음악 전문마켓 참가를 통한 쇼케이스 개최 및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간접 지원	-
	(뮤콘초이스지원) 과거 뮤콘 쇼케이스 참가 뮤지션 대상 해외 비즈니스 후속지원	간접 지원	-
	(우수뮤지션글로벌프로모션지원) 콘진원 지원 뮤지션 중 우수 성과 뮤지션 대상 글로벌 프로모션 후속 지원	간접 지원	-
	(해외투어개최및페스티벌참가지원) 국내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 중 자체 해외 투어, 해외 음악 페스티벌 초청이 확정된 뮤지션 대상 해외 투어 및 페스티벌 개최 지원	직접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6.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은 콘텐츠 사업의 원천 소재 발굴을 위한 창작 환경 조성, 이야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 인프라 확대, 우수 스토리의 국내외 유통·투자와 해외진출 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2억 5백만원 중 51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37)]

[2023년도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이야기산업 활성화	5,205	5,205	-	-	5,205	5,193	-	12	4,800
스토리텔러 양성	1,185	1,185	-	-	1,185	1,185	-	-	1,245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585	585	-	-	585	585	-	-	245
국내·외 스토리유통	3,097	3,097	-	-	3,097	3,097	-	-	2,632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1,000	1,000	-	-	1,000	1,000	-	-	1,000

내내역사업인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은 스토리 기획·제작·유통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시스템을 통해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억 8,500만원이 모두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내내역사업인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은 스토리 유통 플랫폼인 스토리움에서 계약이 완료된 우수스토리 콘텐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0억원이 모두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37) 일반회계-이야기산업 활성화(1232-310)(콘텐츠정책국)

나. 검토의견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사업과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보다 길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야기산업 활성화 세부사업 내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사업과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은 각각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고, 우수스토리 콘텐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사업 시작연도부터 2023년까지 두 사업의 예산액은 전액 교부(교부율 100%)되어왔으나, 평균 실집행률은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사업이 72.1%,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이 59.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매년 이월액이 발생되어 왔음.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및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2020	1,000	1,000	-	1,000	635	365	-	63.5
	2021	1,200	1,200	365	1,565	1,226	339	-	78.3
	2022	1,200	1,200	339	1,539	1,097	442		71.3
	2023	585	585	442	1,027	772	255	-	75.2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2022	1,000	1,000	-	1,000	566	434	-	56.6
	2023	1,000	1,000	434	1,434	885	549		6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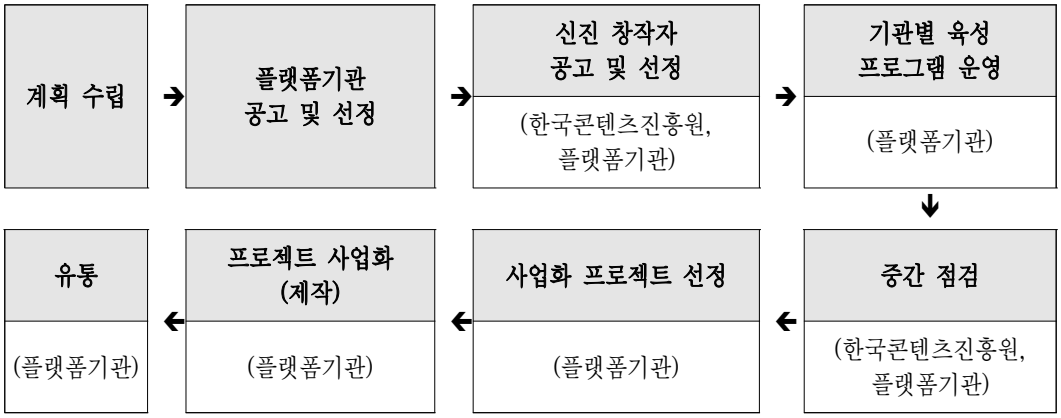
두 사업의 내용 및 절차를 각각 살펴보면,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사업은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플랫폼기관 선정 - 신진 스토리작가 선정 -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및 유통 순으로 진행되며, 기획·제작·유통 등 전 과정 활동 지원이 가능한 민간 전문 중소기업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반의 과정에서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함.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은 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배급 등이 가능한 분야별 법인 또는 개인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후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실시하도록 함.

이와 같이 두 사업 모두 수행기관의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기간을 1회계연도보다 길게 설정해왔고, 그 결과 사업 시작연도부터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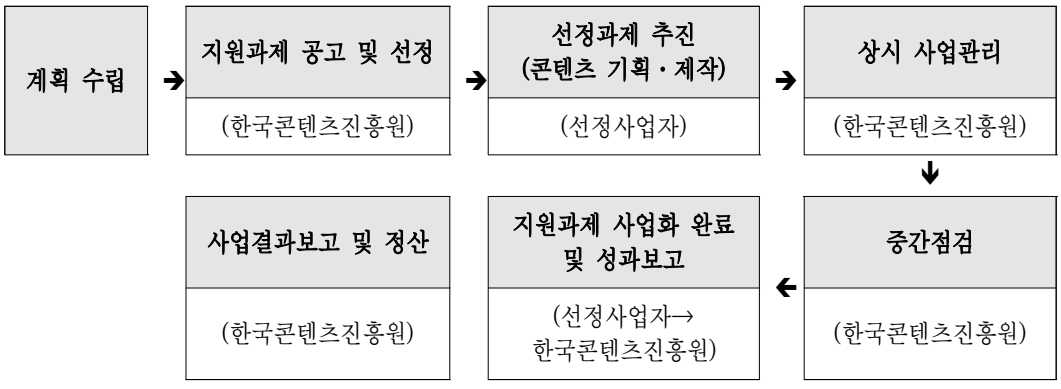
2023년의 경우, 두 사업의 사업기간은 18개월('23.1.1.∽'24.6.30.)로, 2023년 당해연도 예산의 약 50%가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필요성도 일정 부분 인정됨.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8]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은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3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단계별 사업기간을 보장하면서도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년도 연차사업으로 개선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39]

39) 예를 들어, 1차년도는 프로젝트의 기획・개발 및 제작, 2차년도는 전년도 제작된 프로젝트의 사업화로 구성하여, 한 프로젝트를 2년간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음.

7.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 면밀한 실적 관리 필요

가. 개 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은 한국문화원형의 연구·개발부터 보존, 전시·체험, 교육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1억원 중 25억원이 집행(집행률 61.0%)되고, 나머지 16억원은 불용되었음.[40)]

[2023년도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통생활문화 진흥	11,963	11,963	-	△2,400	9,563	7,870	-	1,693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6,500	6,500	-	△2,400	4,100	2,500	-	1,600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함)은 연면적 약 7,48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전북 전주에 설립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이고, 총사업비는 291억원(국비 204억원, 지방비 87억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70%) 사업임.

나. 검토의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불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집행점검을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불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교부율은 33.7%, 교부액 중 실집행률은 9.5%에 불과함.

40) 일반회계-전통생활문화 진흥(1533-303)(문화정책관)

사업 시작연도부터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면서 최초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된 후 실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이후 2020년에 타당성조사비 및 설계비가 다시 편성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사업부지 변경)[41]에 따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2022년 3월에 완료[42] 되면서 2020~2021년에 편성된 설계비 또한 모두 불용(미교부)되었음.

이에 동 사업은 2022년에서야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 등록되었는데, 등록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2022년 설계비 7억원은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해제 지연에 따른 연말 교부로 교부액 전체가 이월되었고, 2023년 공사비 65억원은 건립 위치 재검토 협의 등으로 인해 사전행정절차가 지연[43]되어 교부율은 38.5%, 실집행률은 0.3%에 그쳤음.[44]

[최근 5년간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예산현액	교부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실집행부진 사유
2019	300	300	-	300	-	-	-	-	-	-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미해제
2020	1,000	1000	300	700	-	300	-	300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021	700	700	-	700	300	300	124	176	-	41.3	타당성조사 결과 미도출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선금만 집행
2022	700	700	700	-	176	876	53	700	123	6.0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해제 협의 지연에 따른 연말 교부('22.12월)
2023	6,500	4,100[45]	2,500	1,600	700	3,200	10	3,190	-	0.3	건립 위치 재검토 등으로 인한 설계공모 지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1) 당초: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구 법원, 검찰청 부지)
변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전주종합야구경기장)

42)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3월

43) '23년 2월 건립부지(전주종합야구경기장) 개발방침 변경으로 건립 위치가 재검토되면서 컨벤션센터, 시립미술관과의 부지이용계획 조정 등으로 건축기획용역 착수가 지연됨.

44)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현액 41억원 중 25억원만 교부('23.12월)하였고, 보조사업자인 전주시는 전년도 설계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한 2023년 예산현액 32억원 중 건축기획용역비 1,000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31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음.

동 사업이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보인 이유는 수시배정 사업 지정, 사업부지 변경 등 사업추진 지연사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에 기인함.

설계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편성되었으나 한 차례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였고,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설계비 수시배정 해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교부도 못한 상태였던 점,[46] 2024년 5월말 현재 아직 기본설계 중[47]으로 빨라야 2024년 말에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48]을 고려하면, 2023년 공사비 예산 65억원 역시 집행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실적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5)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예산액 중 21억원을 태풍 카눈 재해복구 등을 위해 다른 사업에 자체이용하여 집행하였음.

46)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공사비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음.

47)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2024.1월~10월

48)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2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였음.

8.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사업(종료)[49]: 보조에서 직접수행으로 사업 추진 방식 변경 필요

가. 개 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사업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3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억원이 모두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0]

[2023년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문화정책지원	11,809	11,809			11,809	11,695	-	114	11,037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500	500	-	-	500	500	-	-	-

나. 검토의견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을 통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수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중·일 3국은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및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문화장관회의를 순환 주최하고 있음.[51]

대한민국이 주최한 직전 회의는 2019년에 개최된 제11회 회의로(예산액 3억원), 2023년에는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49) 통상 3년 주기로 편성됨.

50) 일반회계-국제문화정책지원(1534-307)(국제문화홍보정책실)

51)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역대 개최 현황>
- 한국: 제2회('08, 제주), 제5회('13, 광주), 제8회('16, 제주), 제11회('19, 인천), 제14회('23, 전주)
- 중국: 제1회('07, 남통), 제4회('12, 상해), 제7회('15, 칭다오), 제10회('18, 하얼빈), 제13회('22, 취푸)
- 일본: 제3회('09, 나라현), 제6회('14, 요코하마), 제9회('17, 교토), 제12회('21, 기타큐슈)

그런데 동 사업은 직접수행이 아닌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2023년 예산현액 5억원을 전액 교부(교부율 100%)하였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이 중 4억 7,5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95.0%)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서,[5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온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53] 해당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54]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5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④ (생 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관련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운영비 지원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2,666
보조금 교부	국제문화 정책지원	10,900
	문화예술 해외교류	1,343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330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0,650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5,219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1,900
	국가이미지 홍보	5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임.

반면, 동 사업은 한·중·일 3국 간 각국의 장관급 인사[55]가 주관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직접 본회의에 참여하여 합의문 서명 등을 실시[56]하는 국가행사라는 점에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민간경상보조 방식보다 직접수행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적용하고,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단순 “대행사업”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동 사업을 직접수행하되, 오·만찬, 행사장 마련 등 실무 처리에 효율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57]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5)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중국: 문화여유부장 / 일본: 문부과학대신

56) 2023년 8월에 대한민국 전주에서 개최된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국의 장관들은 한중일 문화협력방안 및 3국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음.
※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3.9.7~8. / 국립무형유산원(전주시 완산구)
- 주요참석자: (한)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문화여유부장, (일)문부과학대신
- 주요 의제: 미래세대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등
- 주요 행사: 양자회의(한·일, 한·중, 일·중), 본회의(선언문 서명,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 한·중·일 예술제 등

5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단순사무 등을 통상 위탁계약을 통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9. 장애인예술공연장 임차 및 운영 사업: 공연사업 추진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장애인예술공연장 임차 및 운영’ 사업은 장애인 맞춤형 열린 공연장[58]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공연 창작·발표를 활성화하고 향유 기회를 제고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3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9]

[2023년도 장애인예술공연장 임차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함께누리 지원	26,234	26,234	-	-	26,234	26,231	-	3	29,107
장애인예술공연장 임차 및 운영	5,300	5,300	-	-	5,300	5,300	-	-	5,300

동 사업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58) <장애인예술공연장 주요시설>

구분	주요시설
1층	ㅇ 연습실 : 공연장 사용단체 사용 연습공간 ㅇ 분장실 : 단체분장실 2개, 개인분장실 2개(총 4개), 샤워실 및 화장실 포함
2층	ㅇ 공연장 :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 - 블랙박스형 공연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연 가능, 무대 및 객석 휠체어 접근 가능 - 수납식 객석 209석, 가변 객석 등 최대 250석 가능 ㅇ 연습실 : 창작레지던시, 공유형 작업실, 교육 등 창작자를 위한 공간, 대관운영 ㅇ 모두라운지 : 네트워킹 행사, 공연장 로비활용 등 다목적 공간 ㅇ 장애인 화장실, 가족화장실, 수유실
3층	ㅇ 모두스튜디오 : 소규모 공연, 쇼케이스, 워크숍 등 다목적 창작 스튜디오 ㅇ 공연장 2층 객석, 조정실, 휴식공간, 장애인 화장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9) 일반회계-함께누리 지원(1633-304)(예술정책관)

나. 검토의견

‘장애인예술공연장 임차 및 운영’ 사업은 조성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임차료 등이 낭비되고 공연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공연장이 당초 목적대로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 거점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연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의 1~3층을 임차하여 장애인예술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함)으로 조성한 후, 다양한 장애예술 콘텐츠 개발, 공연기획 및 대관, 국내·외 예술가와의 교류·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당초 공연장은 2021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후 2022년 4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2021년 예산에 조성비(리모델링 공사비) 및 운영비(건물 임차료, 인건비 등)가 최초로 반영되었고, 2022년부터는 공연사업비도 편성되었음.

2023년 예산은 공연장 조성비 8,000만원, 공연장 관리인력 인건비 3억원, 임차료 및 시설관리비 32억 8,000만원, 공연기획 등 공연사업비 17억 2,000만원으로 구성됨(예산 편성 기준).

그러나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소음·진동에 대한 입주사 민원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고,[60] 2023년 10월에야 공연장이 개관됨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예산 실집행률은 각각 19.8%, 18.2%로 저조하였음.

또한 공사 지연기간 동안 임차공간이 목적사업에 활용되지 못하여 임차료가 낭비는 결과를 초래하였음(2023년 기준 임차료 12억 8,700만원).[61]

동 사업의 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 거점공간으로서의 공연사업비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개관 지연으로 대부분(88.2%) 이월되었고, 2023년에도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불용되었음.

---

60)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인·허가 기관의 계획서 조건부 승인, 관할구청의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한 해체허가 변경, 국토안전관리원 재검토 등 건축행정 관련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임대인 협의, 소음·진동 등 건물 입주사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시간 제한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었음.

61) <공연장 임차계약 내역>

임차년도	임차료	비고
2021	433백만원	21년 3월 공연장, 21년 9월 극장 라운지 등 2, 3층 임대차 계약 체결
2022	1,117백만원	공연장 사무공간 추가 임대차 계약 체결
2023	1,287백만원	
합계	2,837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의 실집행률은 80.8%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실집행액 122억 4,000만원 중 74억 3,500만원(60.7%)은 2021~2022년 조성비 예산의 이월 또는 재이월액 집행액으로, 공연사업비에 집행된 예산은 실집행액의 8.1%(9억 8,700만원)에 불과하며 집행내역도 개관식 및 개관프로그램 운영에 그쳤음.[62]

[사업실시 이후 장애인예술공연장 임차 및 운영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내역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조성비	6,685	6,685	-	6,685	115	6,570	-	1.7
	운영비	1,720	1,720	-	1,720	1,550	170	-	90.1
	계	8,405	8,405	-	8,405	1,665	6,740	-	19.8
2022	조성비	1,420	1,420	6,570	7,990	351	7,639	-	4.4
	운영비	2,410	2,410	170	2,580	1,663	917	-	64.5
	공연사업비	1,470	1,470	-	1,470	173[63]	1,297	-	11.8
	계	5,300	5,300	6,740	12,040	2,187	9,853	-	18.2
2023	조성비	-	80	7,639	7,719	7,435	16	268	96.3
	운영비	3,740	3,500	917	4,417	3,818	599	-	86.4
	공연사업비	1,560	1,720	1,297	3,017	987	1,348	682	32.7
	계	5,300	5,300	9,853	15,153	12,240	1,963	950	80.8

주) 2023년 예산액은 예산편성 기준이고, 교부액은 실제 교부금액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일정 등에 따라 세부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동 사업 사례와 같이 사업추진 지연으로 임차료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애인예술공연장이 당초 목적대로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 거점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연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2) 2023년 세부집행내역
- ㅇ 조성비(시설비): 7,435백만원
- ㅇ 운영비: 3,818백만원
  - 인건비 102백만원/임차비 1,287백만원/기타 운영비(시설유지비 등) 2,309백만원/홍보비 120백만원
- ㅇ 공연사업비 987백만원
  - 개관프로그램 운영비 741백만원/홍보비 246백만원
    * 개관식(10.24) 및 개관프로그램(해외초청프로그램, 국내초청프로그램 등 6개 프로그램) 추진

63) 워크숍(어둠속에 풍경) 및 해외 초청 프로그램 기획 등 추진

10. 민간컨설팅 사업: 컨설팅업체와의 계약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민간컨설팅’ 사업은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추진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 홍보기법이나 아이디어를 국정홍보에 접목하여 부처 정책·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억 1,100만원 중 6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64]

[2023년도 민간컨설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4,081	4,081	-	-	4,081	3,699	173	209	4,058
홍보기획 지원	1,139	1,139	-	-	1,139	1,094	-	45	1,135
민간컨설팅	611	611	-	-	611	607	-	4	611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47.7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전년 대비 2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2023년에는 총 55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최근 3년간 민간컨설팅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컨설팅 건수	주요 과제명
2021년	404	404	404	-	4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국민 홍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단계별 소통전략,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산업현장 사망 사고 감축 등
2022년	411	411	407	4	42	중대시민재해 홍보, 개인정보보호문화 확산,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한 인식개선 소통강화, 규제혁신 성과 공유·확산 등
2023년	611	611	607	4	55	청년도약계좌 홍보 전략, 초등 늘봄학교 운영, 만 나이 통일 국민 홍보 방안, 안전대책 홍보 전략, 고용24 브랜드화 홍보, 에너지 절약 홍보 전략,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홍보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64) 일반회계-정책홍보 및 분석지원(1931-300)(국민소통실)

나. 검토의견

‘민간컨설팅’ 사업은 컨설팅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분기별 또는 수시로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민간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책·현안의 홍보 수요가 있는 부처에 홍보 상황 분석, 홍보 메시지 개발, 홍보전략 및 홍보기획안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부처의 대국민 소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부처별로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홍보 수요가 존재하므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수의 컨설팅업체 중에서도 정책홍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보유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3년간 평균 6.3개의 컨설팅사와 업체별 평균 약 6,198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의 경우 8개 업체와 평균 7,42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체결 방식을 살펴보면, 연간 계약이 아닌 ‘분기별’ 또는 ‘수시’로 한 해 동안 여러차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였음. 수의계약 사유로는 특수한 지식 또는 기술을 요구하는 점[65] 등을 들고 있음.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컨설팅업체 풀(pool) 구성 → 각 부처 컨설팅 수요조사 - 컨설팅 과제 선정 - 수행업체 계약(분기별/수시) → 문화체육관광부·컨설팅사·해당 부처 간 과업범위 협의 → 컨설팅 실시 →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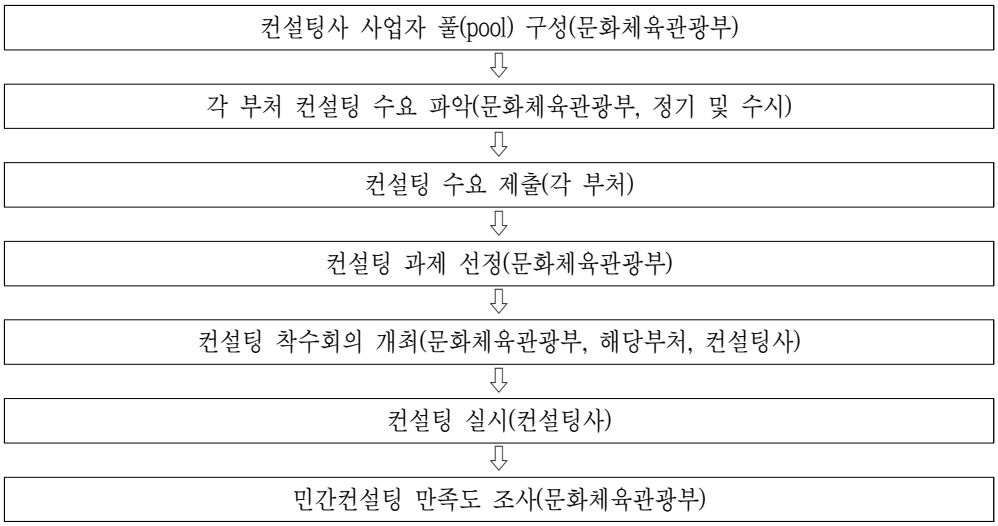
즉 사전 공모를 통해 컨설팅업체 풀을 구성하고, 분기별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처 컨설팅수요 조사에 맞추어 풀에 속한 업체들과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사전에 구체적인 과제 내용이나 컨설팅 지원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분기별 과제 수와 계약금액이 유동적인 관계로 이러한 계약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설명임.

---

6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민간컨설팅 사업 추진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민간컨설팅 사업 계약 현황]

업체	연간 총 집행액	분기별 계약금액	계약방법	최근3년간 계약현황
프레인앤리	7,302만원	1분기: 2,434만원 3분기: 1,434만원 2분기: 2,000만원 4분기: 1,434만원	수의계약	2021~2023년 연속계약
케이스탯 컨설팅	7,586만원	1분기: 2,434만원 3분기: 1,434만원 2분기: 1,718만원 4분기: 2,000만원	수의계약	2021~2023년 연속계약
이지스 커뮤니케이션	7,586만원	1분기: 2,434만원 3분기: 1,434만원 2분기: 2,000만원 4분기: 1,718만원	수의계약	2023년 신규
커뮤니케이션 웍스	7,868만원	1분기: 2,434만원 3분기: 3,000만원 2분기: 1,434만원 4분기: 1,000만원	수의계약	2021~2023년 연속계약
우리누리	8,152만원	1분기: 1,718만원 3분기: 2,000만원 2분기: 2,000만원 4분기: 2,434만원	수의계약	2021~2023년 연속계약
프래드컴	6,000만원	1분기: 2,000만원 3분기: 1,000만원 2분기: 2,000만원 4분기: 1,000만원	수의계약	2023년 신규
케이아이 컨설팅	7,868만원	1분기: 2,000만원 3분기: 2,434만원 2분기: 2,000만원 4분기: 1,434만원	수의계약	2022~2023년 연속계약
소셜허그	7,000만원	1분기: 2,000만원 3분기: 1,000만원 2분기: 2,000만원 4분기: 2,000만원	수의계약	2023년 신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2023년 분기별 현안(과제)에 대해 매칭된 컨설팅 업체들을 살펴본 결과, 현안의 분야(고용, 교육, 문화・체육, 환경, 건강 등)나 홍보 내용(신규정책 및 개정법률 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등) 등과 매칭된 컨설팅 업체 간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5개 업체와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컨설팅 과제별 특수한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에 동의하기 어려움.

또한 계약별로 컨설팅 과제의 목적(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수요자(정부 부처) 및 타켓층(국민), 추진 절차 등이 동일함에도 분기별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연중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은 분할계약에 해당하므로 적정하지 않음.

[2023년 민간컨설팅 사업 계약업체별 컨설팅 현안]

업체	분기	2023년에 추진한 컨설팅 현안(과제)
프레인앤리	1분기	-고용정책 홍보 컨설팅(고용부) -(가칭)고용24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 전략(고용부)
	2분기	-2023 한글주간 홍보(문체부) -만성질환 예방관리 인식개선(질병청)
	3분기	-신성장 4.0 전략 국민체감도 제고(기재부)
	4분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외교부)
케이스탯 컨설팅	1분기	-국민과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 홍보방안(복지부) -고령자 고용 인식개선 홍보(고용부)
	2분기	-청년고용정책 확산(고용부) -2023 숙박・유원시설 할인쿠폰 지원 사업(문체부)
	3분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경찰청)
	4분기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 10주년 기념 홍보(해수부)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통일부)
이지스 커뮤니케이션	1분기	-초등 늘봄학교 운영(교육부)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전략(문체부)
	2분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홍보(복지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홍보(외교부)
	3분기	-산불예방 홍보(산림청)
	4분기	-모바일 신분증 대국민 홍보(행안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개최 (국방부)
커뮤니케이션 웍스	1분기	-정부혁신 비전・가치 및 국민체감 우수성과 확산・공유(행안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해지는 안전대책(행안부)

업체	분기	2023년에 추진한 컨설팅 현안(과제)
	2분기	-
	3분기	-NO 불법촬영 캠페인 브랜드화(교육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홍보(행안부)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질병청)
	4분기	-교육부 홍보전략(교육부) -수목장림 대국민 인식개선(산림청)
우리누리	1분기	-만 나이 통일 국민 홍보방안(법제처) -청년도약계좌 홍보전략(금융위)
	2분기	-수입수산물 검사 안전 인식 확산(식약처)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해수부)
	3분기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지정 10주년 기념행사(문체부)
	4분기	-어린이 안전정책 (6대 분야) 홍보(행안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기재부)
프래드컴	1분기	-공공조달 혁신방안 대국민 홍보 방안(조달청) -HACCP 및 스마트 HACCP 홍보 활성화(식약처)
	2분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문체부) -농촌융복합산업 홍보 효율성 제고(농식품부)
	3분기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국가유산청)
	4분기	-농업 분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절감 홍보방안(농식품부)
케이아이 컨설팅	1분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문체부) -인신매매 방지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여가부)
	2분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부) -공정채용법 개정(고용부)
	3분기	-사교육 경감대책 홍보(교육부) -2024년 생활시간조사 참여율 제고(통계청)
	4분기	-정책홍보 효율성 제고 방안(문체부)
소셜허그	1분기	-산림생태복원에 대한 국민 관심증대 홍보 방안(산림청) -기후변화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기상청)
	2분기	-K관광 섬 육성사업 홍보(문체부) -에너지 절약 홍보 전략(산업부)
	3분기	-인도-태평양 전략 홍보(외교부)
	4분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소방청) -통합채용박람회(Global Talent Fair) 홍보(산업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컨설팅업체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66][67]

66) 2024년 계약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복수 낙찰자 허용)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하여 총 5개 업체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였음. 다만, 시범특례는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기획재정부 예규 제648호)」에 따라,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함(2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 ·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 · 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67)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쟁입찰(최저가 낙찰)의 방법으로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요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시행예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시행 2024. 9. 27.)」 제10조제4항(신설)에 따르면, 경쟁입찰 시 최저가 입찰자 낙찰 원칙에도 불구하고, 1인의 낙찰자로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둘 이상의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시행 2024. 9. 27.)」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 성질 ·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1.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사업추진 지연 및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가. 개 요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 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콘텐츠 제작 및 투자유치·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기업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2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8]

[2023년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45,019	45,019	-	-	45,019	45,019	-	-	40,474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20,434	20,434	-	-	20,434	20,434	-	-	18,221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	4,220	4,220	-	-	4,220	4,220	-	-	-

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231-300)(콘텐츠정책국)

나. 검토의견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센터 조성방법·총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년도 예산편성 및 당해연도 교부, 보조사업자의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 저조와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연부액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시 필수 제반여건 충족여부 고려,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적정금액 교부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동 사업은 2022년에는 충북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신규로 조성하는 예산 48억원, 2023년에는 부산 센터 신규 조성 예산 42억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69]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간접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센터를 조성하고 있음.

센터 조성기간은 조성 방식과 규모·총사업비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18년 이후 조성된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70]의 경우 개관까지 통상 15.3개월(최대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센터 규모, 총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성비를 연부액으로 편성하고,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적정규모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충북과 부산 센터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 센터는 부산진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84.4억원(국비 42.2억원, 지방비 42.2억원)임. 반면, 충북 센터는 청주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20억원(국비 48억원, 지방비 72억원)으로 부산 센터보다 조성방식이나 사업비 규모 측면에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센터 조성비를 모두 단년도로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전액 교부하였고, 센터 조성 중 지연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률 저조와 이월 또는 재이월이 연달아 발생하였음.

---

69)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의 운영비는 같은 세부사업 내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운영’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며, 2023년에는 기존 9개소, 2024년부터는 신규 2개소(충북, 부산)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되었음(단, 부산은 개소일정을 고려하여 기존 개소의 절반 수준 편성).

70) 총 7개(충남, 경남, 대구, 인천, 대전, 경북, 울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충북 센터 조성비 48억원은 2022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예산의 100%,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충북에 예산의 62.5%를 교부하였으나, 사전행정절차 및 지방비 확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2023년으로 이월되었음.

2023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년도 미교부액(이월액) 18억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으나, 연내 착공하지 못하여 역시 차년도로 이월되었음('24.4월 착공, 12월 개관 목표).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충북 센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충청북도)			
	예산액	교부액 (A)	교부현액 (A+전년도 이월액)	재교부액 (C)	이월액 (B)	교부현액 (C+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D)	불용액
2022	4,800	4,800	4,800	3,000	1,800	3,000	-	3,000	-
2023	-	-	1,800	1,800	-	4,800	232	2,768 (재이월) 1,800 (이월*)	-

주) 2023년 충북 이월예산 18억원은 간접보조사업자인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최초 이월이나, 2022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미교부하고 2023년으로 이월한 예산이 다시 이월된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 센터 조성비 42.2억원은 2023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예산의 100%,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부산에 예산의 80.0%를 교부하였으나, 설계용역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32억 2,7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24.4월 착공, 9월 개관 목표).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부산 센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부산시)			
	예산액	교부액 (A)	교부현액 (A+전년도 이월액)	재교부액 (C)	이월액 (B)	교부현액 (C+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D)	불용액
2023	4,220	4,220	4,220	3,376	844	3,376	149	3,22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기존 센터 9개소 조성 당시에도 국회 결산심의에서 추진 지연 및 연례적 이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71]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센터 조성방법, 총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성비를 연부액으로 편성하고, 지방비 확보 등 필수적인 제반 여건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적정금액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7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 참고

12.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신규): 면밀한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남부권(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관광자원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5억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되었음.[72]

[2023년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00	5,500	-	-	5,500	-	-	5,500	27,778

동 사업은 2022년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23년 예산에 ‘땅끝수상복합공연장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최초 반영되면서 시작되었고, 2023.7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음.

동 계획에 따르면, 부산·광주·울산·전남 및 경남(5개 시도 4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3년까지 총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임.

나. 검토의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이나 지방비가 매칭되지 못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땅끝수상복합공연장조성’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개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를 보조사업자로 함.

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남부권 광역관광개발(4153-315)(관광산업정책관)

동 사업은 관광인프라 및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절차(인·허가, 건축심의, 지방투·융자심사 등)의 사전 이행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지방비 매칭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

그런데 2023년에는 5개 사업 모두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현액 55억원 전액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교부율 및 실집행액 0%)하였음.

[2023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3년 편성내용	2023년		2024년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땅끝수상복합공연장조성(해남) [2023~2027년, 456억원]	설계비(수상공연장, 호반플로팅센터, 기반시설 등)	900	-	1,091
추포도음식관광테마명소화(신안) [2023~2027년, 420억원]	설계비(식문화체험복합센터, 맛문화체험거점 등)	1,700	-	1,036
아트케이션관광스테이확충(광양) [2023~2027년, 108억원]	설계비(워케이션센터, 미디어아트파크, 휴게정원 등)	1,175	-	291
레저케이션관광스테이확충(곡성) [2023~2027년, 144억원]	설계비(유스호스텔 리모델링, 매표소 리모델링 등)	800	-	220
그린케이션관광스테이확충(구례) [2023~2027년, 219억원]	설계비(워케이션센터, 다목적광장, 아트파빌리온 등)	925	-	4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편성된 5개 사업은 모두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규모로 2027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는 것이 당초 계획임. 그러나 2023년과 같이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계획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순연되어 목표기간 내 성과를 얻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

또한 자치단체보조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지방비 매칭을 이행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방증으로, 이는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배정되지 못하게 하여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동 사업의 세부내역별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수 및 사업

규모 모두 약 5배 확대된다는 점[73]을 고려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73) 보조사업자: ('23) 전남 → ('24) 전남, 부산, 광주, 울산, 경남
예산(국비): ('23) 55억원 → ('24) 277억 7,8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 입>

13. 입장료수입: 수익금 계상의 예산총계주의 위반 및 별도 적립 부적정

가. 개 요

‘입장료수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제1항[74]에 따라, 뉴서울CC,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라 함)가 소유[75]·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수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함)으로 수납하는 것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31억 3,6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되었음.[76]

[2023년도 입장료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입장료수입	6,244	6,244	3,136	3,136	-	-	100.0	6,431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뉴서울CC 총 운영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만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입장료수입으로 계상해왔고, 2021년부터 입장료수입 중

74)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5) 뉴서울CC는 당초 한국방송공사가 출자하여 조성하였으나,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1987년 문예위에 기부되었음.

76) 문화예술진흥기금-입장료수입(64-641)(예술정책관)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총계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기금 수입을 별도 적립하는 행태는 시정해야 할 것으로 봄.

최근 5년간 입장료수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는 계획현액 대비 수납률이 80%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부터 절반 수준인 41.5%로 떨어져 최근 3년간 평균수납률이 44.5%에 불과하였음.

이는 입장료수입 규모(계획현액)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뉴서울CC 특별회원 입회금 반환[77] 재원 80억원과 시설개선비 12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부터 입장료수입 중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나머지만 징수결정하여 기금에 수납해왔기 때문임.[78]

[최근 5년간 입장료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실제 입장료수입 (B)	별도재원 조성 (C)	징수결정액 (D=B-C)	수납액 (E)	수납률 (E/A)	수납률 (E/D)
	당초	수정(A)							
2019	6,244	6,244	6,244	5,448	-	5,448	5,448	87.3	100.0
2020	6,244	6,244	6,244	5,227	-	5,227	5,227	83.7	100.0
2021	6,244	6,244	6,244	6,354	**3,761**	2,593	2,593	**41.5**	100.0
2022	6,244	6,244	6,244	5,085	**2,479**	2,606	2,606	**41.7**	100.0
2023	6,244	6,244	6,244	4,828	**1,692**	3,136	3,136	**50.2**	100.0
2024	6,431	6,431	6,431	-	-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기금 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한 금액은 총 79억 3,200만원에 달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예위는 이러한 방법으로 2023년 6월 뉴서울CC 특별회원 입회금 반환을 위한 재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나,[79] 2024년 4월말 현재 특별회원과 지위보전소송 중으로 해당 금액은 법원에 공탁 중에 있음.[80]

77) 문예위는 뉴서울CC의 클럽하우스 노후(1987년 준공)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재원(80억원) 마련을 위해 2013년 특별회원권 8구좌를 분양하였음(입회기간 5년, 예약 및 요금 혜택 부여).

78) 문예위는 뉴서울CC를 위탁운영 중인 한국문화진흥(주) 이사회(2020.12.18.)에서 제시된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21~2023년 3개년 간 기금조성 목표를 축소하고 확보된 수입금을 한국문화진흥(주)의 자본 적립에 충당'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용하였음.

79) 특별회원권 입회금 반환 계획 수립 및 한국문화진흥(주) 이사회 의결('23.7월)

80) <뉴서울CC 특별회원권 관련 분쟁 경과>
- 특별회원권 회수 및 소각에 필요한 재원 80억원 조성 완료('23.6.)

「국가재정법」[81]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모든 기금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이는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기본원칙 중 하나임.

따라서 시설개선비 등 지출소요가 있다면,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기금 지출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입장료수입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것임.

또한 수입 계획과 실제 수납액의 괴리는 실제 수입 대비 과도한 기금 지출을 편성하게 하고, 이렇게 적립된 80억원 역시 공탁되어 실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함.

더욱이 애당초 특별회원 모집의 목적이었던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비 마련을 기금 지출에 계상하여 추진하였다면, 특별회원과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그런데 뉴서울CC의 지출 재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마련하는 데에는 뉴서울CC 운영방식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

골프장 입장료 수입을 기금으로 수납하고, 해당기금의 관리주체인 공공기관이 골프장을 관리하되 실질적 운영은 공단의 자회사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뉴서울CC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에콜리안 골프장의 경우, 모든 입장료수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기타잡수입)에, 모든 지출을 기금 지출(생활체육인프라운영 세부사업)에 계상하고 있음.

그런데 뉴서울CC는 골프장은 총 운영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만을 기금 수입으로 계상하고, 어떠한 지출도 기금 지출에는 편성하지 않음[82]에 따라, 골프장 인

- 특별회원권 입회금 반환 계획 수립 및 한국문화진흥(주) 이사회 의결('23.7.)
- 특별회원 약정기간(5년) 종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및 반환 계좌 요청 내용증명 통보('23.8.)
- 특별회원 입회금 반환 계좌 미통보에 따른 공탁 절차 진행('23.9.)
- 특별회원권 이용 권한 종료('23.9.)
- 특별회원 측에서 "특별회원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여 접수('23.9.)
- 특별회원 측에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3.12.)
- 한국문화진흥(주)가 법원에 특별회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신청서 제출('24.1.)
- 한국문화진흥(주)가 법원에 특별회원 지위보전 본안소송 신청('24.2.) 및 1차변론('24.3.)

81)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82) 뉴서울CC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 받지 않고 골프장 수입에서 비용을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문예위와 문예위의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주) 간 위탁약정을 체결함.

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모든 비용은 운영사인 한국문화진흥(주)의 회계에만 표시되고 있음.[83]

[뉴서울CC와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방식 비교]

구분	뉴서울CC 골프장	에콜리안 골프장
소유	한국방송공사가 출자하여 조성 →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1987년 문예위에 기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기금 관리주체)
운영	문예위의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주)이 위탁운영	공단 직접 운영 단, 코스관리, 경기진행, 시설·미화 업무는 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위탁
수입	골프장의 순수익(수익-비용)만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 - 수입과목: 입장료수입	모든 수입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 - 수입과목: 기타잡수입
지출	어떠한 지출도 기금 지출에 편성하지 않음	모든 지출을 기금 지출에 편성 - 세부사업: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비고	뉴서울CC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 받지 않고 골프장 수입에서 비용을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문예위와 문예위의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주) 간 위탁약정을 체결 - 골프장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모든 비용은 자회사의 회계에만 계상	공단이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 지원 받아서, 골프장 시설·미화 등 일부 업무를 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과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위탁용역비로 지급 - 위탁용역비에 골프장 인건비 포함, 이외 직접 수행
수입/지출 통제	골프장의 순수익 규모만 기금 수입에 계상됨(전체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는 문예위에만 보고*됨) *매월 정산에 따른 수입차액을 위원회 기금계정에 납입하고 수지정산서를 문예위에 보고	골프장의 모든 수입/비용이 기금 수입/지출에 계상됨(기재부 및 국회의 예산심의 받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가공

문예위 소유의 다른 시설(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집)은 모든 수입과 지출(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기금에 계상하고 있는 점[84]을 고

83) 한국문화진흥(주)은 매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예산 편성 및 결산을 승인함(특별회원 입회금 반환금 및 시설개선비 항목은 자본예산에 계상).

84) 수입: 건물대여료, 입장료수입
지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창작육성-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려할 때, 뉴서울CC 골프장만 달리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예위는 향후 예산총계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고, 별도 재원을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행태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봄.

예술가의집 :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예술가의집운영

<지 출>

14. 국제예술교류지원 및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사업: 기금 변경을 통한 미편성 사업 실시 부적정 등

가. 개 요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국내·외 민간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공동기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 협력 사업을 통하여 한국 예술인 및 단체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48억 9,900만원 중 48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었음.[85]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사업은 근현대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연구·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기록 가치를 확산하고, 기록이 재생산될 수 있는 예술창작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38억 6,400만원 중 38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었음.[86]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 및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예술창작지원	51,644	51,644	-	51,644	50,923	-	721	58,814
국제예술교류지원	4,899	4,899	-	4,899	4,890	-	9	4,738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22,055	22,055	-	22,055	21,430	-	625	24,169
예술자료수집및 디지털화	3,864	3,864	-	3,864	3,817	-	47	3,362

85)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창작지원(1761-300)(예술정책관)

86)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1765-300)(예술정책관)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3년 기금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와 구술채록 20주년 관련 전시를 기금변경을 통해 집행하고, K-아트 특별전의 경우 2개 세부사업에 걸쳐서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3년 기금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와 구술채록 20주년 관련 전시를 위한 예산 1억 2,400만원과 2억 2,500만원을 각각 기금변경을 통해 확보·집행하였음.[87]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특별전은 내내역사업이 속한 예술창작지원 세부사업 외에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세부사업에서도 일부 집행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걸쳐 집행하였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 등을 위한 기금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현액		기금변경 재원		비고
	세부사업(세목)	금액	세부사업(세목)	금액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	예술창작지원 (일반용역비)	44	예술창작지원 (시설장비유지비)	△44	2024년 관련예산 편성내역: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내 17억원 반영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일반용역비)	80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일반연구비)	△80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20주년 관련 전시 등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일반수용비)	225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시설장비유지비)	△230	사업 결과물과 현황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 예술학 관계자 초청 세미나 운영 등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국내여비)	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행사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2024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작품기획비·전시공간디자인 기획 등 불가피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전 소요가 2023년 하반기에 발생됨에 따라 기금변경을 통해 특별행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해당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세부사업에서도 일부 집행하였다고 설명함.[88]

8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2024년에 30주년을 맞았고,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은 2023년에 20주년을 맞이하였음.

88)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내내역사업은 '예술창작지원' 세부사업에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왔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 사업은 2024년에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세부사업에 17억원이 편성(단년도)되었음.

또한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20주년 기념행사는 준비 과정에서 구술채록사업 추진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의 장, 역대 수행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한 별도 전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접수됨에 따라 기념세미나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두 사례는 특별전시 및 세미나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긴급추진의 필요가 크지 않고, 각각 30주년과 20주년 기념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관련 내내역사업이 이미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89] 미리 기금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금변경을 통해 추진할 타당성이 크지 않아 보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1항[90]에서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긴급한 소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념행사 사업 1건을 사업목적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계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 소요가 있다면, 기금변경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하나의 사업을 두 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분할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9)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과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은 각각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과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2023년 계획액은 전시지원금 6억원, 운영비 4억 6,300만원으로 총 10억 6,300만원임. 이외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이 같은 내역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음. 2022년에는 국제미술전, 2023년에는 국제건축전을 통해 한국의 미술 등을 선보이고 있음.
-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2023년 계획액은 3억 6,400만원임.(이외에 구술채록 공공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운영, 구술채록 결과물 DB구축비 등이 같은 내역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음.)

90)「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 출>

15.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1차년도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가. 개 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기술(AI, AR/VR, 5G 네트워크 등)과 관광을 융·복합하여 관광객에 신속·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72억원 중 66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8%)되고, 나머지 5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91]

[2023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스마트관광 활성화	33,631	33,631	-	33,631	33,023	-	608	31,797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8,700	8,700	-	8,700	8,092	-	608	11,55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7,200	7,200	-	7,200	6,610	-	590	10,100

동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주요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시범사업, 인천시)부터 지역별 스마트관광 플랫폼 개발을 통한 관심지역정보(Point Of Interest; POI) 수집, 지역 내 교통·숙박·식사·체험 등 예약 및 결제 기능 구현,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첨단기술과 결합한 관광 경험 제공 등을 추진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보조율 50%)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총 3년에 걸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비를 지원받음. 2020년 인천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수원·여수 및 대구, 2022년에는 울산·청

91) 관광진흥개발기금-스마트관광 활성화(4264-319)(관광정책국)

주・남원・경주・양양 및 하동, 2023년에는 용인・인제 및 통영을 신규 선정하였음.

2023년 계획액은 2023년 신규 선정된 3개 지방자치단체의 1차년도 지원금 27억원, 2022년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의 2차년도 지원금 30억원, 2021년 선정된 3개 지방자치단체의 3차년도 지원금 15억원으로 구성됨.[92)]

나. 검토의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2023년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1차년도 사업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지원 대상 선정 시부터 사전 준비 여부 등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 초기 단계에 면밀한 집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1단계)에서 기능개선・홍보 등 고도화(2단계) 순으로 단계별로 추진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3년에 걸쳐 총 4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1단계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차년도에 1단계, 2~3차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로는 1단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3년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부터는 1~2차년도에 1단계, 3차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방식을 변경하였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내용]

사업 단계	사업추진내용	연차별 계획액	
		2020~2022년	2023년~
1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구축 단계)	스마트관광 4대 요소[93)]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여건 등에 적합하게 접목하여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관광 인프라를 개선	1차년도(35억원)	1차년도(9억원) 2차년도(27억원)
2단계 (고도화 단계)	구축단계에서 조성된 각종 서비스 및 콘텐츠 등의 기능 개선, 추가 서비스 개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 등	2차년도(5억원) 3차년도(5억원)	3차년도(9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92) 2021년 선정 지방자치단체(수원・여수・대구): 3년차 지원금 각 5억원
2022년 선정 지방자치단체(울산・청주・남원・경주・양양・하동): 2년차 지원금 각 5억원
2023년 선정 지방자치단체(용인・인제・통영): 1년차 지원금 각 9억원

93) <스마트관광 4대 요소>

동 사업이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3년에는 4년차에 접어든 점, 2023년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1차년도 과업범위와 계획액(9억원)이 이전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곳(1단계 사업 전체, 35억원)보다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실집행률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집행률(재교부율)은 66.9%로 2021년(70.4%) 및 2022년(74.1%)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실집행률은 75.2%로 전년 실집행률(61.4%)와 이전 3년 평균 집행률(43.9%) 대비 상당부분 개선되었음.

[사업실시 이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간접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보조사업자(한국관광공사)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가)	집행액 (나)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나/가)
2020	3,950	3,950	-	-	100.0	-	3,950	795	3,155	-	20.1
2021	11,500	8,100	3,400	-	70.4	3,155	11,255	5,642	5,497	115	50.1
2022	27,000	20,000	7,000	-	74.1	5,497	25,497	15,655	9,817	25	61.4
2023	13,610	9,110	-	4,500	66.9	9,817	18,927	14,226	4,341	359	75.2

주) 실집행액은 각 연도별 12.31.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을 연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차년도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16.3%에 그쳤음.

또한 이 수치는 더 많은 계획액(35억원)이 배정되었던 이전년도의 1차년도 지역보다도 저조한 수준으로, 2020년 9.9%에 불과하였던 1차년도 지역 실집행률은 2021년 29.6%, 2022년 37.7%로 해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23년에 오히려 16.3%로 떨어진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단계별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액을 조정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94] 사업포기 보조사업자 발생[95] 등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 (스마트경험) AR/VR 체험, 미디어 파사드, 홀로그램 등의 기술 적용
- (스마트편의) 스마트관광 오디오, 짐 배송/짐 보관, 다국어 번역, 불편 신고, 스마트 예약결제, 쿠폰/마일리지/지역화폐, 스마트 오더, 스마트 숙박 등
- (스마트접근성) 지역특화 모빌리티, 차량 호출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AR 내비게이션, 통합 교통서비스 등
- (스마트플랫폼) 통합 모바일 플랫폼(앱, 웹), 지도, 관광 정보, 공공 와이파이, 키오스크 등 하드웨어 기반의 인프라 관리

실적이 오히려 최근들어 악화되고 있는 것임.

[사업실시 이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선정 지역별 연차별 실집행 현황(국비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년 선정 (인천)			2021년 선정 (수원, 여수, 대구)			2022년 선정 (울산, 창주, 남원, 경주, 양양, 하동)			2023년 선정 (용인, 인제, 통영)		
	계획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획현액 (C)	집행액 (D)	실집행률 (D/C)	계획현액 (E)	집행액 (F)	실집행률 (F/E)	계획현액 (G)	집행액 (H)	실집행률 (H/G)
1차년도	3,500	345	9.9	7,100	2,103	29.6	15,000	5,658	37.7	**2,700**	**439**	**16.3**
2차년도	3,655	3,051	83.5	8,897	8,417	94.6	**14,342**	**12,070**	**84.2**			
3차년도	1,000	988	98.8	**1,885**	**1,716**	**91.0**						

주1) 실집행액은 각 연도별 12.31.기준임
2) 굵은 선 안의 수치는 2023년 연차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부터 세부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여부·사업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특히 초기 단계 집행 점검에 중점을 두어 1~2차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4) 2023년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 중 인제는 북부산림청, 용인은 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과의 협의가 필요했으나 협의과정에 난항을 겪어 세부사업계획과 사업대상지 일부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음.

95) 하동(2022년 선정 지방자치단체)

16.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및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이차보전 운영지원 집행실적 부진 등

가. 개 요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은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전대하는 ‘융자지원’과 기업은행 등 은행을 통해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운영지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3년 계획현액 4,491억원 중 4,463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27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96]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 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보다 쉽게 관광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관광기금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기관에 관광사업체의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2023년 계획현액 100억원 중 10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고, 나머지 90억원은 불용되었음.[97]

[2023년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관광산업 융자지원 (융자)	449,100	449,100	-	449,100	446,395	-	2,705	541,733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00	10,000	-	10,000	1,000	-	9,000	1,000

96)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관광정책국)

97)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4267-301)(관광정책국)

나. 검토의견

(1) 이차보전 운영지원 집행실적 제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중 융자지원의 예산 일부를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추진하였으나 2023년 집행실적이 융자지원 대비 매우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이차보전 운영지원 예산을 확대하기 전에 우선 집행률을 제고하고,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현장 수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자[98]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융자·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세 가지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23년 지원규모는 융자지원 4,465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억원, 이차보전 운영지원 26억원 순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융자, 이차보전, 신용보증 비교]

구 분	융자지원	이차보전 운영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지원방식	은행을 통해 융자금 전대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 보전	신용보증
적용이율	기준금리 또는 기준금리에서 0.75~1.25%p 차감	은행 규정에 따른 금리 중 3% 또는 2.5%p 보전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융자분야	시설·운영자금	시설·운영자금	운영자금
융자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12년(거치기간 5년 포함)	3년(만기일시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6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	최대 150억원 이내	최대 150억원 이내	최대 2억원 이내
지원규모 (2023년)	4,465억원	26억원	100억원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은행	기업은행 등 12개 은행	농협은행

주)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융자지원은 1973년부터,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재정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를 유지·확대하려는 목적으로[99] 융자지원의 예산 일부를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추진하였음(융자

98)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지원의 2023년 계획액 전년 대비 15.0% 감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출국납부금 축소에 따른 관광기금 수입 감소[100]에 대한 대응책으로, 향후 융자지원을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라고 함.[101]

그런데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사업준비기간 소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23년 실집행률이 2.3%에 그쳤음.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을 통해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중소기업 3%, 중견·대기업 2.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시스템 구축, 취급은행 선정 등 사업 준비기간 소요로 인해 실제 사업 시행은 2023년 7월에야 시작되었고, 23건의 지원만을 실시하여 계획현액 26억원 중 5,900만원만 집행된 것임.

반면, 융자지원은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전년 대비 융자 신청이 증가하여 2023년 계획현액 4,465억원이 조기에 소진되었음(상반기 집행률 66.4%,[102] 신규 신청접수 및 시설자금 집행 10월부터 중단).[103]

[최근 5년간 융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492,000	-	45,000	537,000	432,523	-	104,477	80.5
2020	545,000	-	95,000	640,000	640,000	-	-	100.0
2021	594,000	-	-	594,000	441,706	-	152,294	74.4
2022	649,000	-	△123,600	525,400	472,616	-	52,784	90.0
2023	446,500	-	-	446,500	446,336	-	164	9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99)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는 4대 재정혁신(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 방안 중 하나로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는 절감하되 수혜규모는 확대할 것을 들고 있음.

100) 관광기금의 주요재원인 출국납부금이 2024.3월 발표된 기재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른 정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광기금 수입이 약 681억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출국납부금 정비 방안: 부과금액 변경(1만원→7천원), 면제대상 확대(2세 미만→12세 미만)

101) 이차보전 운영지원의 2024년 계획액은 50억원으로 2023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하였음.

102) <연도별 상반기 융자 집행률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집행률	40.5%	78.0%	48.9%	41.8%	66.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03) 운영자금만 12월까지 집행되었음.

[2023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2,600	-	-	2,600	59	-	2,541	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시중은행의 대출심사를 이미 거친 융자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지원대상의 신용부실로 인한 결손 위험이 적고, 재정규모 대비 수혜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음.

그러나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발생 이자가 수입으로 편입되어 기금 사업에 다시 쓰일 수 있는 직접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기금 재원 확보에 불리하고,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초기 단계 기업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간과할 수 없음.

따라서 이차보전 운영지원 예산을 확대하기 전에 집행률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단순히 재정절감 규모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현장 수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원방식별 적정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대규모 불용 재발 방지 필요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중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2023년 11월에야 출연금 축소 운용을 결정하여 예산의 90.0%가 불용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전에 자금수요와 신용보증기관 출연보증잔액 규모를 검토하여 출연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예산 불용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보다 쉽게 관광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관광기금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임.

2019년 신규 편성 당시 30억원이었던 동 사업의 규모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2023년 100억원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 중 1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억원은 불용하여 집행률(10.0%)이 부진함.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9	3,000	-	-	3,000	3,000	-	-	100.0
2020	5,000	-	3,000	8,000	8,000	-	-	100.0
2021	5,000	-	-	5,000	5,000	-	-	100.0
2022	10,000	-	-	10,000	10,000	-	-	100.0
2023	10,000	-	-	10,000	1,000	-	9,000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사태 진정세와 함께 업체의 자금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기 출연보증잔액 수준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출연 규모를 축소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함('23.11월 변경협약 체결, 당시 '23년 기 출연보증잔액 774.7억원).[104]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관 출연 보증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실제 출연금 (A)	운용 배수[105] (B)	당해연도 보증가능액 (C=A×B)	보증가능액 (누계) (D)	당해연도 보증실시 금액 (E)	당해연도 불납결손액 (F)	대위변제율 (G)	연도말 보증잔액 (누계) (G=D-E-F)
2019	3,000	10.0	30,000	30,000	4,882	-	-	25,118
2020	8,000	10.0	80,000	105,118	102,940	-	0.1	2,178
2021	5,000	10.0	50,000	52,178	25,797	-	0.7	26,381
2022	10,000	10.0	100,000	126,381	33,893	-	1.1	92,488
2023	1,000	10.0	10,000	102,488	17,676	-	2.9	84,812

주1) 보증가능액(누계)은 당해연도 보증가능액(C)과 전년도말 보증잔액 누계액(G)의 합계임
2) 대외변제율은 순대위변제 누계액을 보증공급 누계액으로 나눈 금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0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출연금 규모는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축소되었으나, 기 출연보증잔액으로 신용보증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지원 추진중이라고 함.

105)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의 협약에 따라 보증가능액은 출연금의 10배 규모로 운용하기로 함(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법정보증배수*는 15배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코로나 진정세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 추이와 기 출연금의 보증잔액 규모가 충분하다는 것은 2023년 예산편성 당시('22년말)에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106] 100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한 후 2023년 11월에야 출연 규모의 90% 축소운영을 결정한 것은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전에 신용보증기관 출연보증잔액 규모를 검토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06)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결산 내역을 통해 출연금의 보증잔액 규모가 2021년 이후 누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예산 편성 당시(2022년 말) 출연보증잔액은 925억원 수준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 출>

17. 전통무예 진흥 사업: 사업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월 부적정

가. 개 요

‘전통무예 진흥’ 사업은 생활체육으로서의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해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국제무예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15억원 중 12억원을 집행(집행률 80.0%)하고, 3억원은 불용하였음.[107]

[2023년도 전통무예 진흥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스포츠 종목 보급	15,470	15,470	-	15,470	13,778	-	1,692	12,204
전통스포츠보급·무예 진흥	1,650	1,650	-	1,650	1,350	-	300	1,650
전통무예 진흥	1,500	1,500	-	1,500	1,200	-	300	1,500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108] 사업으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등을 보조사업자로 함.

107)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 종목 보급(5161-311)(체육협력관)

108)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50%)와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의 취소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만 실제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전통무예 진흥’ 사업은 2023년 사업취소로 불용되어야 할 예산이 2024년 10월 개최예정인 포럼 추진을 위하여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3년 계획액의 세부편성내역은 전통무예 진흥 7억원과 국제무예활성화 8억원임. 이 중 국제무예활성화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보조율 50%) 등을 직접보조사업자로 함.

그런데 충청북도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됨[109]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이후 동 사업 계획액 8억원 중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은 미교부하고,[110] 자치단체경상보조금(충청북도) 5억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23.6월)하였음.

[2023년 전통무예 진흥 사업 세부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세부내역
전통무예 진흥	700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연구용역, 가족무예캠프, 국제연무대회 등
국제무예활성화	800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 사업 취소** - 민간경상보조 300(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 미교부** - 자치단체경상보조 500(충청북도, 보조율 50%)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 → 1억 2,000만원: 연내 집행** **→ 3억 8,000만원: 연말 교부**
합계	1,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된 5억원 중 1억 2,000만원은 2023 우즈벡 국제 민속스포츠 축제(’23.9월) 부대행사 추진을 위해 교부 및 집행[111]되었으나, 나머지 3억 8,000만원은 대체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음.

이 경우 해당 예산은 불용되어야 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예산을 활용하여 2024년 10월 개최예정인 글로벌 무예 포럼[112]을 추진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109) 충청북도 직제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22.8월)

110)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자부담 여력 등 검토 후 미교부 결정

111) 축제 기간: ’23.9.8.~9.10. 개최
축제 주최 및 주관: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주최, 세계무술연맹 주관
보조사업자: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에 3억 8,000만원을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로 교부[113]하였고,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이를 전액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2023년 전통무예 진흥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문체부				보조사업자(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등)					
계획액 (A)	교부액 (B)	불용액	교부율 (B/A)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가)	집행액 (나)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나/가)
1,500	1,200	300	80.0	-	1,200	718	482	-	5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취소되어 편성내역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대체사업 발굴이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불용하여야 할 것임.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2024년 10월 개최예정인 포럼을 2023년 집행잔액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2)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글로벌 무예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통무예를 보유한 세계 각국을 초청하여,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전통무예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113) 보조사업자: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18.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사업: 엄격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257억 3,000만원 중 116억 4,000원이 집행(집행률 45.2%)되고, 나머지 140억 9,000만원은 불용되었음.[114]

[2023년도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25,730	25,730	-	25,730	11,640	-	14,090	25,185

동 사업의 2023년 계획액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자치단체보조사업(보조율 30%) 14개와 대한체육회[115]가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1개(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지원),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경과에 따른 교부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매우 낮고,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자별 집행실적에 따라 보다 엄격한 집행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지역별 종목별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각 건립사업은 짧으면 2년에서 최대 8년(2023년 추진사업 기준) 동안 추진되는 다년도 연차사업임.

건립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단계까지 순연되어 연례적 이월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교부율을 결정하고 있음.

---

114) 국민체육진흥기금-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5163-306)(체육국)

115) 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간접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을 재교부함.

2023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투자심사 지연(경기도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운영계획 미수립(전주컬링경기장 건립 지원 등)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액 전액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23년 계획현액 257억 3,000만원 중 45.2%인 116억 4,000원만 교부되었음.

그러나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교부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차원의 실집행률은 19.2%로 저조하였고, 특히 민간보조사업보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집행 부진(실집행률 9.7%)이 더 컸음.[116]

[2023년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기간)	문체부		보조사업자(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대한축구협회)						
		계획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집행률 70%미만)
경기도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18~'25년)	500	-	-	-	-	-	-	-	중앙투자심사 지연으로 미교부
대구	구수산 체육센터 조성지원('21~'26년)	300	300	330	630	355	275	-	56.3	행정절차지연(건설기술심의, BF예비인증)
대구	대구 제2빙상장 건립지원('22~'25년)	950	950	225	1,175	225	950	-	19.2	행정절차지연(VE 및 건설기술심의)
전북	전주육상경기장 건립지원('19~'25년)	2,700	2,700	-	2,700	-	2,700	-	-	공사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지급 시기 미도래
경북	칠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23~'27년)	2,700	-	-	-	-	-	-	-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지연, 중앙투자심사 지연으로 미교부
서울	노원 어린이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지원('19~'25년)	2,700	200	-	200	-	200	-	-	수시배정 협의 지연('23.12월 교부)
충남	서천 론볼경기장 시설개선 지원 ('23~'24년)	300	300	-	300	-	300	-	-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비 확보 중
경기	시흥 배드민턴장 건립지원('19~'26년)	400	-	-	-	-	-	-	-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보 중으로 미교부
부산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조성지원 ('21~'25년)	200	-	-	-	-	-	-	-	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사전절차 지연으로 미교부
광주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지원('21~'24년)	4,000	-	-	-	-	-	-	-	사업취소

116) 2023년 기금이 편성된 사업 기준임(2023년에 이월예산만 있는 사업 제외). 2023년 기금이 편성된 15개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지원)을 제외한 14개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실집행액은 총 6억 4,100만원으로, 15개 사업 계획현액의 4.5%에 불과함.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기간)	문체부		보조사업자(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대한축구협회)						
		계획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집행률 70%미만)
전북	전주컬링경기장 건립 지원('20~'25년)	1,000	-	-	-	-	-	-	-	운영계획 수립중으로 미교부
서울	서울 강북 구민운동장 시설개선 지원 ('23~'24년)	1,230	540	-	540	-	540	-	-	수시배정 협의 지연('23.12월 교부)
서울	송파 책박물관 부지 문화체육시설 건립지원('23~'25년)	2,100	-	-	-	-	-	-	-	지방비 미확보로 미교부
경기	파주 인공암벽장 건립지원('23~'24년)	1,050	1,050	-	1,050	61	989	-	5.8	수시배정 협의 지연('23.12월 교부)
지자체 소계		**20,130**	**6,040**	**555**	**6,595**	**641**	**5,954**	**-**	**9.7**	**-**
대한축구협회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지원 ('19~'25년)	5,600	5,600	2,100	7,700	2,100	5,600	-	27.3	-
합계		**25,730**	**11,640**	**2,655**	**14,295**	**2,741**	**11,554**	**-**	**19.2**	**-**

주1) 2023년 기금이 편성된 사업 기준임(2023년에 이월예산만 있는 사업의 계획현액 합계 254억 1,600만원 제외)

2)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대한체육회이고, 간접보조사업자는 대한축구협회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교부 및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낮은 교부율(평균 64.1%)에도 불구하고 실집행 실적이 저조(평균 19.0%)하고, 이에 따라 당해연도 계획액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문체부				(간접)보조사업자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19	16,773	17,044	14,431	84.7	13,600	13,564	27,164	8,731	18,433	-	32.1
2020	28,580	26,727	16,573	62.0	14,480	18,433	32,913	8,801	24,109	3	26.7
2021	15,040	15,040	10,260	68.2	10,260	24,109	34,369	9,532	24,837	-	27.7
2022	6,055	6,055	3,655	60.4	3,655	24,837	28,492	421	28,071	-	1.5
2023	25,730	25,730	11,640	45.2	11,640	28,071	39,711	2,741	36,970	-	6.9

주) 2019~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집행액은 직접수행사업(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지원) 집행액과 보조사업 교부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2021년 이후부터는 계획액 전액 보조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실집행률은 각각 1.5%와 6.9%에 불과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의 평균 실집행률 28.8%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월액은 당해연도 계획액의 303.6%(2년 평균)에 육박함.

이 경우 누적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집행률은 더욱 떨어지며, 계획기간 내 사업완수율 또한 저하되어 이월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자별 집행실적에 따른 교부액 삭감률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한 집행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19.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 사업기간 내 사업완수 노력 필요

가. 개 요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은 대한민국 체육 역사 및 유물의 체계적 수집·조사 연구와 전시 등을 위해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102억 2,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17]

[2023년도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11,481	11,481	-	11,481	11,481	-	-	9,424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10,228	10,228	-	10,228	10,228	-	-	8,290

국립체육박물관은 현재 조성 중인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부지(서울 송파구) 내[118]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228㎡ 규모로 설립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16~2025년이고, 총사업비는 263억 5,500만원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자본보조(전액 국비) 사업임.

나. 검토의견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 대비 6년 연장되었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기간 내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2019년까지였던 당초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6년 연장되었고,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 및 이에 따른 이월이 사업시작 이후 거의 매해 발생하고 있음.[119]

117) 국민체육진흥기금-국립체육박물관 건립(5261-315)(체육국)

118)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과 단일 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계 추진 중(하나의 주출입구에 통합로비를 설치하여 두 건물의 공간·기능을 상호 연계한 통합문화시설로 건축)

119) 차년도 이월이 발생하지 않은 회계연도는 2021년이 유일함(재재이월 불가에 따라 불용).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집행률은 10.0%에 불과하고,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1% 미만의 실집행률을 보였음(실집행액 1억 미만).

2023년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계획현액 147억 1,900만원 중 18억 7,3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2.7%에 그침.

[사업시작 이후 국립체육박물관 사업 연도별 기금편성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국민체육진흥공단)					
	계획액	교부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6	2,000 (설계비)	576	-	576	7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32 (이월)	74	12.2
2017	386 (설계비)	-	432	432	242 (설계비 선금 등)	190 (재이월)	-	56.0
2018	3,788 (건축공사비 등)	3,788	190	3,978	201 (설계비 잔금 등)	3,767 (이월)	10	5.1
2019	4,785 (전시공사비 및 건축공사비 등)	4,785	3,767	8,552	24 (수수료 등)	3,743 (재이월) 4,785 (이월)	-	0.3
2020	2,124 (건축공사비 등) *추경감액120)	-	8,528	8,528	81 (수수료 등)	4,785 (재이월)	3,662	0.9
2021	2,567 (전시공사비 및 건축공사비 등)	-	4,785	4,785	3 (수수료 등)	-	4,782	0.1
2022	4,496 (건축공사비 등)	4,496	-	4,496	5 (수수료 등)	4,491 (이월)	-	0.1
2023	10,228 (설계비, 전시공사비, 건축공사비 등)	10,228	4,491	14,719	1,873 (재설계용역비, 전시공사 선금 등)	3,172 (재이월) 9,674 (이월)	-	12.7
2024	8,290 (설계비, 건축공사비 등)	-	12,846	12,846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실집행 부진 및 이월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6~2017년 설계비 예산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6.4.11.~'16.8.3.)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17.3.~'18.4.)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120)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연내 집행 불가로 추경 감액

2018~2019년 공사비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및 건축허가('17.12월 완료) 장기 소요, 연계 추진 중인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 설계 입찰 관련 분쟁[121] 등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0년~2023년 공사비 예산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20.4월~'21.11월)로 인해 공사('20.1월 계약)가 일시정지('20.6월~'23.8월)되었고,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에 따른 전면 재설계 및 기존 공사계약 해지, 신규 공사계약 체결('23.10.)[122] 등으로 인해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음.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사업추진 경과	향후 추진계획
- 2016.08월 기본계획·타당성조사 - 2017.03월~2018. 04월 기본 및 실시설계 - 2017.12월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및 건축허가 *송파구청 - 2020.01월 국립체육박물관 건축공사 계약체결 - 2020.04월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경상문화재연구원 - 2020.06월 중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공사정지 *국가유산청 전문가검토회의 결정 - 2021.11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중요 매장문화재 현지보존에 따른 공사위치 변경 필요 - 2021.11월 건립부지 재검토 및 설계변경 추진 - 2022.06월 매장문화재 문화재심의위원회 의결·확정 *중요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확정 - 2022.08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완료 *송파구청 - 2022.12월 계약상대자 계약해지 요청 - 2023.09월 공사정지 장기화로 인한 건축공사 계약해지 - 2023.10월 신규 공사계약 체결 및 건축공사 재개 - 2024.03월 기초공사 완료	- 2024.09월 골조공사 완료 - 2024.12월 창호 등 외장공사 완료 - 2025.02월 건축공사 준공 - 2025.12월 전시공사 준공 - 2026년 하반기 개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21) 연계하여 추진 중인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 설계 입찰과정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 예정가격 초과 투찰 적법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여 입찰중지('18.11.19), 취소('19.5.10) 및 소송('19.5월~7월)이 제기되었음.

122)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공사정지 장기화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 물가의 비약적 상승, 계약상대자의 기대수익 감소 예상 등으로 인해 당초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추진 불가 의견이 통보되었고, 그에 따른 법률자문,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신규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에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설명임.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당초 공사: '20.1월~'21.12월(23개월), '23.8. 계약 해지, 계약금액 82억 4,974만원
신규 공사: '23.10월~'25.2월(16개월), 계약금액 123억 700만원

동 사업은 매장문화재 발견 및 그에 따른 공사 정지,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결정에 따른 재설계 등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0월부터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2024년 5월말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말 전시공사를 마무리한 후 2026년 하반기에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비 예산이 거듭 이월 및 불용된 것은 공사 입찰 분쟁 발생, 매장문화재 조사 등에 따라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실제 집행가능한 범위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사업이 이미 당초 사업기간보다 6년이나 연장되었고 사업기간 내내 저조한 실집행률과 연례적 이월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기간 내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융자 대비 이차보전 사업 불용 과다

가. 개 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800억원 중 769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2%)되고, 30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123)]

[2023년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80,000	80,000	-	80,000	76,918	-	3,082	163,730
융자금	76,100	76,100	-	76,100	76,100	-	-	157,880
이차보전	3,900	3,900	-	3,900	818	-	3,082	5,850

내역사업인 **‘융자금’**은 융자금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761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내역사업인 **‘이차보전’**은 시중 대출금리 중 2.5%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획현액 39억원 중 8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21.0%)되고, 나머지 30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중 2023년 신규추진된 ‘이차보전’ 사업은 융자금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와 중장기적 기금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이차보전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확대에 앞서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3)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5365-300)(체육국)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국내 체육 관련 업체[124]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비 조달을 지원하여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융자와 이차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융자지원은 19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계획액이 전액 집행되었음.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가, 재정효율화 기조에 기반한 이차보전 사업 신규 도입과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2023년 계획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66.8%)되었음.

이에 따라, 2023년의 계획현액 761억원은 2023년 6월에 조기 소진되었음.

[최근 5개년 융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융자 건수
2019	56,000	55,999	100.0	129건
2020	126,100	126,100	100.0	822건
2021	136,100	136,100	100.0	549건
2022	228,900	228,900	100.0	488건
2023	76,100	76,100	100.0	143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반면 이차보전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현액 39억원 중 집행액 8억 1,800만원(집행률 21.0%)을 제외한 30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이차보전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대출실행금액(건수)
2023	3,900	818	21.0	115,000(290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차보전의 실집행 부진은 사업시행 첫 해로서 준비기간으로 인해 시작이 지연(’23.6월)[125]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체의 대출 목적이

124) 지원대상: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

125) 이차보전 시스템 구축・운영, 취급은행 선정 등에 따라 사업 공고는 ’23.5월부터, 실제 이차보전 실시는 ’23.6월부터 시작되었음.

주로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 등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대규모·장기 지원이 가능한 융자지원 대비 거치기간이 짧고 한도가 적은 이차보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임.

그럼에도 2024년 이차보전 사업 예산은 58억 5,000만원으로 2023년 예산의 150% 규모로 증액되었음.[126)]

[2023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설비자금	운전자금	연구개발	합계
융자	대출금액	66,899	7,901	1,300	-	-	76,100
	건수	113	28	2	-	-	143
이차보전	대출금액 (이자지원액)	60,283 (376)	8,637 (69)	89 (1)	45,993 (372)	-	115,002 (818)
	건수	91	20	1	178	-	29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융자와 이차보전 방식 비교(2024년 기준)]

구 분	융자금	이차보전
융자분야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기성고)	운전, 연구개발
융자기간	5~10년(거치기간 포함)	3년(일시 상환)
대출한도	30~20억원	10~5억원
지원규모	('23) 761억원 ('24) 1,579억원	('23) 39억원(1,560억원 대출실행 가능) ('24) 58.5억원('23년 미실행규모 410억원 반영 시 1,190억원 신규대출가능)
지원방식	대출 원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
적용이율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금리(분기별 변동) *'24년 1/4분기 3.84%	시중금리 일부 지원(2.5%p) *기업별 은행금리 차이 발생
취급은행	13개 은행	13개 은행
추진체계	기금융자심의회 개최 지원기업 선정, 협약은행에 대상자 통보·실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26) 다만, 2024년 이차보전 사업 예산 58억 5,000만원 중 28억 7,500만원은 2023년 지원분에 대한 계속지원 예산으로, 신규지원을 위한 예산은 29억 7,500만원임.

이차보전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금융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어 중장기적인 기금재정의 확보 측면에서는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가능한 융자 대비 불리함.

또한 사업의 지원효과 및 사업 만족도는 수혜대상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이 설계되었을 때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 중장기적 기금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이차보전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확대에 앞서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27]

127) 이차보전 사업의 2024년 계획액은 58억 5,000만원으로 2023년 계획액보다 1.5배 증가하였음.

21.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 환경친화 대중골프장 운영비 연례적 기금 변경 지양 필요

가. 개 요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 사업은 쓰레기매립지 등 지방 유휴지를 서민들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 대중골프장(에콜리안 골프장)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80억 1,200만원 중 79억 2,900만원(집행률 99.2%)이 집행되고,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128)]

[2023년도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	7,690	7,995	17	8,012	7,929	-	83	7,264

2023년 계획액은 5개 골프장[129)]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 사업은 최근 3년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 또는 내역변경 등을 통한 연례적인 기금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필수경비가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과부족에 따른 연례적 기금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 내역변경 등을 통한 연례적인 기금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기금 변경에 따른 증액 규모는 2021년 3억 9,000만원, 2022년 4억 1,000만원, 2023년 3억 500만원으로, 연평균 3억 6,800만원 수준임(순증 기준).[130)]

128) 국민체육진흥기금-생활체육인프라 운영(7281-205)(체육협력관)

129) 광산골프장(’11.6. 개장), 정선골프장(’11.9. 개장), 제천골프장(’12.9. 개장), 영광골프장(’14.10. 개장), 거창골프장(’16.6. 개장)

[환경친화 인프라 운영 사업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기금변경 (B-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C)	실집행액 (D)	집행률 (D/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A)	수정(B)							
2021	7,384	7,774	390	-	7,774	7,627	98.1	-	117
2022	7,400	7,810	410	-	7,810	7,684	98.4	17	109
2023	7,690	7,995	305	17	8,012	7,929	99.0	-	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의 경우 1년간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기금 변경이 13회로 빈번히 발생하였음.[131]

[타 세부사업 감액 변경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 증액 변경 내역 상세]

(단위: 천원)

증액 내역			감액 재원	
세목	금액	변경 사유	세부사업	금액
관리용역비(210-15)	100,602	위탁관리비 부족	기타경비 (7281-200)	32,779
일반수용비(210-01)	80,433	고객용카트 시트커버 교체 등		
시설장비유지비 (210-09)	77,000	나무데크 부분파손 교체공사 등	투자사업운영 (7281-203)	98,106
상용임금(110-03)	25,975	급여 부족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운영 (7281-204)	176,775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500	보험료 부족		
국내여비(220-01)	1,150	국내여비 부족		
합계	307,660		합계	307,6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의 기금 변경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관리용역비의 삭감,[132]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경상경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관리용역 수탁사[133] 충당분과 사업수행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인회계 충당분을 더하면 사실상 부족액은 더 크다는 설명임.[134]

130) 동 세부사업에서 다른 세부사업으로의 변경에 따른 감액도 있으며, 본문에서는 기금 변경에 따른 순증 규모를 기재함.

131) 사유별 변경 횟수를 센 것이며, 세목조정 등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세부사업 내의 변경은 제외함.

132) '22년도 45억 800만원 → '23년도 43억 3,200만원

13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잦은 기금 변경은 예산이 실제 소요와 부합하지 않게 편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사업 집행의 예측성을 떨어뜨려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부족에 따른 동 사업과 변경의 재원이 된 사업[135] 간 연례적 기금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는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세부사업의 예산을 면밀히 편성할 필요가 있음.

---

134)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요금 충당을 위한 법인회계 부담분 약 7,500만원, 관리용역 수탁사 부담분 약 4억 9,300만원임.

135) 2023년 기준 재원이 된 세부사업은 기타경비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 세부사업임.
- 기타경비(7281-200): 기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여비 등 기금운영비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7281-204): 스포츠과학에 기초한 국민체육진흥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비

국가유산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3억 3,800만원(△7.4%)이 적은 542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100만원(△3.4%)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4,975	54,975	46,336	△8,639	51,272	51,272	46,928	△4,344	592
기 금	11,340	11,340	9,849	△1,491	7,340	7,340	7,346	6	△2,503
총수입	66,315	66,315	56,185	△10,130	58,612	58,612	54,274	△4,338	△1,911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89억 8,000만원(△4.4%)이 적은 1조 2,918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7억 3,600만원(8.8%)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53,679	1,036,160	1,040,989	4,829	1,189,925	1,189,925	1,132,488	△57,437	91,499
기 금	147,726	147,726	146,089	△1,637	160,869	160,869	159,326	△1,543	13,237
총지출	1,201,405	1,183,886	1,187,078	3,192	1,350,794	1,350,794	1,291,814	△58,980	104,736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12억 7,200만원으로 678억 7,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69억 2,800만원이 수납(수납률 69.1%)되고 1억 3,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208억 1,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1,272	51,272	-	51,272	67,515	46,567	131	20,8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	-	364	361	-	2
- 지역자율계정	-	-	-	-	364	361	-	2
합 계	51,272	51,272	-	51,272	67,879	46,928	131	20,81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81억 6,000만원으로, 이 중 1조 1,324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3%)되고 323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3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187,825	1,187,825	17,611	±46,742 -19,375	-	1,186,060	1,131,398	32,338	22,3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00	2,100	-	±190	-	2,100	1,090	-	1,010
- 지역지원계정	1,200	1,200	-	±90	-	1,200	990	-	210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900	900	-	±100	-	900	100	-	800
합 계	1,189,925	1,189,925	17,611	±46,932 -19,375	-	1,188,160	1,132,488	32,338	23,33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689억 5,500만원으로 1,855억 3,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832억 9,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8%)되고 22억 4,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국가유산보호기금	168,955	168,955	185,530	183,290	-	2,240
합 계	168,955	168,955	185,530	183,290	-	2,24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689억 5,500만원으로, 이 중 1,832억 9,0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8.5%)되고 15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유산보호기금	168,955	168,955	-	168,955	183,290	-	1,543
합 계	168,955	168,955	-	168,955	183,290	-	1,543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유산청 자산은 전년 대비 481억 9,500만원이 증가한 1조 894억 1,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145억 1,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235억 5,9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억 6,300만원 증가한 946억 2,8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는 증감이 없으나 선수수익 6억 8,500만원 증가 등 유동부채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75억 6,000만원이 증가한 9,947억 9,1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2,437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19억 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1,619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4억 4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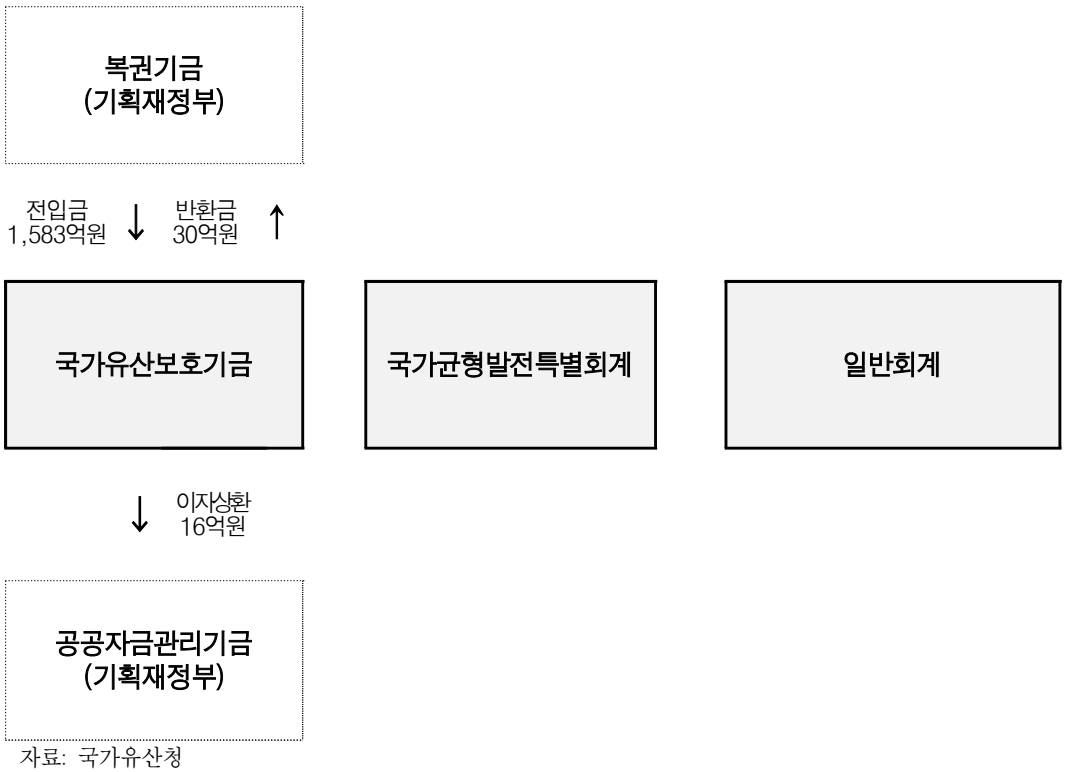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089,419	1,041,096	48,195	4.6
		유동자산	72,216	57,701	14,515	25.2
		투자자산	3,686	1,920	1,766	92.0
		일반유형자산	980,902	957,343	23,559	2.5
		무형자산	29,952	23,426	6,526	27.9
		기타비유동자산	2,663	706	1,957	277.2
	부 채		94,628	93,865	763	0.8
		유동부채	2,990	2,265	725	32.0
		장기차입부채	91,600	91,600	-	-
		장기충당부채	38	-	38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994,791	947,231	47,560	5.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243,754	1,011,598	231,976	22.9
	재정운영순원가		1,317,577	1,082,823	234,754	21.7
	재정운영결과		1,161,928	925,524	236,404	25.5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정구조는 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와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금 간 재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산보호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583억 3,900만원을 전입 받고, 30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5억 8,1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정흐름도(총계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06개 세부사업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2023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경복궁종합정비’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다른 내역사업에 집행하였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되지 않은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전용(증)을 통해 합당한 근거 없이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집행잔액을 편성명목에 맞게 집행하고, 전용을 통한 미편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며, 적정한 계약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둘째,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사업은 2023년 개선관 철거공사 계약 지연 및 공사 중지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고, 올림픽의 집 철거설계비 집행잔액을 편성내역과 달리 차년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철거설계를 미리 추진하기 위해 집행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단계별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편성명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저조에도 예산전액이 교부되어 매년 대규모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전년도 이월액 규모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분할교부할 필요가 있음.

넷째,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사업은 편성단가가 실제보다 높이 책정된 점과 전기요금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절차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편성단가 감액 조정 및 사업추진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사업: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불용규모 과다

가. 개 요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사업은 무형유산의 거점별 가치 확산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분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8억 6,500만원 중 3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3.9%)되고, 나머지 24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형문화재보호	25,527	25,527	465	+39 △44	25,987	22,641	-	3,346	11,319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2,400	2,400	465	-	2,865	398	-	2,467	8,430

국립무형유산원 분원은 연면적 약 11,0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경남 밀양에 설립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이고, 총사업비는 457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됨.

2) 일반회계-무형문화재보호(1132-301)(국립무형유산원)
※2024년부터 일반회계-무형유산원운영(1132-303)으로 이관됨.

나. 검토의견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사업은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2023년 예산현액 대비 86.1%가 불용되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대규모 불용에 따른 국가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당초 2021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초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사업 당초 계획 및 실제 추진경과]

당초 계획	실제 추진경과	
ㅇ 2021년 기본계획 수립 ㅇ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ㅇ 2023년 착공 ㅇ 2024년 준공 ㅇ 2025년 개원	추진 완료	ㅇ분원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21.7.~2022.3.) ㅇ밀양시와 건립부지 사용 업무협약 체결(2021.11.) ㅇ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2022.3~4.) ㅇ지반조사 및 측량조사(2022.5~6.) ㅇ설계 공모(1차 2022.6.15.~8.4., 2차 2022.8.8.~9.22.) 및 당선작 선정(2022.9.) ㅇ기본설계(2022.10.~2023.2.) ㅇ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2023.3.) ㅇ실시설계(2023.3.~) ※2024.1.~ 중단 ㅇ조달청 적정성 검토(2023.5.~2023.11.) *총사업비 457억→507억 ㅇ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2024.1.) ㅇ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정(2024.3.)
	향후 계획	ㅇKDI 타당성 재조사(2024.4.~12.) ㅇ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완료(2025.4.) ㅇ청-기재부-밀양시간 토지 교환(2025.~2026.) ㅇ공사업체 선정(2025.5.~8.) ㅇ건립공사 시행(2025.9.~2027.12.) ㅇ무대기계 등 부대공사 시행(2028.1.~2028.5.) 및 개원(2028.6.)

자료: 국가유산청

그러나 수시배정 사업 지정·설계공모 유찰[3]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수립(’22.3월)과 설계계약 체결(’22.10월)[4]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1년 기본계획 수립비 중 8,600만원과 2022년 실시설계비 중 4억 6,500만원이 연이어 이월되었음.

2023년에는 공사비 등 예산 24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이월액(설계비)을 포함한 예

3) 1차공모: 2022.6.15.~8.4.(단독응찰로 유찰) / 2차공모: 2022.8.8.~9.22.

4)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기간: (당초) 2022.10.21.~2023.7.19. / (1차 변경) 2022.10.21.~2023.9.19. / (2차 변경) 2022.10.21.~2024.1.19.

산현액은 총 28억 6,500만원이었으나, 실시설계도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3억 9,800만원만 집행(집행률 13.9%)되고, 나머지 24억 6,700만원은 모두 불용되었음.

불용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된 실시설계비 1억 3,900만원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 못하여 불용된 공사비 등 23억 2,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보다 더 큰 규모임.

2024년 5월말 현재, 동 사업은 총사업비 증액(457억원→507억원)[5]에 따라 타당성재조사('24.4~12월)[6]를 실시 중으로, 당초 2023년 예정이었던 착공 시기는 2024년 이후로, 2025년을 목표로 하였던 개관은 2028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사업 연차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안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합계	200	-	112	86	1,700	1,786	1,301	465	2,400	2,865	398	2,467	8,430
일반연구비 (260-01)	200	-	112	86	-	86	86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680	680	660	-	-	-			
실시설계비 (420-02)	-	-	-	-	1,020	1,020	555	465	-	465	326	139	
공사비 (420-03)	-	-	-	-	-	-	-	-	2,000	2,000	-	2,000	7,630
감리비 (420-04)	-	-	-	-	-	-	-	-	300	300	-	300	755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100	100	72	28	45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따라 2023년에 이어 2024년 공사비 등 84억 3,000만원의 예산도 대부분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대규모 예산의 불용 등은 국가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 계획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후 실시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24.1월) 결과, 사업기간 연장(2026년까지 1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50억원)이 결정되었음.

6) 2024년 1월 완료예정이었던 된 실시설계는 타당성재조사 완료시까지 중단된 상태임. 2023년으로 이월된 설계비 4억 6,500만원은 재이월이 불가하여 3억 2,6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억 3,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및 연례적 이월 주의

가. 개 요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건립 및 개보수[7]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9억 2,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

[2023년도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형유산원 운영	33,798	33,798	82	+178 △185	33,873	33,391	-	482	52,653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5,037	5,037	-	-	5,037	5,037	-	-	4,037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4,925	4,925	-	-	4,925	4,925	-	-	3,837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율 50%) 사업으로, 2023년의 경우 총 11개 지방자치단체[9]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 이 중 경기 광명, 경기 평택, 충북 청주 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전수교육관을 신축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전수교육관 등의 시설을 개보수·증축하는 내용임.

7) 지원조건: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8) 일반회계-무형유산원운영(1132-303)(문화재정책국)
※2024년부터 일반회계-무형문화재보호(1132-301)로 이관

9) 경기 광명, 경기 평택, 충북 청주, 경기 수원, 경기 양주, 전남 구례, 경북 청도, 경남 통영, 제주, 부산, 경북 예천

나. 검토의견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및 연례적 이월에 대하여 국회 시정요구가 거듭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임.

동 사업의 2023년 실집행률은 57.7%로 저조함. 2023년 동 사업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4억 7백만원 중 36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700만원을 불용하였음.

특히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된 13개 사업[10] 중 계속사업(5개)의 평균 실집행률(31.1%)이 단년도 사업(8개)의 평균 실집행률 (94.0%)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음.[11]

그러나 저조한 실집행률과 대조적으로, 국가유산청은 2023년 예산현액 49억 2,500만원을 전액 교부(교부율 100%)하였음.

[2023년도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결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시도	사업내용 (사업기간)	교부 총액	교부액 (교부일자)			교부 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1차	2차	3차						
건립	경기 (광명)	광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8~'23)	457	457 (2.21.)	-	-	714	711	-	3	99.6	-
	경기 (평택)	평택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1~'25)	1,555	-	-	1,555 (6.7.)	1,555	600	955	-	38.5	계속사업 (사업변경)[12]
	충북 (청주)	청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8~'23)	1,121	-	-	1,121 (6.7.)	1,318	114	1,204	-	8.6	계속사업 (사업변경)[13]
개보수	경기 (수원)	수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23)	143	143 (2.21.)	-	-	143	117	-	26	82.0	-
	경기 (양주)	양주 소놀이굿 전수회관 외부 화장실 보수('23)	75	75 (2.21.)	-	-	75	65	-	10	87.2	-
개보수	경기 (양주)	양주 별산대놀이 마당 공연장막 구조 교체 및 도장('23)	325	325 (2.21.)	-	-	325	319	-	6	98.2	-

10) 이월예산만 있는 사업 제외

11) 각 단년도 사업 실집행률(이월액 포함)의 단순평균임.

(단위: 백만원, %)

구분	시도	사업내용 (사업기간)	교부 총액	교부액 (교부일자)			교부 현액 (A)	실집 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1차	2차	3차						
	충남 (사산)	서산박첨지놀이 전수교육관 증축 ('21~'23)	-	-	-	-	471	468	-	3	99.4	-
	전남 (담양)	채상장 전수교육관 관리동 개보수 ('22~'23)	-	-	-	-	32	28	-	4	85.4	-
	전남 (해남)	강강술래전수관 보수('22~'23)	-	-	-	-	12	12	-	-	100.0	-
	전남 (구례)	구례 잔수농악전수관 농악놀이마당 보수 ('23)	100	-	100 (5.11.)	-	100	100	-	-	100.0	-
	경북 (청도)	청도차산농악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 보수('23)	147	147 (2.21.)	-	-	147	142	-	5	96.5	-
	경남 (통영)	통영예능 전수 교육관 보수('23)	304	100 (2.21.)	204 (5.11.)	-	304	275	-	29	90.4	-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개보수('23)	250	100 (2.21.)	150 (5.11.)	-	250	250	-	-	100.0	-
증축	부산	부산민속예술관 증축('23)	48	48 (2.21.)	-	-	48	47	-	1	97.3	-
	부산	구덕민속예술관 증개축('23~'25)	300	50 (2.21.)	250 (5.11.)	-	300	27	273	-	8.9	계속사업 (행정절차이행)
	전남 (영광)	우도농악 전수 교육관 증축('21~'24)	-	-	-	-	513	424	89	-	-	계속사업 (공기부족)
	경북 (예천)	통합 전수 교육관 증개축 ('23~'25)	100	100 (2.21.)	-	-	100	-	100	-	-	계속사업 (행정절차이행)
계			4,925	1,545	704	2,676	6,407	3,699	2,621	87	57.7	

자료: 국가유산청

동 사업의 교부율과 실집행률 간 차이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실집행률은 58.7%로 실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없이 5개년 모두 당해연도 예산 전액이 교부되어 왔음.

2023년 충북 청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건립사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국가유산청은 2023년 예산 11억 2,100만원 전액을 1회에 교부하였는데, 교부 당시

12) 입주단체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건축면적(연면적)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변경승인 2023.8.31.)되어 사업추진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음.

13) 공간 사용 제약 및 입주종목 전승자의 공간 확보 요구 등으로 인하여, 당초 도시재생허브센터 내 수직증축 방식에서 별동 건립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변경승인 2023.6.7.)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음.

(6.7.)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3.0%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률 역시 8.6%에 그침.

[최근 5년간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예산액(추경)(A)	교부액(B)	교부율(B/A)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가)	집행액(나)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나/가)
2019	3,000	3,000	100.0	5,039	8,039	5,357	2,068	614	66.6
2020	4,490	4,490	100.0	2,068	6,558	3,754	2,543	260	57.2
2021	4,716	4,716	100.0	2,543	7,259	4,828	1,945	486	66.5
2022	4,716	4,716	100.0	1,945	6,661	3,035	1,482	2,163	45.6
2023	4,925	4,925	100.0	1,482	6,407	3,699	2,621	87	57.7

자료: 국가유산청

참고로, 동 사업은 실집행 저조로 인하여 2023년과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신축 사업을 축소하고 개보수 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두 차례 주문받은 전례가 있음.[14]

또한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에서, 그리고 연례적 이월에 대하여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에서 각각 시정요구를 받았으나,[15]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6]

14) 일정수준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평가에 따라, 2024년 예산규모는 2023년 약 50억원 대비 10억원 축소되었음.

15)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국가유산청은 지자체가 신청하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의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국가유산청은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업추진 경과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것

1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에서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 지연 사유가 발생하는지 추진 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계속사업에서 실적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분할교부하여야 할 것임.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민간보조사업/12. 자치단체보조사업-세부지침-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교부 및 면밀한 사업점검 필요

가. 개 요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7]에 따라 고도지정지구 육성 및 고도주민활동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2억 7,6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8]

[2023년도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도 보존 및 육성	19,455	19,455	-	△20	19,435	19,298	-	137	20,161
고도역사도시조성	6,276	6,276	-	-	6,276	6,276	-	-	9,256

동 사업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경상보조사업(보조율 50%)인 ‘고도주민활동지원’ 사업과 자본보조사업(보조율 70%)인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대통사 역사유적정비’, ‘부여 고도 경관개선’,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사업의 총 5개 세부내역으로 편성되었음.

1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 부여 · 공주 · 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 · 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 · 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일반회계-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문화재보존국)

나. 검토의견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고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중 경상보조사업(고도주민활동지원)을 제외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고도(古都)를 정비하는 특성상 지표조사·시굴조사 및 정밀조사 등 발굴조사 전체 단계를 진행해야 하거나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2023년의 경우에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36.5%로 저조하였음. 2023년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 6억 4,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9억 1,600만원 중 25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3억 9,200만원을 모두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예를 들어,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은 2023년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역사공원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매장유산 발굴조사 추진 중 백제시대 석축저온저장고와 오행대포[19]가 국내 최초로 발견되어, 국가유산청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을 보존하고 발굴조사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발굴조사가 장기화[20]되었고, 역사공원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2023년 예산현액 48억 1,600만원 중 34억 8,4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도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추경)	교부액 (교부일자)	구분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실집행 부진 사유
고도주민활동 지원 ('23)	200	50	경주시	-	50	50	-	-	100.0	-
		50	공주시	-	50	50	-	-	100.0	-
		50	부여군	-	50	50	-	-	100.0	-
		50	익산시	-	50	50	-	-	100.0	-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21~'24)	4,176	1차: 2,088 (2.9.) 2차: 2,088 (6.23.)	익산시	640	4,816	1,332	3,484	-	27.7	발굴조사 기간 장기 소요

19) 북주(北周)시대 주조한 화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추경)	교부액 (교부일자)	구분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실집행 부진 사유
대통사 역사유적정비 ('23~'27)	1,000	1차: 500 (2.9.) 2차: 500 (6.23.)	공주시	-	1,000	847	153	-	84.7	토지보상 협의 과정 장기 소요
부여 고도 경관개선 ('23~'26)	700	1차: 350 (2.9.) 2차: 350 (6.23.)	부여군	-	700	26	674	-	3.7	충남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 장기화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23~'28)	200	1차: 100 (7.26.) 2차: 100 (8.9.)	익산시	-	200	119	81	-	59.5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수시배정 협의 절차에 의한 지연
합계	6,276	6,276	-	640	6,916	2,524	4,392	-	36.5	-

자료: 국가유산청

따라서 동 사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초기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경과를 면밀히 살펴 집행여력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의 저조한 실집행률(36.5%)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현액 62억 7,600만원 전액을 교부(교부율 100%)하였고, 보조사업자의 집행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각 50%씩을 2회[21]로 나누어 교부하였음.

2023년 2차 교부(6.3.) 당시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과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각각 0%와 0.01%에 불과하였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2]

20) 2차 발굴조사(2023.3.13.~2023.8.9.), 3차 발굴조사(2023.5.22.~2023.10.18.)

21) 1차 교부: 2023.2.9. / 2차 교부: 2023.6.3.

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에서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집행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보조사업자별 집행여력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단순히 예산을 절반씩 나누어 반기별로 교부하는 것은 기계적, 형식적인 분할교부로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형식적 분할교부를 지양하고, 고도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점검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민간보조사업/12. 자치단체보조사업-세부지침-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사전준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등 필요

가. 개 요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근대역사문화공간[23] 내 등록문화자원[24] 정비 및 경관회복, 관람 편의시설 조성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5]

[2023년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4,856	4,856	-	±30	4,856	4,792	-	64	3,864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3,000	3,000	-	-	3,000	3,000	-	-	2,207

동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사업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중 신청을 받아 당해 지원대상을 선정함. 현재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근대역사문화공간 8개소[26] 중 2023년 지원대상은 목포시・영덕군・익산시・영주시・통영시 및 창원시 총 6개 지방자치단체임.

23)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근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곳으로 근현대기에 형성(50년 이상 경과)된 거리, 마을, 지구 등 공간 단위의 보존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함.

24)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요 경관 구성요소로서 보존과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물

25) 일반회계-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2135-302)(문화재활용국)

26) (2018년 등록)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2019년 등록)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2020년 등록)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2021년 등록)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나. 검토의견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사업 초기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예산 전액이 교부되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준비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 예산현액 30억원을 전액 교부하여 교부율은 100%임. 반면,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6억 1,000만원 중 34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40.0%로 저조하고, 당해연도 예산 30억원 보다 더 큰 47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음.

보조사업자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에 최초로 국비 지원을 받은 창원시는 집행 실적이 전혀 없고, 2022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군산시,[27] 영주시의 2023년 실집행률은 각각 0.8%, 24.1%에 그쳐, 사업초기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집행 부진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년 지원대상 지자체	최초 사업시행 연도	예산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D/C)
목포시	2021	600	600	883	1,483	1,051	410	22	70.9
영덕군		100	100	2,737	2,837	1,203	1,315	318	42.4
익산시		598	598	410	1,008	490	509	9	48.6
군산시	2022	-	-	490	490	4	484	2	**0.8**
영주시		698	698	290	988	238	740	10	**24.1**
통영시		54	54	800	854	460	335	59	53.9
창원시	2023	950	950	-	950	-	950	-	**0.0**
계		3,000	3,000	5,610	8,610	3,446	4,743	420	40.0

자료: 국가유산청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초기 실집행 부진 현상은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데, 이는 주로 동 사업 추진 절차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1차년도에는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와 골목길정비, 전선지중화 등 불량경관 정비 등을 추진하고, 2~3차년도에는 그

27) 군산시의 경우, 2023년 편성 예산은 없고 이월액만 집행하였음.

후속사업으로서 야간경관 조명 및 관람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함.[28)]

1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 의련수렴과 전선지중화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와의 MOU 체결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가 계획 대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통상 저조하고, 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차츰 집행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임.[29)]

[최근 3년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보조사업자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2021년				2022년				2023년			
	교부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교부현액 (C)	집행액 (D) [실집행률 (D/C)]	이월액	불용액	교부현액 (E)	집행액 (F) [실집행률 (F/E)]	이월액	불용액
목포시	1,500	977 [65.1]	523	-	1,728	845 [48.9]	883	-	1,483	1,051 [70.8]	410	22
영덕군	1,530	231 [15.1]	1299	-	3,221	484 [15.0]	2,737	-	2,837	1,203 [42.4]	1,315	318
익산시	170	58 [34.1]	112	-	876	466 [53.1]	410	-	1,008	490 [48.6]	509	9
군산시	-	-	-	-	491	1 [0.2]	490	-	490	4 [0.8]	484	2
영주시	-	-	-	-	318	28 [8.8]	290	-	988	238 [24.1]	740	10
통영시	-	-	-	-	800	- [-]	800	-	854	460 [53.9]	335	59
창원시	-	-	-	-	-	-	-	-	950	- [-]	950	-
계	3,200	1,266 [39.5]	1,934	-	7,434	1,824 [24.5]	5,610	-	8,610	3,446 [40.0]	4,743	420

주: 집행액은 당해 연도 말 기준임
자료: 국가유산청

이 경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에 사업준비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유산청은 최근 3년 내내 예산액을 100%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의 평균 이월률은 63.7%에 달하였음.

2023년에도 국가유산청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 부진이 충분히 예상되었음[30)]에도 불구하고, 2월 10일과 5월 12일 2회에 걸쳐 예산 전액을 모두 교부

28)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총 지원 규모가 확정됨. 3차년도 사업 이후, 계획 대비 달성도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함.

29) 2023년에 창원시는 관계기관(한전)의 분담금 확보 지연에 따라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체되어 실집행 실적이 전혀 없음.

하였는데,[31] 2차 교부 당시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실집행률은 33.4%에 불과하였음.

이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2]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참고로, 동 사업은 실집행 부진으로 인하여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일정수준 감축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미흡을 통보받았음.[33]

2022회계연도 및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에서도 동 사업에 대하여 사전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의결[34]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였음.

---

30) 2023년에 창원시와 통영시는 관계기관(한전)의 분담금 확보 지연에 따라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체되었고, 익산시는 전선지중화 준공 지연으로 후속되는 도로복구공사가 순연되었음.

31) 국가유산청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2회 나눠서 실시하였고, 이후 각 광역에서 지방비 확보를 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회 혹은 2회에 나눠서 교부함.

3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민간보조사업/12. 자치단체보조사업-세부지침-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3)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은 전년 30억원 대비 8억원 감액되었음.

34)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국가유산청은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제도개선): 국가유산청은 관계전문가 자문과 이에 따른 보완 등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준비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만을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함으로써 동 사업의 집행률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경복궁종합정비 사업: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경복궁종합정비’ 사업은 일제에 의해 변형·훼철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복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20억 2,300만원 중 116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0%)되고, 3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35)36)]

[2023년도 경복궁종합정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경복궁종합정비	11,553	11,553	-	±1,878 470	12,023	11,660	-	363	-
영훈당 권역 복원	2,000	2,000	-	△1,878	122	60	-	62	3,790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6,000	6,000	-	871	6,871	6,734	-	137	-
계조당 권역 복원	3,415	3,415	-	1,477	4,892	4,727	-	165	-

내역사업인 **‘영훈당 권역 복원(신규)’** 사업은 경복궁 2차 복원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조선시대 최초 전기의 발상지인 전기등소를 포함하여 영훈당 권역을 복원하는 것임. 2023년 예산현액 1억 2,200만원 중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9.2%)되고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내역사업인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일제에 의해 변형·훼철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월대를 원형대로 복원·정비(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8억 7,100만원 중 67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1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35) 일반회계-경복궁종합정비(2231-301)(궁능유적본부)

36) <경복궁종합정비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1 ~ 2045(35개년)
- 총사업비: 약 3,661억(국비 3,290억원, 지방비 371억원),
- 사업내용: 건물복원 80동, 기단·초석복원 및 유구정비 223동

내역사업인 ‘계조당 권역 복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훼철된 동궁의 정전인 계조당(왕세자의 조회공간) 권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8억 9,200만원 중 47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1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1)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 집행잔액을 당초 편성명목과 다른 내역에 집행

경복궁종합정비 사업은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다른 내역사업에 집행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집행잔액을 편성명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신규사업인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5개년임(총사업비 약 190억원).[37]

2023년에는 1차년도 복원 공사[38]를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영훈당 추가발굴에 따른 설계 변경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간 소요로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가 지연되었음.

이로 인해 감리계약은 2023년 12월, 공사계약은 2024년 1월에야 체결[39]되었고, 2023년 예산은 감리비 선금 6,000만원만 집행하였음.

따라서 집행잔액 19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해야 할 것이나, 국가유산청은 이 중 6,200만원만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18억 7,800만원을 동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에 집행하였음.

변경내역별로 살펴보면, 4억 100만원은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40] 14억 7,700만원은 계조당 권역 복원 사업으로[41] 각각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37)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사업비(백만원)	122	3,790	5,100	5,100	5,000
사업내용	사업준비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4차 공사(준공)

자료: 국가유산청

38) 영훈당 권역 복원 설계: 2021.3월~2022.12월(완료)

39)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 공사 및 감리계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기간	비고
복원공사	2024. 1.17.	2024.2.19.~2027.2.17.	(1차)2024.2.19.~2024.12.20.
책임감리용역	2023.12.28.	2024.2.19.~2027.4.18.	(1차)2024.2.19.~2024.12.31.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동 세부사업 내에서 연내 완료 가능한 필요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당초 내역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각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을 연도별 집행소요에 맞추어 적정규모로 편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세부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을 당초 편성명목과 다른 내역에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2)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및 국가계약법 준수 필요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되지 않은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전용을 통한 미편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적정한 계약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의 2023년 예산은 60억원이나 예산현액은 68억 7,100만원임. 국가유산청은 이 중 67억 3,400만원을 집행(집행률 98.0%)하고 1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예산현액 증가분 8억 7,100만원 중 4억 100만원은 공사비 및 감리비로 ‘영훈당 권역 복원’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4억 7,000만원은 일반용역비로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궁궐문화재 관리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서 전용(증)한 것임.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되어 당초부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며(’23.12.5. 준공),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월대를 일제에 의해 변형·훼철되기 이전 원형대로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따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니라 동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하여 추진했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42] 개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

40) 유물기증 등에 따른 유물 추가조사(3d 스캔 등). 신·구부재 가조립 공정 시행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반영, 집행세목은 공사비(420-03, 3억 8,500만원) 및 감리비(420-04, 1,600만원)로 동일함.

41) 발굴조사 결과 추가의견에 따라, 외곽담장 및 봉의문 복원 추가 실시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반영, 집행세목은 공사비(420-03, 13억 7,300만원) 및 감리비(420-04, 1억 400만원)로 동일함.

42)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 개요>
- 일시: 2023.10.15. 18시

지 않고 다른 세부사업에서 전용(4억 7,000만원 증)하거나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1억 3,800만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을뿐 아니라, 긴급 및 보안을 이유로 총 6억 800만원 규모의 위탁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음.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 위탁용역계약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재원	방식	금액
1차 계약 ('23.10.6.)	궁궐문화재 관리운영(2231-301)	전용(증)	225
	조선왕릉 보존관리(2232-302)	전용(증)	225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2233-301)	전용(증)	20
2차 계약 ('23.10.12.)	궁궐문화재 관리운영(2232-301)	일반용역비 집행잔액 활용	138
합계			608

주) 보호펜스 임차안전인력 고용·영상 추가 제작을 위해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당초 소규모 행사를 예상하였으나, 주요인사 참여 및 국민의 관심으로 행사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행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였고, 행사기획 난이도와 과업 증가, 다부처 협업 추진 및 행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예산을 전용을 통해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6조제3항[43]에 위반되는 것이고,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로 보았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44]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긴급

- 참석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및 일반국민 등 567명
- 행사내용: 식전 행사(월대 역사이야기 강연), 주요인사 축사, 빛 세레모니 및 월대-현판 대국민 공개 연출, 미디어 파사드 퍼포먼스, 새길맞이단 입장 세레모니 등

4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성, 보안필요성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필요소요를 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집행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계약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 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 라. (생략)

6.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사업: 사업 지연 방지 및 편성명목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가. 개 요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사업은 조선왕릉 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부적합시설물을 철거·정비하여 훼손된 왕릉의 원지형을 회복하는 능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9억 6,900만원 중 16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32.8%)되고 32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45]

[2023년도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선왕릉보존관리	32,022	32,022	1,448	△273	33,197	25,543	4,891	2,762	44,107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4,969	4,969	-	-	4,969	1,632	3,275	62	6,863

국가유산청은 서울 태·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2009년)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촌이 충북 진천으로 옮겨간(2017년) 이후부터 세계유산 구역 내에 위치한 태릉선수촌(1966년 설립)의 시설물 등을 단계적으로 철거[46]하고 있음.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339억원, 사업기간은 2018~2027년(10개년)으로, 순차적 철거계획 이행을 위하여 1회계연도 예산은 통상 당해연도 철거 대상 건물의 철거공사비와 후년도 철거 예정 건물의 철거설계비로 편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은 개선관[47] 철거공사비 등 45억 7,200만원과 2024년에 철거 예정인 올림픽의 집 철거설계비 3억 9,700만원, 총 49억 6,900만원임.

45) 일반회계-조선왕릉보존관리(2232-302)(궁능유적본부)

46)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2009년) 당시 유네스코 이행계획 제출사항

47) 개선관 철거 설계는 감래관, 필승주체육관과 함께 2021년 6월에 완료되었음.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사업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철거 대상	오륜관, 필승관 (철거완료)	다목적 체육관, 양궁장, 실내수영장, 창고 (철거완료)	영광의집 (철거완료)	필승 주체육관 (철거완료)	개선관	올림픽의 집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본관, 별관, 수위실)	감래관, 행정동	국제 스케이트장, 빙상장
예산	21.5억원	10.2억원	24.4억원	28억원	49.6억원	68.6억원	40억원	27억원	70억원

자료: 국가유산청

나. 검토의견

(1) 개선관 철거공사 집행률 저조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사업의 10개년 계획에 따른 2023년 철거대상은 개선관이나, 철거공사 계약 지연 및 공사 중지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단계별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계획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3년 연내에 개선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단년도), 2024년에 올림픽의 집 철거에 착공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개선관 철거공사는 문화재수리종합심사적용대상[48]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6월에야 낙찰자가 선정되었고, 2023년 7월 착공되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49]로 공사 중지(64일), 구조안전 검토 결과에 따른 공종 추가 등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었음.

이로 인해 2023년 개선관 철거공사 예산 45억 7,200만원 중 14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1억 5,2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24년 6월에야 준공되었음.

---

48) 개선관 철거공사는 사적(태릉과 강릉) 내에서 행해지는 공사로써,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문화재청고시(제2021-93호) 가목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문화유산 수리’에 해당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적용대상임.
※ 종합심사낙찰제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 방식임.

49)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협의 필요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사업은 10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므로, 계획기간 내 예정대로 철거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사업이 지연 없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특히 대한체육회 요청에 따라 2024년 이후 철거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철거공사비도 2024년 5월말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고, 상당규모가 이월될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50)]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4~2026년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철거대상	철거공사비	철거대상	철거공사비
2024	올림픽의 집	6,560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감래관, 행정동	6,560
202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4,294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계속)	2,255
2026	감래관, 행정동	2,978	올림픽의 집	4,500

주)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소요예산만 기재(타건물 설계비 등 제외)
자료: 국가유산청

(2) 올림픽의 집 철거설계비 집행잔액을 편성명목과 달리 차년도 계획사업에 집행

국가유산청은 올림픽의 집 철거설계비 집행잔액을 편성내역과 달리 차년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철거설계를 미리 추진하기 위해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편성명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계획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3년에 2024년 철거 예정인 올림픽의 집 철거설계를 실시하고 2024년에는 2025년에 철거 예정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3개 동 철거설계를 실시할 계획이었음.

50) 대한체육회는 동계 아시안게임('25.2월)과 청소년 동계올림픽('26.2월) 훈련 및 참가를 위한 선수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올림픽의 집 철거일정 조정 요청('23.8.17./12.20.)을 하였음. 이에 따라 2024년 올림픽의 집 철거공사는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2026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일정이 연기되었고, 대신 2025년 철거예정이었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3개 동과 2026년 철거예정이었던 감래관, 행정동*을 2024~2025년에 앞당겨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2024.1.16. 국가유산청에서 대한체육회에 철거일정 조정 통보). 그런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철거는 이주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2024.1월~7월)가 완료된 후 착공할 수 있으므로, 2024년 하반기가 넘어서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감래관 설계기간: 2021.3.17. ~ 2021.6.30. / 행정동 설계기간 : 2022.3.2. ~ 2022.5.30.

올림픽의 집 철거설계는 2023년 5월에 완료되었고, 예산액 3억 9,700만원 중 2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으므로, 집행잔액 1억 8,500만원은 불용되었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 등 6,200만원만을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당초 2024년에 계획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3개 동 중 2개 동(별관, 수위실)에 대한 철거설계 계약[51]을 2023년 11월에 미리 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였음(전액 차년도 이월).

[2023년 및 2024년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설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명목 및 예산	실제집행명목 및 집행(예정)액
2023	- 올림픽의 집 철거설계비 397	- 올림픽의 집 등 철거설계비 212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별관, 수위실 철거설계비 123
2024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3개 동 철거설계비 303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본관 철거설계비 152

자료: 국가유산청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설계비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에도 2023년 설계비 집행잔액을 2024년 계획사업을 미리 실시하는 데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대한체육회의 올림픽의 집 철거연기 요청이 2023년 8월 17일에 있었기 때문에 철거일정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음.[52]

사업계획 변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음. 그러나 2023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차년도 필요계약을 연말에 체결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이월되고, 그 금액만큼 2024년 예산은 불용되므로 바람직한 집행이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집행잔액을 편성명목과 달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1) 본관에 대한 철거 설계는 별도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고 기존 별관과 수위실에 대한 설계계약 변경(설계범위 확대, 설계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하여 추진하였음.
- 별관, 수의실 철거 설계계약: '23.11. 체결(2023.11.22.~2024.1.30.), 계약금액 123백만원
- 계약변경: 본관 철거 설계계약 포함, 계약기간 2024.4.29.까지 90일 연장, 계약금액 152백만원 증액(총 275백만원)

52) 2025년 철거예정이었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3개 동을 2024년에 앞당겨 철거하는 경우, 착공 전 철거설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설계를 조기에 실시한 것임.

7.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전년도 이월규모와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한 교부 필요

가. 개 요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관광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97억 8,500만원 중 397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53)]

[2023년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9,783	39,783	-	+892 △890	39,785	39,751	-	34	35,052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19,251	19,251	-	-	19,251	19,251	-	-	26,433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10,244	10,244	-	-	10,244	10,244	-	-	-

내역사업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등재된 세계유산 중 단일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수정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92억 5,1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내역사업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사업은 등재된 세계유산 중 2010년 이후 등재된 연속유산[54)]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수정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02억 4,4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5)]

두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율 70·50·30% 차등[56)])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53) 일반회계-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3331-304)(문화재활용국)

54) 연속유산(Serial Properties) :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37항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2개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유산
※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16개로, 이 중 연속유산은 11개임.

55) 2024년부터는 두 내역사업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음.

2023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6개 지방자치단체이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7개 지방자치단체임.

나. 검토의견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저조에도 예산전액이 교부되어 매년 대규모 이월 또는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전년도 이월액 규모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분할교부할 필요가 있음.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사업은 세계유산 보수공사가 주된 내용으로, 사업내용의 특성상 주민들과의 토지매입 보상협의 지연, 현상변경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

최근 5년간 두 사업의 예산액 및 집행액을 합하여 살펴보면, 당해연도 예산 집행률은 평균 40.5% 수준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도 평균 49.4%로 저조함.[57)]

[최근 5년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연속유산)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현액 (C=A+B)	집행액(D) [당해연도 집행액(E)]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D/C) [당해연도 집행률(E/A)]
	본예산	추경							
2019	31,232	31,232	31,232	11,274	42,506	20,161 [9,939]	이월 20,145 재이월 1,686	515	47.4 [31.8]
2020	34,686	33,686	33,686	21,830	55,516	28,339 [17,795]	이월 15,084 재이월 10,835	1,258	51.0 [52.8]
2021	33,034	33,034	33,034	25,919	58,953	30,979 [17,311]	이월 15,132 재이월 4,679	8,163	52.5 [52.4]
2022	34,395	34,395	34,395	19,811	54,206	22,026 [9,161]	이월 24,828 재이월 6,487	865	40.6 [26.6]
2023	29,495	29,495	29,495	31,315	60,810	34,084 [11,503]	이월 17,483 재이월 6,775	2,467	56.1 [39.0]

자료: 국가유산청

56) 문화재 유형 및 사업성격에 따라 국비 보조율 70・50・30%로 차등
- 세계유산 보수정비 70%
- 세계유산(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 세계유산(사적・유물) 전시관 보수 30%

57) 각 연도 두 사업 예산액, 집행액 등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집행률의 5년 평균치임.

2023년의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은 두 사업 예산 192억 5,100만원과 102억 4,400만원(연속유산) 전액을 교부(교부율 100%)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저조하였음.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 232억 6,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5억 1,300만원 중 234억 9,0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55.3%)하고, 170억 5,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9억 7,000만원은 불용하였음.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 80억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2억 9,700만원 중 105억 9,4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57.9%)하고, 72억 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9,700만원은 불용하였음.[58]

[2023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연속유산)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자체	유산명	’23예산(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C=A+B)	집행액(D) [’23예산 집행액(E)]	집행률(D/C) [’23예산 집행률(E/A)]	이월액	불용액
단일유산	경기도	남한산성	2,395	3,240	5,636	3,824 [1,252]	67.8 [52.3]	1,116	695
		수원화성	10,286	18,497	28,783	14,772 [1,425]	51.3 [13.9]	13,525	487
	경상남도	해인사 장경판전	137	146	283	29 [-]	10.2 [-]	253	-
	경상북도	석굴암, 불국사	582	140	722	339 [269]	47.0 [46.2]	338	45
	전라남도	고인돌 유적(화순)	245	148	393	318 [173]	80.9 [70.6]	62	13
	전라북도	고인돌 유적(고창)	786	203	989	875 [732]	88.5 [93.1]	-	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4,819	888	5,707	3,334 [2.909]	58.4 [60.4]	1,758	615
	소계		19,251	23,262	42,513	23,490 [6,762]	55.3 [35.1]	17,053	1,970
연속유산	경상남도	한국의 산사(양산 통도사)	639	115	754	634 [521]	84.1 [81.5]	113	7
		한국의 서원(함양 남계서원)							

58) 두 사업 중 실집행률이 저조하면서 차년도 이월 및 불용규모가 가장 큰 세계유산은 각각 경기도 수원화성과 충남 공주 마곡사임.
- 수원화성의 경우 2023년에 문화재구역 정비, 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공사 등 보수정비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두 차례의 설계변경, 토지수용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예산 집행률은 13.9%에 그쳤고, 토지수용절차 지연으로 토지매입비 등 이월 또는 재이월 예산을 포함한 집행률도 51.3%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 예산 보다 더 큰 규모인 135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주 마곡사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건축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 지연으로 금어원 건립 등을 위한 2023년 예산 중 7.3%만이 집행되었고, 이월 예산을 포함한 집행률도 29.9%에 그쳤으며, 2023년 예산 보다 더 큰 규모인 27억 3,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자체	유산명	'23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현액 (C=A+B)	집행액(D) ['23예산 집행액(E)]	집행률(D/C) ['23예산 집행률(E/A)]	이월액	불용액
	경상북도	한국의 역사마을 (안동 하회마을)	1,712	3,292	5,004	3,339 [582]	66.7 [34.0]	1,563	103
		한국의 역사마을 (경주 양동마을)	1,401	1,122	2,523	807 [88]	32.0 [6.3]	1,586	130
		한국의 산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840	743	1,583	1,248 [769]	78.8 [91.5]	325	10
		한국의 서원 (안동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269	285	554	223 [135]	40.3 [50.2]	324	7
	전라남도	한국의 산사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2,694	474	3,168	2,511 [2,136]	79.3 [79.3]	559	99
		한국의 서원 (장성 필암서원)							
		한국의 갯벌 (순천, 신안)							
	전라북도	한국의 서원 (정읍 무성서원)	193	149	342	302 [185]	88.3 [95.9]	-	40
		한국의 갯벌(고창)							
	충청남도	한국의 산사 (공주 마곡사)	2,301	1,622	3,923	1,173 [168]	29.9 [7.3]	2,735	14
		한국의 갯벌(서천)	-	111	111	73 [-]	65.8 [-]	-	38
	충청북도	한국의 산사 (보은 법주사)	147	31	178	140 [113]	78.7 [76.9]	-	38
	대구광역시	한국의 서원 (달성 도동서원)	49	108	157	145 [43]	92.4 [87.8]	-	12
	소계		10,244	8,053	18,297	10,594 [4,742]	57.9 [46.3]	7,205	497
총계			**29,495**	**31,315**	**60,810**	**34,084 [11,503]**	**56.1 [39.0]**	**24,259**	**2,467**

주) 보조사업자별 2023년 당해연도 예산액과 교부액 금액은 동일함(전액 교부)
자료: 국가유산청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최근 5년간 당해연도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왔음. 2023년의 경우, 지원금액이 10억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는 1회(2.23.), 그 외에는 2회에 걸쳐 보조금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2차 교부 당시(6.1.) 대상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은 14.7%에 불과하였음.

또한 저조한 실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유사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예산증가율 ±12.5% 수준),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과 교부로 인해 대규

모 이월 및 재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액 규모의 비중은 당해연도 예산의 평균 69.2%로 매우 높고, 2023년에는 이월액 비중이 106.2%로 이월액이 당해연도 예산 규모를 초과하고 있음.

[2023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연속유산) 사업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자체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실집행률)	
			1차(2.23.)	2차(6.1.)	1차교부 당시	2차교부 당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보조)	경기도	12,681	3,859	8,822	108 (2.8%)	941 (7.4%)
	경상남도	137	137	-	- (-)	-
	경상북도	582	582	-	18 (3.1%)	-
	전라남도	245	245	-	- (-)	-
	전라북도	786	786	-	8 (1.0%)	-
	제주특별자치도	4,819	2,219	2,600	41 (1.8%)	637 (13.2%)
	계	19,251	7,829	11,422	175 (2.2%)	1,944 (10.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연속유산)	경상남도	639	639	-	6 (0.9%)	-
	경상북도	4,221	3,157	1,064	31 (1.0%)	144 (3.4%)
	전라남도	2,694	1,694	1,000	481 (28.4%)	1,114 (41.3%)
	전라북도	193	193	-	- (-)	-
	충청남도	2,301	1,301	1,000	- (-)	168 (7.3%)
	충청북도	147	147	-	10 (6.8%)	-
	대구광역시	49	49	-	- (-)	-
	계	10,244	7,180	3,064	528 (7.4%)	1,803 (17.6%)
총계		29,495	15,009	14,486	703 (4.7%)	3,747 (12.7%)

주) 2차교부 당시 실집행률액 및 실집행률은 분할교부 대상 사업에 한하여 산출함

자료: 국가유산청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실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요구되었음.

또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9]에서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집행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전년도 이월액 규모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 교부를 실시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9)「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민간보조사업/12. 자치단체보조사업-세부지침-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舊 문화재보호기금)】

<총 괄>

8. 국가유산보호기금: 구조적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유산보호기금’ 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09.6.9.)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문화재보호기금이 '24.5.17. 국가유산 체재로의 전환에 따라, 근거법률 제명(「국가유산보호기금법」) 및 기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2023년 수입과 지출의 결산액은 1,832억 9,000만원으로, 계획현액 1,689억 5,500만원의 108.5%임.

[최근 3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 계획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수정) (A)	결산 (B)	집행률 (B/A)	계획(수정) (C)	결산 (D)	집행률 (D/C)	계획(수정) (E)	결산 (F)	집행률 (F/E)	계획
수입	자체수입	입장료수입	2,600	2,954	113.6	8,000	3,788	47.4	4,000	4,260	106.5	5,000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	2,220	74.0	3,000	5,681	189.4	3,000	2,540	84.7	5,526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40	307	90.3	340	350	102.9	340	516	151.8	340
		기타재산이자수입	340	307	90.3	340	350	102.9	340	516	151.8	340
		위약금	-	-	-	-	27	-	-	27	-	-
		건물대여료	-	5	-	-	2	-	-	3	-	-
		기타잡수익	-	1	-	-	1	-	-	-	-	-
	보전수입	정부예금회수	2,000	15,566	778.3	3,100	17,283	557.5	3,276	17,605	537.4	6,505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1,686	-	-	3,403	-	-	3,725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000	13,880	694.0	3,100	13,880	447.7	3,276	13,880	423.7	6,505
	정부내부수입	복권기금전입금	92,947	92,947	100.0	140,643	140,643	100.0	158,339	158,339	100.0	152,61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40,992	40,992	100.0	-	-	-	-	-	-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수정) (A)	결산 (B)	집행률 (B/A)	계획 (수정) (C)	결산 (D)	집행률 (D/C)	계획 (수정) (E)	결산 (F)	집행률 (F/E)	계획
총계		141,879	154,992	109.2	155,083	167,775	108.2	168,955	183,290	108.5	169,982
지출	기금사업비	134,753 (137,853)	133,719	97.0	147,598	145,975	98.9	160,749	159,208	99.0	159,063
	기금운영비	138	108	78.3	128	114	89.1	120	118	98.3	116
	복권기금 전출 (정부내부지출)	3,888	3,882	99.8	4,081	4,081	100.0	4,581	4,581	100.0	5,58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3,100 (0)	17,283	-	3,276	17,605	537.4	3,505	19,383	553.0	5,218

수입의 결산내역은 자체수입 73억 4,600만원, 보전수입 176억 500만원, 정부내부수입 1,583억 3,900만원임.

자체수입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60]에 따라 문화유산관람료 수입의 10%가 기금에 수납되는 입장료수입과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위약금 등으로 구성됨.

정부내부수입은 기금이 설립된 2010년부터 일반회계와 복권기금 전입금[61]으로 구성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이 중단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전입하였음. 2022년부터는 복권 판매 수익 증가 등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금이 확대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은

60)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6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수익금 일부(법정 배분액 중 14.286%)가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음으로, 지출의 결산내역은 기금사업비 1,592억 800만원, 기금운영비 1억 1,800만원, 복권기금 전출 45억 8,1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93억 8,300만원임.

복권기금 전출은 복권기금 전입금의 집행잔액을 복권위원회에 반환하는 금액이고,[6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는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함.

나. 검토의견

(1)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과소하여 기금의 실효성·안정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법률로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수입구조는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임.[63]

그런데 최근 5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 재원 중 정부내부수입이 평균 8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의 비율은 5.2%에 불과함(5년 연속 9% 미만). 특히 2023년 자체수입의 비중은 전년보다 더 감소하여 4.0%에 머물렀음.

최근 문화경쟁력으로서 국가유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금 지출 소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기금사업비는 전년 대비 9.1%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5.4%가 감소하여 사업비의 대부분을 사실상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기금사업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중 4.6%(결산기준)).

---

6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6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되는 경우, 사업비 규모가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시급성보다 복권기금 전입 여력에 따라 결정되어 신축적 운용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최근 5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입·지출·기금사업비 중 자체수입 등의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입 결산 (A)	자체수입 결산 (B)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 (B/A)	정부내부거래 결산 (C)	수입 중 정부내부거래 비중 (C/A)	기금사업비 결산 (D)	기금사업비 중 자체수입 비중 (B/D)
2019	143,303	12,394	8.6	110,628	77.2	120,360	10.3
2020	154,973	6,390	4.1	128,206	82.7	136,276	4.7
2021	154,992	5,487	3.5	133,939	86.4	133,719	4.1
2022	167,775	9,849	5.9	140,643	83.8	145,975	6.7
2023	183,290	7,346	4.0	158,339	86.4	159,208	4.6

자료: 국가유산청

더욱이 2023년말 기준 기금 여유자금은 약 193억 8,300만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 여유자금 389억 5,500만원의 절반 수준인 49.8%이고, 2023년 사업비 규모 1,592억 800만원의 12.2%에 불과함.

2025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총 916억원) 상환이 시작된다는 점,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자부담이 계속된다는 점(2023년 납입금 15억 8,100만원)[64]을 고려하면, 여유자금 고갈 등 기금의 안정성도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65] 성과 및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정비하는 등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64)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납입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66	255	513	1,382	1,581	1,581	5,378

자료: 국가유산청

65) 이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은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납부비율 확대(국가 10→20%, 지방 10→15%),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함.(이와 관련하여 제21대국회에 제출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은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최근 10년간 국가유산보호기금 여유자금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8,955	45,671	58,372	27,665	20,280	20,376	15,566	17,283	17,605	19,383

주) 각 연도말 기준 국가유산보호기금 적립금의 원금 기준 잔액임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호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차입일	차입금	차입금리	차입기간	거치기간	원금상환예정일
2018-04-05	2,677	2.578%	2025-03-09	7년	2025-03-09
2018-06-07	5,493	2.578%	2025-03-09	7년	2025-03-09
2019-09-05	9,338	1.817%	2026-06-09	7년	2026-06-09
2020-06-08	33,100	1.557%	2030-03-09	10년	2030-03-09
2021-01-14	27,000	1.547%	2030-12-09	9년	2030-12-09
2021-07-12	13,992	1.912%	2031-06-09	10년	2031-06-09

주) 향후 상환계획: ('25) 81억 7,000만원, ('26) 93억 3,800만원, ('30) 601억원, ('31) 139억 9,200만원
자료: 국가유산청

(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예산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일반회계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66]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6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를 통해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조사연구를 위해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동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해야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임에도, 관련 예산이 문화재보호기금에서 편성·집행되고 있어 법령에 맞지 않음.[67]

특히 운영비의 경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존치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감축되기 어려운 경직적 경상경비라는 특성상 기금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필요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운영비		사업비		계획현액 합계 (C)	기금지출 총계(D)	비중		
	계획현액 (A)	집행액	계획현액 (B)	집행액			전체 (C/D)	운영비 (A/D)	사업비 (B/D)
2019	6,659	6,519	21,490	21,360	27,879	143,303	19.5	4.6	15.0
2020	7,924	7,562	26,104	25,666	33,228	154,973	21.4	5.1	16.8
2021	9,418	9,141	25,021	24,683	33,824	154,992	21.8	6.1	16.1
2022	10,804	10,455	25,471	24,911	35,366	167,775	21.1	6.4	15.2
2023	10,941	10,616	25,311	24,663	35,279	183,290	19.2	6.0	13.8

주) 2023년 운영비 세부사업: 문화재연구원운영지원(R&D)(1236-301)
2023년 사업비 세부사업: 문화유산조사연구(R&D) (1236-302)
자료: 국가유산청

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문화재보호기금이 신설(2010년)되면서부터 기금으로 편성되었음.

<지 출>

9.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사업(신규): 사업추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일반용 전기요금과 교육용 전기요금의 차액을 보전[68]해주는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54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9]

[2023년도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10,164	10,164	-	10,164	10,164	-	-	11,306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5,400	5,400	-	5,400	5,400	-	-	5,192

나. 검토의견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사업은 편성단가가 실제보다 높이 책정된 점과 전기요금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절차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편성단가 감조정 및 사업추진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은 2023년 계획현액 54억원을 전액 교부(교부율 100%)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이 중 22억 4,0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41.5%)하고 잔액 31억 6,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68)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현행「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 및「(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제58조제1항에 따른 교육용 전력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용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일반용 전력과 교육용 전력의 차액만큼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임.

69) 문화재보호기금-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1136-304)(문화재보존국)

[2023년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해인사)					
	계획액(수정)(A)	교부액(B)	교부율(B/A)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가)	집행액(나)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나/가)
2023	5,400	5,400	100.0	-	5,400	2,240	3,160	-	41.5

자료: 국가유산청

실집행 부진의 사유는 편성단가가 실제보다 높이 책정된 점과 전기요금 청구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절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당시 2019년 전력 판매 단가 기준으로 교육용(103.85원/kWh)이 일반용(130.33원/kWh)에 비해 약 25% 낮은 것에 근거하여, 2019년 주요 사찰 평균 전기요금 월 평균납부액에 일반용 전기요금과 교육용 전기요금의 차이인 20%를 곱하여 필요예산을 산출함.[70]

그런데 2023년 8월까지의 정산 집행분(2023년 실집행액)은 22억 4,000만원으로, 편성기준에 따른 8개월분 예산(36억원)[71]의 약 6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72]이 전국 281개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로부터 3개 분기별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받은 후 해당 금액만큼 사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내 사용액 집계가 완료되지 않는[73] 마지막 분기(9~12월) 집행액은 연례적 이월 및 이월 후 불용[74]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70) 281개소(2020년 4월 기준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800만원(2019년 주요 사찰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 월평균액)×12개월×20%(2019년 전력 판매 단가 기준으로 교육용(103.85원/kWh)이 일반용(130.33원/kWh)에 비해 약 20% 낮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조계종 정책 자료집에 따라 산출한 비율)=54억원

71) 전체 예산을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8개월분을 산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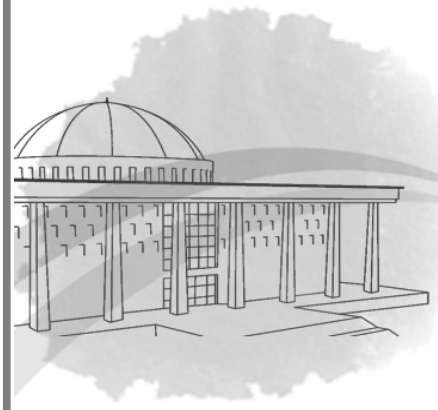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72)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유일하기 때문에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73) 전기요금 청구시기와 실제 사용시기 간에는 약 2~3주가량 시차가 발생함.

74) 9~12월의 전기요금지원 신청 전이므로 우선 집행잔액 전액을 차년도로 이월하고 차년도 초에 납부영수증을 제출받아 정산하나, 계절특성상 평달 대비 전기요금이 높다 하여도 1~8월 실집행액이 예산 대비 6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월예산(9~12월분)의 약 30~40%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2023년 이월액 3,160백만원 중 집행액은 1,080백만원이고, 2023년 예산 대비 전체 집행액(이월 후 집행된 금액 포함)의 실집행률은 61%(3,320백만원/5,400백만원)임.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편성단가를 실제 집행액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고, ‘연내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연내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거나, 정산 분기를 더 세분화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884억 1,800만원(△2.1%)이 적은 13조 1,947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72억 7,100만원(4.6%)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501,852	7,501,852	7,674,722	172,870	8,140,913	8,140,913	8,662,523	521,610	987,801
기 금	5,082,074	4,935,718	4,942,765	7,047	5,342,263	5,342,263	4,532,235	△810,028	△410,530
총수입	12,583,926	12,437,570	12,617,487	179,917	13,483,176	13,483,176	13,194,758	△288,418	577,271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246억 9,800만원(△1.9%)이 적은 17조 326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79억 7,600만원(3.1%)이 증가함.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marine@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806,125	8,775,695	8,337,439	△438,256	9,214,238	9,214,238	9,210,120	△4,118	872,681
기 금	8,070,570	8,344,877	8,177,232	△167,645	8,143,107	8,143,107	7,822,527	△320,580	△354,705
총지출	16,876,695	17,120,572	16,514,671	△605,901	17,357,345	17,357,345	17,032,647	△324,698	517,976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조 9,853억 7,100만원으로, 16조 7,101억 2,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6조 6,877억 4,6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4.4%)되고, 223억 7,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1,170	21,170	-	21,170	13,483	7,509	-	5,97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582,092	13,582,092	-	13,582,092	14,257,752	14,242,220	-	15,532
- 구조개선사업계정	5,932,315	5,932,315	-	5,932,315	6,228,057	6,218,324	-	9,733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7,649,777	7,649,777	-	7,649,777	8,029,695	8,023,896	-	5,79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29	42,929	-	42,929	5,516	5,504	-	12
- 투자계정	20,915	20,915	-	20,915	497	485	-	12
- 융자계정	22,014	22,014	-	22,014	5,019	5,019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236	235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332	14,332	-	14,332	4,032	3,243	-	789
- 지역자율계정	13,487	13,487	-	13,487	3,911	3,122	-	789
- 지역지원계정	845	845	-	845	-	-	-	-
- 제주계정	-	-	-	-	121	121	-	-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848	2,324,848	-	2,324,848	2,429,107	2,429,035	-	73
- 손익계정	2,324,848	2,324,848	-	2,324,848	2,429,106	2,429,034	-	73
- 자본계정	-	-	-	-	1	1	-	-
합 계	15,985,371	15,985,371	-	15,985,371	16,710,126	16,687,746	-	22,37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1조 8,214억 3,700만원으로, 이 중 20조 8,341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고 6,726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146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537,241	5,537,241	10,957	6,335	94,544	5,642,746	5,493,925	9,716	139,10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096,305	12,096,305	813,916	80,341	94,544	13,004,765	12,268,558	561,430	174,777
- 구조개선사업계정	5,080,313	5,080,313	423,774	79,915	94,544	5,598,631	5,196,960	380,382	21,289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7,015,992	7,015,992	390,142	426	-	7,406,134	7,071,598	181,048	153,48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150	15,150	-	-	-	15,150	15,150	-	-
- 투자계정	15,150	15,150	-	-	-	15,150	15,15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6,243	726,243	107,685	-	-	833,928	731,728	101,493	707
- 지역자율계정	690,985	690,985	107,685	-	-	798,670	696,522	101,493	655
- 지역지원계정	19,782	19,782	-	-	-	19,782	19,730	-	52
- 제주계정	8,017	8,017	-	-	-	8,017	8,017	-	-
- 세종계정	7,459	7,459	-	-	-	7,459	7,459	-	-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848	2,324,848	-	144,439	-	2,324,848	2,324,758	55	35
- 손익계정	2,324,848	2,324,848	-	144,439	-	2,324,848	2,324,758	55	35
합 계	20,699,787	20,699,787	932,558	231,115	189,088	21,821,437	20,834,119	672,694	314,62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1조 7,128억 2,000만원으로, 12조 1,638억 9,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조 1,230억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5.0%)되고 1조 408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27,368	2,327,368	2,188,836	2,188,578	-	258
농지관리기금	3,721,984	3,721,984	4,179,324	3,153,289	-	1,026,03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2,857,596	2,857,596	2,795,394	2,781,691	-	13,703
양곡증권정리기금	1,141,884	1,141,884	1,056,262	1,056,262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10,734	510,734	426,199	426,199	-	-
축산발전기금	1,062,803	1,062,803	1,117,734	1,116,843	-	89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451	90,451	400,150	400,150	-	-
합 계	11,712,820	11,712,820	12,163,899	11,123,012	-	1,040,88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1조 7,129억 9,800만원으로, 11조 1,230억 1,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5.0%)되고 87억 9,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816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27,368	2,327,368	-	2,327,368	2,188,578	5,285	45,393
농지관리기금	3,721,984	3,721,984	-	3,721,984	3,153,289	500	404,057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2,857,596	2,857,596	178	2,857,774	2,781,691	36	219,525
양곡증권정리기금	1,141,884	1,141,884	-	1,141,884	1,056,262	-	103,58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10,734	510,734	-	510,734	426,199	-	26,288
축산발전기금	1,062,803	1,062,802	-	1,062,803	1,116,843	2,976	12,90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451	90,451	-	90,451	400,150	-	69,881
합 계	11,712,820	11,712,819	178	11,712,998	11,123,012	8,797	881,634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자산은 전년 대비 5,058억 7,300만원이 감소한 78조 8,778억 4,2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5,541억 6,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4,494억 9,7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5,529억 5,200만원 감소한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938억 3,900만원 증가한 9조 8,795억 5,200만원으로 유동부채 1조 2,562억 1,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997억 1,200만원이 감소한 68조 9,982억 9,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2조 1,068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20억 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조 9,389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383억 7,2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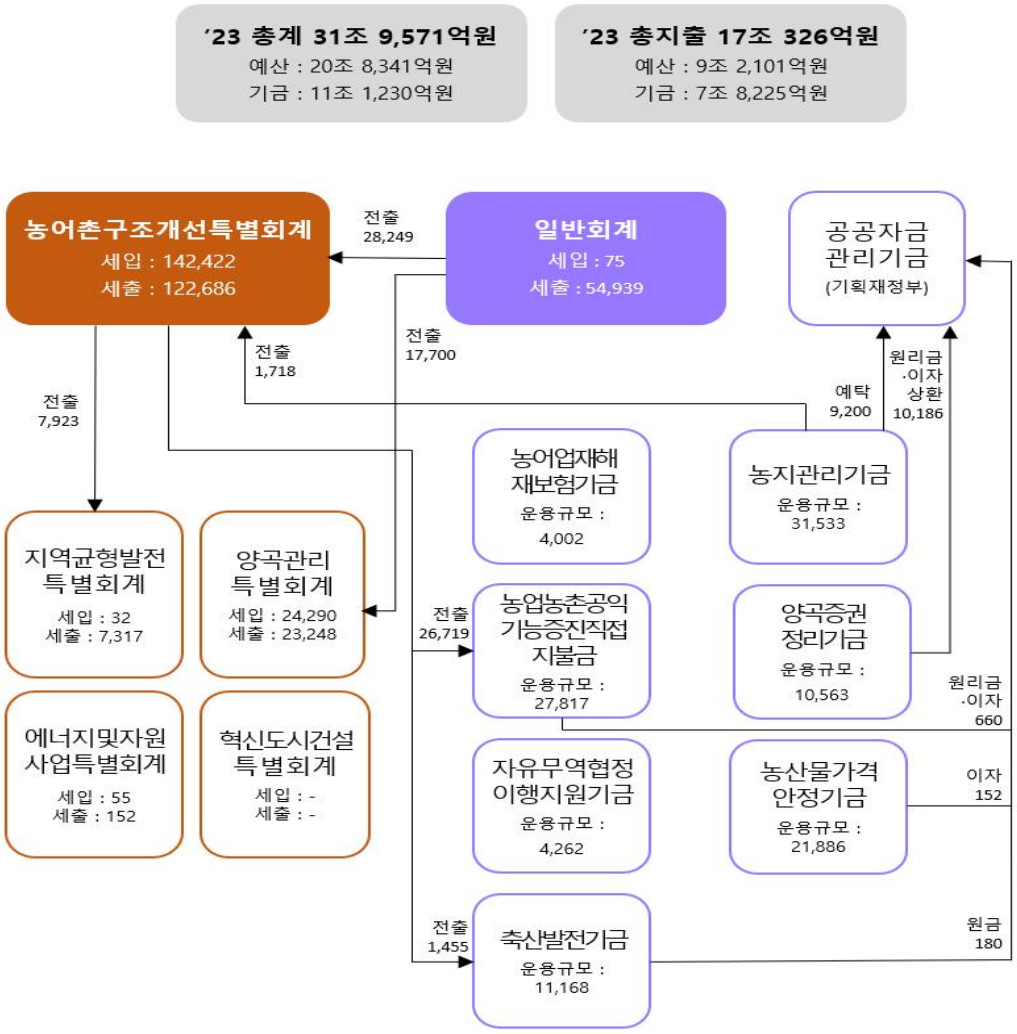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8,877,842	79,383,715	△505,873	△0.6
		유동자산	7,296,453	7,745,950	△449,497	△5.8
		투자자산	14,210,013	13,655,853	554,160	4.1
		일반유형자산	56,586,017	57,138,969	△552,952	△1.0
		무형자산	36,084	34,434	1,650	4.8
		기타비유동자산	749,275	808,510	△59,235	△7.3
	부 채		9,879,552	9,385,713	493,839	5.3
		유동부채	2,732,715	1,476,499	1,256,216	85.1
		장기차입부채	3,859,003	4,292,067	△433,064	△10.1
		장기충당부채	318,261	456,318	△138,057	△30.3
		기타비유동부채	2,969,572	3,160,829	△191,257	△6.1
	순자산		68,998,290	69,998,002	△999,712	△1.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2,106,814	10,094,768	2,012,046	19.9
	재정운영순원가		13,038,808	11,415,265	1,623,543	14.2
	재정운영결과		11,938,933	10,300,561	1,638,372	15.9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6개 회계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 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조성 등을 2023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313개 세부사업에서 식량자급률 상승세 전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농가 경영 안정 뒷받침,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 안정, 농촌지역 활성화 촉진 및 농지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해 집행하였음.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교육사업은 교내실습 과정 운영을 위한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4년에도 원래 목적대로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지원 및 기획사업 중 식물검역 생물안전 연구동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연례적인 이월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행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은 부지확보 곤란 외에도 예산편성 상의 오류로 인한 전용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오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한도 안에서 공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수요도 부족하고 사업의 진척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포기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이 침체되어 있으므로, 사업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추진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다섯째,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공모계획서와 같은 필수적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당 사업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사업: 충실한 사전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가. 개 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교육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 그리고 졸업생들의 영농정착 지원 및 대학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38억 3,900만원 중 210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4%)되고, 7억 7,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3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23,541	23,541	433	△135	23,839	21,068	777	1,994	23,343
	현장교육	5,837	5,837	60	65	5,962	4,763	-	1,199	5,461
	교육지원	10,369	10,369	331	△45	10,640	9,531	777	332	10,235

내역사업인 **‘현장교육’**은 이론 및 실습을 균형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국내외 선진 경영체의 현장교수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2학년 장기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9억 6,200만원 중 47억

2)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1110-300)(한국농수산대학교)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8%)되고 11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교육지원’**은 대학교육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대학 홍보비, 공공요금, 교육시설・장비 유지보수비, 평생교육과정 운영비, 실습시설・장비 및 구축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6억 4,000만원 중 95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6%)되고 7억 7,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교육사업은 교내실습 과정 운영을 위한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4년에도 원래 목적대로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현장교육사업은 2학년의 2개 학기 중 8개월간 국내외 선진농어업 경영체 등에서 현장교수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58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000만원(22.4%) 증액되었음.[3)]

이러한 현장교육사업의 2023년도 예산집행률은 예산현액 59억 6,200만원 중 47억 6,3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9.8%를 기록하고 있음.

[현장교육 사업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4,767	1,209	△11	5,965	5,373	60	532	90.1
2023	5,837	60	65	5,962	4,763	-	1,199	79.8

자료: 농식품부

이는 전년도인 2022년의 90.1%에 비하면 10%p 이상 저조한 실적으로, 이에 대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학생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표준적인 교외실습 외에 교내실습이 포함된 자율형 실습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교내실습을 신청한 학생이 없어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4)]

3) 학년별 정원은 570명이나 2024년 6월 말 기준 재학 중인 학생수는 1학년 464명, 2학년 495명, 3학년 518명으로 총 1,477명이며, 휴학생이 총 300명, 2024년 제적인원은 20명, 자퇴 인원은 3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이 외에도 2022년에 교외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안전점검 컨설

[2023년 현장교육 유형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표준형			경영체 등(기간 중 8개월)									
자율형	교내 실습(2개월)		경영체(기간 중 2개월)			교내 실습(2개월)			경영체(기간 중 2개월)			
			경영체(1개월)		기관(1개월)				경영체(1개월)		기관(1개월)	

자료: 농식품부

그런데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내실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3년에 신규로 편성한 교내실습용 급식비 예산 2억 2,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교내실습용 급식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223	-	-	223	-	-	223	0.0
2024. 5. 현재	223	-	-	223	-			

자료: 농식품부

이러한 교내실습용 급식비 예산은 2024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5월 말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원래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5)]

그러므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교육지원사업 중 새만금 스마트농업 실습장 구축은 2023년에 해당 실습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원과 해당 시설에 구축할 드론시스템 등에 관한 기초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진척이 저조하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팅 예산을 8억원 증액하였으나 4억 2,200만원의 집행에 그침에 따라 3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고, 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실습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4억 6,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5)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삭감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교육지원사업 중 ‘새만금 스마트 농업실습장 설비 구축’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7억 9,200만원의 예산액 중 7억 3,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2.8%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예산현액 11억 6,700만원 중 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6,600만원을 이월함에 따라 50.2%에 불과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새만금 스마트 농업실습장 설비 구축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792	-	-	792	735	52	5	92.8
2023	1,115	52	-	1,167	586	566	13	50.2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해당 실습장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부지 임차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설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비 등이 이월되었고, 실습장에 구축 계획인 드론 및 드론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목표 기술 수준을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임에 따라 기초자료 확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자산취득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2023년에 해당 실습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원과 해당 시설에 구축할 드론시스템 등에 관한 기초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였다는 의미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동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해당 실습장 부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용수 공급설비 구축 관련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되어 설계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실습장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6)]

한편,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임차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가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4월에 계약하여 2023년 3월까지 임차하였고, 2023년에는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7)]

6)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해당 부지 인근의 저류지를 활용하여 실습장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염분제거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작물 외 타작물 재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7)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3년에는 대학 시험포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로 인하여 농식품부의 대학 시험포 관리 처분계획 승인이 7월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농학계 대학 사업평가 계획도 순연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실습장 부지 사용 임차계약이 8월에 체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1년 단위의 계약연장 방식은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완료 후의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임차계약을 장기로 전환하여 시설 완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지원 및 기획 사업: 집행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연구지원 및 기획’ 사업은 새로운 질병의 확산 및 악성 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연구기획 및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연구시설·장비 운영 관리를 통하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2억 5,700만원 중 203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5%)되고, 76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도 연구지원 및 기획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R&D)	38,632	38,632	8,933	△150	47,415	38,916	7,645	854	40,664
연구지원 및 기획	19,496	19,496	8,911	△150	28,257	20,350	7,612	295	20,944

나. 검토의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지원 및 기획사업 중 식물검역 생물안전 연구동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연례적인 이월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행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지원 및 기획사업을 통하여 식물검역 생물안전 연구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의 설계비 7억 4,000만원에 2022년과 2023년 및 2024년의 공사비 등 190억 3,500만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197억 7,500만원으로 연면적 3,102㎡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음.

8) 일반회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6234-300)(농림축산검역본부)

그런데 동 연구동 건축은 사업초년도인 2021년부터 사업이 지연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1.7.27. ~ 2022.7.15.까지 추진되었으며, 공사계약이 2022.12.23.에 체결되어 2023년 1월 26일에야 착공됨에 따라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식물검역 생물안전 연구동 건립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1	740	-	740	507	210	23	68.5
2022	8,566	210	8,776	229	8,547	-	2.6
2023	6,662	8,547	15,209	9,759	5,450	-	64.2
2024.4.	3,807	5,450	9,257	1,057	-	-	11.4

자료: 농식품부

2022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 등 85억 4,700만원이 이월됨에 따라 2.6%에 불과한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예산액 66억 6,200만원의 81.8%인 54억 5,0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연례적인 이월의 발생은 2021년 7월에 설계비 집행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예측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2022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직접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의 예산을 계획변경 없이 무리하게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 것임.

그러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무리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도별 예산투입계획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연구동은 공사계약 기간이 2024년 7월 18일에 만료될 예정이나 2024년 4월 말 기준의 예산집행실적이 예산현액 92억 5,700만원 중 11.4%인 10억 5,7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시기까지 완공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며, 차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BL3[9] 검증까지 통과하여야 사업이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9) Biosafety Level 3: 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으로부터 실험자의 인체감염사고와 병원체 유출 가능성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연구시설로, 메르스·탄저 및 야토병 등 고위험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입>

3.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국고보조금의 반환금·국비출연금의 정산금 또는 과오지급금 회수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에는 531억 6,3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435억 8,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2.0%)되었고, 95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10)]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53,011	53,011	53,163	43,587	-	9,575	82.0	61,780

나. 검토의견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수납액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특히, 2023년도의 경우에는 2022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135.5%나 증가한 95억 7,500만원을 기록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11)]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0	53,011	53,011	47,554	45,812	-	1,742	96.3
2021	53,011	53,011	64,789	60,814	-	3,975	93.9
2022	53,011	53,011	66,651	62,585	-	4,066	93.9
2023	53,011	53,011	53,163	43,587	-	9,575	82.0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수납액 대부분이 지자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추경편성을 통한 납부독촉 등 관리를 통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2023년 미수납 사유별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미수납사유	관계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기간미도래		기타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8,924	93.2	230	2.4	207	2.2	214	2.2	9,575	100

자료: 농식품부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수년째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납부독촉에 그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의 집행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실제 집행상황을 충실히 파악한 후 집행

1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의 미수납액 95억 7,500만원 중 1건이 49억 2,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건이 전액 수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미수납액이 46억 5,000만원으로 2022년의 40억 6,600만원보다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납률 또한 91.3%로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는 점은 동일함.

가능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미수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서 관련 사항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 출>

4.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신규): 예산편성 오류로 인한 사업지연 주의 필요

가. 개 요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사업 지원,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실증 및 인프라 시설임대, 농업관계자 대상 기후변화 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1억 3,500만원 중 9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4%)되고, 12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3년도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2,135	2,135	-	-	2,135	927	1,207	1	1,794

나. 검토의견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은 부지확보 곤란 외에도 예산편성 상의 오류로 인한 전용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오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한도 안에서 공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94억 1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2023년 예산집행실적이 당초 계획의 43.4%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부지 13필지 중 국·공유지인 12필지는

12)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2240-410)(동물복지환경정책관)

2023년 10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사유지인 1개 필지의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으며, 해당 사유지는 2023년 12월에 해남군에서 매입을 완료한 후 2024년 4월 해남군 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거쳐 5월 현재 토지 분할 및 농식품부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13)]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부지 보상 및 확보과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이 외에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여 사업의 진척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즉,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비를 실시설계비(420-02)에 총괄 편성함에 따라 실시설계비 12억 5,600만원 중 1억 5,400만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전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임.

[2023년도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으로	금액	사유
전용 (2023.5.15)	실시설계비(420-02)	기본조사설계비(420-01)	154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가 실시설계비에 총괄 반영되어 일부 전용

자료: 농식품부

이러한 전용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 진행 등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가 2023년 6월로 지연되었으며, 연내에 일정 부분 진행할 계획이었던 실시설계는 2024년 2월에야 공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 주요 추진 현황]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부지 감정평가	2023. 5. ~ 7.
건축 기본계획 수립	**2023. 7. 5. ~ 12. 28.**
국공유지 협의 보상	2023. 10.
잔여 사업부지 협의 완료(해남군 매입)	2023. 6. ~ 12.
공공건축 심의	2023. 11.
조달청 설계공모 공고	**2024. 2. 6.**

13) 해당 사유지 2,975㎡ 중 동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2,884㎡를 분할하여 농식품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91㎡는 해남군 소유로 편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공유재산 매각심의	2024. 4.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360일)	**2024. 5. 21.**
잔여 부지 분할 및 보상 등기 이전	2024. 5.
설계완료	**2025. 5.**
시공사 선정의뢰	2025. 6.
착공	**2025. 8. 이후**

자료: 농식품부

그 후 조달청의 계약절차를 거쳐 2024년 5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임. 착공은 조달청의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등 17억 9,400만원도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2025년부터 편성될 예정인 공사비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동 사업은 연례적인 이월사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2024년도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2024	보상비	-	105	105
	실시설계비	1,256	1,102	2,358
	감리비	488	-	488
	시설부대비	50	-	50
	합계	1,794	1,207	3,001

자료: 농식품부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내용과 예산편성의 불일치라는 오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2025년 예산편성에서는 동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한도 안에서 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사업수요 부족 및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농촌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며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농촌마을 단위의 RE100을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6억 7,200만원 중 36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4)]

[2023년도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4,142	4,142	-	±200	-	4,142	4,142	-	-	2,816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3,672	3,672	-	±200	-	3,672	3,672	-	-	2,766

나. 검토의견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수요도 부족하고 사업의 진척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포기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이 침체되어 있으므로, 사업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추진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농업농촌 RE100[15)] 실증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연도별로 4개소씩 선정하여 2년간 총 9억 1,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발전소, 주택 및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에는 사업공모를 5회 실시하여 4개소(강릉, 화순, 정선, 보령)를 사업대상지로

14)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동물복지환경정책관)

15) Renewable Electricity 100: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거나 그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선정하였는데, 강릉과 화순은 2022년 12월에, 정선은 2023년 5월, 보령은 2023년 7월에 사업대상지로 각각 선정되었음.

정선과 보령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컨설팅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도 순연되어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선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4년 3월에야 마을발전소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구조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2024년 7월부터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보령의 경우에는 2024년 1월에 농어촌공사와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마을발전소 세부설계를 8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한편, 강릉과 화순은 한전과의 전력계통 연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컨설팅 추진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2024년 6월 말 현재까지도 기록되지 않고 있음.

[2023년도 신규 대상지역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지역	대상지 선정	위수탁계약	마을법인 설립	발전소 설계완료	착공
강원 강릉	2022. 12.	2023. 12.	-	-	-
전남 화순	2022. 12.	-	-	-	-
강원 정선	2023. 5.	지자체 직접 수행	2024. 하반기 예정	2024. 3.	2024. 7 예정
충남 보령	2023. 7.	2024. 1.	2024. 5.	2024. 8. 예정	2024. 9. 예정

자료: 농식품부

그리고 2022년에 시작된 4개 지역은 춘천, 서천, 홍성 및 화순[16]으로 사업기한인 2023년 내에 완료한 지역은 춘천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머지 3개 지역 중 서천은 2024년 6월에야 마을발전소 설계를 완료하였고, 홍성은 2023년 8월에 마을발전소 설계를 완료한 이후 한전과의 계통보강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진척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순의 경우에는 주민 간 갈등으로 전력 계통 관련 대안부지 발굴 등을 위한 지자체 내부적인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6) 화순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다른 마을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

[2022년도 신규 대상지역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지역	대상지 선정	위수탁계약	마을법인 설립	발전소 설계완료	착공	완료
강원 춘천	2022. 2.	2022. 12.	2022. 10.	2023. 7.	2023. 7.	2023. 12.
충남 서천	2022. 2.	2022. 9.	2022. 10.	2024. 6.	-	-
충남 홍성	2022. 2.	2022. 8.	2022. 12.	2023. 8.	-	-
전남 화순	2022. 2.	2022. 11.	2022. 12.	-	-	-

자료: 농식품부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컨설팅을 제외한 동 사업의 2022년과 2023년의 예산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16억원의 예산액 중 9억 1,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7.2%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6억 8,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억 5,700만원 중 4억 6,800만원의 집행에 그침에 따라 11.3%의 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 사업 실집행현황(2022년 및 2023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시행주체(지자체)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1,600	-	1,600	915	685	-	57.2
2023년	**3,472**	**685**	**4,157**	**468**	**3,689**	**-**	**11.3**

주) 컨설팅 사업비 2억원 제외
자료: 농식품부

2023년의 실집행액 4억 6,800만원은 모두 2022년에 시작한 지역에서 집행한 것이고, 2023년에 시작한 지역의 실집행액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2022년에 비하여 사업이 더욱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수요도 부족하고 사업의 진척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포기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침체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포함하여 추진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액 36억 7,200만원 중 2억원을 지자체자본보조(330-03)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로 전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2023년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으로	금액	사유
전용 (2023.3.8.)	지자체자본보조 (330-03)	민간경상보조(320-01)	200	컨설팅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 시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전문기관에 업무 이관을 위해 민간경상비로 전용

자료: 농식품부

2022년과 2024년에는 해당 사업비가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편성 과정 상의 실수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동물보호 복지대책 사업: 공모계획서 지연 등에 따른 사업실적 저조 주의 필요

가. 개 요

‘동물보호 복지대책’ 사업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확산 및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3억 2,800만원 중 107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4%)되고, 15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3년도 동물보호 복지대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동물보호 복지대책	12,328	12,328	-	-	-	12,328	10,776	-	1,552	12,532
유기동물입양센터설치지원	180	180	-	-	-	180	180	-	-	210
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	1,800	1,800	-	-	-	1,800	248	-	1,552	2,160

내역사업인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내 구조 및 보호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안락사 감소를 위해 지자체의 입양전문센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은 유실 및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보호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8억원 중 2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3.8%)되고 15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17)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동물보호복지대책(3741-338)(동물복지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공모계획서와 같은 필수적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당 사업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2023년에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인천과 구미 등 2개소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각 10억원 중 30%인 3억원을 2년간 지원하여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음.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계획서 작성이 늦어지는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공모절차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로 지연되어 7월에야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음.

이와 더불어 인천의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총사업비가 17억 2,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설계비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공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됨으로써 별도의 심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음.[18)]

그리고 예정 부지가 도로시설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4년 6월 현재 건축기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인천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대상자 선정	**2023. 7.**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치 계획 수립(사업확대)	**2023. 8.**
건축기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	2024. 4. ~ 10. (6개월)
공공건축 심의	2024. 10.(예정)
실시설계용역	**2024. 10. ~ 2025. 3.(예정)**
센터 착공 및 준공	2025. 4. ~ 2026. 6.

자료: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최소한 2025년 4월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사업 완료시기는 2026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던 2년차 국고지원금 2억 1,000만원이 국회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하였음.

18) 인천의 사업규모 확대로 설계비가 1억 2,9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구미도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7월에 인천과 함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교부는 그 후 8월에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착공은 2024년 1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구미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대상자 선정	**2023. 7.**
국고보조금 교부	**2023. 8.**
지방비 추경예산 편성	2023. 12.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추진	2024. 2. ~ 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 5. ~ 11.**
센터 착공 및 준공	2024. 12. ~ 2025. 7.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계획서 준비가 늦어져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방비 추가 편성을 통한 계획 변경 및 해당 부지 상황 등에 관한 현황 파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던 것임.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3년도 지자체의 실집행액 전무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 5월 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추진주체(지자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180	180	-	180	-	180	-	0.0

자료: 농식품부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과 같이 공모계획서와 같은 필수적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당 사업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은 대상시설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시설인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재원구조 상 자부담이 20%를 차지함에 따라 사업신청이 부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대상의 현황과 이에 따른 지원 가능성 여부 등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사업초년도부터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22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초년도인 2022년부터 2년 연속으로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에는 18억원의 예산액 중 15.4%인 2억 7,65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5,850만원은 2023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23년에는 18억원의 예산액 중 13.8%에 불과한 2억 4,8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여 예산현액 3억 650만원 중 2억 1,05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1,800	276.5	1,523.5	276.5	-	276.5	218	58.5	-	78.8
2023	1,800	248	1,552	248	58.5	306.5	210.5	28	68	68.7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대상시설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시설[19]인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재원구조 상 자부담이 20%를 차지함에 따라 사업신청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개선하여 2분의 1로 낮추었다고 제시하고 있음.

19)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동물 100두 이상의 시설 46개소 중 가설건축물 21개소, 농지에 위치한 15개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2개소, 산지에 위치한 2개소 등 40개소의 불법시설물이 확인되었음.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재원구조 변경 현황]

(단위: %)

연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2022년 및 2023년	20	30	30	20
2024년부터	20	20	50	10

자료: 농식품부

그러나 이러한 대상시설의 현황과 재원 구조에 대한 검토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연히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각 연도별로 15개소씩 지원을 계획하였던 것과는 달리 2022년에는 8개소, 2023년에는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연내에 완료한 곳은 각각 5개소와 2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지원실적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지원계획(A)	지원 실적	연내 완료(B)	이월 완료	중도 포기
2022	15	8	5	3	-
2023	15	3	2	-	1

자료: 농식품부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사업대상의 현황과 이에 따른 지원 가능성 여부 등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사업초년도부터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이 예산편성 주의 필요 등

가. 개 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보전과 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하여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71억 8,600만원 중 171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3년도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통발효 식품육성	17,246	17,246	-	△60	-	17,186	17,124	59	3	18,476
발효식품산업 경쟁력강화	4,130	4,130	-	△20	-	4,110	4,048	59	3	2,480
김치원료공급 단지구축	5,800	5,800	-	-	-	5,800	5,800	-	-	8,860

내역사업인 **‘발효식품산업 경쟁력강화’** 는 전통발효식품의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를 위한 종균개발 및 보급지원, 발효식품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1억 1,000만원 중 40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 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및 절임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중소업체의 김치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8억원 중 58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20)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전통발효식품육성(2832-310)(식품산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발효식품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중 발효식초산업 플랫폼구축은 사업타당성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2년차에 선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부지 변경이 사업 3년차인 2023년에 이루어지는 등 사업의 지연이 심각하므로, 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발효식품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중 내내역사업인 ‘발효식초산업 플랫폼구축’ 사업은 2021년에 시작되어 2023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중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1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 공모를 2021년 12월에 실시하여 2022년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기 때문임.

즉,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대상지역 선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초년도의 절반이 지나간 이후에야 이를 위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었고,[21] 그 후 사업 3년차인 2023년 1월에는 사업 대상부지를 변경[22]하여 2021년과 2022년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100	-	-	100	-	-	-	-	-	-	0.0
2022	450	100	450	-	550	-	550	-	550	-	0.0
2023	1,450		1,450		1,450	550	2,000	261	1,739	-	13.1
2024	-		-		-	1,739	1,739	21	-	-	1.2

자료: 농식품부

21) 당초 계획에 없던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연구용역비로 비목변경하는 절차(2021. 4.)가 필요했으며, 이로 인하여 연구용역 추진도 7월로 지연되었음.

22)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창군 서남부권 발효식품산업 특화거점공간 구축’ 계획에 따라 식품 관련 사업을 집중화하고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대상 부지를 변경함.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해야 할 시기인 2023년 12월에 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에 착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발효식초산업 플랫폼구축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 공모	**2021. 12.**
사업대상자 선정	2022. 3.
부지변경 승인	**2023. 1.**
실시설계 제안공모	2023. 5. ~ 6.
실시설계 완료	**2023. 7. ~ 11.**
공사입찰 및 계약	2023. 12.
공사 착공	**2024. 1.**

자료: 농식품부

그러나 1월은 동절기로 통상 추진 중이던 공사도 중단하는 시기로서 실제로는 2월까지 부지 내 지장물 정리 등 행정처리를 고창군에서 실시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3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개년 동안 아무런 실집행실적을 기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시기에 공사입찰을 추진하는 등 사업의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동일한 사유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나머지 사업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져 사업이 2022년부터 지연되었고 2023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지연으로 순연되어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을 최초 계획 그대로 편성함에 따라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사업은 2022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해남과 괴산에 각각 1개소씩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소당 총사업비 290억원 중 40%인 116억원의 국비를 4년간 지원하여 202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2022년 9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후 필요적 사전행정절차인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지연되어 해

남은 2022년 12월에 조건부 승인, 괴산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후 2023년 3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3)]

이에 따라 2022년의 구체적인 사업진척 및 예산실집행실적은 해남의 건축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이에 따른 2,200만원의 집행 외에는 없음.

2023년에는 해남의 경우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업체의 적격심사 결과 자격 미달로 재공고 절차를 거쳐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괴산은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지역	주요추진경과	일자
해남	**사업대상자 선정**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건축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용역 공모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업체 공모	**2022. 9.** 2022. 12. 2022. 12. ~ 2023. 6. 2023. 7. ~ 10. **2023. 11. ~ 2024. 10.(예정)** 2024. 11. 이후(예정)
괴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대상자 선정**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업체 공모	2022. 2. ~ 9. **2022. 9.** 2023. 3. **2023. 6. ~ 2024. 6.(예정)** 2024. 7. 이후(예정)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해남과 괴산 모두 20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착수에 그침에 따라 2023년의 예산실집행실적도 저조하여 2023년의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음.

23)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치원료공급단지의 시설운영 방향, 적정 사업규모,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대상자 공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역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2022	해남	580	580	580	-	580	22	558	3.8
	괴산	580	580	580	-	580	-	580	0.0
	계	1,160	1,160	1,160	-	1,160	22	1,138	1.9
2023	해남	2,900	2,900	2,900	558	3,458	296	3,162	8.6
	괴산	2,900	2,900	2,900	580	3,480	648	2,832	18.6
	계	**5,800**	5,800	5,800	1,138	6,938	944	**5,994**	13.6
2024. 5. 현재	해남	3,480	-	-	-	-	-	-	-
	괴산	3,480	-	-	-	-	-	-	-
	계	6,960	-	-	-	-	-	**-**	-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은 실집행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역의 2024년도 예산을 최초 사업계획 그대로 34억 8,000만원씩 편성함에 따라 사업의 순연으로 인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순연으로 인하여 예산실집행실적의 저조가 예측될 경우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국고보조금을 적정한 비율로 조정하여 교부하고, 차년도 예산도 감축하여 편성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불필요하게 국고보조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사업: 중도 포기 지역 발생 및 연례적 실집행부진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그린바이오 6대 산업 분야인 곤충,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38억 2,200만원 중 138억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3년도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13,822	13,822	-	-	-	13,822	13,806	-	16	26,332
곤충산업화 지원	1,140	1,140	-	-	-	1,140	1,140	-	-	600
곤충산업거점 단지조성	5,250	5,250	-	-	-	5,250	5,250	-	-	5,750

내역사업인 **‘곤충산업화지원’** 은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를 대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곤충 생산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1억 4,000만원 중 11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 은 곤충양잠산업의 거점화 및 규모화 등 체계 마련을 위해 곤충생산가공시설 및 설비, 유통시스템 등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2억 5,000만원 중 52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24)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2271-303)(식품산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진척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하므로, 사업대상 지역 선정과정 상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2년간 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하되,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차에는 국비 지원액의 40%인 1억 2,000만원, 2년차에는 60%인 1억 8,000만원을 교부하고 있음.

2023년 예산액은 2022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5개소(충북 보은,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예천, 경북 문경)의 2차년도 사업비 9억원과, 2023년도에 선정된 경북 상주와 경남 창녕 등 2개소의 1차년도 사업비 2억 4,000만원 등 총 11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례적인 실집행부진과 이월을 기록하고 있음.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600	600	600	293	893	293	600	-	32.8
2023	1,140	1,140	1,140	600	1,740	662	528	590	38.0

자료: 농식품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보은, 남원 등 5개소는 2022년의 예산액 6억원 중 예산 실집행실적이 전무하였고(위의 표 중 2022년도의 실집행액 2억 9,300만원은 2021년도에 선정된 지역의 집행액), 2년차인 2023년에는 전남 담양이 사업을 완료한 것 외에 4개소는 연속하여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중 충북 보은과 경북 문경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보은의 경우에는 곤충 가공장비의 규격 및 사양에 관한 문제로 납품업자와의 입장 차이가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문경은 사업부지 변경의 곤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북 예천의 경우에는 협력농가의 사업포기로 새로운 사업자 물색 및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전북 남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서류 및 설계

보완 등으로 입찰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선정 지역별 2023년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보은	180	180	180	120	300	13	-	287	포기
문경	180	180	180	120	300	-	-	300	포기
예천	180	180	180	120	300	136	164	-	45.3
남원	180	180	180	120	300	118	182	-	39.3
담양	180	180	180	120	300	300	-	-	100
계	900	900	900	600	1,500	567	346	587	37.8

자료: 농식품부

그리고 2023년에 선정된 경북 상주는 사업부지가 진입로보다 낮아 대규모 성토공사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협의 및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실집행실적이 전무하며, 경남 창녕은 악취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2023년 선정 지역별 2023년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상주	120	120	120	-	120	-	120	-	0.0
창녕	120	120	120	-	120	55	65	-	45.8
계	240	240	240	-	240	55	185	-	22.9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진척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지역[25]도 나타나고 있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 1월에 예산집행

25) 2021년에 선정된 지역 중 전북 장수의 경우에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음. 사유는 군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황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지역이 중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업대상 지역 선정과정 상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행정절차로 인하여 예산실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예산집행 상의 보조금 교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제한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적절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개소당 총사업비 200억원 중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총액 100억원 중 1년차에는 5억원,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47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023년 예산액은 2022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경북 예천의 2차년도 사업비 47억 5,000만원과 2023년도에 선정된 강원 춘천의 1차년도 사업비 5억원 등 총 52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천	4,750	4,750	4,750	500	5,250	-	5,250	-	0.0
춘천	500	500	500	-	500	-	500	-	0.0
계	5,250	5,250	5,250	500	5,750	-	5,750	-	0.0

자료: 농식품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북 예천은 2022년의 예산액 5억원 중 예산 실집행실적이 전무하여 2023년도로 전액 이월되었고, 2년차인 2023년에도 실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에 선정된 강원 춘천도 실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예천의 경우 조성할 단지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여 설치가 어려운 시설이 일부 존재하며, 예천군에서 동 사업 기본계획을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2023. 4.~12.)으로 확대 변경함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강원 춘천은 5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10월)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12월) 등 필수적인 사전절차로 인하여 실시설계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지역	주요추진경과	일자
예천	사업대상자 선정	2022. 6.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3. 4. ~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 3. ~ 8.**
	시행계획 승인 및 각종 인허가(예정)	2024. 7. ~ 8.
	착공(예정)	2024. 9. 이후
춘천	사업대상자 선정	2023. 5.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023. 1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추경 편성	**2023. 12.**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 4. ~ 8.**
	시행계획 승인 및 각종 인허가(예정)	2024. 9. 이후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행정절차로 인하여 2023년도 예산액의 실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천의 경우 2023년 3월과 4월에 각각 5억 1,850만원과 42억 3,150만원을 교부하였고, 춘천은 2023년 8월에 5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경북 예천		강원 춘천	
시기	금액	시기	금액
2023. 3. 31.	518.5	2023. 8. 2.	500
2023. 4. 28.	4,231.5		

자료: 농식품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단계에서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 상의 보조금 교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26)]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제한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적절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6)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함.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9. 실증기업 지원 사업: 기업지원 실적 저조 및 중도 포기업체 증가로 인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등

가. 개 요

‘실증기업 지원’ 사업은 실증단지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 및 스마트팜 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단지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0억원 중 30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7)]

[2023년도 실증기업 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스마트팜 실증단지	8,426	8,426	-	△1,030	-	7,396	7,394	-	2	6,104
실증기업 지원	4,000	4,000	-	△1,000	-	3,000	3,000	-	-	2,000

나. 검토의견

첫째, 실증기업 지원사업은 지역별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중도 포기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의 절반이 ‘계획변경 또는 스마트팜 부적합’ 이라는 점에서 기업 선정과정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실증기업 지원사업은 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조성된 실증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실제 지원실적은 2022년부터 나타나고 있음.

2022년에는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입주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 10억원 중 2억 3,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각 기업당 1,18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북 상주에서는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억 6,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각 기업당 1,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7)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스마트팜 실증단지(2220-386)(농식품혁신정책관)

2023년에는 김제의 경우 20개 기업에 7억 6,500만원으로 각 기업당 3,800만원, 상주는 21개 기업에 3억 4,100만원으로 각 기업당 1,600만원, 밀양은 9개 기업에 2억 8,600만원으로 각 기업당 3,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흥의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연도별 지역별 실증기업 지원 실적 현황]

(단위: 개, 월, 백만원, %)

연도	지역	입주기업 수	평균 입주기간	지원금액	업체당 금액
2022	김제	20	5.8	236.5	11.8
	상주	19	8.6	266.9	14.0
	합계	**39**	**-**	**503.4**	**15.3**
2023	김제	20	11.4	765.3	38.3
	상주	21	11.3	341.3	16.3
	밀양	9	5.3	285.6	31.7
	고흥	11	2	-	-
	합계	**61**	**-**	**1392.2**	**22.8**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첫해에는 아무런 지원을 기록하지 못하였고, 2022년에는 전체 4개 지역 중 2개 지역에서, 2023년에는 4개 지역 중 3개 지역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22년과 2023년 각각 40억원이 편성된 예산액에 비하면 지원실적이 2022년에는 5억 300만원, 2023년에는 13억 9,200만원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동 사업은 2022년에 2개, 2023년에 8개의 기업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인 5개 기업의 사유가 '계획 변경 및 스마트팜 부적합'이며, '실증종료'를 사유로 퇴거한 업체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도 포기업체 및 사유]

연도	지역(포기업체수)	포기 업체	사유
2022	김제(2)	아○○○	김제 및 상주로 이원화된 실증의 일원화
		㈜에○○○	실증수행 인력 및 준비 미비
2023	김제(2)	앳○○○	**시설재배 계획 변경**
		㈜아○○○	경영난

연도	지역(포기업체수)	포기 업체	사유
	상주(6)	㈜바○○○	실증종료
		㈜데○○○	**실증대상 작물이 스마트팜에 부적합**
		보○○○	**실증대상 작물이 온실재배 환경에 부적합**
		히○○○	실증종료
		㈜짐○○○	**수확물 이송로봇 실증계획 변경**
		㈜한○○○	실증종료

자료: 농식품부

이는 당초 입주 기업 선정부터 적절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정과정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업지원 실적 저조[28]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증기업 지원사업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밸리 내의 실증온실 조성이 지연되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3년 연속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정확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실증기업 지원사업의 예산실집행실적 또한 연례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은 예산액 20억원 중 실집행액이 전무하였고, 2022년에는 예산현액 20억원 중 33.1%인 6억 6,200만원의 실집행에 그쳤으며, 2023년에는 예산현액 30억원 중 55.4%인 16억 6,200만원의 실집행실적을 기록하였음.

28) 특히, 경북 상주의 경우 2023년도 입주기업 수 및 평균 입주기간이 전북 김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원금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실증기업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최종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2,000	600	600	-	600	-	-	600	0.0
2022	4,000	2,000	2,000	-	2,000	662	-	1,338	33.1
2023	4,000	3,000	3,000	-	3,000	1,662	-	1,338	55.4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최종사업시행주체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단계의 예산액 기준으로는 실집행실적이 더욱 저조하여 2023년의 경우 41.5%에 지나지 않음.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실증온실의 조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2021년에는 1단계 지역인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완공이 2021년 말로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고, 2022년에는 2차 지역인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의 온실 조성이 2022년 말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2023년에는 전남 고흥의 온실 조성이 2023년 10월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임.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증기업 지원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밸리 내의 실증온실 조성이 지연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3년 연속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이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정확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신규): 연내 완공 및 임대계약 체결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농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후 임대하여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5억원 중 45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9)]

[2023년도 실증기업 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임대형스마트팜	64,500	64,500	-	-	-	64,500	64,500	-	-	37,000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	4,500	4,500	-	-	-	4,500	4,500	-	-	6,000

나. 검토의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청년농 모집 및 선정 일정의 지연 등으로 연내에 완공한 스마트팜이 2개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2024년 2월에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임대형 스마트팜’과 ‘기존 농업인용 스마트팜’과는 달리 농어촌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에는 0.5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농지 0.5ha, 스마트팜 시설 0.13ha)을 총 10개소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기간 10년, 이용실태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임대 가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연내에 완공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임대계약은 2024년 2월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9)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임대형 스마트팜(2220-383)(농식품혁신정책관)

그리고 2024년 2월과 4월에 각각 2개소와 6개소를 완공하여 2024년 4월 기준으로 시설은 전체 10개소를 완료하였으나, 임대계약은 이보다 늦어져 2024년 4월과 5월에 각각 5개소과 1개소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경남 창원의 2개소는 6월 말 현재까지도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임대 목표 대비 실적 현황]

구분	목표	연내 완료	2024.2.완료	2024.4.완료	2024.5.완료	향후 계획
조성	10개 완공	2개	2개	6개	-	-
임대	10개 계약	-	2개	5개	1개	2개

자료: 농식품부

임대계약이 스마트팜 조성 완료 시기보다 지연된 것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 완공 후 계약 관련 서류 구비 및 시설물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절차로 인하여 임대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6월 현재까지도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2개소는 해당 지역 지하수 관정 개발 결과가 청년농이 희망하는 시설작물(딸기) 재배에 부적합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모내기가 끝나고 난 후 상수도를 인입하여 설비 및 급수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그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연내 조성 완료한 임대형 스마트팜도 2개소에 불과하고 임대계약도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실적도 45억원의 예산현액 중 46.8%에 해당하는 21억 800만원에 그치고 있음.

[2023년도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최종사업추진주체(농어촌공사)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4,500	-	4,500	2,108	2,392	-	46.8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10개소의 적정 사업부지 확보와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청년농 모집 및 선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30]

지원대상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계 반영 등으로 인하여 스마트팜 건축공사가 2023년 10월에 착공됨에 따라 전체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년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대상지 선정	2023. 2.
청년농 모집 및 선정	**2023. 3. ~ 5.**
세부설계 착수 및 임차인 협의	2023. 6. ~ 9.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2023. 9.
건축공사	**2023. 10.**
임대계약 체결	**2024. 2. ~ 4.**

자료: 농식품부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이 선호하는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하도록 하여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일정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스마트팜에 대한 임대계약도 연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의 구비 등 필요한 절차를 조기에 안내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0)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1차 2023.4.18., 2차 5.17, 3차 5.31.

11.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사업 첫해 예산액 전액 이월 및 2년차 사업진척 연쇄적 부진 부적정

가. 개 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사무실 공간,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종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42억 1,800만원 중 142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1]

[2023년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식품벤처 창업활성화	34,518	34,518	-	-	-	34,518	34,518	-	-	47,166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14,218	14,218	-	-	-	14,218	14,218	-	-	17,054

나. 검토의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중 지자체 추진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자체 추경 반영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첫해 예산 실집행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년차에도 설계용역 등의 지연으로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상황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원칙을 준수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은 2021년 익산, 2022년 평창 및 포항, 2023년 진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익산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하여 민간자본보조의 형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32]

31)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1150-344)(식품산업정책관)

32) 나머지 3개소는 모두 지자체 자본보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해당 지역의 사업이 모두 예산실집행실적 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익산은 첫해를 제외하고는 2년 연속 20% 미만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모두 첫해에는 예산 실집행실적이 전무하고, 2년차 실적도 10%대를 보이고 있음.

익산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10일 총사업비가 191억원에서 235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33] 그 이후 설계에 대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및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로 인하여 설계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3년 12월 27일에 착공할 수 있었음.[34]

이와 같이 2022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2023년의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2023년도 예산을 과다 편성함에 따라 3.8%에 불과한 예산 실집행률을 기록하였음.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500	500	500	-	500	500	-	-	100
2022	3,420	3,420	3,420	-	3,364*	550	2,814	-	16.4
2023	8,730	8,730	8,730	2,814	11,544	436	11,108	-	3.8

주) * 낙찰차액 5,600만원 반납
자료: 농식품부

그리고 평창과 포항의 경우에는 2022년 5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지자체의 추경 반영 및 지방재정 투심과 공공건축 기획 및 심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35]함으로써 1년차 예산 실집행실적이 전무하였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지연되어 2023년도 예산실집행실적이 평창은 17.0%, 포항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창은 설계계약 기간이 2024년 7월 22일에 만료될 예정이고, 포항은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 인허가 및

33) 2024년 5월 말 기준 익산의 총사업비는 239억원이며 향후 물가인상분 반영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음. 나머지 3개 지역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231억원 기준으로 70%인 161억 7,000만원을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69억 3,000만원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지방비를 추가 반영할 경우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포항은 350억원, 진주는 338억 7,000만원임. 평창은 231억원으로 변동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4) 기본설계 중지기간: 2022. 7. 4. ~ 2023. 1. 10.(6개월), 실시설계 중지기간: 2023. 4. 27 ~ 2023. 9. 20.(5개월)

35) 평창과 포항 모두 2022년 9월 21일 국고보조금을 교부함.

공사입찰과 계약 등의 절차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최소한 2024년 9월 정도는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평창 및 포항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평창	2022	350	350	350	-	350	-	350	-	0.0
	2023	2,394	2,394	2,394	350	2,744	467	2,277	-	17.0
포항	2022	350	350	350	-	350	-	350	-	0.0
	2023	2,394	2,394	2,394	350	2,744	364	2,381	-	13.2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2022년부터 평창과 포항의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진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진주는 2023년 6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2023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심을 거친 후 12월에야 지자체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실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36]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700	700	700	-	700	-	700	-	0.0

자료: 농식품부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2024년 1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한 후 해당 용역을 4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체결함에 따라 그 이후

36)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1.24. 5억원, 11.29. 2억원을 교부하였음.

의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과 계약절차 등을 고려하면 2024년에 편성된 공사비 23억 9,400만원도 원활히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대상자 선정	2023. 6.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3. 11. 2.
지자체 추경 반영	2023. 12. 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	2024. 1. 19. ~ 2024. 3. 2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2024. 4. 15. ~ 12. 10.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예정	2025년 3월 ~ 5월 예상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익산을 제외하고 지자체 보조로 추진 중인 3개소의 사업추진 경과가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예산 실집행실적도 동일하게 첫해에는 전무하고 2년차에는 설계 지연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 관련 예산집행지침 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현장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진주의 경우에는 2년 연속 예산 실집행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4년의 이월액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2.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시범온실 완공 지연으로 관련 교육훈련도 실적 전무 등

가. 개 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은 기자재·인력 및 기술 등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팜 관련 기업 및 종사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9억 3,300만원 중 39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7)]

[2023년도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2,733	2,733	-	1,200	-	3,933	3,933	-	-	-*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322	322	-	-	-	322	322	-	-	-
데모온실 조성	1,704	1,704	-	△56	-	1,648	1,648	-	-	-

주) *2024년도부터 농산업수출활성화(2260-375)사업으로 통합

내역사업인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지 전문 재배사, 교육전문가 활용, 현지인력 교육교재 제작, 재배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억 2,200만원 중 3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데모온실조성’** 사업은 수출 유망국에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억 4,800만원 중 16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37)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2220-388)(농식품혁신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은 호주의 데모 온실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2023년 교육실적을 기록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시범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딸기 재배를 계획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하였으나, 엽채류 단일 재배로 교육 프로그램의 규모가 감소하는 등 기획실적도 미진하므로,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국에 국내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시범온실 작물재배 및 시설관리와 현지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지인력 교육은 시범온실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시범온실의 활용 역량 강화 및 K-스마트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교육과정은 스마트팜에 대한 소개를 주로 다루는 단기교육과 스마트팜 관련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장기교육 및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상근하며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견습훈련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과정별 주요 대상 및 내용]

(단위: 시간)

구분	주요 대상	내용	기간	교육시수	방식
단기교육	농업계열 대학생, 연구원, 농업인, 기업관계자 등	스마트팜 소개과정(이론)	1주	20	온라인
장기교육	단기교육 수강자 중 우수교육생	스마트팜 종합과정(이론+실습)	3~4개월	70	(이론)온라인 + (실습)현장
특별강의	장기교육생	맞춤형 주제강의	1일	2	온라인
견습과정	장기교육생 중 상근 견습희망자 등	현지인력 집중육성	3 ~ 6개월(상근)		현장(시범온실)

자료: 농식품부

이러한 교육과정별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단기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40명이 수료하였고, 2022년에는 장기교육 및 견습훈련 과정을 실시하여 각각 18명과 7명이 수료하였음.

베트남에서는 2022년에 시기별로 단기교육과 장기교육 및 견습훈련 과정을 실시하여 각각 40명, 17명, 10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에는 호주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아무런 교육과정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8월 완공 계획이었던 호주 시범온실이 현지의 '인허가 및 항만파업' 등의 문제로 2024년 9월로 지연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운영 및 전문인력 지원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연도별 교육과정별 교육실적 현황]

(단위: 명)

연도	국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교육시기	수료인원
2021	카자흐스탄	단기교육	온라인	2021. 12. 13. ~ 12. 24	40
2022	카자흐스탄 (2021.10 완공)	장기교육	온라인, 시범온실	2022. 3. 15. ~ 5.25	18
		견습훈련	시범온실	2022. 5. 3. ~ 9. 30	7
	베트남 (2022.6 완공)	단기교육	온라인	2022. 2. 14. ~ 2. 18	40
		장기교육	온라인, 시범온실	2022. 3. 14. ~ 6. 11	17
		견습훈련	시범온실	2022. 5. 2. ~ 8. 31	10
2023	호주 (2023. 8. 완공 계획에서 2024. 9. 완공예정으로 지연)	단기교육	온라인	-	-
		장기교육	온라인, 시범온실	-	-
		견습훈련	시범온실	-	-

자료: 농식품부

이에 따라 2022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실적을 보이던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실집행실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기록하였음.

[전문인력지원 및 교육훈련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최종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0	40	40	40	-	40	40	-	-	100
2021	880	880	880	-	880	687	186	70	78.1
2022	138	138	138	186	324	256	38	30	79.0
2023	322	322	322	38	360	170	177	13	47.2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은 시범온실의 완공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데모온실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양 사업 모두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에서 1,300만원의 불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재배 작물 단일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기획비용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당초 시범용으로 딸기 재배를 계획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하였으나, 엽채류 단일 재배로 변경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교육훈련 내용 및 그 성과 면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작물인 딸기 재배 프로그램의 기획이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38)]

둘째, 데모온실 조성사업은 호주의 경우 2023년 8월 완공 계획이었으나 현지의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 9월 완공 예정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고의 예산실집행실적은 94.6%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의 집행률은 22.3%에 불과하여 자부담 우선 집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데모온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억 800만원인 호주의 2년차 완료 사업비 15억 2,500만원과 총사업비 35억원인 사우디의 1년차 사업비 1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39)]

사우디의 경우 2023년 4월에 대상국가가 확정되면서, 5월부터 사우디측 정부에 시범온실 조성 공식 협조를 위한 공문 송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2023년 12월에 구체적인 시범온실 사업제안서를 송부하는 등 해당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전액 실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반하여 호주 시범온실 조성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의 인허

38)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소규모 시범용 딸기 재배를 고려하였으나, 사업구체화 과정에서 호주 현지의 관심도 및 엽채류 재배에 활용되는 한국 스마트팜의 첨단 시스템 도입을 함께 검토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획 방향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9) 동 사업은 국비 70%,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2022년 1년차 8억 4,000만원(35%), 2023년 2년차 15억 2,500만원(65%) 등 2년간 총 23억 6,5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사우디는 2023년 1년차 1억 2,300만원(5%), 2024년 2년차 11억 300만원(45%), 2025년 3년차 12억 2,400만원(50%) 등 총 24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년차인 2022년과 그 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40]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년차 사업이었던 시범온실 조성사업을 사우디의 경우부터 3년차 사업으로 연장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호주 시범온실의 완공이 2023년 8월에서 2024년 9월로 1년 1개월이나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실집행실적은 실집행률이 94.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호주 시범온실 조성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역	농식품부		최종사업시행주체(스마트팜 시공기업)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호주	840	840	819	-	819	819	-	-	100
2023		1,525	1,525	1,381	-	1,381	1,306	75	-	94.6

주) 농식품부의 집행액과 최종사업시행주체의 교부액간 차액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운영비로 집행되었음.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건설자재 비용, 시스템 개발 용역비용, 물류 해외운송 비용 등을 국비로 선집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지 사정에 따라 구축일정 등 변동성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착공과 무관하게 우선 집행 가능한 비용은 국비로 진행하여 사업관리의 리스크를 감축하고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의 집행실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9억 4,3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의 집행으로 22.3%에 불과한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2억 5,700만원의 추가 집행에 그침으로써 49.5%에 지나지 않아 국비지원액의 실집행률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

40)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우디 시범온실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첫해인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법률, **인허가 제도**, 현지 농업환경, 스마트팜 현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음.

침」 제23조[41]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리스크 감축과 참여 기업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국내채종 기반구축 사업: 예산집행 및 채종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내채종 기반구축’ 사업은 국내 채소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기반 강화를 위하여 국내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채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9억 6,200만원 중 55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9%)되었고, 13억 9,900만원 불용되었음.[42)]

[2023년도 국내채종 기반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6,180	16,180	241	△400	3,795	19,816	18,131	136	1,549	6,598*
종자산업	7,725	7,725	142	△400	-	7,467	5,989	79	1,399	8,563
국내채종 기반구축	7,362	7,362	-	△400	-	6,962	5,563	-	1,399	7,362

주) *2024년부터 일부 내역사업이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됨

나. 검토의견

국내채종 기반구축 사업은 2년 연속 예산집행실적 및 실지원비율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므로, 국내 종자업체를 상대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의 재배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내채종 기반구축 사업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체결한 국내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채소품목별 종자 수매단가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채종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42)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품종심사 및 재배시험(6432-301)(국립종자원)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의 100%에서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일부 반등하였으나 그 전 4년간의 평균인 88.1%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내채종기반구축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3,363	-	3,363	3,363	-	-	100
2020	4,163	-	4,163	4,090	-	73	98.2
2021	5,485	-	5,485	4,509	-	976	82.2
2022	7,362	-	7,362	5,298	-	2,064	72.0
2023	7,362	△400	6,962	5,563	-	1,399	79.9

자료: 농식품부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의 채종계획(신청)량 대비 실지원물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94.6%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미만의 실지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에는 72.4%로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국내채종 기반구축사업 채종물량 현황]

(단위: 톤, %)

연도	채종계획(신청)량(A)	업체수매량	실지원물량(B)	실지원비율(B/A)
2019	228.9	256.6	178.0	77.8
2020	239.6	221.0	183.0	76.4
2021	199.5	197.8	188.7	94.6
2022	200.8	185.1	170.1	84.7
2023	269.2	194.8	194.8	72.4

주)채종계획(신청)량은 종자업체의 채종지원 신청량을 의미함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충남 및 전남 등 일부 채종지역의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채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예산집행률과 실지원비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예산집행률이 98% 이상 기록되면서 실지원비율이 각각 77.8%와 76.4%로 나타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액에 비하여 사업수요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2021년에는 예산액이 증가하면서 집행률이 하락하고 실지원비율이 94.6%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 증가 대비 사업수요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예산집행률과 실지원비율이 동시에 부진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종농가의 수도 2019년 1,080농가에서 2022년 1,219농가로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1,128농가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채종 기반구축사업 채종농가 현황]

(단위: 호)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80	1,051	1,148	1,219	1,128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예산집행실적과 실지원비율이 동시에 부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내 종자업체를 상대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의 재배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 사업추진 단계와 부합하지 않은 예산 배정 등 주의 필요

가. 개 요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은 농업용 호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조사 실시 및 수질조사 결과 수질개선이 필요한 농업용 호소에 대한 인공습지 조성, 침강지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05억 5,700만원 중 378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3%)되었고, 27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43)]

[2023년도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촌용수관리	81,450	81,450	-	-	-	81,450	78,689	-	2,761	70,088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40,557	40,557	-	-	-	40,557	37,837	-	2,720	38,654

나. 검토의견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와 부합하지 않은 예산 배정과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지구에 대한 예산 배정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구별 사업추진 상황을 충실히 파악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부합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국고 100%로 보조하는 사업과 지자체에 국고 80%의 비율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어촌공사의 경우 예산액 305억 9,500만원 중 28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지자체는 23억 6,200만원 중 15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원을 불용함으로

43)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농촌용수관리(4038-310)(식량정책관)

써 총 27억 2,000만원의 불용액을 기록하고 있음.

[2023년도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 추진주체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추진주체	예산액	집행액	이월	불용
한국농어촌공사	30,595	28,675	-	1,920
지자체	2,362	1,562	-	800
합 계	40,557	37,837	-	2,720

자료: 농식품부

이를 지구별 실집행현황으로 살펴보면, 해당 지구 관련 전체 예산 42억 8,200만원 중 7억원을 집행하고 8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불용 관련 지구별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구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경천	100	-	-	100	기본조사 미완료에 따라 설계비 전액 불용
일로2	100	-	-	100	상동
지정	100	-	-	100	상동
만운	100	-	-	100	상동
세동	1,000	-	-	1,000	상동
삼산	800	-	-	800	상동(지자체 80% 지원 사업)
수양	220	-	-	220	지방비 100% 사업(동 사업 미대상)으로 불용
우로	1,562	700	862	-	공정지연으로 공사비 이월(지자체 80% 지원 사업)
미선정	300	-	-	300	수요부족 기본조사 미신청 불용
합계	4,282	700	862	2,720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는 기본조사 검토 및 보완을 위한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천・일로2・지정・만운 지구 등 6개 지구는 기본조사 미완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편성함에 따라 배정된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었고, 수양 지구는 지방비 100%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44]임에도 불구하고 동

44)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해당 저수지 또는 담수호의 수혜 농지의 면적이 5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양지구는 수혜면적이 40ha에 해당하여 기본조사를 지방비 100%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사업의 대상으로 국고보조를 2억 2,000만원 배정함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리고 우로 지구는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배정된 예산 15억 6,200만원 중 7억원의 집행에 그치고 8억 6,2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조사비 3억원은 지자체의 수요부족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와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 지원 대상이 아닌 지구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업수요도 계획보다 부족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농어촌공사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구별 사업추진상황을 충실히 파악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부합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예산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사업수요에 대한 사전조사도 충실히 이행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15.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지자체의 사업수요 감소 및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실천모델 발굴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04억 3,100만원 중 104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45)]

[2023년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업농촌사회적 가치확산지원	36,683	36,683	-	△300	-	36,383	35,041	-	1,342	25,314
지역단위 푸드 플랜구축지원	10,431	10,431	-	-	-	10,431	-	-	-	7,490

나. 검토의견

첫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적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의 수요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45) 농특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농업농촌 사회적 가치확산 지원(4135-394)(유통소비정책관)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하위사업인 '지자체 계획 수립' 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첫 단계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별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공급모델 개발, 실증연구 등 연구용역비를 국비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7개소의 지자체를 지원하였으나 연내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4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소는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5개년간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및 실적을 살펴보면, 총 8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23개소만이 연내에 계획 수립을 완료함으로써 25.8%의 연내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음. 그리고 나머지 66개소 중 62개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년을 이월한 경우도 4개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및 수립 실적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지원계획	지원실적(A)	연내 수립 완료(B)	연내 완료율(B/A)	차년도 수립	2년 이후
2019	20	18	3	16.7	13	2
2020	20	18	1	5.6	15	2
2021	20	21	7	33.3	14	-
2022	20	15	8	53.3	7	-
2023	20	17	4	23.5	13	-
합계	100	89	23	25.8	62	4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의 실집행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이월되어 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 계획된 20개소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절차를 5차까지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46]

이에 따라 2023년도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관련 예산의 실집행실적은 4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6) 4차 선정 2023.4.25.(1개소), 5차 선정 5.30.(3개소)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관련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1,000	1,000	1,000	316	1,316	1,062	129	125	80.7
2023	1,000	1,000	1,000	129	1,129	536	508	86	47.5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적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의 수요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공모 선정 지연 및 적정 부지 선정의 혼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022년에 선정되어 구축 중인 화천의 2년차 사업과 안성의 1년차 사업이 함께 추진되었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60억원에 국비 지원비율 40%인 사업으로 국비 지원총액 24억원을 1년차에 3억원(12.5%), 나머지 21억원(87.5%)을 2년차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화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2022년 공모 선정부터 6월 30일로 지연되었고, 지자체 추경도 9월에 편성 완료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2년 12월에 시작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도 예산실집행실적이 33.7%로 부진하였음.[47)]

47)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신규로 설계비만 3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2022년 4월까지 건축비 등 국비 2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과 국비보조율 40% 등을 기재부와 협의한 후 공모절차를 거쳐 6월 30일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화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대상자 선정	**2022. 6. 30.**
국고보조금 교부	2022. 9. 21.
지자체 추경 반영	2022. 9. 2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2022. 12. 23. ~ 2023. 8. 21.**
공사 착공	**2023. 11. 29.**
동절기 공사 중단	2023. 12. 15. ~ 2024. 3. 13.
공사 재착공	2024. 3. 14.
준공 예정	2024. 9. 30.

자료: 농식품부

2023년에는 설계용역이 2023년 8월에 완료되어 건축허가 및 착공이 11월 말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 준공은 2024년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음. 다만, 2023년의 예산 실집행실적은 예산현액 22억 9,900만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화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300	300	-	300	-	300	101	199	-	33.7
2023	2,100	2,100	-	2,100	199	2,299	2,299	-	-	100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3조제2항[48]을 적용하여 2년차 국고보조금 21억원 전액을 공사계약 선금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같은 지침 같은 조 제1항[49]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적극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국고보조금과 매칭 비율대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화천의 경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우선 집행할

4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4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상황과 예산 실집행현황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성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은 비교적 늦지 않은 2023년 3월에 이루어졌으나,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물류 차량 회차 공간 부족에 따른 진입로 확장 및 옹벽 설치 필요 등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과다 소요로 9월에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부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부지 정비 비용 과다 소요로 다시 변경을 검토하여 2024년 6월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안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사업추진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지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실집행실적 또한 7.7%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안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300	300	-	300	-	300	23	277	-	7.7

자료: 농식품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7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2024년 9월에야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설계용역 추진 기간 및 시공사 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4년의 건축비 21억원은 전액 2025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안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사업대상자 선정	**2023. 3. 27.**
국고보조금 교부	2023. 6. 및 2023. 10.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부지 변경)	**2023. 9. 12.**
지자체 추경 반영	2023. 9. 25.
부지정비 비용 과다로 인한 부지 변경 검토	**2024. 2. 22.**
부지구입 (계약금 지급)	2024. 6. 21.
농식품부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부지 변경)	2024. 7. 1.
공공건축 심의 예정	2024. 7.(예정)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예정	2024. 7. ~ 9.(예정)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공모 선정 지연 및 부지 선정의 혼선 등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16.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 관행화된 재이월 발생 방지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70억 4,100만원 중 63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7%)되고, 6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50]

[2023년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반려동물인프라 구축(자율)	7,041	7,041	-	-	-	7,041	6,386	-	655	6,023

나. 검토의견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및 이월 과다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실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이나 다음연도 이월액보다 많은 경우가 단 1회도 없을 정도로 재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액 확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사업집행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추진 상황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3740-310)(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초년도부터 예산 실집행률 2.1%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예산액 중 87.3%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월하면서 연례적인 이월 및 실집행부진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동 사업은 해당연도의 예산 실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이나 다음연도 이월액보다 많은 기록이 단 1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이월액이 2019년의 19억 9,000만원에서 시작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의 49억 4,000만원 및 2022년의 60억 6,800만원을 거쳐 2023년에는 72억 6,7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2021년, 2022년 및 2023년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해당 연도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즉, 이는 해당 연도의 예산액을 연내에 전혀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그 전년도 예산액의 일부까지 함께 이월하는 재이월이 관행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원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9	2,280	2,280	2,280	-	2,280	47	**1,990**	243	2.1
2020	4,644	4,644	4,644	**1,990**	6,634	1,440	**3,383**	1,811	21.7
2021	3,526	3,526	3,526	**3,383**	6,909	1,928	**4,940**	41	27.9
2022	4,693	4,693	4,693	**4,940**	9,633	2,262	**6,068**	1,303	23.5
2023	7,041	6,386	6,386	**6,068**	12,454	4,237	**7,267**	950	34.0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방비 부족에 따른 설계 중단, 사업부지 변경,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주민 반대, 단순 설계 지연 등 그 사유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3년도 실집행 상황 중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실집행이 전무하거나 5%대에 불과한 지역도 있으며, 실집행률이 50%를 초과하는 지역이 경북 단 한 곳에 불과하는 등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음.

[2023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 실집행 부진 지역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충북	1,480	1,480	1,480	120	1,600	-	1,600	-	0.0
전북	-	-	-	90	-	-	-	90	0.0
전남	120	120	120	696	816	46	720	50	5.6
충남	1,200	1,200	1,200	1,329	2,529	570	1,159	800	22.5

자료: 농식품부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액 확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사업집행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장이 예산신청을 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균특회계의 절차적 특성을 감안할 때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업의 추진상황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51]

5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 · 제79조제2항 ·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세 출>

17.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사업(신규): 사업실적 저조 및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른 제재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은 쌀가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가루 사용을 희망하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 대체 프리미업 제품 등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5억원 중 25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2)]

[2023년도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쌀가루 산업화지원	7,100	7,100	-	△15	-	7,085	7,085	-	-	-*
쌀가루 제품개발지원	2,500	2,500	-	-	-	2,500	2,500	-	-	-

주) 2024년부터 농특회계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으로 통합 이관됨

나. 검토의견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10월 말까지 제품개발 및 내부 소비자 평가 완료를 조건으로 1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나, 기한 내에 개발 및 출시를 완료한 업체는 7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출시를 완료한 업체까지 포함하여도 10개에 그침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이 지연되고 있음. 그러므로 농식품부는 개발 및 출시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

52) 양곡관리특별회계-쌀가루산업화지원(2131-370)(식량정책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쌀 재배면적 감소보다 소비의 감소 속도가 빠른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기존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가 유리한 가루쌀(분질미)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임.

이에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 재배 확대계획에 따라 2022년의 500톤에 비하여 2023년에 20배로 확대된 가루쌀 생산량 10,000톤의 원활한 소비를 촉진하고, 가루쌀 가공제품의 시장성을 검증 및 제고함으로써 관련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신규 사업임.

[가루쌀 재배면적, 생산량 및 소비량 계획 현황]

(단위: ha, 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배면적	100	2,000	10,000	15,800	42,100	42,100
생산량	500	10,000	50,000	75,000	200,000	200,000
소비량	125	500	10,000	50,000	75,000	200,000

자료: 농식품부

동 사업은 사업운영비 1억원 외에 15개 업체를 상대로 업체당 제품개발비 2억원 중 80%인 1억 6,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실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25억원 중 23억 2,200만원을 실집행하고 1억 7,8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92.9%의 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2023년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유통공사)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500	2,500	2,500	-	2,500	2,322	-	178	92.9

자료: 농식품부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 말까지 제품개발 및 내부 소비자 평가 완료를 조건으로 15개의 쌀가공업체를 지원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품개발 및 출시를 완료한 업체는 7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11월과 12월에 출시한 업체도 3개에 불과하여 2023년 내에 출시를 완료한 업체 수도 10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3년도 쌀가루 산업화 지원업체 제품출시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원 업체	10월 내 출시 업체	11월 및 12월 출시 업체	연내 미출시 업체
2023년	15	7	3	5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10월까지 제품을 출시 완료할 경우 남은 2개월간 개발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2024년의 사업확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출시 완료한 업체의 수가 15개 중 7개에 불과함으로써 개발제품의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그리고 이와 같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 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한 내에 개발 및 출시를 완료한 업체 및 동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23년 내에 출시하지 못한 업체가 5개나 되는 등 사업목적 달성 지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한 쌀가공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실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정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이 융자가 아닌 보조(보조율 80%)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 출>

18.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을 위한 민간 출자액 비중 하락 등

가. 개 요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농식품산업에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적인 농업금융방식인 투융자를 보완 대체하는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식품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00억원 중 400억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3]

[2023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40,000	40,000	-	-	-	40,000	40,000	-	-	55,000

나. 검토의견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자펀드 결성과 관련하여 민간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자펀드의 경우 결성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운용 방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5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농식품모태펀드 출자(1151-300)(농업정책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민간과의 매칭펀딩으로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이 성장 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하는 농식품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54] 및 같은법「시행령」제8조[55]에 따라 2040년까지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정부재정으로 출자한 농식품모태펀드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민간자금과 함께 자펀드를 결성하고, 이 재원으로 4년간 투자하며 4년간 유지한 후 청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렇게 청산된 금액은 원금과 수익 모두 다시 농식품모태펀드로 회수되어 당해 연도 예산액과 함께 새로운 자펀드 결성재원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보다 자펀드 결성을 위한 모태펀드의 출자금액이 많으며, 이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동 사업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펀드 결성을 위한 모태펀드와 민간의 출자액을 살펴보면, 모태펀드와 민간의 출자액은 모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후 202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농식품 자펀드 결성 및 민간 출자액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350	400	400	400
자펀드 결성	정부(모태펀드)	740	867	1,526	1,235
	민간	767	811	1,005	773
	계(자펀드 수)	1,507(8)	1,678(10)	2,531(15)	2,008(13)
	민간비중	50.9	48.3	39.7	38.5

자료: 농식품부

모태펀드는 2020년의 740억원에서 2022년에 1,526억원으로 2년간 106.2% 증가한 후 2023년에 1,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원 감소함으로써 △19.1% 하락하였고, 민간

54)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55)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은 2020년 767억원에서 2022년에 1,005억원으로 2년간 31.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23년에는 7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억원 감소하여 2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모태펀드보다 민간의 출자액이 낮은 비율로 증가하고 높은 비율로 감소함으로써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의 비중이 2020년의 50.9%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3년에는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동 사업의 당초 목적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식품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과가 역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한편, 동 사업을 통하여 결성된 일부 자펀드의 경우 민간의 비중이 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투자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자펀드 결성의 필요성 및 출자 비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민간 비중 과소 자펀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자펀드명	모태펀드	민간	결성총액	투자액
2022	농○○○○	9.9	0.1	10	-
2023	농○○○○	39.7	0.3	30	-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자펀드 결성과 관련하여 민간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자펀드의 경우 결성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운용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9.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신규): 사업수요 미확보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에 따른 전액 불용 발생

가. 개 요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은 젖소 육성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적으로 위탁 사육하는 목장 확대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8억원 중 집행액(집행률 0.0%)은 없으며 전액 불용되었음.[56]

[2023년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축사시설 현대화	148,525	148,525	-	-	-	148,525	140,377	-	8,148	139,643
젖소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800	800	-	-	-	800	-	-	800	3,200

나. 검토의견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액을 전액 불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낙농가의 생산비 저감을 위하여 2023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의 80%를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음.

1년차에는 10%에 해당하는 8억원, 2년차에는 40%인 32억원, 그리고 3년차에는 50%

5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3760-332)(축산정책관)

인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어 다시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를 추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800	-	-	-	-	-	-	-	-

자료: 농식품부

그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과 9월 14일 등 2회에 걸쳐 농협경제지주와 전국낙동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으며, 축사 신축에 따르는 민원과 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요가 부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힌 전남 낙농업협동조합의 건의[57]를 받아들여 기존 축사의 구매 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월 12일 기재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19일에 자금사용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0월 24일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음.

그러나 전남 낙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 총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설명에도 불구하고 육성우 목장 건립 건이 12월 6일에 부결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포기함으로써 동 사업은 더 이상 참여하는 지자체 및 낙농업협동조합 등이 나타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전액 불용될 수밖에 없었으며, 2024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하였고,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일부 현장의 구두 의견만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액을 전액 불용시켰

57) 전남 해남 간척지 소재 한우사를 구매하여 육성우 목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축사 구입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자금사용 용도 개정 요청을 건의함.

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국 단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축산발전기금】

<지 출>

20.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 사업: 예산편성 방향 정립 및 사업 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 사업은 계란공판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지원 계란유통센터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을 통해 공판장 출하촉진 유도 및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131억 9,000만원 중 50억원이 집행(집행률 37.9%)되고, 81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58)]

[2023년도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축산물수급관리 (융자)	23,190	23,190	-	-	-	23,190	15,000	-	8,190	10,000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융자)	13,190	13,190	-	-	-	13,190	5,000	-	8,190	-*

주) *2024년부터 농특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나. 검토의견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 사업은 재원과 사업추진 방식이 정립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실적도 저조하여 지원받은 계란유통센터 및 계란 출하량의

58) 축산발전기금-축산물수급관리(융자)(3731-307)(축산정책관)

비중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사업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 사업은 축발기금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융자 지원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2022년에 추경으로 축발기금 계획액을 전액 삭감하고 농특회계의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그 후 2023년에는 다시 종전대로 축발기금의 융자사업으로 편성 집행하였으나, 2024년에 또다시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사업의 재원 및 사업방식 변경 현황]

연도	재원	추진방식
2020년 및 2021년	축발기금	융자 지원
2022년	축발기금 → 농특회계	융자지원 → 이차보전
2023년	축발기금	융자 지원
2024년	농특회계	이차보전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이 동 사업은 그 재원 및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뚜렷한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혼선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0억원의 계획액 중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에 농특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에서 융자한도 200억원 중 156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31억 9,000만원의 계획액 중 50억원을 집행함으로써 37.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수정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	집행률(B/A)
2020	20,000	-	-	-	20,000	0.0
2021	20,000	8,000	-	-	8,000	0.0
2022	20,000	-	-	-	-	0.0
2022	20,000	-	15,600	-	-	-
2023	13,190	13,190	5,000	-	8,190	37.9

주) 2022년 농특회계 이차보전사업 중 융자한도 200억원 중 156억원 대출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계란공판장의 개설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판장 거래 실적이 부진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란공판장의 수가 3개에서 4개소로 증가한 2022년과 2023년의 지원실적을 비교할 때 2023년의 실적이 더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59)]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사업의 계란유통센터 지원실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지원실적	
	건수	융자금액
2022년	6	15,600
2023년[60)]	2	5,000

자료: 농식품부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계란 출하량 대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계란 출하량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예산집행실적이 없어 전무하고, 2022년에는 3.2%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더욱 하락하여 0.9%로 나타나고 있음.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융자)사업의 계란 출하량 비중 현황]

(단위: 천 개, %)

연도	연간 계란출하량(A)	출하촉진사업 계란출하량(B)	비중(B/A)
2020	16,880,961	-	-
2021	15,330,753	-	-
2022	16,398,103	517,650	3.2
2023	17,143,323	147,220	0.9

자료: 농식품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재원과 사업추진 방식이 정립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실적도 저조하여 지원 건수와 융자금액 및 계란 출하량의 비중도 미미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사업실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9) 2022년에 운영된 계란공판장은 3개소이고, 2023년 9월에 1개소가 추가 개설되어 2023년에는 4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60) 2023년 4월 26일 충북 음성 계란유통센터 30억원, 7월 31일 경기 안성 계란유통센터 20억원 등 2곳 합계 50억원을 융자 지원함.

21.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및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 엄격하게 선정 필요

가. 개 요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은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계획현액 212억 7,500만원 중 212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1]

[2023년도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가축분뇨 처리지원		76,848	76,848	-	-	-	76,848	76,848	-	-	68,946
	공동자원화시설	22,811	22,811	-	△1,536	-	21,275	21,275	-	-	25,010

나. 검토의견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의 지연 등으로 40% 미만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에도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등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므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대상 선정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하여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 선정할 필요가 있음.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가축분뇨의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과 퇴액비화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보조 40~50%와 융자 20~30%의 비율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

61)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3735-329,330)(축산정책관)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교부액이 보조와 융자를 합하여 계획액보다 15억 3,600만원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현액 422억 2,500만원 중 255억 2,600만원을 실집행하고 161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60.5%의 실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음.

[2023년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농식품부			최종사업추진주체						
	계획액	수정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보조	15,731	15,292	15,292	15,292	13,418	28,710	17,756	10,546	408	61.8
융자	7,080	5,983	5,983	5,983	7,532	13,515	7,770	5,648	97	57.5
소계	22,811	21,275	21,275	21,275	20,950	42,225	25,526	16,194	505	60.5

자료: 농식품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실집행률이 40% 미만을 나타냄으로써 사업의 진척이 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기의 경우 계획현액 41억 4,800만원 중 11억 6,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28.2%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경남은 계획현액 36억 4,400만원 중 14억 5,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39.8%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중 주요 지자체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농식품부		최종사업추진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경기	보조	1,931	1,931	1,931	966	2,897	638	1,931	328	22.0
	융자	705	705	705	546	1,251	531	683	37	42.4
	소계	2,636	2,636	2,636	1,512	4,148	1,169	2,614	365	28.2
경남	보조	2,475	2,475	2,475	143	2,618	1,163	1,455	0	44.4
	융자	969	969	969	57	1,026	288	738	0	28.1
	소계	3,444	3,444	3,444	200	3,644	1,451	2,193	0	39.8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적정 공사업체 선정에 추가 기간이 소요되었고, 일부 사업대상자의 경우 추가 선정으로 지연되었으며, 경남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 및 설계시공사 선정 유찰에 따른 지연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제주의 경우 동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 및 지연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처리하여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이는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3년간 총사업비 400억원 중 50%를 국고보조하고 20%를 융자 지원하며, 20%는 지방비, 10%는 자부담으로 구성되었으나,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사업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62)]

2022년에는 21억원의 계획액 중 실집행실적은 전무하여 지자체 단계에서 전액 이월되었고, 2023년에는 농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52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교부현액 73억 5,000만원을 최종사업시행주체인 제주도시개발공사에 다시 교부하였으나 전액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년 동안 73억 5,000만원의 계획액 중 실집행액이 전혀 기록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진척 또한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태임.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제주)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농식품부		지자체					최종사업시행주체(제주도시개발공사)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2,100	2,100	2,100	-	2,100	-	2,100	-	-	-	-	-	-
2023	5,250	5,250	5,250	2,100	7,350	7,350	-	7,350	-	7,350	-	7,3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선정 부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지연되면서 2023년 6월까지 가격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고, 새로운 부지확보를 위하여 제주도청과 축협 등 관계기관의 내부검토 및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10월에 토지매입 단가가 확정되었으며, 11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 후 12월에 사업부지 인근 추가 민원이 발생하여 총 10회의 주민간담회 및 관계

62) (당초)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 (변경) 1년차 10%, 2년차 25%, 3년차 5%, 4년차 60%

기관 협의 등을 실시함으로써 2024년 4월에 주민 요구사항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 국토부의 토지매입 승인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의 지연 등으로 그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형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에도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등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진척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대상 선정 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하여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 엄선할 필요가 있음.

【농지관리기금】

<지 출>

22. 임차임대 사업: 과다 편성 이후 집행단계에서 수정 반복하는 관행 시정 필요

가. 개 요

‘임차임대’ 사업은 고령·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임차하고, 이를 청년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계획현액 84억 8,200만원 중 84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3]

[2023년도 임차임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맞춤형농지지원(융자)	857,726	844,915				844,915	844,915	-	-	1,241,260
임차임대	21,293	8,482	-	-	-	8,482	8,482	-	-	49,500

나. 검토의견

임차임대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계획액을 2년 연속 수정하여 감액하는 등 비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과다 편성 이후 집행단계에서 계획액 수정을 반복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임차임대 사업의 최근 5년간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액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63)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농업정책관)

에 295억 4,400만원 중 244억 2,600만원을 실집행함으로써 82.7%의 실집행률을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실집행액 자체도 2021년에 전년 대비 절반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조금씩 추가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임차임대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당초 계획액(A)	변경 계획액(B)	실집행액(C)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C/A)	계획액 변경(B-A)
2019	40,000	24,992	24,157	60.4	△15,008
2020	29,544	29,544	24,426	82.7	-
2021	22,413	22,413	10,547	**47.1**	-
2022	22,413	7,291	7,239	**32.3**	△15,122
2023	21,293	8,482	8,435	**39.6**	△12,811

자료: 농식품부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은 당초 계획액 대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여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당초 계획액을 각각 151억 2,200만원과 128억 1,100만원을 수정·감액하여 계획액 편성 자체부터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계획액에 따른 사업규모에 비하여 실제 수행한 사업규모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538ha를 계획하였으나 253ha에 그친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임차임대사업 계획규모 대비 실제 추진규모 현황]

(단위: ha, 백만원)

연도	당초 계획액 사업규모		실집행액 사업규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019	1,500	40,000	723	24,157
2020	1,102	29,544	681	24,425
2021	723	22,413	306	10,547
2022	566	22,413	205	7,239
2023	538	21,293	253	8,435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가격 및 쌀값 상승과 직불금 및 농민수당 등 각종 보조금 확대에 따른 고령 농업인의 자경 선호로 인하여 임차임대 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실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액을 2년 연속 수정하여 감액함으로써 국회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당초 계획액의 규모 자체가 적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동 사업의 계획액을 49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132.5%나 대폭 증액 편성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저조한 사업집행실적 및 계획액 수정 감액과 역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64)]

[2024년 임차임대사업 전년 대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년 계획액		2024년 계획액		증감		증감률	
당초 계획액(A)	수정(B)	당초 계획액(C)	수정(D)	(C-A)	(D-B)	(C-A)/A	(D-B)/B
21,293	8,482	49,500	49,500	28,207	41,018	132.5	483.6

자료: 농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임차임대 물량은 250ha로 감축하였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물량 중 매도조건부 임대물량에 대한 연계지원을 위하여 임차임대물량을 1,000ha 추가함에 따라 2024년도 계획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추가 편성한 1,000ha 중 6월 말 기준 지원실적은 31.5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24년도 안에 지원 가능한 물량은 계획 대비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24년 6월 말 기준 매도조건부 임대 지원실적 물량 현황]

(단위: ha, %)

지원계획 물량	지원실적 물량	계획 대비 지원율(B/A)
1,000	31.5	3.2

자료: 농식품부

64)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기존 임차임대 사업물량은 2023년의 538ha에 비하여 2024년에는 250ha로 감축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중 매도조건부 임대물량을 연계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임대 사업물량 1,000ha를 추가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집행 규모를 감안하여 실제와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과다 편성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과도한 계획액 수정을 반복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4억 2,000만원(△34.0%)이 적은 105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200만원(△34.0%)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7,541	17,541	15,955	△1,586	15,943	15,943	10,523	△5,420	△5,432
총수입	17,541	17,541	15,955	△1,586	15,943	15,943	10,523	△5,420	△5,432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15억 7,700만원(△1.7%)이 적은 1조 2,330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6억 9,400만원(8.0%)이 증가함.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marine@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189,330	1,147,131	1,141,397	△5,734	1,254,668	1,254,668	1,233,091	△21,577	91,694
총지출	1,189,330	1,147,131	1,141,397	△5,734	1,254,668	1,254,668	1,233,091	△21,577	91,694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9억 4,300만원으로, 118억 7,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05억 2,300만원이 수납(수납률 88.6%)되고 13억 5,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2,458	12,458	-	12,458	10,463	9,391	-	1,07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95	1,295	-	1,295	905	848	-	57
- 구조개선사업계정	1,295	1,295	-	1,295	905	848	-	5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0.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90	2,190	-	2,190	507	284	-	223
- 지역자율계정	1,389	1,389	-	1,389	351	135	-	216
- 지역지원계정	652	652	-	652	17	10	-	7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9	129	-	129	136	136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0	20	-	20	3	3	-	-
합 계	15,943	15,943	-	15,943	11,875	10,523	-	1,352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2,605억 4,400만원으로, 1조 2,330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55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8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151,416	1,151,416	5,876	11,904 △11,904	-	1,157,292	1,129,948	5,568	21,77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777	22,777	-	-	-	22,777	22,691	-	86
- 구조개선사업계정	22,777	22,777	-	-	-	22,777	22,691	-	8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0,475	80,475	-	-	-	80,475	80,452	-	23
- 지역자율계정	53,696	53,696	-	-	-	53,696	53,696	-	-
- 지역지원계정	25,058	25,058	-	-	-	25,058	25,035	-	23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721	1,721	-	-	-	1,721	1,721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	-	-
합 계	1,254,668	1,254,668	5,876	11,904 △11,904	-	1,260,544	1,233,091	5,568	21,88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농촌진흥청 자산은 전년 대비 1,344억 5,000만원이 증가한 3조 2,074억 9,5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10억 6,700만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1,327억 9,4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6,200만원 증가한 30억 6,7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2억 2,4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42억 8,800만원이 증가한 3조 2,044억 2,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9,799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1,190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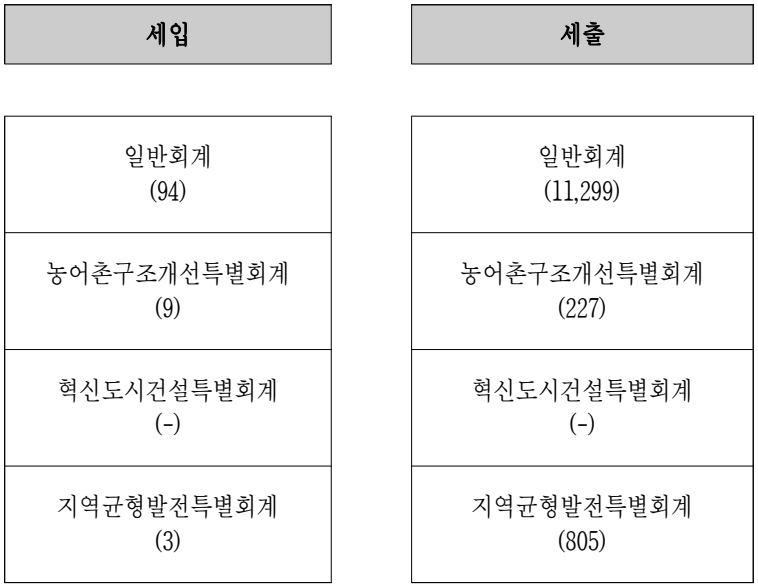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207,495	3,073,045	134,450	4.4
		유동자산	2,020	1,054	966	91.7
		투자자산	252	1,319	△1,067	△80.9
		일반유형자산	3,185,768	3,052,974	132,794	4.3
		무형자산	18,954	17,678	1,276	7.2
		기타비유동자산	501	20	481	2405.0
	부 채		3,067	2,905	162	5.6
		유동부채	1,071	1,124	△53	△4.7
		장기차입부채	1,971	1,747	224	12.8
		장기충당부채	25	34	△9	△26.5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3,204,428	3,070,139	134,288	4.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979,977	975,261	4,716	0.5
	재정운영순원가		1,119,037	1,107,590	11,447	1.0
	재정운영결과		1,119,037	1,107,590	11,447	1.0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 내역은 없음.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를 비전으로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 기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총 103개 세부사업에서 농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의 개발·보급,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및 그린바이오 신기술 산업화로 농업 경쟁력 제고, 먹거리 안정생산 및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치유농업 확산·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촌활력화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의 진척 및 예산 실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제와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도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행잔액을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LED 전광판 설치에 집행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은 각 국가별 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충원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조정 집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넷째,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사업은 2023년도 기술이전건수가 하락하고 일부 연구과제가 연구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개발품종의 경제성을 강화하고 과제추진의 안정성과 실적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사업: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편성 및 국고보조금 교부 원칙 준수 필요

가. 개 요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이상기상 대응 국내 개발 우량 꿀벌 품종 증식보급과 ICT 기반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 꿀벌 공급체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6억원 중 36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19,711	19,711	-	-	19,711	19,679	-	32	15,668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	3,600	3,600	-	-	3,600	3,600	-	-	5,925

2) 일반회계-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2231-300)(농촌지원국)

나. 검토의견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의 진척 및 예산 실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제와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도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최근 꿀벌 집단실종의 반복적 발생으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양봉산업 침체,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농업환경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국내육성 우수 꿀벌 품종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임.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2023년에 충남·전남 및 경북 예천 등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소당 총사업비 24억원 중 50%인 12억원을 국고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임.

동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자체의 예산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6억원 중 7,700만원을 실집행하고 35억 2,3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실집행률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충남의 경우에는 예산실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전남과 경북 예천은 각각 3.8%와 2.6%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의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3년도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충남	1,200	1,200	-	1,200	-	1,200	-	0.0
전남	1,200	1,200	-	1,200	46	1,154	-	3.8
경북	1,200	1,200	-	1,200	31	1,169	-	2.6
합계	3,600	3,600	-	3,600	77	3,523	-	2.1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부지가 도서지역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충남의 경우에는 당초 선정하였던 부지가 관광지로 개발됨에 따라 부지를 변경함으로써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남의 경우에는 2024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3월에야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음. 나머지 지역도 2023년 내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는데 그침으로써 인허가 등 관련 절차로 인하여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였음.

[2023년 지역별 기후변화대응 꿀벌수급안정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지역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충남	격리증식장 설치 대상지 선정 꿀벌자원 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계획 변경 기본계획 수립 건축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	2023. 3. 2023. 9. 2024. 1. 2024. 1. ~ 2024. 3 2024. 7.(예정)
전남	격리증식장 설치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건축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	2023. 6. 2023. 4. 2023. 9. ~ 2023. 12 2024. 5.
경북 예천	격리증식장 설치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건축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	2023. 6. 2023. 7. 2023. 9. ~ 2023. 12 2024. 5.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동 사업의 대상부지가 도서지역인 것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변수가 아니고 사업준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예상 외의 지연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사전준비가 미흡하였거나 사업기간을 실제와 무관하게 단년도로 계획함으로써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당 사업부지로 인한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도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3)]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2024년에 동 사업의 완공을 전제로 3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3월부터 해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에서는 꿀벌의 증식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는 점을 들어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관련 시설의 준공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함.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2.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소홀에 따른 주의 필요

가. 개 요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은 국제교역,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57억 9,100만원 중 457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4)]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43,788	43,788	-	2,003	45,791	45,747	-	44	47,671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2,000	2,000	-	-	2,000	2,000	-	-	1,000
농장맞춤형 기상재해정보 서비스	150	150	-	-	150	150	-	-	-

내역사업인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은 고위험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신속한 정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0억원 중 20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농장맞춤형 기상재해정보 서비스’**는 이상저온·집중호우·대설·한파 등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기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경남에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4) 일반회계-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2231-301)(농촌지원국)

나. 검토의견

첫째,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행잔액을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LED 전광판 설치에 집행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은 주로 도농업기술원에[5] 정밀진단실을 구축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개소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음. 2023년에는 강원, 충남, 충북, 전남의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개소별 총사업비 10억원 중 50%인 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

2023년에 추진한 사업 중 강원과 충남의 예산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강원의 경우 5억원 중 3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2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71.4%의 예산실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충남은 5억원 중 3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69.6%의 예산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2023년도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강원	500	500	-	500	357	142	2	71.4
충남	500	500	-	500	348	150	2	69.6
충북	500	500	-	500	483	-	17	96.6
전남	500	500	-	500	490	-	10	98.0
합계	2,000	2,000	-	2,000	1,677	292	31	83.9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강원의 경우 당초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으로 사업추진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잔액을 이월하였고, 충남은 정밀진단실의 공사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면적이 당초 92㎡에서 56㎡로 감소됨에 따라 음압공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잔액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5) 2022년에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사례가 있음.

[2023년 지역별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일자	
	강원	충남
기본계획 수립	2023. 2. 16	2023. 4. 19
건축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2023. 4. 10 ~ 7. 9	2023. 5. 23 ~ 7. 21
공사 착공	2023. 8. 30	2023. 8. 17
준공	2023. 11. 27	2023. 11. 25

자료: 농촌진흥청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목적 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의 경우 진단 실험실습 교육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4년 4월까지 해당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5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추진 중이며, 충남은 고위험병해충 및 농업재해 피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2월에 전광판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6월까지 시공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음에 따라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의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농장맞춤형 기상재해정보 서비스사업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따라 2023년 12월에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이마저도 재검토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2024년에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의 진척과 예산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농장맞춤형 기상재해정보 서비스사업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상재해 대응 모델을 지역별 도농업기술원에 구축하기 위한 단년도 사업으로, 2023년에는 경남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진척과 예산실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1억 5,000만원의 예산액 중 1,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이월함에 따라 10.0%에 불과한 예산실집행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2023년도 농장맞춤형 기상재해정보 서비스 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농촌진흥청		경남도농업기술원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경남	150	150	-	150	15	135	-	10.0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경남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맞추어 지방비 예산 편성과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전산개발비와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 후 행안부 및 국정원 등과의 정보화사업 추진 협의가 순연되었으며, 기존의 조기경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시스템 구축 변경 협의도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12월에야 경남지방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조달청의 수정의뢰 요구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한 후 2024년 4월에 다시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이 2023년 6월로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과목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임.

그 이후 12월에 제출한 제안요청서도 충분하지 못하여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결과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없었던 것임.

그러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농업기술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 센터 연구원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충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은 개발도상국 농산업 발전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개도국의 소농을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실증 및 보급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28억 1,000만원 중 217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4%)되고, 10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6)]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33,417	33,417	-	-	33,417	32,275	-	1,142	40,766
해외농업 기술개발	22,810	22,810	-	±72	22,810	21,757	-	1,053	30,028

나. 검토의견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 은 각 국가별 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충원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조정 집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은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 및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별로 현지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개국에 총 22명의 연구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는 이러한 연구원 등의 임금을 지급하는 상용임금의 예산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액 18억 4,800만원 중 10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59.4%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음.

6) 일반회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기술협력국)

[2023년도 상용임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집행률 (B/A)
상용임금(110-01)	1,848	-	1,848	1,098	-	750	59.4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연구원 모집공고 후 응시인원 부족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선발인원이 부족하였으며, 연구원 모집 홍보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였음에도 채용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연구원이 각 센터별 협력사업 관리 및 현지 농업기술 정보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원의 채용 부진은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2023년에 근무한 연구원 전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22개국에 7명이 근무하였고, 4월부터 7월까지는 22명, 8월부터 11월까지는 17명, 12월은 24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2023년 중 필요 인원보다 부족한 기간이 1월~3월과 8월~11월 등 총 7개월에 이르고 있음.

[2023년도 시기별 연구원 근무 현황]

(단위: 명)

시기	1월~3월	4월~7월	8월~11월	12월
근무인원 (정원 22명)	7	22	17	24

자료: 농촌진흥청

한편, 2023년의 22개국 국가별 연구원 근무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몽골, 짐바브웨, 가나, 볼리비아, 도미니카, 니카라과 등은 1월과 12월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파라과이, 에콰도르, 과테말라,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의 경우에는 1월과 12월 모두 현원이 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은 개발도상국의 농산업 발전 및 소득 증대라는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 놓은 우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2023년도 22개국 국가별 연구원 근무 현황

(단위: 명)

국가	베트남		몽골		짐바브웨		가나		볼리비아		도미니카		니카라과	
시기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인원	1	1	1	1	1	2	1	1	1	2	1	2	1	2
국가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라오스		파키스탄		케냐		우즈베키스탄	
시기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인원	-	3	-	2	-	1	-	1	-	2	-	2	-	1
국가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파라과이		에콰도르		과테말라		키르기스스탄	
시기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인원	-	-	-	-	-	-	-	-	-	-	-	-	-	-
국가	세네갈		총 22개국 1월 7명, 12월 24명											
시기	1월	12월												
인원	-	1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특정 국가의 연구원 상시 결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원 선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동 사업의 집행 중 일반용역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수용비 2,600만원, 피복비 500만원 시험연구비 3,9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일반용역비 7,4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해당 조정 집행이 불필요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음.

[2023년도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조정	일반수용비	26	일반용역비	일반용역비 재원 마련
	피복비	5		
	시험연구비	39		

자료: 농촌진흥청

[2023년도 일반용역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집행률 (B/A)
일반용역비(210-14)	200	70	270	196	-	74	72.6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불필요한 조정 집행을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사업: 기술이전건수 하락 및 연구과제의 예산실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사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지역적응성 연구 및 개발된 품종의 이용촉진을 위한 종자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 관련 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18억 4,400만원 중 117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7)]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신품종지역 적응연구(R&D)	21,017	21,017	-	-	21,017	20,861	-	156	15,529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11,844	11,844	-	-	11,844	11,761	-	83	11,209

나. 검토의견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사업’ 은 2023년도 기술이전건수가 하락하고 일부 연구과제가 연구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개발품종의 경제성을 강화하고 과제추진의 안정성과 실적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사업은 육성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벼, 맥류, 콩 등 주요 농작물의 연차간 및 지역간 작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이전건수를 측정하고 실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2023년도 기술이전건수는 145건으로 2022년의 194건에 비하여 25.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의 178건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2020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7) 일반회계-신품종지역적응연구(R&D)(1133-302)(연구정책국)

[연도별 기술이전건수]

(단위: 건, %)

연도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증감률
기술 이전 건수	145	178	194	145	△49	△25.3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종자생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3년 신품종의 통상실시권 등 기술이전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신품종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홍보 강화 등 개발품종 실용화율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강화만으로는 기술이전건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으로 개발품종의 경제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기술이전건수가 하락함에 따라에 따라 동 사업의 공식적인 성과지표인 '개발품종 실용화율'도 2022년에 비하여 감소하고, 목표 대비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성과지표 '개발품종 실용화율' 현황]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측정산식
개발품종 실용화율	목표	39.3	40.1	40.9	41.7	당해 연도 유상 기술이전건수/최근 3년 품종 출원·등록 품종 수 × 100
	실적	36.9	44.4	53.9	39.2	
	달성도	93.9	110.7	131.8	94.0	

자료: 농촌진흥청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하여 실시한 40개의 연구과제 중 5개 과제가 연구원의 변경 및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예산 실집행실적도 부진하고 이에 따라 연구성과도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3년도 연구원 변경에 따른 부진과제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	실집행률 (B/A)
과수핵심자원 바이러스 무병화 및 무병묘 증식	166	93	73	56.0
신품종 감귤의 유통시스템 구축 및 소비확대 기술개발	158	123	35	77.8
인삼 신품종 이용촉진사업(2단계)	103	70	33	68.0
재해저항성 인삼신품종 지역적응연구(2단계)	118	81	37	68.6
수요자 맞춤형 품종 육성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작목품종별 재배현황통계 구축연구	571	461	110	80.7

자료: 농촌진흥청

특히, ‘과수핵심자원 바이러스 무병화 및 무병묘 증식’ 과제는 2년 연속으로 예산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8)]

‘신품종감귤의 유통시스템 구축 및 소비확대 기술개발’ 과제는 주관기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구원이 교체됨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연구를 추진하는 등 과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신품종감귤의 유통시스템 구축 및 소비확대 기술개발 과제의 계획 대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추진계획	추진실적
농가 시범포 대상 선정 및 관리(30) **신품종 상자 발주(50)**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20)** **신품종 소비시장 조사(50)**	**윈터프린스 월별 과실특성 조사 및 수확 선별기준 마련(30)** **윈터프린스 특성에 맞는 선별기 구입(23)** **윈터프린스 유통형태에 따른 광고집행 및 포장기술 개발(70)**
합계 (150)	합계 (123)

주) 윈터프린스 : 농진청 감귤연구소에서 개발하여 2017년에 출원한 품종
자료: 농촌진흥청

8) 2022년에도 예산현액 1억 700만원 중 4,100만원의 실집행과 6,600만원의 이월로 38.3%의 예산 실집행률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일부 과제가 연구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구실적과 예산 실집행실적이 계획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제추진의 안정성과 실적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5.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표준화 연구사업: 2년 연속 연구지연 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표준화 연구’ 사업은 이용 다양화를 위한 원예특용자원의 효능성분 안정생산과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8억 9,300만원 중 38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음.[9)]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표준화 연구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원예특용자원생산과 품질표준화연구(R&D)	8,998	8,998	-	-	8,998	8,997	-	1	3,050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표준화 연구	3,893	3,893	-	-	3,893	3,893	-	1	1,356

나. 검토의견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표준화 연구사업 중 ‘정신건강(인지기능 개선 등) 증진을 위한 황기 등 특용자원의 원료 표준화 연구’ 과제가 2년 연속으로 예산 실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연구내용 중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체시험과 안정성 평가 등에 있어서 연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과제 수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표준화 연구사업은 2023년에 총 4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그 중 ‘정신건강(인지기능 개선 등) 증진을 위한 황기 등 특용자원의 원료 표준화 연구’과제의 경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2억 3,700만원

9) 일반회계-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연구(R&D)(1147-304)(연구정책국)

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6억원과 8억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황기 등 특용자원의 원료표준화 연구과제 예산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총연구기간	총예산	2022	2023	2024	2025	2026
정신건강(인지기능 개선 등) 증진을 위한 황기 등 특용자원의 원료 표준화 연구	2022~2026	2,237	600	800	279	279	279

자료: 농촌진흥청

그런데 동 과제는 2년 연속으로 예산실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2022년에는 예산현액 6억원 중 3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원을 이월함에 따라 62.5%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10억 2,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9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46.4%의 예산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황기 등 특용자원의 원료표준화 연구과제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	실집행률
2022	600	375	225	62.5
2023	1,025	476	549	46.4

자료: 농촌진흥청

이와 같은 예산실집행부진은 2022년에는 ‘황기 소재 대량생산 공정 최적화’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일정이 순연되었고,[10] 2023년에는 ‘인지기능 개선 인체시험’ 추진과 ‘황기 소재 안전성 평가 및 제형 개발’이 지연되어 예산실집행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0) 기능성분 및 기호성을 고려한 볶음과정의 대용량 공정 확립이 지연됨에 따라 황기 소재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가 지연되었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황기 등 특용자원의 원료표준화 연구과제의
2023년 계획 대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추진계획	추진실적
황기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200) 동물모델 인지기능개선 기전규명(100) **인지기능개선 인체시험 추진(400)** **황기소재 안전성 평가 및 제형개발(100)**	황기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200) 동물모델 인지기능개선 기전규명(110) **인지기능개선 인체시험 추진(140)** **황기소재 안전성 평가 및 제형개발(26)**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따라 동 과제는 2023년 12월 임상시험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현재 인체시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황기 소재 안정성 평가 및 제형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시험원료 보관 중 지표성분 함량 변화 분석을 진행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과제는 연구과정 중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체시험과 안정성 평가 등에 있어서 연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실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제 수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사업: 국고 과다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체수입 예산편성 필요

가. 개 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사업은 정부·대학·연구소·민간기업 및 농업인이 개발 보유한 농업 관련 유용 기술의 산업적 진흥촉진으로 국가농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70억 1,900만원 중 370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운영	37,019	37,019	-	-	37,019	37,019	-	-	38,681

나. 검토의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사업’은 기관 운영 및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액에서 자체수입을 공제하고 국고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등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기준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고출연의 과다편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17년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2018년도 예산부터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운영과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경비에서 자체수입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고출연으로 지원받고 있음.

2023년에는 자체수입 예산 169억 4,300만원을 제외한 370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관운영 출연금 26억 900만원과 사업출연금 344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최근 4년간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

11) 일반회계-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1136-300)(한국농업기술진흥원)

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2023년에는 24억 4,300만원에 이르는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자체수입 및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자체수입	13,503	14,922	13,648	15,673	15,205	17,291	16,943	19,379
결산잉여금		1,965		1,760		2,148		2,443

주) 결산잉여금은 자체수입 초과분에 지출잔액을 합한 금액임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사업수입이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수입의 대부분이 종자·종묘 판매수입으로 기후요인에 따른 작황 및 종자 단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4년 연속 20억원 내외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자체수입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자체수입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국고출연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농업기술진흥원은 이러한 자체수입 초과분을 결산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월결산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년도와 차차년도의 수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결산잉여금 중 최근 3년간 결산잉여금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른바 기재부 추계값[12]이라는 명목으로 차기이월하고 초과분은 차차기로 이월하고 있는 바, 2023년의 결산잉여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억 4,300만원의 결산잉여금 중 19억 5,800만원은 2024년도의 수입으로, 나머지 4억 8,500만원은 2025년도의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음.

12)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결산잉여금 처리 시기가 국고출연금 예산 편성 시기보다 늦은 점을 감안하여 미리 최근 3년간 결산잉여금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산잉여금으로 추계하여 차기로 이월하는 것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결산잉여금과 차기이월 등 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결산잉여금		1,965	1,760	2,148	2,443		
-차기이월		526	901	1,382	**1,958**		
-차차기이월		1,439	859	766	**485**		
수입	이월결산 잉여금	665	526	2,340	2,241	2,341	485
	-전기이월	665	526	901	1,382	**1,958**	
	-전전기이월	-	-	1,439	859	383	**485**
	기관운영 적립금	-	-	-	383	-	-

자료: 농촌진흥청

이와 같이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이 초과 발생하여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와 차차년도의 수입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국고출연금 예산보다 사실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다음 해 결산잉여금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임.

그러므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자체수입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존 편성 근거보다 적극적인 기준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고 과다 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기술진흥원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차차년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50%를 1년 앞당겨 차년도 이월금으로 전환하여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2022년도 차차기이월액 7억 6,600만원 중 50%인 3억 8,300만원을 2023년도 기관운영적립금으로 편성하기도 하였음.

이는 국고 과다 출연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37억 1,100만원(△10.4%)이 적은 3,766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2억 3,300만원(△25.7%)이 감소함.[1)]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99,004	399,004	506,860	107,856	420,338	420,338	376,627	△43,711	△130,233
총수입	399,004	399,004	506,860	107,856	420,338	420,338	376,627	△43,711	△130,233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marine@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29억 2,700만원(2.1%)이 많은 2조 5,365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2억 8,800만원(6.8%)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390,289	2,379,005	2,375,302	△3,703	2,483,663	2,483,663	2,536,590	52,927	161,288
총지출	2,390,289	2,379,005	2,375,302	△3,703	2,483,663	2,483,663	2,536,590	52,927	161,288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1,700억 5,200만원으로, 1조 3,072억 4,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1,898억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0%)되고 3억 1,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171억 1,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1,966	91,966	-	91,966	106,350	74,968	298	31,08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05,803	1,005,803	-	1,005,803	1,111,602	1,030,386	17	81,199
- 임업진흥사업계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3,322	1,543	-	1,779
- 투자계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1,897	1,136	-	761
- 지역자율계정	-	-	-	-	1,892	1,131	-	761
- 지역지원계정	-	-	-	-	5	5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283	72,283	-	72,283	84,073	81,779	-	2,294
- 손익계정	35,643	35,643	-	35,643	42,828	40,534	-	2,294
- 자본계정	36,640	36,640	-	36,640	41,245	41,245	-	-
합 계	1,170,052	1,170,052	-	1,170,052	1,307,244	1,189,812	315	117,11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4,990억 2,100만원으로, 이 중 3조 4,014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2%)되고 677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7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됨.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946,718	1,946,718	75,983	9,289 △9,289	62,880	2,085,581	2,016,743	50,116	18,7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05,803	1,005,803	4,386	2,307 △2,307	20,374	1,030,563	1,015,475	9,295	5,793
- 임업진흥사업계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 투자계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3,348	303,348	2,709	1,865 △1,865	-	306,057	302,993	597	2,467
- 지역지원계정	189,620	189,620	2,709	1,865 △1,865	-	192,329	162,569	597	2,467
- 지역자율계정	112,278	112,278	-	-	-	112,278	112,278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60	460	-	-	-	460	460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990	990	-	-	-	990	990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283	72,283	4,499	38	-	76,820	66,242	7,790	2,788
- 손익계정	35,643	35,643	-	38	-	35,681	34,441	-	1,241
- 자본계정	36,640	36,640	4,499	-	-	41,139	31,802	7,790	1,547
합 계	3,328,152	3,328,152	87,577	13,499 △13,461	83,254	3,499,021	3,401,453	67,798	29,770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산림청 자산은 전년 대비 2,969억 6,700만원이 증가한 31조 3,031억 9,0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98억 9,3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3,677억 7,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2억 3,500만원 증가한 250억 7,200만원으로 유동부채 61억 5,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917억 3,200만원이 증가한 31조 2,781억 1,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산림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조 1,21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2억 5,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1,601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50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산림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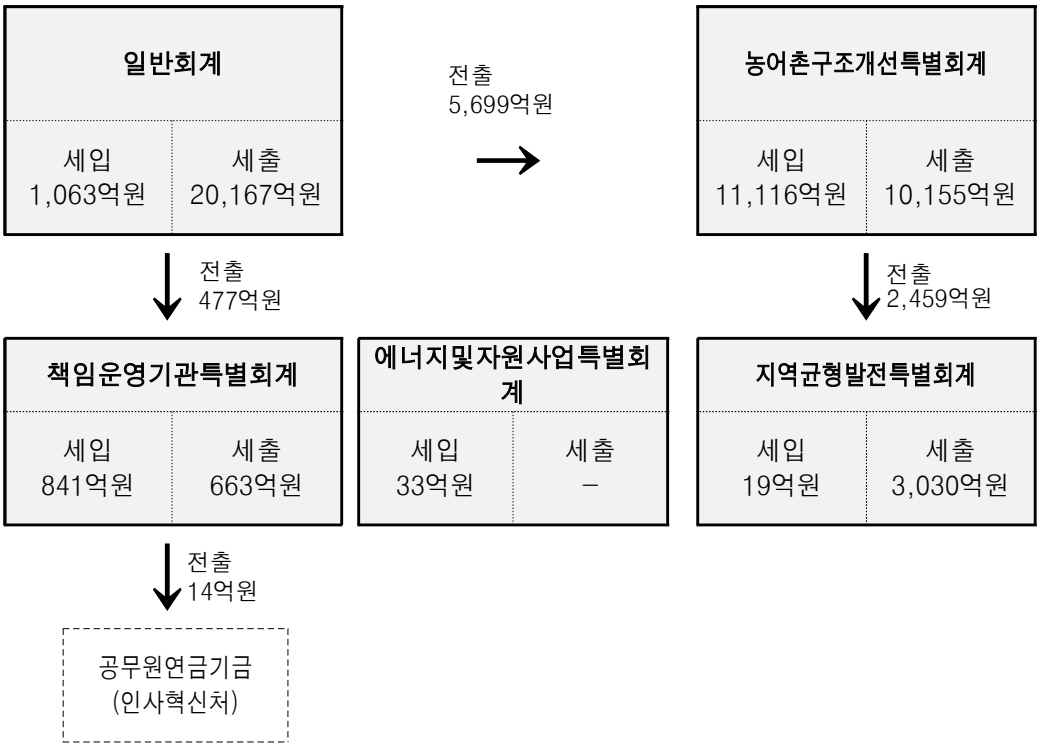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1,303,190	31,006,223	296,967	1.0
		유동자산	186,142	156,249	29,893	19.1
		투자자산	332,294	437,433	△105,139	△24.0
		일반유형자산	30,730,622	30,362,844	367,778	1.2
		무형자산	37,552	40,888	△3,336	△8.2
		기타비유동자산	16,580	8,810	7,770	88.2
	부 채		25,072	19,837	5,235	26.4
		유동부채	25,058	18,907	6,151	32.5
		장기차입부채	-	138	△138	△100.0
		장기충당부채	5	791	△786	△99.4
		기타비유동부채	9	1	8	800.0
	순자산		31,278,118	30,986,386	291,732	0.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121,160	1,966,906	154,254	7.8
	재정운영순원가		2,160,383	1,777,423	382,960	21.5
	재정운영결과		2,160,199	1,775,181	385,018	21.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산림청 결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5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간 거래는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5,699억원이 전출되었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77억원이 전출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459억원이 전출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림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경제·사회·환경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이용하며 임업을 육성함으로써 국토보전과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2023년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를 위하여 산림청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에너지및자원사업, 지역균형발전, 책임운영기관)에서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국제산림협력, 산림과학기술개발,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산림자원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R&D) 사업 중 '산림치유의 뇌졸중 임상적 치료효과 검증 및 산림자원 활용기술개발' 과제는 임상연구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감축되어 논문과 특허 양 측면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그 이후 일련의 구축과정과 고도화과정을 거쳐 충분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장애가 2년 연속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림과학연구(R&D)사업은 예산이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문영향력지수와 기술이전료 양 측면의 성과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은 산림복지진흥원의 필요경비 총액에서 자체수입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R&D)사업: 연구실적 부진 과제의 원인 분석 필요

가. 개 요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R&D)’ 사업은 산림・농촌・해양 자원 내 주요 치유인자 탐지・분석・활용을 기반으로 한 치유환경 재현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며 치유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3억원 중 33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R&D)	6,800	6,800	-	-	6,800	6,800	-	-	750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	3,300	3,300	-	-	3,300	3,300	-	-	750

2) 일반회계-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R&D)(1743-303)(산림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R&D) 사업 중 '산림치유의 뇌졸중 임상적 치료효과 검증 및 산림자원 활용기술개발' 과제는 임상연구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감축되어 논문과 특허 양 측면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R&D) 사업 중 '산림치유의 뇌졸중 임상적 치료효과 검증 및 산림자원 활용기술개발' 과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였으나, 총 연구기간 3년 동안 예산실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초년도인 2021년부터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이례적인 82.7%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69.0%에 이어 2023년에는 64.1%를 나타냄으로써 더욱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산림치유의 뇌졸중 임상적 치료효과 검증 및 산림자원 활용기술개발 과제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2021	250	0	250	206.69	43.39	0	82.7
2022	305	43.39	348.53	240.61	107.92	0	69.0
2023	335	107.92	442.92	284.18	0	158.74	64.1

자료: 산림청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동 과제는 총 80명 규모의 임상연구를 계획하였으나, 매년 모집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3년간 총 45명의 환자를 모집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함으로써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 결과 2021년의 뇌졸중 환자 산림치유 임상연구 기반구축이 지연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비교 등 임상연구 및 분석이 충분한 데이터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동 과제와 같이 임상적 치료효과 검증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 임상규모를 계획보다 적게 수행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림청 및 관계기관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동 과제는 1년차에 1건, 2년차에 2건, 3년차에 3건 등 총 6건의 논문을 발표

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건의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중 4건이 1년차에 발표되어 동 과제와 관련된 충분한 임상적 데이터가 쌓이기 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임상 결과가 반영된 논문이기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국내특허등록도 목표 2건 대비 1건에 그쳤으며, 해외 특허는 단 1건도 출원하지 못함으로써 목표인 출원 1건, 등록 1건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량적 연구개발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1년차(2021년)	2년차(2022년)	3년차(2023년)	계
논문(SCIE)	목표	1	2	3	6
	실적	4	1	-	5
국내특허출원	목표	-	2	3	5
	실적	-	-	8	8
국내특허등록	목표	-	1	2	3
	실적	-	-	1	1
해외특허등록	목표	-	-	1	1
	실적	-	-	-	-

자료: 산림청

그러므로 산림청은 동 연구과제의 목표 성과 미달 원인을 분석하고, 과제선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사업: 2년 연속 시스템 장애 발생 근본적인 원인 분석 필요

가. 개 요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림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억 3,5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었음.[3)]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스마트산림재해 대응(정보화)	635	635	-	-	635	630	-	5	947

나. 검토의견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그 이후 일련의 구축과정과 고도화과정을 거쳐 충분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장애가 2년 연속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사업은 2019년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스마트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한 후, 2023년에 지속적인 고도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동 사업은 최근 4년간 예산집행실적도 94%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에는 99.2%를 기록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에 예측하지 못한 장애가 2년 연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 일반회계-스마트 산림재해대응(정보화)(7035-507)(산림재난통제관)

[최근 4년간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집행률 (B/A)
2020	1,041	-	1,041	987	-	54	94.8
2021	2,210	-	2,210	2,198	-	12	99.5
2022	2,390	-	2,390	2,377	-	13	99.5
2023	635	-	635	630	-	5	99.2

자료: 산림청

2022년에는 프로그램 장애로 접속 불가 상황이 14분간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메모리 부족으로 18분간 일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음.

[ICT 기반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

시스템 장애 발생일	장애시간	장애내용 및 조치사항
2022.6.21.	10:42~10:56(14분)	프로그램(SW) 장애로 접속 불가 발생 -(긴급조치) 원인 분석 및 조치 후 서비스 재기동 -(후속조치) 프로그램 개선 및 모니터링
2023.7.26.	02:37~02:55(18분)	메모리 부족으로 일부 기능 장애 발생 -(긴급조치) 원인 분석 및 조치 후 서비스 재기동 -(후속조치) 프로그램 개선 및 메모리 증설

자료: 산림청

이에 대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재난시스템은 이중화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번 서버에 장애 발생시 2번 서버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1번 서버에 대한 장애분석 및 복구 조치를 실시하여 서버 정지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접속 불가 및 메모리 부족과 같은 사례는 서버와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19년에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과 그 이후 일련의 구축과정 및 고도화과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에 추진할 계획인 산림재난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산림과학연구(R&D)사업: 논문영향력 지수 및 기술이전료 하락 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산림과학연구(R&D)’ 사업은 산림자원 조성·이용과 환경이 조화된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일류의 산림과학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민행복·국토건강·세계녹화를 선도하는 산림과학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46억 5,100만원 중 436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3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4)]

[산림과학연구(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림과학연구 (R&D)	44,628	44,628	23	±311	44,651	43,632	351	667	41,000

나. 검토의견

산림과학연구(R&D)사업은 예산이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문영향력지수와 기술이전료 양 측면의 성과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림과학연구(R&D)사업은 「산림기본법」 제2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임.

동 사업은 산림생태계 서비스 및 보전복원 연구, 숲기반 산림복지연구,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연구 등 총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성과는 산림과학 논문 영향력지수로 평가하고 있음.

4) 일반회계-산림과학연구(R&D)(1251-300)(국립산림과학원)

2023년에는 632점 목표에 554점의 실적으로 달성률 87.7%를 기록함으로써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적인 실적도 2022년보다 56점 감소함으로써 9.2%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음.

[산림과학연구(R&D)사업 논문 영향력 지수 현황]

(단위: 점, %)

성과지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A)	2023년(B)	증감(A-B)	증감률(A-B)/A
산림과학논문 영향력지수(점)	목표	507	513	620	632	12	1.9
	실적	524	645	610	554	△56	△9.2
	달성도	103.4	125.7	98.4	87.7	△10.7	△10.9

자료: 산림청

그리고 2022년에 비하여 2023년의 예산현액은 60억 3,100만원 증가(집행액 기준으로도 57억 2,500만원 증가)함으로써 15.6%(집행액은 15.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산과 집행액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문영향력지수는 하락함으로써 2023년의 연구성과가 더욱 저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4년간 산림과학연구(R&D)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0	39,175	39,018	39	△10	39,047	38,456	-	591	98.5
2021	39,944	39,944	-	±99	39,944	39,372	142	431	98.6
2022	39,316	38,578	142	△100	38,620	37,907	23	690	98.2
2023	44,628	44,628	23	±311	44,651	43,632	351	667	97.7

자료: 산림청

한편, 동 사업으로 인한 최근 4년간의 기술이전료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해가 2021년으로 16억 5,300만원을 기록하고 있음.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에 비하면 절대액수도 비할 바 없으나, 그나마 2021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폭이 2022년에는 39.6%, 2023년에는 64.6%의 하락률을 기록함으로써 기술시장에서의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5)]

5) 이에 대하여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의 실적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23년의 실적은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산림과학연구(R&D)사업 기술이전료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기술 이전 계약			
	건수	기술료 금액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2020	54	1,523	824	117.9
2021	52	1,653	130	8.5
2022	28	998	△655	△39.6
2023	29	353	△645	△64.6

자료: 산림청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연구성과가 논문과 실용성 양 측면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성과저조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 자체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사업은 국립산림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을 비롯한 전국민에게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21억 9,500만원 중 421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림복지진흥원 지원	42,195	42,195	-	-	42,195	42,195	-	-	50,199

나. 검토의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은 산림복지진흥원의 필요경비 총액에서 자체수입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상경비 및 산림치유원과 각종 숲체원 및 치유의 숲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되, 이들 시설운영으로 인한 입장료 등 수입을 감안하여 이른바 수지차보전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즉, 한 해 운영에 필요한 총 금액에서 자체수입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23년도 결산 결과 산림복지진흥원은 당초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던 62억 3,200만

6) 일반회계-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산림복지국)

원보다 22억 9,400만원이 많은 85억 2,600만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전액 산림복지진흥원의 2023년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었음.

이는 해당 금액만큼 국비가 과다 지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2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3억 8,500만원에 비하여 근 6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2023년의 이익잉여금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림복지진흥원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자체수입	6,232	6,617	6,232	8,526
이익잉여금		385		2,294

자료: 산림청

한편, 산림복지진흥원의 이익잉여금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7]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산림청의 승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복지진흥원은 2022년의 이익잉여금 3억 8,500만원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집행하였고, 2023년의 22억 9,400만원 중 19억 5,900만원은 고객안전을 위한 시설보수를 위해, 3억 3,500만원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산림복지진흥원은 한 해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다시 해당 시설 운영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다음 해의 예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다시 다음 해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그러므로 산림복지진흥원은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예산과 결산)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사업진흥계정)】

<세 출>

5.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은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화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의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

[2023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목재이용증진	7,882	7,882	-	±17	7,882	7,617	-	265	8,826
목재이용활성화	6,473	6,473	-	-	6,473	6,332	-	141	5,250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250	250	-	-	-	250	-	-	250

나. 검토의견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추진현황과 무관하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농특회계(임업산업진흥계정)-목재이용증진(1535-304)(산림산업정책국)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은 2023년에 신규로 도입한 단년도 사업으로, 개소당 총사업비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도서관의 대수선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공종에 포함시켜 도서관의 실내를 목질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추진된 노원구의 대수선 공사 설계 내용에 실내부문은 공간구획만 해당되고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동 사업을 일정 기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그 후 노원구에서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철거공사 후 2월부터 대수선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음.[9)]

이와 같이 동 사업은 2023년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2023년 5월 10일에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전액 교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도 실내목질화 사업의 예산실집행은 전무한 상태이며, 전액 2024년으로 이월되었음.[10)]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 예산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시행주체(지자체)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년	250	-	250	-	250	-	0.0

자료: 산림청

이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산림청의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 상의 보조금 교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11)]

그러므로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일반적인 제한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적절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9) 산림청에서는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대수선 공사의 철거작업이 2023년 9월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건축물 해체 허가 심의과정에서 해체공법 변경으로 해체공사가 지연되어 2024년 1월에 완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10)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5월 현재 노원구는 실내열람실 조성업체를 선정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실내목질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6.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사업: 사업관리 강화 및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해소 필요

가. 개 요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사업은 도시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 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10억원 중 310억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2)]

[2023년도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31,000	31,000	-	-	31,000	31,000	-	-	39,199

나. 검토의견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사업은 사업에 적합한 대상지 선정 및 사전행정절차의 이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척이 지연되고 연례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한 내에 완료한 실적이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실집행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처음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된 후 2022년에 기후기금을 거쳐 2023년부터는 지역균형발

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1734-301)(산림보호국)

전특별회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동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된 사업으로, 예산액 배분에 따라 3년 또는 4년간 추진하며 2019년에는 서울, 부산 등 11개소를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광주, 울산 등 4개소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2019년에 추진한 11개소 중 3년 기한 내에 완료한 곳은 2개소, 4년 기한 내에 완료한 곳은 4개소로, 나머지 5개소는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중 2개소는 재이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0년에 추진한 4개소 중 기한 내에 완료한 곳은 1개소이고, 이월은 2개소, 재이월은 1개소로 기록되고 있음.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사업 계획 대비 완료 현황]

(단위: 개소)

사업시작연도	구분	총사업수	기한내 완료사업	이월사업	재이월사업
2019년	3년사업	4	2	-	2
	4년사업	7	4	3	-
2020년	3년사업	4	1	2	1*
합계		15	7	5	3

자료: 산림청

이에 따라 사업기한이 만료된 총 15개소의 사업 중 기한 내에 완료한 사업 수는 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소는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1개소는 2024년 5월 말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바, 산림청에 따르면 연말에나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리고 2022년에 시작한 8개소와 2023년에 시작한 7개소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설계가 지연되거나 'KLAM-21(찬공기 유동분석 모델)'[13]을 통한 바람길 추가 분석 수행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의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적인 이월 과다 및 실집행부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예산현액 427억 3,000만원 중 210억 9,700만원을 실집행함으로써 49.4%의 실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5억 2,500만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였음.

13) 독일기상청에서 개발한 KLAM-21은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야간시간대의 복사냉각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찬 공기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수치모델임.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산림청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9	5,500	5,500	-	5,500	1,779	3,605	116	32.3
2020	38,000	38,000	3,605	41,605	13,221	26,347	2,037	31.8
2021	77,800	77,800	26,347	104,147	78,646	24,970	531	75.5
2022	52,700	45,440*	24,970	70,410	55,730	11,730	2,950	79.2
2023	31,000	31,000	11,730	42,730	21,097	20,525	1,108	49.4

자료: 산림청

2022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실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후기금의 기금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산림청의 교부액 자체가 당초 계획액보다 72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이에 대하여 산림청에서는 대상지 선정 및 관련 부서 협의 지연, 토지소유자 부지 매입 협의 지연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적정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전행정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보다 국고보조금을 과다 교부함에 따라 5년 연속 연례적인 이월 및 예산 실집행부진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므로 산림청은 개별 지자체의 사업추진 경과 및 장애 요인 발생 등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교부원칙을 준수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 실집행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성상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출>

7.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사전준비 철저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가. 개 요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해마다 1개소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4억 5,900만원 중 9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27.6%)되고, 24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3년도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	36,626	36,626	4,499	±80	41,125	31,788	7,790	1,547	36,513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3,459	3,459	-	-	3,459	957	2,496	6	3,459

나. 검토의견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은 계획설계 용역 실시로 인한 기간 소요 및 이를 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4년도부터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은 2023년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회문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단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

1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1732-301)(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 추진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 6월 말까지 시설개선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산림청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방향과 규모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설계 전 계획설계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계획설계 일정을 살펴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3년 2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해당 계획설계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소요된 기간은 한 달 반에 불과하여 동 사업의 지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3년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계획설계 용역 추진	**2023. 2. 27. ~ 4. 12.**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3. 5. 29. ~ 7. 27.
건축·토목·전기 등 공사 추진	**2023. 9. 21. ~ 2024. 6. 24.**

자료: 산림청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설계 용역의 추진 여부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감안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사전준비가 미흡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2024년에도 동일한 34억 5,900만원으로 전북 진안군에 있는 운장산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설계 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실시설계 기간을 기준으로 2023년도 사업보다 1개월 정도 빠른 경과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연내에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4억 5,200만원(0.6%)이 많은 9,229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3억 8,300만원(16.2%)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63,952	163,952	217,534	53,582	329,814	329,814	318,832	△10,982	101,298
기 금	573,676	573,676	576,984	3,308	587,635	587,635	604,069	16,434	27,085
총수입	737,628	737,628	794,518	56,890	917,449	917,449	922,901	5,452	128,383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257억 5,900만원(△3.5%)이 적은 6조 2,075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9억 2,800만원(3.1%)이 증가함.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861,382	5,614,543	5,457,600	△156,943	5,763,357	5,763,357	5,623,981	△139,376	166,381
기 금	523,567	581,932	564,995	△16,937	669,925	669,925	583,542	△86,383	18,547
총지출	6,384,949	6,196,475	6,022,595	△173,880	6,433,282	6,433,282	6,207,523	△225,759	184,928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6,953억 6,400만원으로, 1조 8,260억 7,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7,738억원이 수납(수납률 97.1%)되고 1억 2,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521억 4,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7,897	57,897	-	57,897	51,669	47,394	-	4,27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998	31,998	-	31,998	156,215	136,933	-	19,282
- 구조개선사업계정	25,105	25,105	-	25,105	142,074	128,853	-	13,221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6,893	6,893	-	6,893	14,141	8,080	-	6,061
교통시설특별회계	1,588,846	1,588,846	-	1,588,846	1,611,918	1,586,285	127	25,505
- 항만계정	1,588,846	1,588,846	-	1,588,846	1,611,918	1,586,285	127	25,50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48	3,848	-	3,848	3,005	1,349	-	1,656
- 투자계정	3,848	3,848	-	3,848	3,005	1,349	-	1,65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775	12,775	-	12,775	3,269	1,839	-	1,430
- 지역자율계정	7,632	7,632	-	7,632	2,146	847	-	1,299
- 지역지원계정	2,795	2,795	-	2,795	1,123	992	-	13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348	2,348	-	2,348	-	-	-	-
합 계	1,695,364	1,695,364	-	1,695,364	1,826,076	1,773,800	127	52,148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조 5,660억 9,500만원으로, 이 중 7조 789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6%)되고 2,428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43억 4,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550,344	3,550,344	75,035	-	109,478	3,734,857	3,575,297	89,062	70,49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55,274	1,455,274	73,293	-	107,420	1,635,986	1,524,032	37,104	74,850
- 구조개선사업계정	853,344	853,344	33,678	-	107,420	994,442	915,872	18,291	60,279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601,930	601,930	39,615	-	-	641,544	608,160	18,813	14,571
교통시설특별회계	1,588,846	1,588,846	71,963	-	-	1,660,809	1,490,030	94,492	76,288
- 항만계정	1,588,846	1,588,846	71,963	-	-	1,660,809	1,490,030	94,492	76,28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6,328	66,328	-	-	-	66,328	47,455	-	18,873
- 투자계정	66,328	66,328	-	-	-	66,328	47,455	-	18,87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8,115	468,115	-	-	-	468,115	442,137	22,145	3,833
- 지역자율계정	54,544	54,544	-	-	-	54,544	54,544	-	-
- 지역지원계정	362,329	362,329	-	-	-	362,329	336,351	22,145	3,833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1,242	51,242	-	-	-	51,242	51,242	-	-
합 계	7,128,907	7,128,907	220,291	-	216,898	7,566,095	7,078,951	242,803	244,34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8,354억 1,700만원으로, 1조 4,088억 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3,879억 2,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5%)되고 208억 7,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수산발전기금	835,417	835,417	1,408,801	1,387,924	-	20,877
합 계	835,417	835,417	1,408,801	1,387,924	-	20,87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8,375억 700만원으로, 이 중 1조 3,879억 2,400만원이 지출(집행률 165.7%)되고 38억 6,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46억 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수산발전기금	835,417	835,417	2,090	837,507	1,387,924	3,866	134,607
합 계	835,417	835,417	2,090	837,507	1,387,924	3,866	134,60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해양수산부 자산은 전년 대비 4,752억 9,000만원이 증가한 37조 8,664억 5,7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8,951억 8,4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2,875억 7,500만원 증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이 2,884억 2,9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61억 6,600만원 증가한 1,575억 1,300만원으로 유동부채 491억 6,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291억 2,300만원이 증가한 37조 7,089억 4,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조 6,163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조 770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48억 9,0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7,866,457	37,391,167	475,290	1.27
		유동자산	895,184	981,537	△86,353	△8.80
		투자자산	2,304,219	2,016,644	287,575	14.26
		일반유형자산	7,153,874	7,157,377	△3,503	△0.05
		사회기반시설	27,078,548	26,790,119	288,429	1.08
		무형자산	44,086	52,555	△8,469	△16.11
		기타비유동자산	390,546	392,936	△2,390	△0.61
	부 채		157,513	111,347	46,166	41.46
		유동부채	102,365	53,197	49,169	92.43
		장기차입부채	550	589	△39	△6.62
		장기충당부채	3,145	162	2,983	1,841.36
		기타비유동부채	51,453	57,399	△5,946	△10.36
	순자산		37,708,944	37,279,821	429,123	1.1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616,361	4,476,357	140,004	3.13
	재정운영순원가		5,175,194	4,706,846	468,348	9.95
	재정운영결과		5,077,051	4,622,161	454,890	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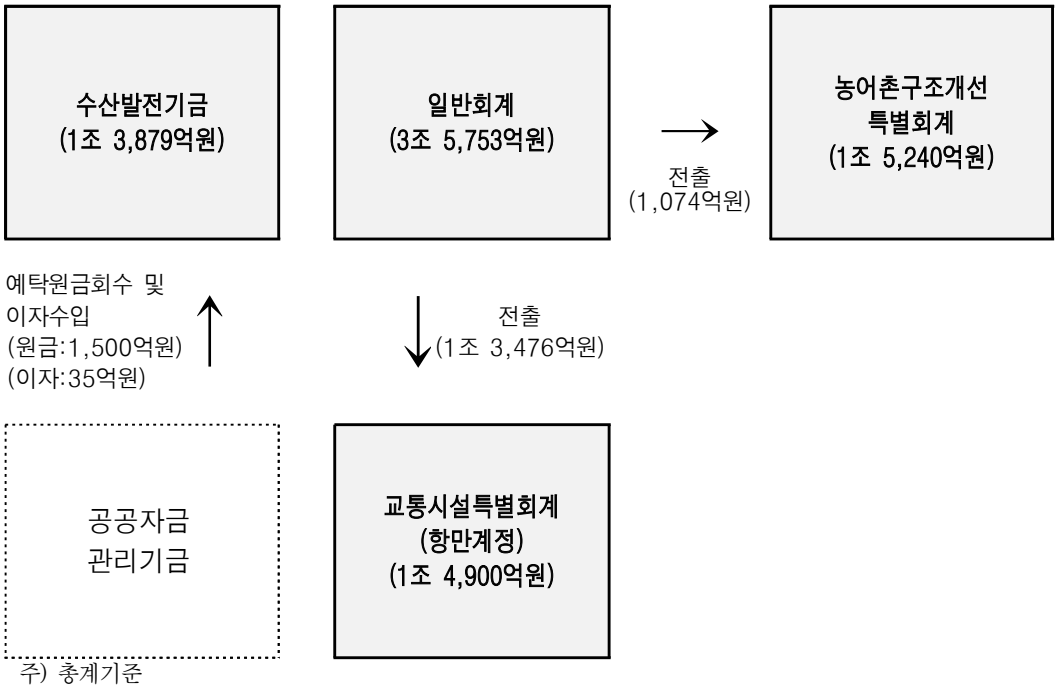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1,074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로 1조 3,476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1,535억원이 상환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해양수산부는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을 2023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국제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지역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안전 연안 조성 등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지 위판장 수산물 안전 관리는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예비비를 신청·배정함에 따라 예비비 59억 5,900만원 중 23억 6,400만원이 불용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신청 시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수납대상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고, 동일 회계 및 계정에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2번 편성된 오류 및 타 세입과목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잘못 수납한 오류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편성 및 수납 등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은 당초 2022년~2023년 2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활동에 필요한 민간선박이 미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당초 설정한 시범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2023년 예산 전액이 불용된 문제가 있음.

넷째, 혁신어촌조성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율 등 사업 추진 관련 설계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으로 교부되어 회계연도 불일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다섯째,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회수액을 추후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나, 회수액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예비비 관련: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고려 미흡에 따른 예비비 불용 발생 등

가. 개 요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3차례에 걸쳐 1,094억 7,8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어 1,038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9%)되고 23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에 대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비비 구분	회계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명)	배정사유	예비비 배정액	집행액	자금 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일반 회계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1033-320)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긴급조사 시행	2,058	2,052	23.7.7.	-	6
일반 예비비	농특 회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3040-317)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 관리)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수품원·지자체·민간 검사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방사능 검사체계 마련을 위한 예비비 긴급 지원 필요	5,995	3,631	23.7.7.	-	2,364
일반 예비비	농특 회계	수산물 위생관리 (3041-303)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오염수 해양방류 임박에 따라 양식장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5,900	2,909	23.7.7.	2,347	645

(단위: 백만원)

예비비 구분	회계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명)	배정사유	예비비 배정액	집행액	자금 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농특 회계	수산물품질관리 (3045-301)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운영)	단속반 차량 등 임차, 유류비, 단속반원 출장비, 유관기관 및 단체 협의, 특별사법경찰 특정업무경비	691	539	23.7.7.	-	152
일반 예비비	농특 회계	수산물품질관리 (3045-301) (수산물 안전성조사)	조사반 출장비	270	204	23.7.7.	-	66
일반 예비비	농특 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3440-340)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위축 방지	80,000	80,000	23.9.7.	-	-
일반 예비비	농특 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3440-340)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연말까지 장바구니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14,279	14,279	23.12.14.	-	-
일반 예비비	농특 회계	원양어업활성화 (3542-300)	조업환경 안전관리 강화	285	285	23.7.7.	-	-
합 계				109,478	103,899		2,347	3,233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첫째,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지 위판장 수산물 안전 관리는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예비비를 신청·배정함에 따라 예비비 59억 5,900만원 중 23억 6,400만원이 불용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신청 시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지 위판장 수산물 안전 관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검사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방사능 검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예비비 59억 9,500만원이 배정됨.[2)]

예비비 신청서상 산출 근거를 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 및 시료구매비 20억 9,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시료구매 및 검사비 5억 4,600만원, 민간 검사비 20억 5,900만원, 안전필증 사업 7억 7,400만원, 검사장비 이전비 2,500만원 및 앱개발 5억원임.

[산지 위판장 수산물 안전 관리 사업의 예비비 신청서상 산출 근거]

구분		예산(원)	산출근거
합계		**5,995,000,000**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검사비	시료구매	1,778,800,000	38개소×3어종×주6회×26주×10만원
	검사비	312,000,000	시험연구비 1식 (수용비, 임차료 등 검사경비)
지자체 검사비	시료구매	234,000,000	5개소×3어종×주6회×26주×10만원
	검사비	312,000,000	검사경비 1식
민간 검사비		2,059,200,000	33개소×주6회×26주×40만원
안전 필증		774,000,000	43개소×180일×10만원
검사장비 이전비		25,000,000	5개소×5,000,000원
앱개발		500,000,000	개발비 1식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예비비 배정액 59억 9,500만원 중 36억 3,100만원만 집행(집행률 60.6%)되고 23억 6,400만원은 불용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시료구매 비용(2억 3,400만원), 안전필증 비용(7억 7,400만원) 및 검사장비 이전비(2,500만원) 전액과 지방자치단체 검사비의 89.4%(2억 7,900만원), 민간검사비의 34.6%(7억 1,300만원)가 불용된 것에 주로 기인함.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3040-317)(수산정책실)

[실제 예비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 사유]

구분		예산	산출근거	실제 집행내역	불용액 발생 사유
합계		**59억 9,500만원**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 검사비	시료 구매	17억 7,880만원	38개소×3어종×주6회×26주×10만원	17억 7,900만원 중 15억 4,500만원은 일반용역비 전환 -일반용역비 15억 4,500만원 중 15억 1,100만원 실집행 시료구매비 2억 3,400만원 중 1억 3,600만원 실집행	위판장 현장 여건에 따라 시료 채취 어종·횟수 등의 변동사항 발생
	검사비	3억 1,200만원	시험연구비 1식 (수용비, 임차료 등 검사경비)	시험연구비 1식 - 3억 1,100만원	-
지자체 검사비	**시료 구매**	2억 3,400만원	**5개소×3어종×주6회×26주×10만원**	-	부산, 전북 2개 지자체 수요 3,300만원으로 차액분 불용
	검사비	3억 1,200만원	**검사경비 1식**	**검사경비 1식 - 3,300만원**	
민간 검사비		**20억 5,920만원**	**33개소×주6회×26주×40만원**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사업 추진 1식 - 13억 4,600만원**	수산물은 시기별 위판 건수가 변동적이며 특히 해조류의 경우 특정 시기(물김의 경우 11~2월)에 생산되어, 본 사업 추진 시점과 생산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시료위탁분석비의 예산집행이 저조
안전 필증		**7억 7,400만원**	**43개소×180일×10만원**	-	안전 필증 사업 미실시
검사장비 이전비		**2,500만원**	**5개소×500만원**	-	당초 검사장비를 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 등 검사장비 보유 기관의 적극협조로 검사장비 이전비 미집행
앱개발		5억원	개발비 1식	개발비 1식 - 2억 9,400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 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 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집행가능성 또한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되어 예비비를 신청·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연내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여 불용 및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동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의 39.4%가 불용되었음을 고려하면 예비비 신청 시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검사의 경우 수요가 부족하여 차액분을 불용하였고, 민간 검사비의 경우 수산물의 시기별 위판건수가 변동적이어서 예비비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안전필증 사업의 경우 부착의 현실상 어려움 및 미부착 수산물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동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는 후쿠시마 오염수 최초 방류(2024. 8. 23.) 전 신청 및 배정된 것으로, 예비비 신청 전 집행가능성 및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리고 사유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요 부족으로 배정액 대부분이 불용된 지방자치단체 시료구매비 및 검사비는 예비비 신청 전 지방자치단체의 검사 수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비하였고, 민간 검사비의 경우도 수산물의 시기별 위판건수가 매년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 신청 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음. 또한 안전 필증의 경우에도 부착의 현실상 어려움 및 미부착 수산물에 대한 역차별 우려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했던 사항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예비비는 집행가능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비비 신청 시 집행가능성 및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5. 예비비 예산 중 일부 발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시 집행가능성 및 과거 예비비 집행 사례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중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은 예비비 배정 1개월 후 사업 방식을 전환하였고, 전환 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신청 시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예비비의 요건 중 하나인 시급성을 충족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방사능 장비 확충, 민간검사 기관 활용 검사, 방사능 검사 필증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 7월 예비비 59억원이 배정됨.[4)]

예비비 신청서상 산출 근거를 보면, 방사능 장비 확충 33억원, 민간기관 활용 검사 20억원 및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6억원임.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예비비 신청서상 산출 근거]

구분	기존 예산	추가(예비비)
방사능 장비 확충	현재 해수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5대 및 분석에 필요한 운영비 등 * 15억 8,500만원 = 5대×3억원 + 운영비 8,500만원	11대 추가 도입 * 33억원=11대×3억만원
방사능 장비 지원	지자체 방사능 장비 지원 10대 * 15억=10대×3억원×50%	-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등 * 2억 2,000만원	-
민간검사 기관 활용한 방사능 검사	기존 정부 양식장 방사능 검사 2,000건 계획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추가 4,000건 방사능 검사 실시 * 20억원=50만원(분석비, 인건비, 운송비, 시료구매비 등)×4천건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	방사능 필증 지원을 통해 안전 수산물 증명 * 6억원 = 10만원(재료비, 인건비 등)×6천개소
지급액	33억 500만원	59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 중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은 방사능 검사 결과 적합인 생산단계 수산물(양식 수산물)에 대해 필증 부착을 지원하는 것이나 예비비 배정 1개월 후인 2023년 8월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필증 부착으로 인한 부작용(필증 남용, 미부착 품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소비자 불안 조성) 우려가 있어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설명임.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물 위생관리(3041-303)(수산정책실)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사업과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비교]

분류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사업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개념	양식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후 인근 양식장 어업인에게 거래처, 어상자, 활어차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필증 스티커 발급	주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받는 해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하고 안심관리 마을 생산자에게 '수산물 안심관리마을 확인서' 발급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고, 재해복구 지원, 대외여건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 방식 변경은 적절하지 않고, 사전에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5)]

또한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은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획 대비 수요가 저조하여 예비비 배정액 6억원 중 4.7%인 2,800만원만 집행되고 95.3%인 5억 7,200만원은 불용되었음.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실제 예비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예비비 배정액	산출근거	실제 집행내역	불용액 발생 사유
6억원	일반용역비 6억원 - 양식장 6천개소 × 10만원(재료비, 인건비 등)	일반용역비 2,800만원 - 140개 안심관리마을 지정, 지정 확인서 295건 발급 등	당초 필증발급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필증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 등으로 안심관리 마을 지정으로 사업 변경('23.8)하면서 집행이 저조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예비비 배정 후 2023년 8월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도 저조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사업 계획이 변경된 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예비비 배정액의 대부분이 불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비 요건 중 하나인 사업 추진의 시급성도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임.[6)]

---

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5. 예비비 예산 중 일부 발췌
-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면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다.
- 다만,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 수산물 품질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운영은 예비비로 배정받은 임차료 중 일부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는데, 향후 예비비 집행 시 예비비의 성격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수산물 품질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은 가공업체, 음식점 등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원산지 둔갑 행위가 없는지 단속하는 것으로,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전수조사(원산지 특별단속)를 위하여 2023년 7월 예비비 6억 9,100만원이 배정됨.[7)]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사업의 예비비 신청서상 산출 근거]

구 분	요구내역		
	비목별 소요금액		산출근거
원산지 특별단속 (단속반 80개조)	합계	6억 9,100만원	
	국내여비	2억 8,800만원	80개조×2명×30천원×20일×3개월
	임차료	2억 8,800만원	(단속 차량, 180백만원) 50대×1,200천원×3개월 (파견자 숙소, 108백만원) 40명×900천원×3개월
	유류비	7,200만원	50대×15ㅣ×1,600원×20일×3개월
	특정업무경비	1,300만원	추가지명 특사경 54명×80천원× 3개월
	업무추진비	3,000만원	15개소×2회(안전성,원산지)×1,000천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 중 임차료 배정액은 2억 8,800만원으로 원산지 특별단속 차량과 파견자 숙소 임차를 위하여 배정되었음. 그런데 해당 내역사업 내 임차료 비목의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비 배정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 9,400만원 중 4억 7,600만원이 집행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6,100만원이 세목조정을 통하여 감액되었음.

6) 동 사업은 2024년에도 사업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①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운영 외에 ②안심관리 마을産 수산물 소비 지원, ③수산물 안전관리 방향 조사·평가 등을 추진 중인데 안심관리 마을産 수산물 소비 지원은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제고 등 기존 수산물 판로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한 것은 물론, 동 사업의 2024년 6월말 기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실적도 36.7%로 저조함.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물 품질관리(3045-301)(수산정책실)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사업 임차료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67	267	-	△61	288	494	476	-	18	267

자료: 해양수산부

세목조정은 예비비 배정 후인 2023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단속(2023. 8. 28.~2023. 12. 5.)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세목조정하였다는 설명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사업 임차료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목조정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3.11.2.)	수산물품질관리 (3045-301)	210-07	69	수산물품질관리 (3045-301)	210-01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추진

자료: 해양수산부

세목조정 후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 17억 8,400만원 중 17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627	1,627	-	157	-	1,784	1,782	-	2	1,627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비의 세목조정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8) 임차료가 아닌 다른 비목에서도 일반수용비로의 세목조정이 이루어졌음.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과징금·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수납 관련 개선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외 수입이 계상 및 수납되는 과목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각각 편성되었음.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모두 2023년 예산액은 있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없음.[9)]

[2023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세입과목 결산]

(단위: 백만원, %)

회계명 (계정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수납률 (D/A)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1,511	1,511	-	1,511	-	-	-	-	-	2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716	716	-	716	-	-	-	-	-	737
농특회계 (농특세사업계정)	128	128	-	128	-	-	-	-	-	132
농특회계 (농특세사업계정 14관)	146	146	-	146	-	-	-	-	-	-
교특회계 (항만계정)	613	613	-	613	-	-	-	-	-	-
에특회계 (투자계정)	6	6	-	6	-	-	-	-	-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의 **‘과징금’** 은 허가를 받지 않고 원양어업을 하는 등 「원양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계상 및 수납되는 과목으로, 2023년 예산액은 없으나 3억 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억원이 수납(수납률 98.0%)되었음.[10)]

---

9)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2023년 과징금 세입과목 결산]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수납률 (D/C)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과징금	-	-	-	-	306	300	98.0	6	-	-

일반회계의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탁연구과제 간접비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유료교육생 교육비 및 숙박비 수입 등이 계상 및 수납되는 과목으로, 2023년 예산액 3억 5,7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이 수납(수납률 37.5%)되었음.[11]

[2023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세입과목 결산]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수납률 (D/A)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357	357	-	357	184	134	37.5	50	-	368

나. 검토의견

첫째,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수납대상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고, 동일 회계 및 계정에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2번 편성된 오류 및 타 세입과목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잘못 수납한 오류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편성 및 수납 등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2년부터 기타재산수입 세입과목이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분리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수납대상이 되는 기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음.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과징금(56-565)(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11) 일반회계-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14-65-691)(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일반회계의 경우 2023년 세입예산 1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은 세입예산 7억 1,600만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1억 2,800만원 및 1억 4,600만원,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은 6억 1,3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은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없음.

[2022년~2024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편성 및 수납실적(2024년 4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2022년	648	648	-	648	2주)	2주)	0.3	-
	2023년	1,511	1,511	-	1,511	-	-	0.0	-
	2024년	2	2	-	-	-	-	-	-
농특회계 (구조개선 사업계정)	2022년	695	695	-	695	-	-	-	-
	2023년	716	716	-	716	-	-	-	-
	2024년	737	737	-	-	-	-	-	-
농특회계 (농특세계정)	2022년	124	124	-	124	-	-	-	-
	2023년	128	128	-	128	-	-	-	-
	2024년	132	132	-	-	-	-	-	-
농특회계 (농특세계정 14관)	2022년	-	-	-	-	-	-	-	-
	2023년	146	146	-	146	-	-	-	-
	2024년	-	-	-	-	-	-	-	-
교특회계 (항만계정)	2022년	-	-	-	-	-	-	-	-
	2023년	613	613	-	613	-	-	-	-
	2024년	-	-	-	-	-	-	-	-
에특회계 (투자계정)	2022년	-	-	-	-	-	-	-	-
	2023년	6	6	-	6	-	-	-	-
	2024년	7	7	-	-	-	-	-	-

주) 일반회계의 2022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200만원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하는 금액이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잘못 수납된 수납오류임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세입예산 편성 근거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아닌 기타재산이자수입의 2022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2023년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4관 제외)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동일 세입과목의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에 해당 세입과목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4관은 별도의 편성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금액을 반영하였다는 설명임.

그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기타재산수입에서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2021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14%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편성한 문제가 있음.

[2023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근거]

(단위: 천원)

구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일반회계	1,511,000	2022년 기타이자수입 예산 반영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716,000	2022년 예산×1.03(물가상승률) ※ 2022년 예산 = 2021년 예산(기타재산수입) 중 이자외 수입 예산×1.03(물가상승률)
농특회계(농특세계정)	128,000	2022년 예산×1.03(물가상승률) ※ 2022년 예산 = 2021년 예산(기타재산수입) 중 이자외 수입 예산×1.03(물가상승률)
농특회계(농특세계정 14관)	146,000	기재부 통보 신규예산 반영
교특회계(항만계정)	613,000	2021년 기타재산수입예산의 14%×1.03(물가상승률)
에특회계(투자계정)	6,000	2022년 예산 수준 반영 ※ 2022년 예산 = 2021년 예산(기타재산수입) 중 이자외 수입 예산×1.03(물가상승률)

자료: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계정에 동일한 세입과목이 2번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14관의 경우 정부안 편성 시 오류로 인하여 잘못 편성된 세입예산이라는 설명으로, 이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편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세입과목 분리 전에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에 상응하는 수납실적이 없고 수납대상이 되는 기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으로, 실제 수납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한편 2022년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2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할 금액이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잘못 수납되었다는 설명임. 이러한 수납 오류는 수납측면에서도 동 세입과목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수납대상이 되는 정부재산 및 자산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편성 및 수납 등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과징금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징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의 과징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원양어업을 하는 등 「원양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 및 징수되는데, 2020년~2023년 과징금 편성 및 수납실적을 보면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미반영되고 있는 상황임.

[2020년~2023년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과징금 편성 및 수납실적(2024년 4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0년	-	-	-	-	1	1	-	100.0
2021년	-	-	-	-	35	35	-	100.0
2022년	-	-	-	-	208	208	-	100.0
2023년	-	-	-	-	306	300	-	98.0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가 많지 않아 과징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그러나 과징금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해양수산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적정 규모의 과징금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회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은 예산액이 구조적으로 초과계상되는 예산 편성상 오류와 타 세입과목이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으로 잘못 수납되는 수납 관련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동 세입과목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이 수납되는 과목으로 두 기관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 합계와 동 세입과목의 예산액이 일치하여야 함.

그런데 2023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은 5,500만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은 9,500만원으로 둘을 합한 총액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2023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세입과목에는 3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700만원이 초과계상되었음.

[2023년 수입대체경비 예산 편성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A)	실제 예산 편성액(B)	B-A	비고
합 계	150	357	207	불일치 (초과계상)
국립수산과학원	55			
해양수산인재개발원	9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세입예산액이 두 기관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합하여 계상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상되어 편성 방식에 오류가 있기 때문임.[12)]

[2023년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편성 근거]

(단위: 천원)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357,000	■ 2022예산×1.03(물가상승률)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초과계상되는 세입예산 편성 방식은 2020년 예산부터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2022년까지 매년 예산현액과 유사한 규모의 금액이 수납이 되고 있음.

[2020년~2023년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328	328	328	531	481	146.6	90.6	50	-
2021	337	337	337	386	335	99.4	87.0	50	-
2022	347	347	347	364	251	72.2	68.8	114	-
2023	357	357	357	316	134	37.5	72.7	50	-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징수 및 수납 시 담당자가 13관 기타잡수입(재화및용역판매수입)과 14관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을 혼동하여 13관 기타잡수입(재화및용역판매수입)에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14관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로 수납함에 따라 연평균 약 2억원의 금액이 잘못된 세입과목으로 수납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12)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부처 예산요구안 편성 시 두 기관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합한 금액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정당국에서 정부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향후 동 세입과목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고려한 적정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수납 시에도 적합한 세목으로 수납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3.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종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민간선박의 미확보로 인한 예산 전액 불용

가. 개 요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은 대형어업지도선 도입 전 접경수역 등 원거리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분쟁 방지효과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민간어선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3,000톤급 및 5,000톤급 대형어업지도선 추가 도입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한 시범사업임. 동 사업은 2023년 예산액 14억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0%)되었음.[13)]

[2023년도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어업지도관리	131,146	131,146	25,915	30	157,031	103,690	42,834	10,507	43,025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1,400	1,400	-	-	1,400	-	-	1,400	-

동 사업의 과업 내용은 선박 운용 및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원거리해역 내 수산자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전액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음.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과업 내용]

사업 내용	세부 과업내용
①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의 일반적 운영·관리 사무에 관한 업무	○ 원거리해역 내 활동에 필요한 민간어선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②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의 선박 운용 및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 원거리해역 내 활동 민간어선의 운항 기본계획 수립 ○ 민간어선 승선원 및 어업감독공무원 지원 방안 수립 ○ 민간어선 선박 운용에 필요한 표준 절차서 마련 등 ○ 원거리해역 내 민간어선의 표준 안전·보건 관리 방안 수립

13) 일반회계-어업지도관리(3132-303)(수산정책실)

사업 내용	세부 과업내용
③ 원거리해역 내 수산자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 원거리해역 활동 시 수산자원의 모니터링 방안 수립 등
④ 원거리해역 대응시범 사업의 일반적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 동 사업 중 발생되는 일반적 정보 관리계획 수립
⑤ 원거리해역 대응시범 사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동 사업 관련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 동 사업의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마련
⑥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은 당초 2022년~2023년 2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활동에 필요한 민간선박이 미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당초 설정한 시범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2023년 예산 전액이 불용된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은 대형지도선 도입(2024년) 이전까지 2년 동안(2022년~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3,000톤급 및 5,000톤급 지도선의 추가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어선을 활용하여 부족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이에 2022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민간선박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2022년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추진 경과]

○ (2021. 11. ~ 12.) 사업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 (2021. 12. ~ 2022. 1.)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계약체결 추진
○ (2022. 1. ~ 4.) 사업착수(출항 1.24.) 및 임무 수행(입항 4.24. / 91일)
○ (2022. 5.) 임무종료 후 평가협의회 개최(5. 2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3년에는 2022년 시범사업에 활용한 선박 및 같은 톤급 원양어선이 운항일정 등의 사유로 미확보되어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차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1차년도 시범사업만으로도 당초 설정한 대형 어업지도선의 추가 도입 타당성 확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2022년 5월 시범사업 실시완료 후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2022년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시범사업의 계속 추진이 필요하므로 2023년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향후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1차년도의 시범사업만으로는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냄.[14)]

또한 1차년도 사업이 2022년 5월 종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차년도의 시범사업만으로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2차년도의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으나 예산도 편성하였음.

그리고 동 시범사업의 목적은 대형어업지도선 도입의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2024년 신규 어업지도선 도입 전까지 민간어선으로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사업 미실시로 어업지도선 역할 대체는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당초 설정한 시범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동 사업은 최초 사업계획 시부터 대상 선박이 1척 밖에 없어 해당 선박의 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전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의 활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활용 불가 시 대안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도 미흡하였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민간선박의 확보 가능 여부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 목표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2023년 예산 전액이 불용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 「2022년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운영결과(요약)」 중 일부 발췌
□ 향후계획
ㅇ '23년 사업 계속을 위한 사업비(14억원) 확보 추진(~'22.8.)

4.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실집행단계에서 출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 등

가. 개 요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과학관 등을 건립 및 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874억 7,000만원 중 747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6%)되고, 112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3년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72,351	72,351	10,619	4,500	87,470	74,768	11,272	1,431	105,112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8,883	8,883	-	-	8,883	8,883	-	-	8,634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8,512	8,512	-	-	8,512	8,512	-	-	8,266

내역사업인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은 해양문화와 해양산업 유산을 발굴·보존·연구·전시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액 88억 8,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립해양과학관 운영’**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액 85억 1,2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15)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해양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사업과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연례적으로 출연금 중 일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월 규모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출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 출연금으로 인건비·기관운영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출연금 중 일부는 실집행단계에서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우선 2021년~2023년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에는 국립해양박물관으로의 출연금 88억 8,300만원 중 25.1%인 22억 3,3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사업 2021년~2023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목	세목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기타 수입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예산 현액 (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21	350	01	5,461	5,506 (세목변경 45)	5,506	5,506	727	26	6,259	5,267	5,506	4,332	**992**	78.7
	350	02	3,209	3,164 (세목변경 △45)	3,164	3,164	922	-	4,086	3,172	3,164	2,609	**914**	82.5
2022	350	01	5,151	5,541 (세목변경 390)	5,541	5,541	992	90	6,623	5,654	5,541	4,710	**969**	85.0
	350	02	3,709	3,319 (세목변경 △390)	3,319	3,319	914	-	4,233	3,543	3,319	2,821	**690**	85.0
2023	350	01	5,174	6,140 (세목변경 966)	6,140	6,140	969	91	7,200	5,828	6,140	5,630	**1,372**	91.7
	350	02	3,709	2,743 (세목변경 △966)	2,743	2,743	690	-	3,433	2,572	2,743	2,253	**861**	82.1

자료: 해양수산부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7억 3,000만원이고 14억 1,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잉여금 처리되어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었음.[16)]

[국립해양박물관 2023년도 결산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원)

항 목		결산액	비 고
계		2,232,796,574	-
사고이월	소 계	730,226,605	-
	기관운영비	60,345,000	- 외부공인회계사 결산감사용역 12백만원(2023.12.15.~2024.3.30.) - 채용대행 용역 40백만원(2023.12.27.~2024.06.30.) - 채용솔루션 이용 용역 5백만원(2023.6.22.~2024.6.30.) - 미세먼지 흡입매트 유지보수용역 3백만원(2023.6.2.~2024.6.1)
	해양자료수집관리	218,313,275	- 박물관 선박모형 제작 및 설치용역(2023.6.7.~2024.3.29.) - 2023년 선박모형 대여자료 운송(2023.7.18.~2024.4.12.)
	전시기획 및 운영	50,570,000	- 온라인 전시<전쟁과 평화> 용역 2백만원(2023.5.2.~2024.5.1.) - 기획전시<피싱>전시영상 용역 20백만원(2023.6.8.~2024.2.26.) - 기획전시<피싱>전시유물 포장,해포,운송 용역 20백만원 (2023.10.30.~2024.3.10.) - 기획전시<피싱> 현수막 및 배너제작, 설치, 운영, 철거 용역 8백만원(2023.11.13.~2024.2.29.)
	대외인지도 제고	14,160,000	- 기재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2023.12.22.~2024.4.19.)
	박물관시설개선	386,838,330	- 흡수식 냉온수기 구매(2023.10.24. ~2024.03.26.)
집행잔액	소 계	1,411,628,048	-
	인건비	812,459,505	- 해임무효소송으로 인한 결원인건비(2심 진행중) 291백만원 - 상임임원 임용지연으로 인한 잔액발생(54백만원) - 혁신가인드라인 감축인원(3명) 인건비(111백만원) - 직원퇴직 등 정현원차 발생에 따른 인건비(356백만원)
	기관운영비	390,703,633	- 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으로 전기 및 가스 사용량 감소, 추정 당시 전기 및 가스 단가와 실제 단가와의 차액 발생 (314백만원) - 일반수용비 등의 낙찰 및 집행잔액 (76백만원)
	해양자료수집관리	34,173,36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전시기획 및 운영	31,506,265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학술 사업	4,827,202	-

16)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결산액	비 고
	해양도서관 사업 운영	1,851,395	-
	해양문화교육사업	1,486,710	-
	대외인지도 제고	15,091,841	-
	정보화사업	12,764,508	-
	박물관시설개선	106,763,627	- 흡수식 냉온수기 낙찰차액 등
기타수입	소 계	90,941,921	-
	이자수입	85,598,860	- 은행이자
	잡수입	5,343,061	- 정보화 포상금 등

자료: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의 경우도 2021년~2023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는 출연금 85억 1,200만원 중 23.0%인 19억 5,400만원이 실집행 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 2021년~2023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목	세목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기타 수입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예산 현액 (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21	350	01	5,163	5,163	5,163	5,163	594	2	5,757	4,330	5,163	3,959	**1,428**	76.7
	350	02	2,316	2,316	2,316	2,316	1,793	-	4,109	3,702	2,316	1,942	**407**	83.9
2022	350	01	5,928	5,928	5,928	5,928	1,428	6	7,356	5,614	5,928	4,715	**1,748**	79.5
	350	02	2,316	2,951 (전용 635)	2,951	2,951	407	-	3,358	2,589	2,951	2,189	**769**	74.2
2023	350	01	5,896	5,896	5,896	5,896	1,748	68	7,644	5,998	5,896	5,161	**1,714**	87.5
	350	02	2,616	2,616	2,616	2,616	769	-	3,385	3,145	2,616	2,403	**240**	92.2

자료: 해양수산부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6,000만원이고 18억 9,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잉여금 처리되어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었음.[17]

17)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해양과학관 2023년도 결산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원)

항 목		결산액	비 고
계		2,010,542,909	-
사고이월	소 계	60,100,000	-
	기관운영비	31,900,000	- 기관홍보 이미지 촬영 용역 13백만원 (2023.8.31.~2024.7.30.) - 23년 회계감사용역 17백만원 (2023.9.8.~2024.3.31.) - 회계결산용역 2백만원 (2023.7.1.~2024.6.30.)
	전시사업비	28,200,000	- 전시기획 운영 및 철거 용역(2023.9.19.~2024.2.29.)
집행잔액	소 계	1,893,920,807	-
	인건비 집행잔액	1,532,771,268	- 전시교육본부장 임용지연으로 인한 잔액발생(165백만원) - 혁신가인드라인 감축인원(2명)인건비(115백만원) - 직원퇴직 등 정현원차 발생에 따른 인건비(1,253백만원)
	기관운영비 집행잔액	149,182,583	- 낙찰차액(94백만원) - 집행잔액(55백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211,966,956	- 낙찰차액(186백만원) - 집행잔액(26백만원)
기타수입	소 계	56,522,102	-
	이자수입	52,269,444	- 은행이자
	잡수입	4,252,658	- 외부 경진대회 상금 등

자료: 국립해양과학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세출예산 이월 금지 원칙을 고려하면 출연금은 출연된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출연예산의 20% 이상의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그리고 결산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과학관 모두 집행잔액 중 인건비 잔액이 큰 규모로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기관별로 보면,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약 8억원 규모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1년~2023년 국립해양박물관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1년	3,933	4,441	3,564	**877**
2022년	4,029	4,906	4,105	**801**
2023년	4,098	4,899	4,087	**812**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10억원 내외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2021년~2023년 국립해양과학관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A)	예산현액(C=A+B)	집행액(D)	집행잔액(C-D)
2021년	2,767	3,213	2,425	**788**
2022년	3,652	3,652	2,762	**1,017**
2023년	3,744	4,761	3,228	**1,53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례적인 인건비 집행잔액을 고려할 때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과학관의 인건비는 정·현원 차이, 충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잔액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연례적으로 출연금이 이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출연예산은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및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 예산은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잉여금 처리 규정은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규정되어 적정하지 않고, 결산잉여금 관련 정의도 모호하여 국가재정 관련 법령과 상충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각각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두 시행령 모두 근거 법률에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즉, 근거 법률상 하위 법령에 지출재량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잉여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음.

또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모두 '잉여금'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양 기관 모두 결산잉여금을 사고이월·집행잔액·이자수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적인 규정이 없으나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은 기관 세입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운영출연금이 아닌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결산잉여금에 포함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출연금의 정산·반납 및 잉여금 처리 관련 국가재정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결산잉여금 처리 관련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출연금의 정산·반납 및 잉여금 처리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5.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입한 장비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해역의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한 해양환경측정망(전국연안 425개 정점) 및 해양방사성물질 측정망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6억 5,700만원 중 165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3년도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10,999	10,999	-	3,900	2,058	16,957	16,855	-	102	17,858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10,699	-	-	3,900	2,058	16,657	16,555	-	102	14,942

나. 검토의견

첫째,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에서 집행한 민간위탁사업비 중 일부는 방사능 장비 구입 비용이고 해당 장비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유임에도, 실제로 장비의 보유 및 관리를 수탁기관에서 하게 됨에 따라 추후 해양수산부의 자산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예산으로 106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106억 4,900만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액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되었음. 이 중 15억원은 해양 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사능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임.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긴급조사에 필요한 방사능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7월 전용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는 전액

18) 일반회계-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1033-320)(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되었음.

[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7.2.)	해양보호구역 관리(1031-301)	330-03	3,000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1033-320)	320-0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긴급조사 시행
	연안정비 (1034-302)	420-03	654			
		420-04	246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2023년 방사능 장비 구입을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 총 54억원이 위탁되었고, 해양환경공단은 방사능 분석장비 및 전처리장비 23기와 실험보조장치를 구입하였음.

[2023년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입한 장비 내역]

- 액체섬광계수기 2기
- 다검출기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1기
- 삼중수소전해농축장치 3기
- AMP공침수조 8기
- 감마스펙트로미터 9기
- 실험보조장치(세척기, 분석용 저울 등)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입한 장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단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유로, 공단은 협약의 해지 시에는 장비를 장관에게 인계하고, 사전에 합의 없이 타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

[2023년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위탁계약서 일부 발췌]

제16조(재산의 귀속・관리) ① 이사장이 수탁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된 물품과 작성 보관 중인 일체의 문서는 장관의 소유로 하고 협약의 해지 시에는 이를 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본 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장비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관과 사전에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해당 장비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장비가 아니라 추후 해양수산부의 자산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3년 이전에도 민간위탁사업비를 통하여 해양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재물조사 실시 및 동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 추후 해당 장비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19)]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조사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된 사무로, 해양방사능 시료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장비가 필수적이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며, 장비 관리 관련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입한 방사능 분석장비를 2024년 5월부터 물품대장에 등록 요청하여 2024년 7월 등록 완료하였다는 설명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도 매년 민간위탁사업비로 취득하는 장비의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자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효율적인 유형자산 관리와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향후 방사능 등 장비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이를 이용한 검사 등 수행업무 위탁은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 및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에서 방사능 장비 구입을 위하여 전용한 금액 중 일부가 당초 전용목적과 다른 실험실 확장 공사 등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적절한 전용 집행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해양수산부는 2023년 7월 긴급조사에 필요한 방사능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해양환경프로그램 내 이·불용 예상액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신청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하였음.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전용 승인 신청 공문상 전용 사유는 긴급조사 소요예산 중 분석장비 구축비용임.

---

19)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定期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소관별 · 품종별 · 회계별 물품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긴급조사 관련 2023년 세출예산 전용 요청서 중 전용목적]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안전성 판단을 위한 긴급조사* 시행 필요 * 정밀조사(52개 정점 시행중)와 병행하여 75개 정점에서 추가 조사 실시 ○ **긴급조사 소요예산*(5,997백만원) 중 분석장비 구축비용에 대해** 해양환경 프로그램(075) 내 이·불용 예상액**(3,900백만원)을 **전용하여 예산 확보**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의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전용액 39억원 중 3억 8,900만원과 방사능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이 방사능 장비가 아닌 실험실 확장 공사비와 시약 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집행되었음.

[2023년 방사능 장비 구입 관련 예산 및 결산 내역]

1. 방사능 분석장비 결산내역

2023년 예산내역(50억 1,100만원)	2023년 결산내역(47억4,500만원)	비고
○ (본예산) 15억원 • 감마스펙트로미터 자동시료주입기 2기 - 3억원(1억 5,000만원×2기) • 액체섬광계수기 1기 - 2억원 • 다검출기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1기 - 10억원 ○ **(전용예산) 35억 1,100만원** • 3H 전해농축장치 3기 - 2억 100만원(6,700만원×3기) • AMP공침수조 8기 - 1억 6,000만원(2,000만원×8기) • 감마스펙트로미터 9기 - 31억 5,000만원(3억 5,000만원×9기)	○ 장비구매 내역 • 액체섬광계수기 2기 - 3억 700만원(1억 5,350만원×2기) • 다검출기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1기 - 14억 5,000만원 • 3H 전해농축장치 3기 - 2억 1,600만원(7,200만원×3기) • AMP공침수조 8기 - 1억 6,000만원(2,000만원×8기) • 감마스펙트로미터 9기 - 25억 3,400만원(2억 8,160만원×9기) • 실험 보조 장치 구매 - 7,700만원(세척기, 분석용 저울 등)	(사업계획 변경) 2억6,500만원 정산잔액 100만원

※ (사업계획 변경) 실험용 시약 및 소모품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예산활용(2억 6,500만원)
- 1억 9,700만원(시약 및 재료비), 4,800만원(폐기물 처리/임차료), 2,000만원(실험실 배기 공사비)

2. 실험실 확장(공사비) 결산내역

2023년 예산내역(3억 8,900만원)	2023년 결산내역(4억 500만원)	비고
ㅇ (전용예산) **3억 8,900만원** - 장비구매에 따른 실험실 확장 수요를 반영하여 **전용예산으로 편성**	ㅇ 실험실 확장 4억 500만원 - 사업계획 변경 예산(2,000만원) 추가 집행	정산잔액 4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실시로 방사능 시료분석 건수가 급증하여 2023년도에 추가로 구입함에 따라 분석장비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전용 예산 중 일부를 실험실 확장비로 사용하였고, 분석건수 증가로 인한 시약 등 재료비 구입을 위하여 또한 전용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전용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전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용한 금액은 당초 전용목적대로만 사용될 필요가 있음.[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장비 구입을 위하여 전용된 금액 중 일부가 실험실 확장공사와 시약 구입 등 전용목적 외로 집행되어 부적정한 전용집행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전용된 예산이 전용목적 외로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 재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 재이월 부적정 등

가. 개 요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연안 최대 100km 해상까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송·수신을 위한 e-Nav 선박 단말기의 연안 선박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24억 2,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1)22)]

[2023년도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3,751	3,751	-	-	3,751	3,693	35	23	3,109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2,425	2,425	-	-	2,425	2,425	-	-	1,825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2억원과 민간자본보조 22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억원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경상보조하고, 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는 선박당 설치 비용의 50%를 자본보조하고 있음. 설치 지원대상은 어선과 여객선·화물선 등으로 15,500척에 보급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1) 일반회계-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6332-308)(해사안전국)

2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는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기 위해 최대 100㎞ 해상에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주요 기능으로는 바다내비게이션 제공,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어선 자동 출입항 신고, 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긴급 구조신호 발신, 관제구역 안내 등이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2023년 교부액 중 1.8%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으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3년도 실집행실적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3억 2,600만원 중 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액은 4,300만원에 불과함.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도 예산현액 56억 7,200만원 중 28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당해연도 예산액 전액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음. 이에 2023년 동 사업의 교부액 중 1.8%만 실집행되었음.

[2023년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20	01	200	200	200	200	126	326	155	200	43	169	2	21.5
320	07	2,225	2,225	2,225	2,225	3,447	5,672	2,828	2,225	-	2,786	58	-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특히 자본보조인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2023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최저 0.2%, 최고 54.5%에 불과하고 이월 규모는 최소 27억 8,600만원에서 최고 68억 2,200만원에 달함.

[2019년~2023년 e-Nav 선박단말기 보급 실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대, %)

연 도	사업시행주체			단말기	이월현황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보급수량	금액	사유
2019	3,742	6	0.2	0	3,736	LTE-M 통신망 구축 지연
2020	7,545	723	9.6	305	6,822	LTE-M 통신망 구축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홍보 제한
2021	10,110	4,143	41.0	2,268	5,967	이월 사업(2019~2020년) 우선추진
2022	8,392	4,572	54.5	2,801	3,820	이월 사업(2020~2021년) 우선추진
2023	5,672	2,828	49.9	1,955	2,786	이월 사업(2021~2022년) 우선추진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연례적 이월은 2019년 LTE-M 통신망 구축 지연으로 e-Nav 선박 단말기 보급도 순연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임.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해연도 예산액 전액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교부함에 따라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측면도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의 규모가 커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에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2022년 교부액 중 5억 7,300만원을 재이월 사유 없이 다음연도로 재이월한 문제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특히, 보조사업자가 이미 한 번 이월된 보조금을 재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23)]

---

2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022년 해양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보조금 24억 2,500만원 중 23억 3,900만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2023년으로 이월되었는데, 이 중 17억 6,600만원만 2023년에 집행되고, 나머지 5억 7,300만원이 2024년으로 재이월되었음.

[2022년 이월액 중 2024년으로의 재이월액]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해양교통안전공단						
	교부액	2022년			2023		재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2022년	2,425	86	-	2,339	1,766	-	573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에 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제2호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재이월하였다는 설명임.[24)]

그러나 이월제도는 단년도 회계주의의 예외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재이월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재이월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재이월은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국고보고금 통합관리지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재이월을 허용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회계연도가 종료하였음에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조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4)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5]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6]

그런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및 2023년 보조사업 관련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음에도 2024년 6월 기준까지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및 2023년의 보조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추후 사업 종료 시 제출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와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 의무 발생사유로 회계연도 종료 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음에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가 종료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면, 장기간 소요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점검할 수 없는 한계도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종료 후는 물론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에도 제출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리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 출>

7.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저조한 외국인 지원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

가. 개 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64억 2,2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7][28]

[2023년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13,385	13,385	-	-	13,385	13,385	-	-	13,016
건강보험료 지원	6,422	6,422	-	-	6,422	6,422	-	-	6,053

동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한 후 해당 보험료에서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최대 28%까지 지원함.

---

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3443-303)(수산정책실)

2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지원대상을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였으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지원실적 저조 원인을 파악하여 외국인 수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 지원 목표 인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20년 어업 분야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이관되었음.

2020년~2023년 동 사업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80%대였으나 2022년 50%대로 하락하였고 2023년에도 60.6%에 불과함.

[2020년~2023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2020	5,158	5,158	5,000	5,000	-	5,000	4,200	-	800	81.4
2021	5,158	5,158	5,158	5,158	-	5,158	4,523	-	635	87.7
2022	7,466	7,466	7,466	7,466	-	7,466	4,390	-	3,076	58.8
2023	6,422	6,422	6,422	6,422	-	6,422	3,895	-	2,527	60.6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 동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을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였는데,[29] 외국인에 대한 실제 지원실적이 지원 목표 인원 대비 저조(2022년 0.5%, 2023년 5.6%)하여 실집행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0년~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지원인원(2024년 4월말 기준)]

연도	지원 목표 인원(A)	실제 지원 인원(B)	예산안 편성 시 지원단가	실제 지원단가	지원률(B/A)
2020년	내국인 10,259세대	내국인 9,916세대	내국인 41,900원	내국인 35,296원	96.6%
2021년	내국인 10,259세대	내국인 10,079세대	내국인 41,900원	내국인 37,600원	98.8%

29)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간경화로 사망한 사건 관련 언론 등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건강진단 등 문제가 제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설명임.

연도	지원 목표 인원(A)	실제 지원 인원(B)	예산안 편성 시 지원단가	실제 지원단가	지원률(B/A)
2022년	내국인 10,,259세대 **외국인 5,812세대**	내국인 10,314 세대 **외국인 31세대**	내국인 41,900원 외국인 33,090원	내국인 29,128원 외국인 35,562원	내국인 100.5% **외국인 0.5%**
2023년	내국인 10,235 세대 **외국인 3,629세대**	내국인 10,949세대 **외국인 204세대**	내국인 39,900원 외국인 34,936원	내국인 29,906원 외국인 35,555원	내국인 107% **외국인 5.6%**
2024년	내국인 10,235 세대 **외국인 3,629세대**	내국인 11,705세대 **외국인 215세대**	내국인 36,626원 외국인 35,700원	내국인 28,003원 외국인 37,440원	내국인 100.5% **외국인 5.9%**

자료: 해양수산부

외국인 지원 목표 인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체류자 명단을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명단을 기준으로 지역가입 세대 수를 산출하였고 이후 지원자격 득실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현행화(2022년 5,812세대 → 2023년 3,629세대)하였다는 설명임.

그런데 2023년부터 지원대상을 현행화하여 지원 목표 인원을 조정하였음에도 외국인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취약한 국가 출신 외국인의 근본적인 인식 부족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부족으로 외국인이 동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임.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2022년부터 도입되어 사업 초기인 측면은 있으나, 2022년 대비 2023년 지원실적을 비교해보아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2024년 4월말 기준 지원실적도 2023년과 큰 차이가 없어 동 사업의 성과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홍보 부족 외에도 동 사업의 지원실적 저조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연차별 외국인 지원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목표 인원을 지원 가능 대상 전원으로 설정하기보다는 향후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외국인 수요 확대를 위하여 지원실적 저조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홍보 강화 등 성과 제고 노력을 하는 한편, 외국인 지원 목표 인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8.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 보조금 교부 관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등

가. 개 요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의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5억 4,000만원 중 132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2%)되고, 4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2023년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9,768	9,768	797	△20	5,995	16,540	13,269	489	2,782	13,756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4,854	4,854	-	-	-	4,854	4,854	-	-	-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3,705	3,705	195	-	-	3,900	3,900	-	-	-

내역사업인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종료)’**는 수산물 도매시장에 냉동·냉장창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 48억 5,4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종료)’**은 풀필먼트 서비스(물류 전문 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보관,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판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2023년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산현액 39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3040-317)(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사업의 경우 사업 준비 과정이 미흡하여 예산의 대부분이 실집행단계에서 이월된 문제가 있으므로, 실집행단계의 사업 지연 원인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에 편성된 단년도 사업으로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북부시장 2개소의 냉동·냉장창고 신축 및 현대화를 위하여 4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이 서울은 25.3%, 대구는 4.7%로 매우 부진함.

[2023년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서울특별시	3,524	3,524	3,524	3,524	-	3,524	894	3,524	894	2,630	-	25.3
대구광역시	1,330	1,330	1,330	1,330	-	1,330	63	1,330	63	1,267	-	4.7

자료: 해양수산부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된 것에 기인하는데, 서울은 계획 대비 공사 면적이 증가하여 공사기간이 2024년 7월까지로 연장되었고, 대구는 유통종사자 의견 조율·사업 추진 주체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준공 예정시기가 2024년 10월로 연장됨.

[서울 가락시장 사업 추진 계획 대비 현황]

구 분	최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기본계획 수립	2023. 1.	2023. 1.	-
설계용역	2023. 2. ~ 6.	2023. 2. ~ 6.	-
건립 시공사 선정	2023. 6.	2023. 6.	-
공사 착공	2023. 6.	2023. 6.	-
준공	2023. 12.	2024. 7.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토록 보관 용량 증가 설계하여 공사 면적 증가로 인한 지연

자료: 해양수산부

[대구 북부시장 사업 추진 계획 대비 현황]

구 분	최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기본계획 수립	2023. 1.	2023. 1.	-
세부 기본계획 수립	-	2023. 6.	-
설계용역	2023. 8. ~ 10.	2023. 8. ~ 12.	설계용역 중지(10.13.~12.6.) 사유: 유통종사자 의견 조율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023. 9.	2024. 4. ~ 5.	당초 사업주체였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4년 1월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주체변경, 예산조치(이월)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
공사 입찰 및 관급자재 발주	2023. 9.	2024. 5. ~ 6.	
공사착공	2023. 10.	2024. 6.	
준공	2023. 12.	2024. 10.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당초 계획 대비 공사 면적이 증가한 것과 유통종사자 의견 조율로 사업이 지연된 것을 보면 사전에 사업 준비과정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특히 대구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기본계획 수립도 2023년 6월에 완료되었는데, 이는 사업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냄. 이러한 결과로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완료되었어야 하나 2024년 6월말 기준 각각 2024년 7월 및 10월에나 완료될 예정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실집행단계의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하는 한편 향후 사업기간이 단년도인 사업은 사전에 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당해연도 예산 전액이 실집행단계에서 이월된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공사비로 37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이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연도 교부액 전액이 실집행단계에서 이월되었음.

[2023년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705	3,705	3,705	3,705	195	3,900	80	3,705	-	3,820	-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지원 개소는 전남 장흥과 목포 2개소로, 2022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 실시 및 완공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장흥은 2023년 11월에야 실시설계가 시작되어 2024년 12월 완공될 예정임.

[전남 목포 계획 대비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최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기본계획 수립	2022. 5.~2022. 7.	2022. 5.~2022. 7.	해당없음
사업계획 변경	-	2023. 9.	-
실시설계	2022. 11.~2023. 1.	2023. 11.~2024. 4.	설계 적정성검토 기간 반영
공사 착공	2023. 3.	2024. 6.	-
완공	2023. 11.	2024. 12.	

자료: 해양수산부

목포의 경우 2022년 12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고, 2024년 1월 실시설계가 시작되어 2024년 10월에야 완공될 예정임.

[전남 장흥 계획 대비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최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부지 선정		2023. 3. ~	2023. 3.~	사업부지 협의 기간 소요
설계 용역	실시설계	2023. 7. ~ 11.	2024. 1.~ 2024. 4.	설계 기간 소요
인·허가	도시군관리계획	2023. 7. ~	2024. 1. ~	협의 중
	재해영향평가	2023. 7. ~	2024. 1. ~	협의 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23. 7. ~	2024. 1. ~	협의 중
시공사 선정		2023. 11. ~	2024. 5.	공정별 시공사 입찰
공사 착공		2023. 12. ~	2024. 5.	
완공		2024. 5. ~	2024. 10.	

자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며,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5. 10.: 25억 9,300만원 / 12. 7.: 11억 1,200만원)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차에 교부한 보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연말에 2차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 부정확한 지원대상 인원 추계에 따른 과다한 불용액 발생

가. 개 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512억 2,400만원 중 470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2%)되고, 41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2023년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산 공익직불제	93,328	93,328	106	-	93,434	86,762	-	6,672	106,233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51,224	51,224	-	-	51,224	47,060	-	4,164	54,002

동 사업은 2022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3. 4. 1. 시행)으로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가 신설되어 반영된 것으로,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을 포함하며 소규모 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로 구성됨.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수산 공익직불제(3460-310)(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관련 추계 부정확으로 필요 대비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큰 규모의 금액이 불용되었으므로, 지원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은 부처 단계에서 예산액의 91.2%인 470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41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단계에서 교부액 중 324억 6,100만원만 집행되고 145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에 따라 실집행률이 63.4%로 부진하고 총 187억 6,2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금액이 불용되었음.

[2023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51,224	51,224	47,060	47,060	-	47,060	32,461	-	14,598	63.4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까지 동 사업의 내역사업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로,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대한 직불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3년 개정 법 시행으로 내역사업명이 변경되고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불이 추가되었음.

[법 개정에 따른 내역사업 명칭 및 지원대상 비교]

구분	2022년까지	2023년부터
내역사업 명칭	조건불리지역 직불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 어가	소규모 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예산 편성 시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의 인원을 추계하였고, 기존 조건불리지역 수급 어가 중 소규모 어가의 수급대상이 되는 인원을 추계·제외하였다는 설명임.

그런데 2023년 결산 결과 실제 지원된 인원을 비교해보면, 소규모 어가의 경우 당초 22,665호를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6,531호에만 지급하였고, 어선원의 경우 15,000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7,458명에게만 지급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의 경우에도 9,417호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5,739호에만 지급하여 예산

편성 시 추계 인원과 실제 지급인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2023년~2024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 지급대상 인원 비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A)	실적(B)	차이(B-A)	계획
소규모 어가	22,665호	16,531호	△6,134호	22,665호
어선원	15,000명	7,458명	△7,542명	15,000명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	9,417호	5,739호	△3,678호	6,027호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의 경우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어가 및 어선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의 경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던 어가 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게 된 어가 수가 예산 편성 시보다 증가하여 추계 인원과 실제 지급인원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직불금 지급대상별 예산안 편성 기준 및 지원실적 저조 사유]

구분	예산안 편성 기준	지원실적 저조사유
소규모 어가	2021년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어선어업(5톤 이하 어선), 양식업(매출 1억원 미만), 신고어업(어업경영체 등록자)에 종사하는 어가는 30,894호 이 중 지급요건(어업 종사기간 3년, 어업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원 미만 등)을 적용했을때 탈락이 예상되는 어가를 고려하여 산출	전체 신청어가 중 직불금 중복수령, 기준 이상 소득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어가(8,312호, 33%)가 다수 발생
어선원	2021. 5.~2022. 4. 해경청 입출항 기록이 있는 어선원 중에서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 수인 15,000명 기준	수산자원 감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직불금 지급요건인 최소 승선기간 기준(1년 중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어선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령 어가 중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6,153호를 제외하여 산출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던 어가 중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게 된 어가 수가 예측 수치를 상회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농·임업 직불금 중복수령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반농반어 어가가 추가로 탈락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2023년 신설되면서 지급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내에서

타 직불금을 지속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요건 미충족 비율 등은 타 직불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2023년 결산 결과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이러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 예산의 경우에도 조건불리지역 비 소규모 어가를 제외하고는 2023년 예산 편성 시와 동일한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액이 편성 및 확정되어 2024년에도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향후 2023년과 2024년의 직불금 지급실적 등을 바탕으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사업의 대상인원에 대한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

<세 입>

10. 전년도 세계잉여금·정부출자수입: 연례적인 세입예산 미반영 문제 등

가. 개 요

‘전년도 세계잉여금’ 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2조에 따라 항만계정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징수결정액 863억 5,200만원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32)]

[2023년도 전년도 세계잉여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전년도 세계잉여금	-	-	86,352	86,352	-	-	100.0	-

‘정부출자수입’ 은 해양수산부가 출자한 인천항만공사 등에서 배당하는 배당수입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예산액 42억 8,000만원 중 29억 2,700만원이 수납(수납률 68.4%)되었음.[33)]

32)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전년도 세계잉여금(89-893)(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33)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정부출자수입(52-521)(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2023년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A)	
	본예산	추경(A)						
정부출자 수입	4,280	4,280	2,927	2,927	-	-	68.4	4,657

나. 검토의견

첫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2021년 15억 5,900만원, 2022년 49억 9,9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3년에는 863억 5,2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금액이 수납되었으나 세입예산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024년의 경우에도 2023년도 세계잉여금 약 960억원이 수납될 예정(2024년 5월 8일 기준 추산)임.

[2020년~2023년 교특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 편성 및 수납실적(2024년 4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1년	-	-	-	-	1,559	1,559	-	100.0
2022년	△50,000	△50,000	-	△50,000	4,999	4,999	-	100.0
2023년	-	-	-	-	86,352	86,352	-	100.0
2024년	-	-	-	-	-	-	-	-

주) 교특회계는 2021년까지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음.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대비 자체수입 실적이 낮아 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시 세입부족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편성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안에 미계상되거나 과소하게 계상될 경우 상당 규모의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회계 내 여유자금으로 남게 되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약 1조 3,650억원 규모의 전입금이 수납되는데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적정 규모로 반영되지 않으면 매년 필요 이상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추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정부출자수입은 세입예산 추계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연례적으로 예상금액과 실적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추계방식을 마련하여 세입액 산정을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0년~2023년 정부출자수입의 예산 편성액과 수납액을 비교해보면, 2020년과 2023년에는 수납률이 60%대인 반면 2021년과 2022년에는 300%대로 연례적으로 편성액과 수납실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2020년~2023년 교특회계 정부출자수입 편성 및 수납실적(2024년 4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0년	4,044	**4,044**	-	4,044	**2,454**	2,454	60.7	100.0
2021년	2,419	**2,419**	-	2,419	**7,258**	7,258	300.0	100.0
2022년	1,931	**1,931**	-	1,931	**6,642**	6,642	343.9	100.0
2023년	4,280	**4,280**	-	4,280	**2,927**	2,927	68.4	100.0

자료: 해양수산부

이는 잘못된 예산 추계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정부출자수입의 예산안 편성 시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출자수입인 배당액은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수액 기준의 편성은 부정확한 방식임.

[2023년 정부출자수입 편성 근거 및 산출내역]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4,280,000천원	■ 3개년 징수치 평균

자료: 해양수산부

그 결과 2023년 한국산업은행 배당수입은 1억 1,5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배당수입은 5억 8,500만원, 인천항만공사 배당수입은 18억 2,600만원, 울산항만공사 배당수입은 300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총 13억 5,300만원이 과다편성되었음.

[2023년 출자기관별 정부출자수입 예상액 및 실적]

(단위: 백만원)

출자기관명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차이	정부출자수입 예산액(2019, 2020, 2021)
한국산업은행	1,004	889	△115	1,000; 750; 1,262
한국수출입은행	740	1,325	585	663; 1,148; 409
인천항만공사	2,530	704	△1,826	1,458; 548; 5,582
울산항만공사	6	9	3	7; 7; 5

출자기관명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차이	정부출자수입 예산액(2019, 2020, 2021)
합 계	4,280	2,927	△1,353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정부출자수입 세입예산액 편성 시 (전년도말 예상 당기순이익×배당성향×에특회계 지분율)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액을 추계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정부출자수입 세입예산액 편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추정하여 세입예산액을 추계하였음.

이를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정부출자수입 세입예산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 출>

11.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총괄: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업 다수 발생

가. 개 요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은 항만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항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4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 예산현액 1조 5,656억 100만원 중 1조 3,957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2%)되고 942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55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3년도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1,493,968	1,493,968	71,633	±82,990	1,565,601	1,395,787	94,289	75,526	1,655,972

나. 검토의견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중 3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기준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도 11개가 있는데, 이는 관련 행정절차 등 사전 절차 소요기간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중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및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34)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항만개발 및 관리(5000)

예산액 기준 152억 3,500만원 규모임.[35)]

[2023년 예산 전액이 불용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2,520	2,520	-	-	-	2,520	-	-	2,520	800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7,000	7,000	-	△4,961	-	2,039	-	-	2,039	10,200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5,715	5,715	-	△5,705	-	10	-	-	10	-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은 송도 투기장 복토 사업과 여수웅천마리나·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 등 11개가 있는데, 예산액 기준 790억 7,400만원 규모임.[36)]

[2023년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부산항 제2신항	129,811	129,811	123	△16,821	-	113,113	109,053	322	3,738	404,734
송도 투기장 복토	20,000	20,000	-	△16,721	-	3,279	-	-	3,279	-
새만금 신항	168,179	168,179	2,282	△1,000	-	169,461	152,695	8,988	7,777	162,800
(북측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3,664	3,664	-	-	-	3,664	-	300	3,364	28,070
(방파제(연장) 축조)	23,919	23,919	-	△23,763	-	156	-	-	156	3,360

35)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5050-315)(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포항 영일만신항(1단계)(5050-323)(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5063-304)(항만국)

36)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부산항 제2신항(5050-305)(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새만금 신항(5050-324)(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신항(5050-326)(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인천남항(5058-310)(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일반항(5059-302)(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기타항만 재개발(5061-301)(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마리나 항만(5062-301)(해양정책실)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민자유치 및 조기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300	300	-	-	-	300	-	300	-	400
(가호안 및 매립호안(1-2))	3,839	3,839	-	-	-	3,839	-	-	3,839	-
동해신항	36,598	36,598	698	△5,726	-	31,570	23,543	5,658	2,369	32,361
(진입도로 건설)	7,215	7,215	100	△7,195	-	120	-	-	120	-
인천남항	14,500	14,500	69	△456	-	14,113	14,069	44	-	9,400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	500	500	69	△456	-	113	69	44	-	8,500
일반항	104,005	104,005	3,388	△7,211	-	100,182	85,680	12,809	1,693	69,614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	10,264	10,264	-	△6,662	-	3,602	-	3,602	-	-
기타항만 재개발	7,997	7,997	474	△4,637	-	3,834	3,194	246	394	5,543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1,000	1,000	-	△995	-	5	-	-	5	-
마리나항만	8,789	8,789	9,708	-	-	18,497	701	8,465	9,331	3,300
(여수웅천마리나)	4,140	4,140	8,310	-	-	12,450	-	4,140	8,310	2,485
(안산방아머리마리나)	4,233	4,233	1,000	-	-	5,233	-	4,233	1,000	500

자료: 해양수산부

1) 세부사업 예산 전액 불용 사업

①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수리조선단지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방파제 축조·진입도로 개설 등 수리조선단지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임.

동 사업은 2023년에 기반시설 기초자료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2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민간투자방식 변경(BTO-a→BTO)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정부지원사업의 발주도 함께 순연되어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그런데 2022년 6월 KDI가 민간투자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같은 해 8월 해양수산부가 KDI에 기존 민간투자방식의 제3자 공고안 검토를 요청하는 등 2023년 정부 예산안 제출 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이 확정되지 않고 해양수산부와 KDI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방식 변경 및 확정 관련 민간투자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지원사업인 동 사업의 경우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보임.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민간제안사업 추진현황]

○ '20. 10.: 민간제안서(BTO-a*방식) 접수(해수부) * BTO-adjusted :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만큼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 이익 발생 시 공유하는 방식 ○ '22. 6.: 민간제안서 검토*(KDI) ⇒ 민자적격성 확보 * BTO-a방식의 적격성은 확보. 다만, 수리조선 사업 특성과 정부부담액(투자위험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우려 BTO 방식 병행 검토 필요 ○ '22. 8.: 적격성을 확보한 BTO-a방식 제3자 공고(안) 검토 요청(→KDI) ○ '22. 10.: KDI는 BTO방식으로 추진 적정성* 검토 요청(→해수부) * 수리조선 민간제안사업 특징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 투자위험의 분담 취지를 감안할 때, BTO 방식이 적정 ○ '22. 12.: 전문기관 의견을 수용하여 BTO방식으로 추진 결정(해수부) ○ '23. 7.: 민투심 심의 및 제3자 제안 공고('23.9.19. 중지, '24.2.15. 재개) ○ '23. 9. ~ '24. 2.: 분쟁조정 신청(제안자, '23.9.19.), 조정거부*(기재부, '24.2.8.) * 사업방식 변경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 및 결정 사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 대상이 아님 ○ '24. 2. 21.: 1단계 서류접수 마감, 사업제안서 미제출(유찰) ○ '24. 3. 28.: 제3자 제안 재공고 ○ '24. 5. 27.: 1단계 서류접수 마감, 사업제안서 미제출(유찰)

자료: 해양수산부

②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사업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은 제철산업 및 배후산업단지 발전을 지원하는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포항영일만신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남방파제(2단계) 축조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현액 20억 3,9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당초 2023년 2월 공사를 발주하고 하반기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으로 7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2022년 10월~2023년 7월)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2023년 8월~2024년 2월) 등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49억 6,100만원이 연도 중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고 남은 예산도 연내 전액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2009년~2010년 남방파제 1단계 및 2단계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1단계 공사는 2015년 완료되었으나 2단계는 지연되고 있던 상황으로, 2023년에 2단계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기초조사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최신 설계기준을 반영한 적정 규모와 대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에 2023년 9월~10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22년 10월부터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실시되었음.

2023년 9월~10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실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초조사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총사업비 조정 협의도 필요하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③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동 사업은 연안침식 원인규명, 항만구조물 안전성 검증 등 방재연구와 해안·항만 건설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는 대형 수리모형실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당초 5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57억 500만원이 연도 중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고 남은 예산현액 1,000만원도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2023년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 10월부터 타당성재조사 추진 중 2023년 2월 경제성 분석 결과(B/C)가 0.23으로 낮아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수산부가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2023년 정부 예산안 제출 전까지 타당성재조사가 장기로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연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2)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

세부사업 기준 집행실적은 있으나 내역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 11개가 있는데, 특히 송도 투기장 복토 사업과 마리나 항만 내 내역사업(여수웅천마리나 사업,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은 당초 편성된 예산 규모가 컸으나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되었음.

① 부산항 제2신항(송도 투기장 복토) 사업(종료)

부산항 제2신항 사업 중 송도 투기장 복토 사업은 당초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도 중 167억 2,1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음에도 잔액 32억 7,9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준설토 투기장 내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복토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2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투기장 중 일부 구역(55%)이 부산항만공사의 진해신항 '컨' 부두(1-1단계)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에서 투기장을 관리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8월)하였음. 이에 준설토 투기장 복토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임.

그런데 부산항만공사의 진해신항 1-1단계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장 중 일부 구역이 부산항만공사의 사업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② 마리나 항만(여수웅천마리나·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

마리나 항만 사업 중 여수웅천마리나 사업과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은 2015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신규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6년 2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음. 2023년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비 각각 41억 4,000만원과 4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5월 현재까지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3년에 편성된 예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 전액(93억 1,000만원)도 불용되었음.

여수웅천마리나의 경우 2023년 9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23년 1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안산방아머리마리나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 미완료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여수웅천마리나와 안산방아머리마리나는 2013년 3월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되어 2016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되었으나 이후 사전행절절차 지연 등으로 지속적

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의 연내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후 이월되고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향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안 편성 시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12.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유류세 관련 세출예산안 편성 시 부처 간 협의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310억 9,900만원 중 122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39.4%)되고, 188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37]

[2023년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31,099	31,099	-	-	31,099	12,246	-	18,853	18,748

동 사업은「해운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경유의 유류세에서 2001년 6월 당시의 유류세(183.21원/ℓ)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함.[38]

※ 지급단가(원/ℓ) = 현재 경유 유류세(원/ℓ) - 2001. 6월 당시 경유 유류세

3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6159-300)(해운물류국)

38)「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② 정부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예산 편성 변수 적용상 일관성 부족으로 예산액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188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으므로, 세입예산안과 연계되는 세출예산안 편성 시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여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으로 2022년 8월부터 유류세가 335.58원으로 인하된 후 2022년 12월, 2023년 4월·8월·10월·12월, 2024년 2월·4월에 인하 조치가 각각 연장되었음.

[2021년~2023년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내역]

(단위: 원/ℓ)

구분	유류세 인하 조치 결과	유류비 보조금 단가
1차 ('21. 11. 12.~'22. 4. 30.)	423.00 (20% 인하)	239.79(=423.00-183.21)
2차 ('22. 5. 1.~'22. 7. 31.)	370.83 (30% 인하)	187.62(=370.83-183.21)
3차 ('22. 8. 1.~'24. 6. 30.)	335.58 (37% 인하)	152.37(=335.58-183.21)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단가 345.54원/ℓ(인하 전 유류세 528.75원/ℓ-183.21원/ℓ)로 편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어 보조단가가 152.37원/ℓ로 집행되었음.

[2023년 예산 편성 기준 및 집행 내역]

(예산) 310억 9,900만원 = 90,000㎘(경유 사용량) × 345.54원/ℓ(보조단가)
(집행) 122억 4,600만원 = 80,372㎘(경유 사용량) × 152.37원/ℓ(보조단가)

이러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시행으로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저조하여 2023년의 경우 집행률이 39.4%에 불과하고 2021년과 2022년에도 집행실적이 각각 27.4%, 57.2%에 그쳤음.

[2021~2023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집행현황]

구 분	지원량(단위: kl)		예산 집행(단위: 백만원, %)			
	예정	실제	예산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221,315	60,737	76,473	76,473	20,987	27.4
2022	98,967	78,188	62,197	34,197	19,554	57.2
2023	90,000	80,372	31,099	31,099	12,246	39.4

주) 2021년의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 외에도 저렴한 저가황유 선호로 경유 수요가 감소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자료: 해양수산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2022년 12월과 2023년 연내 4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예산안 편성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2023년 정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됨을 전제로 하여 편성되었음.

[2023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기재위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2023년 세목별 예산안: 교통·에너지·환경세]

(단위: 억원, %)

세 목	21년 실적	22년 본예산	22년 추경예산	23년 예산안	21년 실적대비		22년 본예산대비		22년 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교통·에너지·환경세	165,984	153,805	109,022	111,471	△54,513	△48.9	△42,334	△27.5	2,449	2.2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 1,47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조 9,022억원 대비 2,449억원 증가(2.2%)한 규모로서 유류 수요전망 및 **2023년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된 결과**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유류세 인하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한시적인 점을 감안하여 유류세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이 동일한 변수를 기반으로 하여 편성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편성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는 예산안 편성 시 부처 간 협의가 미흡하였음을 나타냄. 그리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되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세입예산안과 연계되는 세출예산안 편성 시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여 동일한 추정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13. 혁신어촌조성 사업·어촌신활력증진 사업(신규): 회계연도 불일치 관행의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낙후된 항·포구의 인프라 개선 및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042억 7,700만원 중 2,792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8%)되고 198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1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39)]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443억 9,000만원 중 425억원이 집행(집행률 95.7%)되고 10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40)]

[2023년도 혁신어촌조성 사업·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어촌뉴딜300	286,603	286,603	26,078	-	312,681	287,562	19,922	5,197	164,363
혁신어촌조성 사업	278,216	278,216	26,061	-	304,277	279,250	19,833	5,194	163,863
어촌신활력증진	44,390	44,390	-	-	44,390	42,500	1,023	867	96,180

3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어촌뉴딜300(3301-304)(수산정책실)

4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어촌신활력증진(3301-303)(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혁신어촌조성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율 등 사업 추진 관련 설계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으로 교부되어 회계연도 불일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어촌뉴딜300의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이고 연부율은 1차년도 15~35%, 2차년도 36~45%, 3차년도 20~49%로 설계되었는데,[41]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30%대 이하로 부진하여 매년 최저 1,229억 8,500만원, 최고 5,927억 9,800만원이 실집행 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2019년~2023년 혁신어촌조성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19	171,500	171,500	171,500	171,500	-	171,500	48,513	171,500	48,513	**122,985**	2	**28.3**
2020	430,500	430,500	430,500	430,500	122,985	553,485	166,867	430,500	99,460	**386,577**	41	**23.1**
2021	518,000	518,000	510,331	510,331	386,577	896,908	333,448	510,331	80,078	**561,026**	2,434	**15.5**
2022	514,500	514,500	474,492	474,492	561,026	1,035,518	434,648	474,492	80,078	**592,798**	8,071	**15.6**
2023	278,216	278,216	255,420	255,420	592,798	848,218	295,840	255,420	98,238	**549,089**	3,289	**35.3**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부터 신규로 시작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유형 1과 유형 2의 사업기간은 4년, 유형 3의 사업기간은 3년임.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각각 18.5%, 21.6%, 31.0%로 부진하여 예산액의 73.4%인 305억 4,4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41) <어촌뉴딜300 사업 연부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9년 선정사업	35%	45%	20%
2020년 선정사업	25%	40%	35%
2021년 선정사업	20%	40%	40%
2022년 선정사업	15%	36%	49%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6,953	6,953	6,518	6,518	-	6,518	1,285	6,518	1,285	**5,233**	-	**18.5**
유형2	20,972	20,972	20,384	20,384	-	20,384	4,536	20,384	4,536	**15,848**	-	**21.6**
유형3	13,716	13,716	13,716	13,716	-	13,716	4,253	13,716	4,253	**9,463**	-	**31.0**
합계	41,641	41,641	40,618	40,618	-	40,618	10,074	40,618	10,074	**30,544**	-	**24.2**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중 하나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매년 예산서에 차기이월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임. 예산서 작성 시 이미 차기이월사업비가 확정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탁기관으로 교부되고 있음을 나타냄.

[한국어촌어항공단 2024년 예산서 중 일부 발췌]

(단위: 백만원)

구분	2023예산(A)	2024예산(B)	증감(B-A)	%
차기이월	402,786	247,461	△155,325	△38.6%
□ 차기이월잉여금	1,447	1,619	172	11.9%
□ 차기이월사업비	**401,339**	**245,842**	**△155,497**	**△38.7%**

[2023년~2024년 예산서의 차기이월사업비 중 어촌뉴딜300 및 어촌신활력증진 사업비]

구분	2023년	2024년
어촌뉴딜300사업	3,282억 3,600만원	1,751억 2,600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87억 600만원	383억 5,800만원
합계	3,369억 4,200만원	2,134억 8,500만원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개소별 사업기간 및 연부율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실적 제고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를 종합하면 어촌뉴딜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사업 추진 관련 설계 미흡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 및 교부되는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어촌뉴딜300의 내역사업인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2024년 6월 기준 사업대상지 300개소 중 136개소가 준공되었으나, 개별 사업지가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지를 점검하는 평가가 미흡하므로, 준공이 완료된 개별 사업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어촌뉴딜300의 내역사업인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2019년~2022년 대상지 300개소의 선정을 완료하였고, 2024년 6월 기준 이 중 136개소가 준공되었음.

[혁신어촌조성 사업 연도별·지역별 선정 개소]

(단위: 개소)

시·도	선정 개소					시·도	선정 개소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산	9	1	4	2	2	전북	22	5	9	5	3
인천	16	5	5	3	3	경남	57	15	23	11	8
울산	5	1	2	1	1	경북	24	5	11	5	3
경기	8	1	5	1	1	강원	14	2	5	4	3
충남	33	6	14	6	7	제주	14	3	5	3	3
전남	98	26	37	19	16	총계	300	70	120	60	50

자료: 해양수산부

선정된 사업지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공통지표와 특화지표로 이원화하여 공통지표는 매년 300개 사업지 대상으로, 특화지표는 준공이 완료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중이라는 설명임.

[지표 유형 및 주요내용]

지표		내용
공통지표	활력 지수	인구사회(지역소멸지수), 산업경제(수산물 판매금액), 물리환경(어항 투자비) 항목 3개 중 2개 이상이 정규분포 1~2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지(활력지역)의 비율
	주민 만족도	사업을 인지한 주민들의 연차별·사업별 만족도
특화지표	가기 쉬운 어촌 (접근성)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개선, 시간단축 등으로 증가한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증가
	찾고 싶은 어촌 (관광객)	경관개선, 친수·관광시설 도입으로 인한 관광객 수 증가
	활력 넘치는 어촌 (일자리)	어촌자원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개발로 늘어난 어가 소득 및 신규 일자리 수 증가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당초 기존 사업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게 어촌·어항을 통합개발함으로써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양수산부의 일반적인 평가 외에도 개별 사업지별로 계획서상 당초 목표한 성과를 실제 달성하고 있는지를 특성에 맞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점검 결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결과를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해양수산부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지역특화상품 등 주요 지역역량강화사업 중 일부 사업의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지적한바 있음.[42)]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혁신어촌조성 사업의 준공이 완료된 개별 사업지에 대하여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2) 감사원 감사보고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2024. 2.)

【수산발전기금】

<수 입>

14.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에 대한 심층 논의 필요

가. 개 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및 산업육성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담금이 한시 면제('16. 7. 1. ~ '24. 12. 31.)되어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음.[43)]

나. 검토의견

첫째,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은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 3. 27.)에 따라 징수실적이 없어 폐지대상인데,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 여부 관련 국회 논의 시 동 부담금이 업계의 경영상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되었고, 2021년부터 해양심층수 업계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과 해양심층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됨.[44)]

---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

동 부담금은 2016년 6월까지 부과되다가 2016년 7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있음.[4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83	858	164	724	19	134	84.4
2017~2023	-	-	10	22	△10	△22	-
2016	11	49	8	54	3	△5	110.2
2015	19	74	15	67	4	7	90.5
2014 이전	153	735	131	581	22	154	79.0

주) 2020년에, 2016년 이전 부과되었으나 미납부되었던 부담금 2,200만원이 수납되었음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담금의 최초 면제사유는 해양심층수 업계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산업활성화 목적이고, 면제 연장은 해양심층수 업계의 상황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음.

한편 2024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동 부담금은 2016년 7월부터 한시 면제가 지속 연장 중이어서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폐지 대상임.

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5) 201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면제였으나,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 면제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중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관련]

8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수부, '07년~) * **'16.7월 이후 한시 면제에 따라 징수실적 無, '24년 계획 無** ○ (현황)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및 산업육성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 ■ **한시 면제 지속 연장('16.7월~'24.12월) 중으로 부과 실효성 없음** ○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도 동 부담금이 지속 면제 중이며, 동 부담금을 활용한 사업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등 부담금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도 폐지 계획이라고 기재됨.

그러나 동 부담금의 폐지 관련 국회 논의 시 2016년과 2021년 당시 해양심층수 업계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었고, 2021년 이후 해양심층수 업계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양심층수 업계* 매출액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34	171	184	200	**191**	**446**	**508**	**457**
업체수**	12	12	12	12	12	13	13	12

주 1) 해양심층수 직접매출산업 매출액 규모 및 업체수 현황임(해양심층수 활용산업 제외)
2)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등 허가 둘 다 받은 업체 중복하여 산정함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도 동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여 부과목적이 타당하므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하였음.

그리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담금의 사용목적을 고려하면 오히려 징수된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나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 여부 관련 국회 논의 시 최근 해양심층수 업계의 매출 증가 등 관련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둘째, 2016년 이전 부과되었으나 미납부되었던 부담금이 2020년에 수납되었음에도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해당 수납실적이 2022년까지 미반영된 문제가 있음.

2016년 이전 부과되었으나 미납부되었던 부담금 2,200만원이 2020년에 납입되었음. 그러나 2022년까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해당 수납내역이 누락되었다가 2023년에야 반영되어 적정하지 않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부담금 징수 및 수납내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 출>

15.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상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정부와 민간 공동 출자로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 9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6)]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원양어선 안전관리	9,000	9,000	-	9,000	9,000	-	-	7,500

동 사업은 정부 50%, 민간 50%로 펀드를 조성하여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받은 선사는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3년 거치, 12년 상환)을 통해 지원 금액을 용선료 명목으로 상환하고 상환이 끝난 후 선사가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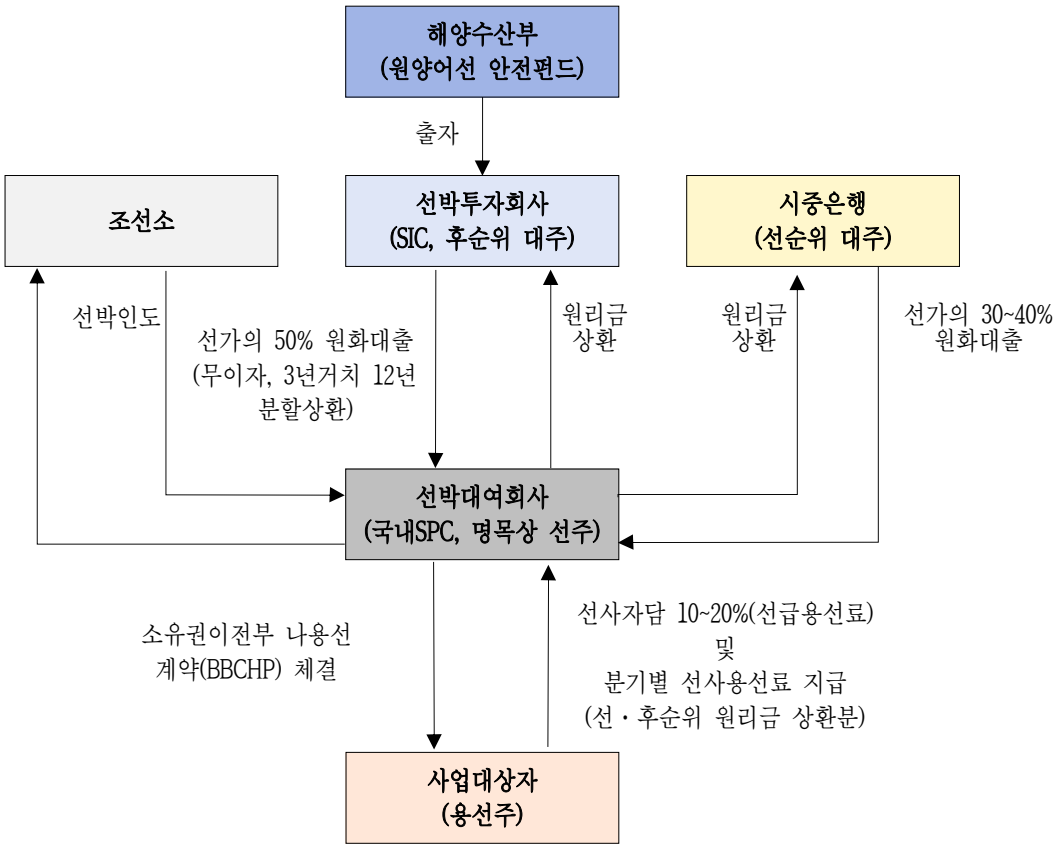
[원양어선 안전 펀드 자금 조성 비율]

구 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정부출자	금융기관 대출	선사 자부담
펀드조성	50%	30~40%	10~20%

자료: 해양수산부

46) 수산발전기금-원양어선 안전관리(3541-301)(수산정책실)

[원양어선 안전펀드 구조도]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첫째,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회수액을 추후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나, 회수액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2019년부터 매년 원양어선 안전펀드에 출자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건조완료되었고, 이후에도 매년 1~2척씩 선박의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임.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억원, 척)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2027	2028	2029	2030
선정척수	2	3	0	2	1	1	1	1	11	매년 1~2척			
건조척수	-	2	3	0	2	1	1	1	10				
건조가액 (완료시점기준)	-	240	363	-	344	-	-	-	1,860	120~240			
정부 출자액	50	190	180	150	90	75	90	105	930	회수금 재투자			

자료: 해양수산부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총 930억원을 출자하고, 2027년부터는 신규 출자 없이 지원 회수액을 신규 선박대여회사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지원 회수액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5,800만원의 자금이 회수되었고 2024년에는 4억 2,500만원이, 2025년부터 2036년까지는 매년 30억원 가량의 자금이, 이후에는 매년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회수될 예정으로, 2023년 회수된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보유하고 있음.

[원양어선 안전펀드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년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합계
2023	-	57.66	-	-	-	-	-	**57.66**
2024	194.30	230.63	-	-	-	-	-	**424.93**
2025	419.09	488.07	500.00	500.00	500.00	-	-	**2,407.16**
2026	432.34	488.07	500.00	500.00	500.00	-	-	**2,420.41**
2027	446.02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42	**3,824.38**
2028	460.16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38.48**
2029	474.76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53.08**
2030	489.84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68.16**
2031	505.43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83.75**
2032	521.52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99.84**
2033	538.15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916.47**
2034	555.33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933.65**
2035	573.07	366.05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29.37**
2036	-	-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2,890.25**
2037	-	-	-	-	-	693.87	696.38	**1,390.25**
2038	-	-	-	-	-	693.87	696.38	**1,390.25**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신규 출자 없이 지원 회수액을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집행상 소관 부처의 자율성이 큰 사업구조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고,[47] 회수액의 재투자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고, 회수액의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은 향후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고시 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는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 회수액의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상 투명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노후한 원양어선을 신규 대체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피대체선을 지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2년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 건조한 선사 중 한 곳이 기존의 노후 선박을 다른 업체에 증여했다가 다시 사들여 결과적으로 피대체선인 기존 노후 선박과 새로운 선박 모두를 보유·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동 사업의 목적은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노후한 원양어선을 신규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기존 노후 선박과 신규 선박 모두를 보유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7)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24. 10. 25.]

16. 비축사업: 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의 편성 및 집행 관련 개선 필요

가. 개 요

‘비축사업’ 은 수산물 주 생산시기에 대중성 어종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정부비축 수매물량을 소비자 수요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액 1,750억원 중 1,279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3.1%)되고 470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48)]

[2023년도 비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비축사업	175,000	175,000	-	175,000	127,983	-	47,017	206,500

나. 검토의견

2023년 비축사업은 전액 저장품매입비(430-02)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데, 수산물 비축 및 판매에 따른 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도 해당 비목에서 함께 집행되고 있어 수수료 편성 및 집행 관련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2023년 동 사업은 수산물의 비축을 위한 저장품매입비(430-02)로 1,750억원 전액이 편성되어 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참조기・마른멸치・천일염 및 마른오징어 수매를 위하여 1,279억 8,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48) 수산발전기금-비축사업(3066-302)(수산정책실)

[2023년도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table>
<tr><th>편성 근거</th><th>예산</th></tr>
<tr><td>○ 물가안정을 위한 저장품매입비(430-02): 17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천원/톤)
<table>
<tr><th>품 목</th><th>물량(톤)
(A)</th><th>총 소요금액
(A×B×C)</th><th>수매단가
(B)</th><th>부대
비율
(C)</th></tr>
<tr><td>합 계</td><td>31,771</td><td>175,000</td><td></td><td></td></tr>
<tr><td>냉동오징어</td><td>7,801</td><td>40,726</td><td>4,746</td><td>1.10</td></tr>
<tr><td>냉동고등어</td><td>6,098</td><td>29,458</td><td>3,402</td><td>1.42</td></tr>
<tr><td>냉동명태</td><td>11,006</td><td>20,430</td><td>1,485</td><td>1.25</td></tr>
<tr><td>냉동갈치</td><td>3,340</td><td>43,700</td><td>11,682</td><td>1.12</td></tr>
<tr><td>냉동참조기</td><td>3,201</td><td>36,824</td><td>10,364</td><td>1.11</td></tr>
<tr><td>마른멸치</td><td>325</td><td>3,862</td><td>8,934</td><td>1.33</td></tr>
</table></td><td>○ 127,983백만원
- 고등어(1,064톤, 3,568백만원),
오징어(1,388톤, 15,104백만원),
명태(27,391톤, 53,273백만원),
갈치(2,596톤, 30,006백만원),
참조기(220톤, 6,328백만원),
마른멸치(234톤, 3,087백만원),
천일염(12,560톤, 16,287벡만원),
마른오징어(7톤, 330백만원)</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비목에서 수산물의 비축과 판매에 따른 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로 2021년에는 34억 2,600만원, 2022년에는 40억 6,800만원, 2023년에는 6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1년~2023년 비축사업의 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계	수매	판매	합계	수매	판매	합계	수매	판매
			3,426	1,960	1,466	4,068	2,436	1,632	6,165	2,741	3,424
중앙회	수매사업 실시기관	정부비축 사업단	533	533	-	532	532	-	663	663	-
		수매 사업팀	710	710	-	1,217	1,217	-	1,175	1,175	-
	판매사업 실시기관	정부비축 사업단	601	-	601	730	-	730	2,450	-	2,450
		오프라인 사업팀	143	-	143	191	-	191	230	-	230
		온라인 사업팀	231	-	231	294	-	294	273	-	273
		홈쇼핑 사업팀	-	-	-	-	-	-	27	-	27
		공판장	491	-	491	417	-	417	444	-	444
기타	수매사업 실시기관	회원조합, 중도매인	717	717	-	687	687	-	903	903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결산 관련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이러한 수수료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정한 규모의 수수료가 편성 및 집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됨.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축지원 사업은 비축사업의 예산을 저장품매입비, 시설장비유지비, 공사비, 비축사업 관리비 등으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하여 해양수산부 비축사업의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축사업 관리비가 별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음.

[2023년 농식품부 비축지원 사업 예산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편성 근거	집행내역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327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5,291백만원 **- 비축사업관리비 : 25,091백만원** - 강원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 : 200백만원 ○ 공사비(420-03) : 2,699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91백만원 ○ **저장품매입비(430-02) : 656,342백만원** 가. 수매(231,835백만원) · 두류(123,447) 25,000톤 × 4,489원/kg × 1.10 · 고추(29,946) 2,685톤 × 10,327원/kg × 1.08 · 마늘(26,605) 7,144톤 × 3,355원/kg × 1.11 · 양파(7,948) 7,729톤 × 627원/kg × 1.64 · 배추(12,022) 13,631톤 × 700원/kg × 1.26 · 무(7,368) 8,767톤 × 609원/kg × 1.38 · 밀(24,499) 20,000톤 × 957원/kg × 1.28 나. 수입(410,507백만원) · 콩(166,896) 187,104톤 × 591$/톤 × 1,290원/$ × 1.17 · 팥(40,298) 17,594톤 × 1,296$/톤 × 1,290원/$ × 1.37 · 참깨(149,225) 51,000톤 × 1,543$/톤 × 1,290원/$ × 1.47 · 고추(15,558) 2,000톤 × 3,677$/톤 × 1,290원/$ × 1.64 · 마늘(35,240) 4,000톤 × 4,350$/톤 × 1,290원/$ × 1.57 · 양파(3,290) 3,000톤 × 506$/톤 × 1,290원/$ × 1.68 다. 긴급가격안정자금(14,00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327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5,291백만원 **- 비축사업관리비 : 25,091백만원** - 강원 농산물 비축기지 구축 : 200백만원 ○ 공사비(420-03) : 2,254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91백만원 ○ **저장품매입비(430-02) : 656,342백만원** 가. 수매(150,073백만원) · 두류(58,888) 11,115톤 × 4,816원/kg × 1.10 · 마늘(11,867) 2,789톤 × 3,833원/kg × 1.11 · 양파(10,187) 6,430톤 × 966원/kg × 1.64 · 배추(24,728) 15,526톤 × 1,264원/kg × 1.26 · 무(9,904) 9,893톤 × 725원/kg × 1.38 · 밀(26,099) 18,937톤 × 1,077원/kg × 1.28 · 감자(8,400) 3,360톤 × 2,155원/kg × 1.16 나. 수입(496,269백만원) · 콩(253,485) 175,152톤 × 959$/톤 × 1,290원/$ × 1.17 · 팥(40,298) 15,147톤 × 1,505$/톤 × 1,290원/$ × 1.37 · 참깨(148,000) 38,160톤 × 2,045$/톤 × 1,290원/$ × 1.47 · 고추(25,127) 2,920톤 × 4,067$/톤 × 1,290원/$ × 1.64 · 양파(22,000) 16,209톤 × 626$/톤 × 1,290원/$ × 1.68 · 마늘(119) 보관료 등 119 · 감자(7,240) 2,330톤 × 1,434$/톤 × 1,290원/$ × 1.68 다. 긴급가격안정자금(10,000백만원) * 품목별 단가는 결산기준 연간 확정사업량 및 집행액을 기준으로 역산한 수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비축사업의 수매와 판매에는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있고, 생산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수산물의 특성과 물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방출이 이루어지는 비축사업의 특성상, 실제 수매와 방출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비축사업과 유사하고 예산 규모가 훨씬 큰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축지원 사업은 비축사업 관리비를 산정하여 별도로 편성 및 집행하고 있고, 판매 및 수매 수수료가 별도로 편성 및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 및 집행상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매 및 수매 수수료를 별도로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축사업 수매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7.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투자활성화 노력 및 기준수익률 하한규정 마련 필요

가. 개 요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정부에서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한 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액 7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9]

[2023년도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수산모태펀드 출자	7,000	7,000	-	7,000	7,000	-	-	19,000

나. 검토의견

첫째, 수산모태펀드는 기존에 조성한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있으므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수액이 재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투자 여력에 따라 신규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3년까지 조성되어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수산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은 2024년 6월말 기준 399억 4,400만원으로 투자여력이 크고, 특히 2020년 조성되어 투자잔여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17억 3,200만원에 달함.

49) 수산발전기금-수산모태펀드 출자(3465-370)(수산정책실)

[결성되어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자펀드 투자 현황(2024년 6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조성된 펀드 규모(A)	15,000	20,000	15,000	15,000	35,000	30,000	25,500	19,600	13,340	-	188,440
투자된 금액(B)	12,100	17,350	13,250	13,536	29,987	26,029	14,163	2,199	3,900	-	132,514
잔존 금액(C=A-B)	2,900	2,650	1,750	1,464	5,013	3,971	11,337	17,401	9,440		55,926
운용비용(D)[1]	2,031	2,609	2,133	1,750	3,023	2,239	1,445	709	43	-	15,982
투자잔여기간(년)[2]	-	-	-	-	-	0.1	1.2	2.1	3.2		6.6
투자여력(C-D)	869	41	-383	-286	1,990	1,732	9,892	16,692	9,397		39,944

주 1) 2024년 6월말 기준 관리보수, 수탁보수, 기타 지급수수료 등
2) 평균투자 잔여기간으로 계산함
자료: 해양수산부

모태펀드 사업은 자펀드 결성 후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당초 펀드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투자여력이 크다는 것은 이러한 펀드 조성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모태펀드가 당초 조성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수산모태펀드는 회수된 투자액을 재투자에 활용하고 있는데 2019년~2021년에는 당해연도 정부 출자액 보다 많은 회수액이 재투자되었고 2023년에도 회수액 10억원이 재투자되었음.

[수산모태펀드 연도별 신규 출자 현황]

(단위: 억원)

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예산액	100	100	100	100	100	70	70	70	70	70	850
회수액	-	-	40	-	-	175	170	110	60	10	565
소계	100	100	140	100	100	245	240	180	130	80	1,415

주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농식품투자계정과 수산투자계정이 분리되어, 개편 이전의 계정별 구분 산출은 어려움이 있음
2) 예산액은 정부예산 투입액 기준, 회수액은 회수재원 중 해당연도에 재출자된 금액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향후 투자여력은 물론 회수액 규모도 감안하여 신규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자펀드 중 수산벤처창업 분야와 스마트 양식산업 혁신 분야의 자펀드는 기준수익률이 0%로 설정되어 있는데 운용사 수익률 제고 유인설계의 필요성 및 민간출자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기준수익률의 하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펀드 기준수익률이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부수익률(IRR)인데, 모태펀드는 자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일정비율을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지급함.

그런데 2024년 6월말 기준 운용 중인 자펀드 중 기준 수익률이 0%인 자펀드가 5개 있는데 이 중 4개는 수산벤처창업 분야이고 1개는 스마트 양식산업 혁신 분야임.

[2024년 6월말 기준 운용 중인 자펀드 중 기준수익률이 0%인 자펀드 현황]

(단위: 억원)

분야	자펀드명	결성규모			결성일자	주목적투자대상
		정부출자금	민간	총액		
수산벤처창업	가이아 수산벤처창업투자조합1호	120	30	150	2020.07.20.	·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중 수산업, 수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 또는 수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원양산업자 및 수산 관련 R&D에 종사하는 자(이하 수산경영체)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산경영체 ① 사업 준비단계 또는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② 정부·공공기관이 인증·확인한 수산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수산분야 창업아이템을 활용하는 기업 ④ 수산 관련 공공·민간의 연구개발 성과 또는 정부·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사업화·활용하는 기업 ⑤ 수산물·수산업과 관련된 ICT 등 융복합 기술을 사업화·활용하는 기업 ⑥ 수산분야 청년기업(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
수산벤처창업	비엔케이 수산투자조합 제1호	120	30	150	2020.07.14.	
수산벤처창업	엔브이씨 2021 수산벤처투자조합	80	25	105	2021.07.15.	
수산벤처창업	넥스트웨이브 2022 수산벤처투자조합	60	36	96	2022.07.21.	

분야	자펀드명	결성규모			결성일자	주목적투자대상
		정부 출자금	민간	총액		
스마트양식산업 혁신	가이아 수산벤처 창업투자조합2호	80	53.4	133.4	2023.09.26.	·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중 미래지향적 스마트양식 및 수산부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 중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체 ① 스마트양식 : ICT 및 각종 첨단 기술을 양식 산업에 접목하여 양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을 선도할 수산경영체 ② 수산부산물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통해 폐기율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산경영체

자료: 해양수산부

기준수익률이 0%인 경우 운용사는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0%만 초과하여도 성과보수를 지급받게 되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저하될 수 있고, 펀드의 수익성을 주된 기준으로 출자여부를 판단하는 민간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할 때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유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를 감안하여 수산모태펀드는 적정 유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수익률의 하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양경찰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500만원(0.6%)이 많은 54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600만원(34.7%)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244	5,244	4,027	△1,217	5,388	5,388	5,423	35	1,396
총수입	5,244	5,244	4,027	△1,217	5,388	5,388	5,423	35	1,396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4억 900만원(△0.3%)이 적은 1조 8,054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0억 3,800만원(6.0%)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685,687	1,682,905	1,703,434	20,529	1,810,881	1,810,881	1,805,472	△5,409	102,038
총지출	1,685,687	1,682,905	1,703,434	20,529	1,810,881	1,810,881	1,805,472	△5,409	102,038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3억 8,800만원으로 79억 5,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4억 2,300만원이 수납(수납률 68.2%)되고 3,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24억 9,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388	5,388	-	5,388	7,956	5,423	36	2,497
합 계	5,388	5,388	-	5,388	7,956	5,423	36	2,497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8,298억 1,000만원으로, 이 중 1조 8,054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195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7억 7,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810,881	1,810,881	18,929	-	-	1,829,810	1,805,472	19,559	4,779
합 계	1,810,881	1,810,881	18,929	-	-	1,829,810	1,805,472	19,559	4,779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해양경찰청 자산은 전년 대비 3,530억 8,400만원이 증가한 4조 1,132억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3조 9,595억 6,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이 520억 2,500만원, 유동자산이 416억 4,9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80억 2,000만원 증가한 210억 3,9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61억 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450억 6,300만원이 증가한 4조 921억 6,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684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6억 9,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7,53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1억 6,8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113,200	3,760,116	353,084	9.4
		유동자산	63,266	21,617	41,649	192.7
		투자자산	530	-	530	-
		일반유형자산	3,959,566	3,702,276	257,290	6.9
		사회기반시설	63,275	11,250	52,025	462.4
		무형자산	20,422	19,062	1,360	7.1
		기타비유동자산	6,139	5,910	229	3.9
	부 채		21,039	13,019	8,020	61.6
		유동부채	6,999	4,988	2,011	40.3
		장기차입부채	14,040	7,939	6,101	76.8
		장기충당부채	-	92	△92	△100.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4,092,160	3,747,097	345,063	9.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68,425	505,116	△36,691	△7.3
	재정운영순원가		1,753,994	1,840,162	△86,168	△4.7
	재정운영결과		1,753,994	1,840,162	△86,168	△4.7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해양경찰청은 현장 중심의 구조·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안전 보장과 전략적 경비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 및 국민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해양영토·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와 수색구조, 해양교통질서 확립과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노후 방독면 교체 사업은 방독면 구매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방독면을 구매하지 않고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기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둘째,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보조율은 100%이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도 연안해역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설정을 위하여 향후 보조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은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과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등을 통하여 관련 경비가 집행되고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공모전 및 캠페인 추진 필요 시 예산에 편성한 후 실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세입(건물대여료·기타관유물대여료·기타재산이자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잡수입):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건물대여료’는 해양경찰교육원 및 소속기관 구내식당 사용료와 기타 국유재산 유상사용료 등 해양경찰청 소속관서 소관의 국유재산(건물) 대여료가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예산액 3억 1,800만원 중 4,900만원이 수납(수납률 15.4%)되었음.[2)]

‘기타관유물대여료’는 해양경찰청 소속관서 소관의 국유재산(관여물) 대여료가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예산액 500만원 중 100만원이 수납(수납률 20.0%)되었음.[3)]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과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예산액은 8,700만원이었으나 3억 6,800만원이 수납(수납률 423.0%)되었음.[4)]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 및 위탁사업 정산 집행잔액 등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예산액 11억 1,600만원 중 6억 1,100만원이 수납(수납률 54,7%)되었음.[5)]

‘기타잡수입’은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장 이용료 등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예산액은 7억 9.200만원이었으나 17억 4,800만원이 수납(수납률 220.7%)되었음.[6)]

---

2) 일반회계-건물대여료(51-512)(운영지원과)

3) 일반회계-기타관유물대여료(51-513)(운영지원과)

4)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5)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6) 일반회계-기타잡수입(69-691)(운영지원과)

[2023년도 건물대여료·기타관유물대여료·기타재산이자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잡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A)	
	본예산	추경(A)						
건물대여료	318	318	49	49	-	-	15.4	298
기타관유물 대여료	5	5	1	1	-	-	20.0	5
기타재산 이자수입	87	87	368	368	-	-	423.0	92
기타경상 이전수입	1,116	1,116	735	611	-	124	54.7	1,116
기타잡수입	792	792	1,748	1,748	-	-	220.7	1,398

나. 검토의견

건물대여료 · 기타관유물대여료 · 기타재산이자수입 ·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잡수입 세입과목은 실제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액 산정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건물대여료 · 기타관유물대여료 ·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매년 유사한 예산액이 편성되고 있음.

건물대여료의 최근 3개년치 예산현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평균 34.5%의 수납률을 보이고 2023년의 수납실적은 15.4%로 매우 저조하나, 예산액은 매년 3억원 내외로 과다 편성되고 있음.

[2021년~2023년 건물대여료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318	318	-	318	74	71	22.3	95.9	3	-
2022	298	298	-	298	196	196	65.8	100.0	-	-
2023	318	318	-	318	49	49	15.4	100.0	-	-
2024	298	298	-	298	-	-	-	-	-	-

자료: 해양경찰청

기타관유물대여료의 최근 3개년치 예산현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평균 26.7%의 수납률을 보이고 2023년의 수납실적은 20.0%로 매우 저조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매년 같은 금액이 편성되고 있음.

[2021년~2023년 기타관유물대여료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5	5	-	5	2	2	40.0	100.0	-	-
2022	5	5	-	5	1	1	20.0	100.0	-	-
2023	5	5	-	5	1	1	20.0	100.0	-	-
2024	5	5	-	5	-	-	-	-	-	-

자료: 해양경찰청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최근 3개년치 예산현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평균 278.7%의 수납률을 보이고 2023년의 수납실적은 423.0%로 예산 편성액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연구개발비와 국고보조금의 이자가 수납되어 연구개발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에 따라 해당 세입과목의 수납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1억원 미만의 유사한 예산액이 편성되고 있음.

[2021년~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6	26	-	26	73	73	280.8	100.0	-	-
2022	87	87	-	87	115	115	132.2	100.0	-	-
2023	87	87	-	87	368	368	423.0	100.0	-	-
2024	92	92	-	92	-	-	-	-	-	-

자료: 해양경찰청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3개년치 예산현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평균 74.5%의 수납률을 보이고 특히 2023년의 수납실적은 54.7%로 예산 편성액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구개발정산금과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수납되어 연구개발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기 등에 따라 해당 세입과목의 수납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액이 매년 11억원 규모로 유사한 금액이 편성되어 과다 편성되고 있음.

[2021년~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1,240	1,240	-	1,240	1,479	1,448	116.8	97.9	31	-
2022	1,116	1,116	-	1,116	655	581	52.1	88.7	74	-
2023	1,116	1,116	-	1,116	735	611	54.7	83.1	124	-
2024	1,116	1,116	-	1,116	-	-	-	-	-	-

자료: 해양경찰청

기타잡수입의 경우 최근 3개년치 예산현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평균 149.8%의 수납률을 보이고 특히 2023년의 수납실적은 220.7%로 예산 편성액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

[2021년~2023년 기타잡수입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835	835	-	835	481	481	57.6	100.0	-	-
2022	792	792	-	792	1,356	1,356	171.2	100.0	-	-
2023	792	792	-	792	1,748	1,748	220.7	100.0	-	-
2024	1,398	1,398	-	1,398	-	-	-	-	-	-

자료: 해양경찰청

동 세입과목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기초체력단련장 및 숙영동 이용료 수납실적이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함.

[2020년~2021년 기타잡수입 세부항목별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결산금액	상세내역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이용료	숙영동 사용료	기타	
2020년	812	608	250	81	277	폐유, 공드럼 등 매각대금 등
2021년	835	481	167	45	276	
2022년	792	1,356	718	277	361	
2023년	792	1,748	1,051	300	397	

자료: 해양경찰청

요약하면, 해양경찰청은 실제 수납실적과 향후 수납액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유사한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과 실제 수납실적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세입액 산정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노후 방독면 교체 사업: 예산의 편성 목적과 다른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노후 방독면 교체’ 사업은 해양경찰청 보유 방독면 중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노후 방독면의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2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

[2023년도 노후 방독면 교체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진압 및 전투장비 관리	2,068	2,068	-	-	2,068	2,064	-	4	2,068
노후 방독면 교체	200	200	-	-	200	200	-	-	200

나. 검토의견

노후 방독면 교체 사업은 방독면 구매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방독면을 구매하지 않고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기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동 사업은 2023년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한 노후 방독면 952개를 교체하기 위하여 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노후 방독면 교체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2억원 - 방독면 952개×0.21백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7) 일반회계-진압 및 전투장비 관리(3104-303)(장비기술국)

그러나 실제 동 사업은 2023년 방독면 제작 업체 간 특허권 협의 불가로 조달청 구매 계약이 반려되어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하였고,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방탄헬멧(1억 7,000만원) 및 진압장비(3,300만원) 구입을 위하여 집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2022년에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방탄헬멧을 구입(1,400만원)하였음.

노후 방탄헬멧 및 진압장비의 교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을 편성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참고로 경찰청의 경우 2023년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1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해양경찰청과 같은 사유로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하여 해당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음.[8)]

[2023회계연도 경찰청 방독면 구입 예산 불용 사유]

(단위: 백만원)

	품목류	불용액	불용액 발생 사유
1	방독면	1,820	- 국방규격에 포함된 특정 업체의 특허 문제로 인하여 일반 경쟁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불용
2	정화통	285	

자료: 경찰청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의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해양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일반회계-장비관리유지(4231-314)

3.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설정 필요

가. 개 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한 후 연안해역 사고다발지역에 배치하여 예방순찰을 통해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7억 8,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9)]

[2023년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4,732	4,732	-	116	4,848	4,799	4	45	6,118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788	788	-	-	788	788	-	-	720

동 사업의 예산 7억 8,800만원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1,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7억 7,800만원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보조율은 100%이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도 연안해역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설정을 위하여 향후 보조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율은 100%이고, (사)한국해양안전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10)]

그런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9) 일반회계-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3001-300)(구조안전국)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 · 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연안해역 안전관리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11] 2021년 동법 개정(2021. 4. 13.)으로 연안안전지킴이의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12]

2021년 법 개정안 논의 당시 해양경찰청은 향후 매칭사업을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전 조사하여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13]

그럼에도 동 사업은 2023년은 물론 2024년까지 계속 국고보조율 100%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2023년 「민·관 참여형 연안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설정 및 국고보조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2021년 법 개정안 논의 당시 해양경찰청의 향후 계획]

> 연안안전지킴이 제도의 운영은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안전에 기여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연안해역 안전관리의 한 주체이므로 소요 경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안안전지킴이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운용 인력이 제한되는 만큼 해양경찰청 자체 운영예산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경비 지원을 통해 운용인력을 증원한다면 전국 연안해역 위험구역(910개소)의 더 많은 점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도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 자체 운영예산 외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계획은 없으나, 매칭사업(국고:지방비 5:5)을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전 조사하여 희망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1.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4.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연례적인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은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 구조인프라 확충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재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8억 4,800만원 중 47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3년도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4,732	4,732	-	116	4,848	4,799	4	45	6,118

나. 검토의견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은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과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등을 통하여 관련 경비가 집행되고 있어 적정하지 않으므로, 향후 공모전 및 캠페인 추진 필요 시 예산에 편성한 후 실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을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2020년~2021년에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그 외에는 해양경찰청 단독으로 개최하였음.

그러나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은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1년을 제외하고는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고, 2021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집행되어 적절하지 않음.

---

14) 일반회계-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3001-300)(구조안전국)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 실시 및 집행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 예산 미반영** 일반수용비(210-01) → **용역비(210-14)** **500만원 세목조정**	**※ 예산 미반영**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활용하여** **집행)**	**※ 예산 미반영** 일반수용비(210-01) → **용역비(210-14)** **1,200만원 세목조정**	**※ 예산 미반영** 일반수용비(210-01) → **용역비(210-14)** **1,570만원 세목조정**
	(해경) 500만원 (해수부) 7,000만원	(해경) 800만원 (해수부) 6,950만원	1,200만원	1,570만원
주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공모 부문	포스터, 동영상, 웹툰	스티커 디자인, 영상, 웹툰·수기	포스터	포스터, 어린이그림
접수 건수	571건	315건	495건	1,100건
기간	'20.5.13.~6.28.(47일)	'21.5.3.~6.25.(54일)	'22.3.17.~5.2.(62일)	'23.4.17.~5.31.(45일)

자료: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의 경우도 2015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관련 예산이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최근 5년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과 2023년에 각각 세목조정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캠페인을 실시하였음.[15)]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 집행 내역]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편성액	집행액	비고
2019년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	**4,492만원**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2023년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	**5,1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양경찰청은 공모전과 캠페인의 실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향후 예산에 편성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2020년, 2021년 및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안안전의 날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았음.

5.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 사업: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가. 개 요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은 광역해역에서 장시간 다목적으로 운용 가능한 대형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11억 4,9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음.[16)]

‘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 사업은 신설서인 사천서에 배치할 방제정을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이 이월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3년도 신규 대형헬기 1대(1호기) 사업·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공기도입	65,449	65,449	107	△667	64,889	63,706	1,149	34	59,925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1,149	1,149	-	-	1,149	-	1,149	-	19,461
방제정건조	25,689	25,689	20	-	25,709	20,980	4,727	2	9,560
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	180	180	-	-	180	-	178	2	2,520

나. 검토의견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과 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 사업 모두 연내 집행실적이 없고 예산의 전액 또는 대부분이 이월된 상황이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항공기도입 사업의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는 2023년~2026년(4년)에 걸쳐 도입될 예정으로, 2023년에는 1차년도 사업비 11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16) 일반회계-항공기도입(3101-301)(장비기술국)

17) 일반회계-방제정건조(4334-300)(해양오염방제국)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도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36개월(2023 ~2026년 / 4년차 사업) ‣ 규격: 좌석수 20개 이상, 최대순항속도 140노트 이상, 항속거리 500마일 이상, 체공시간 4.5시간 이상 등 ‣ 총사업비 : 773억원(5,940만불) * 2023년 11.5억 ⇒ 2024년 195억 ⇒ 2025년 282억 ⇒ 2026년 285억

자료: 해양경찰청

그러나 동 사업은 편성된 예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재공고 입찰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24년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설명으로, 계약 체결 지연 시 2024년 예산 전액도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방제정건조 사업의 신설서(사천) 방제정 1척 건조의 경우 2023년~2026년(4년)에 걸쳐 도입될 예정으로 2023년에는 1차년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도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인 1억 7,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2024년 4월에야 건조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예산도 일부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신설서(사천) 방제정 1척 건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천서 신설(2022년)에 따른 방제정 현장배치
- 계약금액 : 175억 5,000만원
- 계약자 : ㈜삼원중공업(전라북도 소재)
- 계약기간 : 2024. 4. 1~2027. 2. 15

※ 당초 사업기간 : 2023년 ~2026년(총 4년차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18,000	180	2,520	6,300	9,000	총 4년차
연차별 비율	(1%)	(14%)	(35%)	(50%)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조선소의 요청에 따라 건조계약 방식을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공고가 지연되었고, 이후 조선소 무응찰로 계약이 유찰되어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임.

신규 대형헬기 1대 사업과 신설서 방제정 1척 건조사업은 모두 사업기간이 4년인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이 2023년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대형헬기와 방제정이 적기에 현장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대형헬기 및 방제정의 적기 배치를 위하여 동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함과 아울러, 사업 추진 경과를 감안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향후 연차별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항공유 사업: 합리적인 예산 편성 기준 마련 필요

가. 개 요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은 밀입국·마약 등 국제범죄에 대응하고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억 6,500만원 중 12억 6,1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8%)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항공유’ 사업은 항공기의 해상순찰·범죄단속 등 임무수행 시 필요한 항공유를 각 항공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3억 9,800만원 중 33억 9,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3년도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항공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외사경찰활동지원	1,967	1,967	-	△702	1,265	1,261	-	4	1,692
항공기정비유지	34,017	34,017	2,095	△3,938	32,174	31,140	874	160	43,224
항공유	5,008	5,008	-	△1,610	3,398	3,397	-	1	3,105

나. 검토의견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과 항공유 사업 모두 예산 편성 기준이 적절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합리적인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의 선박·어구·어획물 위탁관리·폐기비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 10억 9,300만원의 35.3%인 3억 8,600만원만 집행하고 미집행액 중 7억 400만원은 이·전용을 통해 감액되었음.

18) 일반회계-외사경찰활동지원(3102-302)(정보외사국)

19) 일반회계-항공기정비유지(3103-301)(장비기술국)

[최근 5년(2019년~2023년) 선박·어구·어획물 위탁관리·폐기비 집행실적]

(단위: 척,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나포 척수	115	18	66	42	54
위탁 척수	19	10	22	15	15
폐기 척수	11	3	4	2	2
위탁비 예산(A)	1,012	943	568	568	1,093
위탁비 결산(B)	666	239	568	381	386
집행률(A/B)	65.8%	25.3%	100.0%	67.1%	35.3%
이·전용	-	△700	-	△186	△704

자료: 해양경찰청

2023년 예산액은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집행실적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 시 위탁 및 폐기 척수 추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음. 그리고 2019년~2023년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예산이 과다편성되고 있는 상황임.

항공기정비유지 사업의 항공유 내역사업은 당초 편성된 예산 50억 800만원의 67.8%인 33억 9,700만원만 집행하고 미집행액 중 16억 1,000만원은 이·전용을 통해 감액되었음.

[최근 5년(2019년~2023년) 항공유 내역사업 집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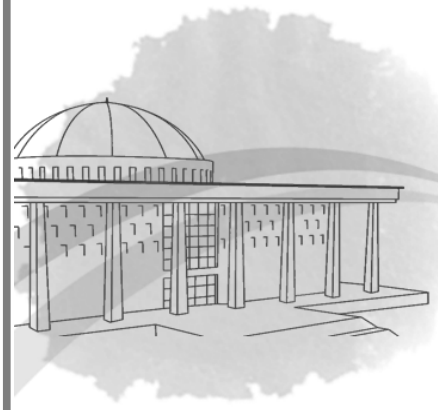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연도	예산 편성액 (백만원)	추경/ 이·전용 (백만원)	예산 집행액 (백만원)	편성 기준량	사용량	편성단가 (원)	평균공급 단가(원)
2019년	2,626	478	3,104	3,414㎘	3,275㎘	769	865
2020년	2,808	△700	2,108	2,883㎘	2,764㎘	974	617
2021년	2,830	△216	2,614	2,883㎘	2,944㎘	974	826
2022년	2,108	790	2,898	3,091㎘	2,293㎘	682	1,305
2023년	5,008	△1,610	3,397	3,753㎘	2,505㎘	1,334	1,138

자료: 해양경찰청

항공유 단가의 경우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사용량의 경우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경우 실제 항공유 사용량이 편성 기준량의 66.7%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위탁 및 폐기 척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항공유 사용 예측량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152억 3,400만원(△4.6%)이 적은 6조 4,841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5억 4,100만원(5.4%)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582,475	2,582,475	2,666,477	84,002	2,771,524	2,771,524	2,067,532	△703,992	△598,945
기 금	3,229,588	3,229,588	3,488,099	258,511	4,027,827	4,027,827	4,416,585	388,758	928,486
총수입	5,812,063	5,812,063	6,154,576	342,513	6,799,351	6,799,351	6,484,117	△315,234	329,541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913억 1,500만원(0.8%)이 많은 11조 2,625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6억 7,600만원(1.7%)이 증가함.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063,163	7,991,564	8,186,237	194,673	8,447,239	8,447,239	8,574,491	127,252	388,254
기 금	3,093,946	2,985,015	2,890,656	△94,359	2,626,424	2,724,015	2,688,078	△35,937	△202,578
총지출	11,157,109	10,976,579	11,076,893	100,314	11,073,663	11,171,254	11,262,569	91,315	185,676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조 3,004억 1,800만원으로 7조 8,451억 2,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조 8,164억 7,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25억 7,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260억 7,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82,944	182,944	-	182,944	167,330	154,749	0	12,58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648,484	5,648,484	-	5,648,484	5,202,280	5,194,588	2,575	5,118
- 투자계정	5,067,645	5,067,645	-	5,067,645	4,732,673	4,724,980	2,575	5,118
- 융자계정	580,839	580,839	-	580,839	469,608	469,608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2,796	122,796	-	122,796	65,590	57,221	-	8,368
- 지역지원계정	122,796	122,796	-	122,796	64,241	55,872	-	8,368
- 지역자율계정	-	-	-	-	830	830	-	-
- 제주특별자치시계정	-	-	-	-	-	-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	-	-	-	520	520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346,194	2,346,194	-	2,346,194	2,409,917	2,409,917	-	-
합 계	8,300,418	8,300,418	-	8,300,418	7,845,121	7,816,476	2,575	26,07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조 2,447억 3,800만원으로, 이 중 11조 39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223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83억 7,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334,299	6,334,299	5,024	±8,059	183,680	6,523,003	6,445,281	20,998	56,7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03,669	2,003,669	569	±3,483	181,415	2,185,653	2,025,895	913	158,845
- 투자계정	1,400,816	1,400,816	569	±1,983	181,415	1,582,800	1,551,269	913	30,618
- 융자계정	602,853	602,853	-	±1,500	-	602,853	474,626	-	128,2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39,389	839,389	990	±1,255	-	840,379	837,154	444	2,781
- 지역지원계정	816,417	816,417	990	±1255	-	817,407	814,735	444	2,228
- 지역자율계정	-	-	-	-	-	-	-	-	-
- 제주특별자치시계정	13,861	13,861	-	-	-	13,861	13,861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9,111	9,111	-	-	-	9,111	8,558	-	55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695,666	1,695,666	37	±60	-	1,695,703	1,695,653	28	21
합 계	10,873,023	10,873,023	6,620	±12,857	365,095	11,244,738	11,008,983	22,383	218,37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9조 5,374억 3,200만원으로 25조 4,765억 5,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4조 1,432억 2,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4.8%)되고 421억 7,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1조 2,911억 5,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전력산업기반기금	4,696,055	4,696,055	9,794,809	9,752,755	334	41,720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84,955	184,955	202,101	202,101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608,758	8,608,758	9,606,981	9,606,981	-	-
무역보험기금	6,047,664	6,047,664	5,872,661	4,581,389	41,837	1,249,435
합 계	19,537,432	19,537,432	25,476,552	24,143,226	42,171	1,291,154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9조 5,375억 4,800만원으로, 이 중 24조 1,432억 2,600만원이 지출(집행률 123.6%)되고 2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72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전력산업기반기금	4,696,055	4,696,055	116	4,696,171	9,752,755	232	35,821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84,955	184,955	0	184,955	202,101	0	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608,758	8,608,758	0	8,608,758	9,606,981	0	0
무역보험기금	6,047,664	6,047,664	0	6,047,664	4,581,389	0	361,464
합 계	19,537,432	19,537,432	116	19,537,548	24,143,226	232	397,28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6,184억 4,100만원이 증가한 27조 5,825억 5,400만원으로, 이는 기타비유동자산 1조 4,273억 6,2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조 6,870억 9,700만원 증가하고 투자자산이 2,020억 8,400만원 증가한 데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8,699억 6,900만원 증가한 4조 5,702억 6,6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1조 1,594억원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515억 2,800만원이 감소한 23조 122억 8,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9조 6,096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67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조 9,318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9억 8,5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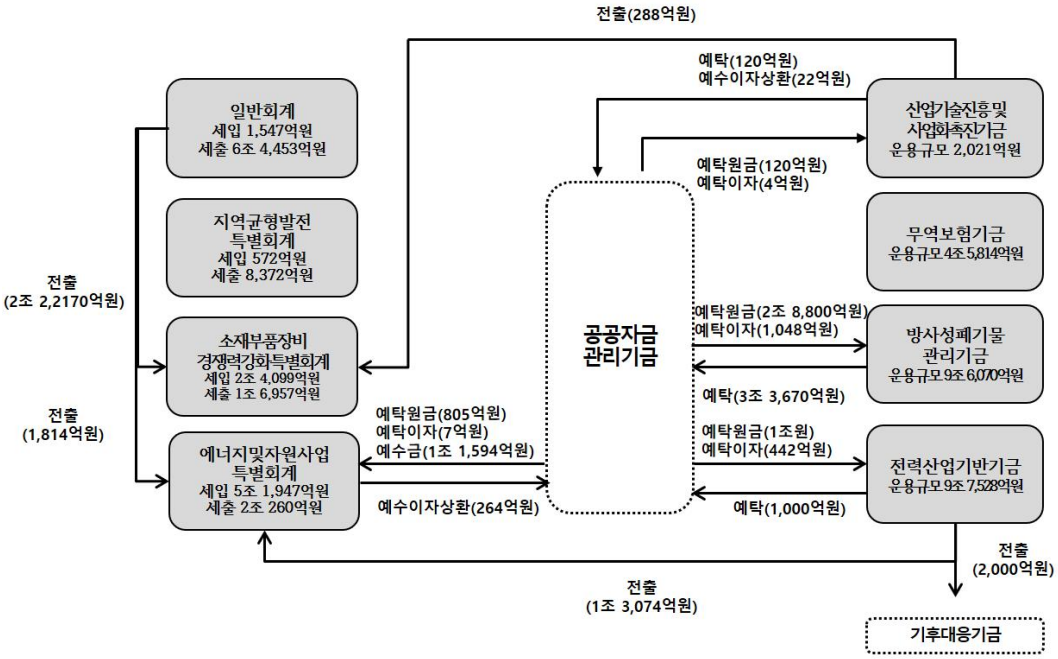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7,582,554	25,964,113	1,618,441	6.2
		유동자산	16,444,369	14,757,271	1,687,098	11.4
		투자자산	5,855,046	5,652,961	202,085	3.6
		일반유형자산	3,828,414	3,784,798	43,616	1.2
		무형자산	27,362	31,023	△3,661	△11.8
		기타비유동자산	1,427,363	1,738,059	△310,696	△17.9
	부 채		4,570,266	2,700,296	1,869,970	69.3
		유동부채	107,268	93,531	13,737	14.7
		장기차입부채	1,720,109	560,709	1,159,400	206.8
		장기충당부채	759,148	599,515	159,633	26.6
		기타비유동부채	1,983,740	1,446,542	537,198	37.1
	순자산		23,012,288	23,263,816	△251,528	△1.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9,609,696	9,052,976	556,720	6.1
	재정운영순원가		9,174,891	8,840,434	334,457	3.8
	재정운영결과		5,931,851	6,183,837	△251,986	△4.1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4개 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2023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619개 세부사업에서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혁신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최초 투자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청산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청산을 유보한 채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금융위원회의 지역투자활성화펀드 사업에 동 펀드의 유보잔액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출자된 자금의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운용기간 연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은 R&D 과제 수행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구축 결과물인 장비 또는 시설을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직접비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을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정보화사업에 사용하는 등 지침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수지차보전기관은 자체수입의 예산 대비 초과 수납이 발생할 시 이를 이월결산잉여금에 반영하여 차년도 수지차보전지원액 산출과정에서 차감하는 구조인데, 20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지차보전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2023년 결산상 잉여금 391억 6,000만원의 예산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석탄광물(석회석 등)의 갱도굴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한국광해광업공단 내부의 별도 자금인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사용하여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만 관리·감독되고 있고, 국가결산상 자산에서도 누락되고 있음.

여섯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계획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초과집행에 따른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전가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한국전력공사는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을 기존 도서지역 관리용역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수행기간을 2024년 1월로 연장하여 용역비를 초과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이 아닌 다른 상품(수출보증보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미회수잔액(채권잔액)을 징수결정하지 않고 무역보험기금의 미수채권에서도 제외하고 있는데,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미회수잔액에 대한 징수결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이차보전지원 4개 사업: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등

가.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4개 세부사업에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편성된 이차보전금은 국내·외 미래차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의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방식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24억 9,000만원이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액 교부되었고, 교부액 24억 9,000만원 중 9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37.8%)되고 15억 4,900만원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되었음.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에 편성된 이차보전금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여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15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편성된 이차보전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생산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이차보전금 계획현액 31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녹색혁신금융(융자)’ 사업에 편성된 이차보전금은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이차보전금 계획현액 1억 8,8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이차보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사업코드)	내역사업명	비목명	2023년 예·결산 현황				
				예산(계획)현액	교부액	불용액	실집행 단계	
							실집행액	이월액
일반회계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3551-326)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금	2,490	2,490	-	941	1,549
에특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5139-302)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차보전금	1,500	-	1,500	-	-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5202-304)	생산및시설자금	이차보전금	3,130	-	3,130	-	-
	녹색혁신금융(융자)(5202-306)	주민참여자금	이차보전금	188	-	188		-
총 계				7,308	2,490	4,818	941	1,549

주)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제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첫째, 융자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한 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직접융자 방식 선호 및 이차보전 지원 수요 저조로 인하여 2023년도 이차보전지원금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이차보전 사업 설계 시 금융기관 및 실제 신청자의 사전수요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2년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국가재정으로 수행하는 정책 융자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을 통해 이차보전금 비목을 신설,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및 ‘녹색혁신금융(융자)’ 사업에 대해서

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차보전금 비목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제2회 추경부터 기존 융자사업의 884억원의 융자금을 대신하여 2분기 동안 이차보전 예산액 1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전무하여 2023년도에도 이차보전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동 보고서는 녹색혁신금융(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2022년 5월 사업추진 도중에 민간융자금 52억 9,4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보전 예산 9,400만원을 신설하였으나, 2022년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전무하여 2023년 예산에 편성된 이차보전 지원금 1억 8,800만원의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융자→이차보전 사업방식 변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사업코드)	내역사업명	비목명	2023년 예·결산 현황					
				예산(계획)현액	교부액	불용액	실집행 단계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에특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5139-302)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기타민간융자금	256,834	256,834	-	256,834	-	-
			이차보전금	1,500	-	1,500	-	-	-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5202-304)	생산및시설자금	기타민간융자금	457,170	457,170	-	344,999	112,171	-
			이차보전금	3,130	-	3,130	-	-	-
	녹색혁신금융(융자)(5202-306)	주민참여자금	기타민간융자금	36,614	36,614	-	30,752	3,255	2,607
			이차보전금	188	-	188	-	-	-
합계			기타민간융자금	750,618	750,618	-	632,585	115,426	2,607
			이차보전금	4,818	-	4,818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실제로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3개 이차보전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각 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융자사업(기타민간융자금 비목)은 2023년도 예산(계획)현액 합계 금액 7,506억 1,8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6,325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음에

비해, 이차보전금은 2023년도 예산(계획)현액 총 합계액 48억 1,8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지원 후 체감금리가 최근의 고금리 여건으로 인하여 높게 유지됨에 따라 융자신청자의 수요가 저조하였고, 금융기관 또한 정책융자를 선호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성급히 정책융자의 이차보전을 추진하기보다는, 실제 사업현장의 금융기관 및 신청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여 적정 정책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둘째,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운영비용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업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 편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차보전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운영비로 이차보전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무한 상황임.

그런데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24억 9,000만원을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액 교부하였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중 8,800만원을 해당 이차보전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로 계상하고 전액 집행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이차보전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사업운영비로 지출하기에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보조금이나 용역비와 달리 건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통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금으로 사업관리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별도 사업비 편성(일반용역비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2)]

2) 별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규정이 부재한 탓으로 이차보전금의 집행 시점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자수익을 국고로 반납조치하고 이차보전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에 대한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운영비용 성격의 기획평가관리비를 제외한 24억 200만원 중 8억 5,300만원만을 2023년 신규 이차보전 신청 건에 대해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사업비 15억 4,900만원은 미집행된 채로 2024년 이차보전지원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보유하고 있음.

[2023년 이차보전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사업비	2,402	2,402	2,402	2,402	853	1,549	-	35.5
기획평가 관리비	88	88	88	88	88	-	-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통상의 이차보전 사업과 달리 동 사업의 경우 2024년 이차보전지원금 지급 소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관리기관에 대한 별도 사업비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편성 비목	2023년	
					예산 현액 (계획 현액)	집행액
국토 교통부	주택도시 기금 (도시계정)	위탁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융자 등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에 따른 법정 수수료 등 지급	일반 수용비	3,511	2,740
통일부	남북협력 기금	위탁수수료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수수료(위탁사업비) 지급	일반 용역비	2,182	2,182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한 평가 및 정산시스템 등 조성 및 운영지원	일반 용역비, 자산 취득비 등	1,000	99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요 중 2023년 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건들을 2024년 당해연도 예산이 아닌 2023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사업구조로 인하여 이차보전금의 최종 집행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이차보전금 사업비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1,561만원 가까이에 이르고, 2023년의 경우에도 이차보전금 전액 교부 이후 실집행부진에 따라 이자수익이 6,825만원 가량 발생하였으나, 2024년 6월 말까지 해당 이자수익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음.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발생 현황]

사업연도	이자수익발생 기준일	이자발생현황(원)
2022년	2022.06.19	3,664,656
	2022.09.18	4,942,893
	2022.12.18	7,005,407
	소계	15,612,956
2023년	2023.03.19	11,952,662
	2023.06.18	20,226,123
	2023.09.17	19,322,141
	2023.12.17	16,748,484
	소계	68,249,410
합 계		83,862,3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이차보전금 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조속히 국고로 반납조치하는 한편,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도 통상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한 보조금 교부원칙 준수 필요

가. 개 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은 개도국 수요에 대응한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보조금 예산현액 433억 3,1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3)]

[2023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ODA)	43,331	43,331	-	-	43,331	43,331	-	-	69,584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은 전력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개도국의 디지털·그린 분야 전력사업 지원 및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보조금 계획현액 211억 4,9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4)]

[2023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에너지산업협력 개발지원(ODA)	21,149	21,149	-	21,149	21,149	-	-	21,149

3) 일반회계-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1931-302)

4) 전력산업기반기금-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5807-302)

(1) ODA 사업 추진 체계

두 ODA 사업은 전액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두 ODA 사업의 보조사업자이자 전담기관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따라 자동차연구원 등 90여개 ODA 수행기관에 간접보조금을 재교부하고 정산 및 집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s)은 ODA 사업 협력대상국의 협력기관과 사업의 목적 및 기간, 대상분야, 공여국 측 지원사항, 협력대상국의 부담사항 등 협력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로, 실질적으로 해당 ODA 사업 시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추진 절차를 비교하면,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는 자체규정(KOICA 국제협력사업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활요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담사항의 세부 협의 후, 협력대상국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미리 선정한 후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5)]

뿐만 아니라,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

5)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과 양국간 해당사업 수행 시 분담사항 확정 및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협의의사록의 체결) ① 장관은 제23조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따라 협의의사록이 체결되기도 전에 기자재 구입 및 설계시공과 같이 자본적 경비가 집행되는 등 본사업에 착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2) 감사원 감사결과(2023.8)

감사원은 2023년 8월「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보고서를 발표하였음.

감사처분 결과를 요약하면, 감사원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ODA 사업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구체적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하여, ① 국무조정실로부터 중단 통보받은 ODA 사업임에도 보조금을 집행하여 태양광 모듈 등 기자재를 구입하여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 ② 협의의사록 체결 및 실질적인 사업 착수 이전에 미리 구입한 기자재(총 108억원)가 사업 중단 또는 협약체결 지연 등으로 창고에 장기간 방치된 사례에 대하여 담당자 징계 등의 감사처분을 요구하였음.

이에 비해,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관행을 시정하여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사례와 같이 협의의사록 체결 후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가피하게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을 통보하였음.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조치사항 요약]

유형	지적사업	지적사항	조치 필요사항
중단 통보 사업의 부당 집행(2건)	콜롬비아 수처리 TP 조성 (2019~2023년, 60억원)	주관기관(외교부)의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에도 산업부 보고 없이 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 지속 추진	전담기관 ODA 업무 수행에 대한 산업부 관리 감독을 강화함
	미얀마 에너지 자립형 마을 (2019~2022년, 57.5억원)	국조실이 사업중단을 통보(2021.10)하였음에도 수행기관의 기자재 구입 허용	
사업착수 전 구매 기자재 장기 방치(2건)	콜롬비아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2020~2024년, 141억원)	협의의사록 미체결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에도 사업비 교부 및 기자재 구매	실질적 사업착수 전 구매 기자재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함
	콜롬비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2020~2023년, 100억원)	협의의사록 미체결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에도 산업비 교부 및 기자재 구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 본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상세 요건, 절차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별표 6][6]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

6)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6]

구 분	범 위
산업부 승인사항	1. 실시설계 등 ㅇ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사업부지가 확정되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등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수원기관 및 수원총괄기관(ODA 관리부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2. 기자재 발주 등 ① 본사업 착수를 위한 수원국의 협의의사록 심의절차가 완료되는 등 협의의사록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수원기관 및 수원총괄기관(ODA 관리부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또는 ② 본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기자재의 성능 평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범(소규모) 구매가 필요한 경우 * 수원기관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3. 그밖에 장관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기관 승인사항	1. 기술자문, 초청연수 등 ①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기자재, 설비 등을 이용하여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수원기관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② TASK사업의 경우, 수원국 현지 또는 국내에서 기술자문,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수원기관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2. 각종 행사 운영 등 ① 본 사업에 대한 수원국 이해관계자 이해도 및 양국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세미나, 교류회 등 * 수원기관의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해당

료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내용(2024.1.15. 시행)]

기존	개정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본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 절차와 범위는 별표 6을 따른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교부 원칙은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7)]

그런데 ①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6개 과제의 경우 협의의사록이 체결되기도 이전에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한 것에서 나아가서 2023년 예산에 반영된 총 25억 4,900만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액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른 사업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경우 2022년 신규 사업 2개, 2023년 신규 사업 3개에 대해 2023년 총 79억 1,500만원의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이들 5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5월까지도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수행 과제 중 협의의사록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된 과제 내역(2024.6.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예산	2023년 예산	전담기관 교부액	협의의사록 체결일자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 (ODA)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23~'27	9,780	900	900	2024-01-08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	'23~'27	9,600	800	800	2024-01-10
	라오스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23~'27	1,446	186	186	2024-04-01
	투르크메니스탄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23~'27	1,616	213	213	2024-04-02
	방글라데시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23~'27	1,504	196	196	2024-04-23
	엘살바도르 디지털전환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23~'27	1,942	254	254	2024-04-25
	합 계		25,888	2,549	2,549	
에너지 산업협력 개발지원 (ODA)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구축	'22~'25	16,912	3,001	3,001	미체결
	콜롬비아 폰도레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력화 지원	'22~'25	11,900	2,293	2,293	미체결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23~'26	14,992	409	409	미체결
	도미니카 배전자동화시스템(DAS)활용 효율향상	'23~'26	17,840	1,069	1,069	미체결
	모잠비크 테트주 독립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23~'26	16,156	1,143	1,143	미체결
	합 계		77,800	7,915	7,915	

주) 2023년도 예산에 기자재 및 설계시공 관련 비용이 포함된 사업을 음영 표시하였고, 전담기간 교부액은 ODA 사업의 1차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교부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해당 과제들 중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2개 과제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4개 과제의 경우 2023년도 보조금 예산에 기자재 구입비와 설계시공비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의사록이 체결되기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보조금을 모두 산업기술진흥원에 교부하였음.

특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 구축’ 과제와 ‘콜롬비아 폰도레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력화 지원’ 과제는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2024년 6월까지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는 등 사업지연 문제가 심각함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중 ‘콜롬비아 폰도레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력화 지원’ 과제의 보조금을 사업수행기관에 전액 재교부하였음.

[2023년 수행 과제 중 협의의사록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된 과제 내역(2024.6.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2023년 예산	기자재 구입비	설계 시공	협의의사록 체결일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23~’27	900	-	100	2024-01-08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	’23~’27	800	120	-	2024-01-10
	합 계		1,700	120	100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구축	’22~’25	3,001	1,360	310	미체결
	콜롬비아 폰도레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전력화 지원	’22~’25	2,293	851	628	미체결
	도미니카 배전자동화시스템(DAS)활용 효율향상	’23~’26	1,069	261	345	미체결
	모잠비크 테트주 독립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23~’26	1,143	484	462	미체결
	합 계		7,506	2,956	1,745	

주) 음영 표시한 과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수행기관에 전액 재교부한 사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소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보조금 예산현액 211억 4,900만원 중 148억원을 2023년 5월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차 교부하고, 남은 잔여 보조금 63억 4,900만원을 다음 달인 2023년 6월 28일에 전액 교부하였음.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보조금 교부시기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금 교부시기별 금액		합계
2023.5.17.	2023.6.28	
14,800(70.0)	6,349(30.0)	21,14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앞서 밝혔듯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을 단순히 최소 연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살피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4개 과제가 2024년 6월까지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는 등 집행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교부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잔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진흥원은 ODA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 여건의 기본이 되는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재 구입비 및 설계시공비를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각각 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에 교부·재교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수지차보전 지원기관의 차기 및 차차기 결산잉여금 계상 문제

가. 개 요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하는 수지차 보전기관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기관을 의미함.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경 대상 공공기관에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체수입 산정·결산잉여금 처분·인건비 및 경상비 등의 편성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2022년, 2023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배포한 수지차보전기관 예산요구서 작성지침을 보면, 자체수입은 사업수입·사업외수입 및 결산잉여금 등을 세부 내역까지 면밀히 추계하여 수입항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소관 수지차보전 지원기관들은 예산 편성 이후 실제 집행 시점인 y+1년도 2월, 전년도인 y년도의 결산잉여금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함.

이후 y+1년도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결산잉여금의 사용 방안에 대한 협의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결산잉여금을 사용하고 있음.

[수지차보전 지원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사용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사회 승인	산업부 승인	기재부 협의안 제출	기재부 협의	결정 및 사용
y+1 2월 이내(결산보고)	y+1 2월 이내(정산보고)	y+1 3월 이내	y+1 4월 이내	y+1 년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부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출연기관)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을 차기이월하지 않거나, 지침을 위반하여 전액 차차기로 이월함에

따라 수지차보전기관 지원소요액에 대한 재정지출 통제가 미흡하고, 결산잉여금 발생 시점부터 수입계상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과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서 작성요령」에서 수지차 보전기관은 결산잉여금을 차년도와 차차년도 수입에 반영하고, 임의처분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퇴직급여충당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예산 계상의 순위에 따라 사용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여금을 당해연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당해연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기이월금(전년도이월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전전기이월금(전전년도이월액)은 전년도 확정 결산잉여금에서 당해연도 전기이월금을 충당 후 잔여재원을 편성함.

이때 전기이월금은 과거 3개년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 또는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이월금 및 전전기이월금 편성 방식]

- **전기이월금**: 당해연도('23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계하여 차년도('24년) 전기이월금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으로, 과거 3개년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 또는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계
  (예시) '24년 정부안 편성 중에 '20년~'22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을 '24년 예산에 반영

- **전전기이월금**: 전년도('23년) 확정 결산잉여금에서 당해연도 수입('23년 전기이월금) 충당 후 잔여재원으로서, 다음 해('24년)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한 금액
  (예시) '22년 최종 결산잉여금(35억 9,100만원)에서 '23년 전기이월금(25억 9,100만원) 충당 후 잔여재원(10억원)을 '24년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

자료: 「수지차 보전기관 2024년 예산요구서 작성요령」

8) 「수지차 보전기관 2024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요령」

□ 결산잉여금 임의처분 금지
  ㅇ 결산잉여금 임의처분 기관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금액만큼 수지차 보전액 감액 조정

※ 2023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요령까지는 해당 사항에 관한 설명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출연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위의 결산잉여금 처리 기준과 달리 전기이월금을 과소편성하거나, 전혀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발생한 처분전 결산잉여금을 차기이월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모두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적립금에 충당하고 있음.

[2019~2023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처분전 결산잉여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회계연도말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처분전 결산잉여금 합계	6,948	855	-	2,107	3,971
	- 퇴직급여적립금	3,052	855	-	2,107	3,971
	- 법정보험료부족분	-	-	-	-	-
	- 사업외 비용	-	-	-	-	-
	- 차기이월 (차년도 전기이월금)	336	-	-	-	-
	- 차차기이월 (차차년도 전전기이월금)	-	-	-	-	-
	- 법인세 납부	3,560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2019년 69억 4,800만원의 처분전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여 3억 3,600만원을 차기(2020년도) 자체수입로 이월한 사례를 제외하면, 2020년, 2022년, 2023년 모두 당해연도 발생한 처분전 결산잉여금을 전액 퇴직급여적립금에 사용하여 전기이월금 계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2023년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으로 계상하여야 되는 금액은 최근 3개년(2019~2021년) 처분전 결산잉여금 평균치인 26억 100만원이고,[9] 실제 수납금액은 2022년 처분전 결산잉여금인 21억 700만원이어야 하나, 2023년도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 계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마찬가지로, 2024년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으로 계상하여야 되는 금액은 최근 3개년(2020~2022년) 처분전 결산잉여금 평균치인 9억 8,700만원이고,[10] 실제 수납금액은 2023년 처분전 결산잉여금 39억 7,100만원 중 9억 8,700만원이 2024년도 전기이월금으로, 나머지 29억 8,400만원이 2025년도 전전기이월금

9) 최근 3개년(2019년~2021년) 결산잉여금 평균 = (69억 4,800만원+8억 5,500만원+0원) / 3

10) 최근 3개년(2020년~2022년) 결산잉여금 평균 = (8억 5,500만원+0원+21억 700만원) / 3

등으로 수납되어야 하나, 이 역시 전혀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말 퇴직급여적립금(사내적립)의 적립률이 26.2%에 불과한 등 저조한 탓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처분전 결산잉여금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하에 퇴직급여적립금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퇴직급여적립금 충당 등에 처분전 결산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자체수입 초과달성·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최근 3개년 처분전 결산잉여금 평균치를 자체수입에 전기이월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2023년 말 퇴직급여적립금(사내적립) 적립률이 18.5%에 불과함에도 과거 3개년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으로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을 매년 계상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 계상 원칙을 준수하고,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 누락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퇴직급여적립금 충당에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년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 계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처분전 결산잉여금 전액을 차차년도의 전전기이월금으로 수납하여 왔음.

[2019~20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처분전 결산잉여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회계연도말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처분전 결산잉여금 합계	615	637	5,060	7,856	39,160
	- 퇴직급여적립금	-	-	-	-	-
	- 법정보험료부족분	-	-	-	-	-
	- 사업외 비용	-	-	-	-	-
	- 차기이월 (차년도 전기이월금)	-	-	-	7,856 (변경)	39,160
	- 차차기이월 (차차년도 전전기이월금)	615	637	5,060	7,856 (당초)	-

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부터 수지차보전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당초 차차기(2024년도) 이월 대상이었던 2022년 처분전 결산잉여금 78억 5,600만원을 2023년 전기이월금으로 모두 수납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계획외 수입 및 지출절감에 따라 2022년도 결산잉여금이 78억 5,600만원만큼 발생하였는데, 관행대로라면 해당 결산잉여금을 2024년(차차기)로 이

월하여 수납하였어야 하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부터 수지차보전 지원기관에서 지정해제될 것으로 결정되자 해당 결산잉여금을 2023년 중 모두 수납하였음.

이에 따라 자체수입 중 이월결산잉여금이 2023년 예산 50억 6,000만원 대비 78억 5,600만원을 초과하여 총 129억 1,600만원 수납된 반면, 당초 2021년도 처분전 결산잉여금 50억 6,000만원의 차차기 이월을 전제로 편성된 2023년도 광해광업공단 수지차보전지원 출연금 1,034억 2,200만원은 차감되지 않은 채 전액 집행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수입으로 수납되었음.

이는 자체수입의 차차기 이월 관행에 따라 결산잉여금의 정산이 발생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차기로 지연되면서,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해제와 같은 제도 변화 시 기관 내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 사례에 해당함.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y+1년도의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는 y년도에는 회계연도가 진행 중인 관계로 차기에 수납될 y년도의 결산잉여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 전액을 차차기로 이월하여 왔다는 입장임.

그러나 자체수입의 차차기 이월이 보편화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례와 같이 수지차보전지원기관 지정해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시 차차기 이월금의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지차보전기관 내에 잉여재원이 합리적 사유 없이 한 해 동안 보유하게 되어 국가재정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소관 수지차보전기관의 자체수입 예산 편성 시 지침을 준수하여 과거 3개년도 평균치를 토대로 자체수입 내 전기이월금을 적정히 계상하고, 처분전 결산잉여금을 자체수입에서 누락하거나 전액 차차기로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편성액과 집행액간 차이를 차년도 자체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임의보유하게 되면서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전략물자관리원은 2019년 이후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편성액 대비 실제 지급액 간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차년도 자체수입 중 어느 항목에도 계상하지 않고 임의보유하였다가, 2024년 4월에서야 전기이월금(수입)에 계상하였음.

[2023년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의보유금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경평 등급	경평 성과급	경평 등급	경평 성과급	경평 등급	경평 성과급	경평 등급	경평 성과급	
(A)	성과급 협의액	-	94	-	120	-	132	-	140	486
	(경영평가 예상)	(A)	-	(S)	-	(A)	-	(A)	-	-
(B)	성과급 집행액	-	66	-	98	-	81	-	66	311
	(경영평가 결과)	(B)	-	(A)	-	(B)	-	(C)		-
(A-B)	임의보유금	-	28	-	22	-	51		74	175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경영평가성과급의 정산 차액은 차년도 자체수입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입>

4. 토지매각대: 산업단지 내 유휴 국유부지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토지매각대’ 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유재산의 토지 매각수입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3년 징수결정액 161억 3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11)]

[2023년도 토지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토지매각대	-	-	16,130	16,130	-	-	100.0	-

토지매각대는 2023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충북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매각에 따라 국가 지분 161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이 발생하였음.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세입예산에 토지매각대 및 임대수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당초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매각대 161억 3,000만원이 수납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북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토대로 2023년 2월 충청북도에 부지매각을 요청하였고, 이에 충청북도는

11) 일반회계-토지매각대(72-711)(기획조정실)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매각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지매각대금을 납부완료하였다는 입장임.

해당 토지는 최초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가 2011년 5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개발·지정되었음. 지정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인 A기업이 입주하였으나, 이후 A기업은 태양광 시장 침체에 따라 임대부지 145,311.5㎡중 유휴부지 51,800㎡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어 2021년 11월 16일 해당 부지의 반납을 요청하였음.

충청북도는 이에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축소) 안건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2021년 12월 원안의결하여 해당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지정해제하였음.

이에 따라 발생한 유휴부지 51,800㎡를 충청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LG에너지솔루션에 2022년 7월부터 최초 1년간 임대하기로 결정하였음. ㈜LG에너지솔루션은 임대기간 도중인 2023년 2월 충청북도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충청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 8월 개별공시지가 154억 6,200만원보다 4.3% 높은 161억 3,000만원에 해당 입주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된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매각주체가 되어 해당 유휴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유휴부지의 매각·임대에 대해 사전 계획 수립 등 관여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하였음.[12)]

그러나 ① 해당 토지는 최초 국가 재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로 전체 부지의 75%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23년 9월 기획재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처분 권한 지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 및 임대의 업무에 관한 사항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였을 뿐 해당 국유지에 대한 처분권한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도 행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②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된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활용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지자체 결정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이 계속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할 경

1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 · 위탁)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우, 국회가 심의한 세입예산 규모와 실제 재정운용 간 괴리가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국유 유휴부지의 매각·임대에 관한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에 토지매각대 수입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13)]

13)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국유 유휴부지 매각시 지자체(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세 출>

5.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 출자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 운용기간 연장 신중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업종고도화, 창업 및 혁신,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58억 4,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4)]

[2023년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업단지 환경조성	308,718	308,718	-	-	308,718	308,718	-	-	397,197
산단환경 개선펀드	95,848	95,848	-	-	95,848	95,848	-	-	186,770

동 사업의 2023년 예산 편성근거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당 평균 159억 7,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산출식에 따라 총 958억 4,800만원의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집행하였음.

동 사업의 전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단지공단은 민간위탁사업비 중 일부인 21억 7,100만원을 관리위탁수수료로 수취하고, 나머지 민간위탁사업비 936억 7,700만원을 자산운용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운용하였음.

14) 일반회계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지역경제정책관)

[2023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 운용 구조]

부처		위탁기관		사업수행자
산업통상자원부 (95,848백만원)	=> (95,848백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171백만원)	=> (93,677백만원)	자산운용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2020년 대상 출자금에 대하여 펀드설정기간을 10년으로 유지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였음.

나. 검토의견

첫째, 최초 투자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청산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청산을 유보한 채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금융위원회의 지역투자활성화펀드 사업에 동 펀드의 유보잔액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출자된 자금의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운용기간 연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에 140억원(국비 130억원, 산업단지공단 10억원)을 투입하여 경북 구미에 구미드림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토지 매입 후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사업시행법인(SPC, 구미드림타운)에 출자금 140억원이 교부된 채로 2024년 현재 청산시점이 도래하게 되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미드림타운(구미) 펀드의 당초 설정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2024년 12월 말 청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운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내 신규 출자금의 투자계획을 검토하던 중, 2014년 구미드림타운 대상 사업부지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자체·기획재정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펀드운용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익이 발생한 2012년과 2013년 펀드는 청산을 완료하여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조치한 반면, 2011년 반월랜드마크에스피씨(반월) 펀드(국비 150억원, 산업단지공단 150억원 출자)는 2021년 펀드설정기간 10년이 경과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누적이익잉여금이 △116억 5,500만원에 이르는 등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 기간을 5년 연장[15]한 바 있음.

[2024년 기준 청산 시점이 도래한 펀드들의 청산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구분 (산업단지)	관련 펀드 조성 연도	누적 투자 현황			수익 관련 사항			
		공단 지분 투자액	민간 지분 투자액	민간 그 외 자금 투자액 (대출 등)	공단 지분 투자액의 지분증권 공정가치 평가액 (2023년 말 또는 청산 시점 기준)	누적 이익 잉여금 (2023년 말 또는 청산 시점 기준)	청산 여부 (미청산시 청산예정 연도)	국고 회수액
반월랜드마크 에스피씨(반월)	2011	30,000	1,836	28,760	30,000	(11,655)	5년 연장 (2026)	-
반월시화에코 클러스터 피에프브이 (시화)	2012	16,000	1,400	22,000	-	(558)	청산 (2022)	15,441
창원드림타운 (창원)	2013	10,000	-	32,800	-	881	청산 (2022)	10,881
구미드림타운 (구미)	2014	14,000	-	-	14,000	(835)	운용기간 연장추진 (202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같이 수익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손실이 발생(반월랜드마크에스피씨(반월))하였거나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펀드(구미드림타운(구미))의 설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펀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② 2014년도 기투입한 출자금을 SPC 출자단계에서 2024년도 신규 출자사업 내 자금과 함께 집행하는 것은 당초 2014년도 출자사업에 대하여 출자금 집행을 승인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출자사업별 목적 및 내용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됨.

뿐만 아니라, ③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근거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 내역과 달리 펀드설정기

15)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관리지침」
제25조의2(펀드 청산) ③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펀드규약에 따라 펀드의 만기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와 합의하여 연장 기간을 정한다.
1. 만기일까지 자산매각, 채권채무 정산 등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만기 연장으로 해당 펀드의 수익성 등 성과 개선이 예측되는 경우

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산기간이 도래한 펀드 내 정부 출자금에 대한 펀드운용 기간 연장을 신중히 추진하고, 연장 요건 및 근거,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출자된 예산의 실제 SPC법인 납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출자된 금액 중 실제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SPC법인에 납입된 실적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출자금 936억 7,700만원 중 2024년 5월까지 실제 SPC법인에 납입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며, 2020년 출자금 2,753억 5,400만원 중 2024년 5월까지 납입된 금액은 1,390억원에 불과한 수준임.

[2020~2023년 출자금의 실제 SPC법입 납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산업단지공단 출자액	출자액의 연내 결성 및 이후 SPC 법인 납입금 규모 (SPC 법인 자본금 납입 시점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 말)	계
2020	275,354	30,000	55,000	37,000	17,000	-	139,000
2021	147,510		-	59,000	35,000	-	94,000
2022	125,866			45,500	29,100	-	74,600
2023	93,677				15,000	20,000	35,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동 출자사업의 규모가 1,867억 7,0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출자금 SPC법인 납입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단지공단은 SPC법인 납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를 펀드 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기 위해 SPC법인 설립 즉시 펀드를 출자(납입)하지 않고 사업을 위한 대상토지 매입, 개발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획득, 추가 대규모 사업비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주요 절차가 확정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펀드를 SPC법인에 출자하는 구조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단지공단은 기출자된 자금의 실제 SPC 투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제 결성 및 집행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출자금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업시행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출자금 명목으로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하에 관리위탁수수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공단에게 지급되는 민간위탁사업비중 관리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 산정방식, 지급액 등은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안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이전에는 해당연도 정부 출자금 예산의 2.5% 이내 약 1.66% 정률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여 펀드운용 全기간 관리·운영비로 편성하였음.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신규 출자액이 감소하면서 위탁수수료가 2020년 46억 4,600만원에서 2021년 24억 9,0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는 당해연도 신규 출자액(A)이 아니라 전체 운영펀드(B) 내 운용잔액의 0.25% 이내에서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이 매년 협의하여 적정 위탁수수료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과 2022년이 모두 운용 잔액 대비 0.17~0.18% 수준에서 관리위탁수수료가 결정되었음.

[운영펀드 예산 규모 대비 관리위탁수수료 책정 현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부예산(A)	2,800	1,500	1,280	958
전체 운영펀드(B)	9,170	10,670	11,806	12,483
위탁수수료(예산)(C)	46.5	24.9	21.3	21.7
수수료 비율(C/A)	1.66	1.66	-	-
수수료 비율(C/B)	-	-	0.18	0.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출자금 예산 편성 이후「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관리지침」 제7조[16]에 따라 산업단지공단과 매년 협의하여 적정 위탁수수료 규모를

16)「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관리지침」
제7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펀드조성비와 위탁수수료로 구성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2】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결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방식 하에서는 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관리위탁수수료를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수수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연도 전체 운영펀드 예산의 0.25% 이내에서 펀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사업비가 없거나 조성된 펀드의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6.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비비 편성 필요

가. 개 요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은 수입선다변화 지원, 글로벌 공급망 정보분석, 공급망컨설팅 지원 등을 위하여 소부장산업공급망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보조금 예산현액 38억 4,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7)]

[2023년도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	1,581	1,581	-	-	2,265	3,846	3,846	-	-	1,901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3국 물량 확보 및 요소 수입선 다변화시 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22억 6,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2023년 12월 27일 해당 보조금 예산을 배정받았음.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예비비 22억 6,500만원 전액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교부하였음.

나. 검토의견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예비비 편성 요건 중 하나로 집행가능성을 추가하는 등 예비비의 집행관리를 강조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보조금 22억 6,500만원을 교부하여 전액 이월시켰음.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시 기존의 3가지 편성

17) 일반회계-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3574-306)(산업공급망정책관)

요건인 ①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②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③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외에도 집행가능성을 감안하도록 개정하였음.[18)]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교부한 예비비 22억 6,500만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 12월 29일 보조금 교부 이후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7억 1,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말 교부된 예비비의 실집행 현황(2024.5.기준)]

(단위: 백만원)

예비비 편성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기관명	교부 현액	실집행액 (23.12월말)	사고 이월액	실집행액 (24.5월말)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요소수급 안정화사업)	2,265	2,265	2,26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65	-	2,265	71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 보조금을 교부한 2023년 12월 말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교부일 및 사업기간(~2024년 4월 30일)을 감안하여 예비비 차년 이월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비의 편성 당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월을 기정 사실화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가 아닐 수 없음.[19)]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비 편성 요건 중 하나인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준수하고, 향후 연말 예비비로 보조금을 편성·교부하여 전액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8)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142

19)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요소의 국내 수급 불안정 고려시 신속한 예비비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12월 28일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 후 12월 29일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는 등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하였음.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비(非)R&D 사업 내 기평비 성격의 경비 반영 지양 필요

가. 개 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은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관련 정책개발 업무의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기관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8억 2,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0]

[2023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R&D관리기관지원(R&D)	23,060	23,060	-	-	23,060	23,060	-	-	23,0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826	6,826	-	-	6,826	6,826	-	-	6,826

정부는 2022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개별 R&D 사업에 분산·편성되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전문기관별로 통합하여 한 개의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통합 기획평가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별로 각 회계 내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평비 소요를 통합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균특)’**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R&D 사업 외 민간위탁사업, 개별 사업출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등에 필요한 공통의 기관운영 소요를 충당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R&D관리기관지원(R&D)’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국산업기**

20) 일반회계-R&D관리기관지원(R&D)(3171-305)(산업기반실)

술진흥원’ 사업에 2023년도 예산 기준 68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임원, 일반직) 및 경상운영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2023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ㅇ 인건비(3,617백만원) : 상근임원 1명(138), 지원부서 48명(3,479) ㅇ 경상비(1,323백만원) : 사무실관리비 등(1,323) ㅇ 사업관리시스템(1,886백만원) : IRIS 이관(686), VDI 환경구축(1,2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외 별도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업출연금 등 비(非)R&D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적인 기관운영경비 소요를 사업비 내 간접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는 기관출연금 및 R&D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조달되어야 하나, 2023년 기준 기관운영비 지출 예산 522억 3,000만원의 54.0%에만 해당하는 281억 7,900만원만이 기관출연금 및 R&D 통합기평비(인건비 및 간접비)에 편성되어 있음.

[2022~2024년 기관운영비 지출 예산 및 수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출예산		기관운영비(A)	48,947	52,230	53,662
		인건비(경평성과금 등 예비비 포함)	37,261	38,480	39,787
		경상운영비	11,686	13,750	13,875
수입예산		기관출연금 및 R&D 기평비(B)	26,604	28,179	28,098
		기관출연금	4,940	6,826	6,826
		R&D통합기평비	21,664	21,353	21,272
기관운영비 조달 비중(B/A)			54.4	54.0	52.4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출예산 대비 부족한 기관운영비 재원을 비(非)R&D사업(사업출연금 등) 수행 시 각 사업비 내에 간접비를 계상하여 충당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산업기술진흥원은 다수의 사업출연금에 대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뿐만 아니라 간접비를 계상하여 기관공통운영경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음.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출연금에 대해 간접비가 계상된 사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총사업비 (A)	위탁 사업비 (B)	사업관리비		비중 C/(A-B)
				사업 운영비	간접비(C)	
지속성장형기술인증	사업출연금 (산업부)	773	-	659	114	14.7
중소조선스마트생산 혁신지원	사업출연금 (산업부)	12,000	11,550	365	85	18.9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인증지원 사업	사업출연금 (산업부)	10,300	9,980	258	62	19.4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출연금 (산업부)	9,000	8,610	314	76	19.5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사업출연금 (교육부)	90,100	87,650	2,090	360	14.7

주) 사업출연금의 간접비 계상 사례는 사업비 규모 상위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출연 사업(R&D 사업) 뿐만 아니라 비(非)R&D 사업에 대해서도 수탁사업비의 일부를 기관운영 공통경비의 성격을 지니는 간접비로 계상·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24.33%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비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을 구분하고, 사업출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 다수의 사업출연금에 대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뿐만 아니라 간접비를 계상하여 기관공통운영경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진흥원은 적정 기평비 소요를 별도 사업 및 비

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출연금을 통해 기관운영출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총 37개사업에서 출연금 또는 수탁사업비 수령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을 2024년 4월까지 관리 소홀로 반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공공기관별 개별 사업 내 이자수익 정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총 37건에 대하여 이자수익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6~2021년 발생한 미반납이자수익 유형별 현황(미반납시점 기준 2024.4.)]

(단위: 백만원)

구분	대상 건수	총 금액
정산일 및 국고반납 시차에 따른 이자정산 지연	28건	25
단순 반납 지연	9건	26
합계		51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미반납 이자는 즉시 국고 반납을 추진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관리부서 및 사업관리총괄부서 간 현황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자수익 정산 관련 향후 조치계획]

○ (사업예수금 이자) 사업예수금 이자는 분기별 국고 반납(사업관리총괄부서) - 사업예수금 계좌(RCMS 모계좌 포함)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분기별로 전체금액에 대한 사업별 구분 확인을 거쳐 국고납입 조치 ○ (사업비 이자) 연구개발기관에 교부한 사업비 이자는 정산절차를 거쳐, 국고 반납 추진 -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별 정산 현황을 확인하고,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 (종료사업 기간 이자)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종료사업은 정산완료일로부터 1분기 이후 계좌를 해지하여 기간 이자까지 국고 반납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진흥원은 향후 R&D 사업 및 일반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이자수익 정산 및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 무역보험 보증 서비스의 이용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은 기업 맞춤형 서비스(해외지사화)로 해외무역관 전담직원 등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대행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보조금 예산현액 773억 9,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1)]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출지원기반 활용	77,394	77,394	-	-	77,394	77,394	-	-	86,394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합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른 내역사업인 ‘개별지원사업’은 기업 맞춤형 서비스(해외지사화)로 해외무역관 전담직원 등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21) 일반회계 - 수출지원기반 활용(1139-307)(무역투자실)

[2023년도 통합지원사업 및 개별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

세사업 명	편성 근거
통합지원사업	○ 47,658백만원 - 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 : 25,000백만원(250개사×200백만원×50%) - 산업별 글로벌진출역량강화 : 16,900백만원(241개사×100백만원×70%) - 수출물류지원 : 5180백만원(370개사×20백만원×70%) -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 608백만원(608백만원×100%)
개별지원사업	○ 29,736백만원 - 해외지사화사업 : 29,736백만원(5,418개사×9.8백만원×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통합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신규로 제공하기 시작한 서비스인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분야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합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그런데 2023년도 수출바우처의 서비스 유형별 사용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시회 및 행사, 홍보, 디자인개발 등의 비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주된 비중을 차지한 반면,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브랜드개발·관리 등의 서비스 이용비중은 모두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2023년 7월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수출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2023년 말 기준 해당 바우처의 실제 사용 건수는 0건으로 실적이 전무하였음.

[2023년 말 기준 수출바우처 서비스 유형별 사용금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대분류변환	서비스 건수	건수비중	바우처 금액	바우처 금액 비중	합계 : 국고금액	국고 비중
조사・일반 컨설팅	124	4.2%	942	4.8%	659	4.8%
디자인개발	319	10.7%	2,652	13.4%	1,849	13.5%
브랜드개발・관리	18	0.6%	182	0.9%	127	0.9%
홍보동영상	114	3.8%	1,918	9.7%	1,340	9.8%
통번역	165	5.5%	351	1.8%	238	1.7%
역량강화 교육	74	2.5%	152	0.8%	107	0.8%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703	23.6%	6,980	35.3%	4,812	35.2%
해외규격인증	281	9.4%	1,512	7.6%	1,026	7.5%
특허/지재권	306	10.3%	1,348	6.8%	934	6.8%
홍보/광고	291	9.8%	2,729	13.8%	1,899	13.9%
국제 운송	548	18.4%	829	4.2%	567	4.1%
서류대행・현지등록	19	0.6%	40	0.2%	27	0.2%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16	0.5%	134	0.7%	93	0.7%
무역보험보증	-	0.0%	-	0.0%	-	0.0%
총 합계	2,978	100.0%	19,769	100.0%	13,678	100.0%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분야 및 특성과 무관하게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야로 이용건수 및 금액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무역보험보증 바우처는 2023년 7월부터 신설되어 제공되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아 신청이 저조하였을 것으로 분석하였음.

다만, 신규로 제공된 무역보험보증 바우처의 이용건수가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외 이용률이 저조한 바우처에 대해서도 실제 이용기업의 만족도 및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22)]

2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무역보험보증 바우처의 누적 이용실적은 19건으로,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임.

9.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 장비도입형 R&D 과제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국가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345억 1,00만원이 전액이 집행되었음.[23)]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234,510	234,510	-	-	234,510	234,510	-	-	348,493

나. 검토의견

첫째, 동 사업에 포함된 장비도입 R&D 내역사업들의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말 기준 최종 교부된 출연금의 연구비관리시스템상 최종 집행률(등록일 2023.12)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최종집행률이 20% 미만인 과제가 4건으로 확인되며, 이들 과제는 모두 장비 도입형 R&D의 성격을 띠고 있음.

23) 일반회계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3551-301)(미래자동차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 내 2023년 기준 집행부진 과제]

(단위: 백만원, %)

과제명	과제 특성	2023년 관련사항				
		2023년 연구비	국비지원	국비지원 외	2023년말 최종집행액	집행률
와이드밴드갭소재기반차량용 전력반도체제조공정기반구축	계속	4,617	2,917	1,700	890	19.3
전기차충돌후배터리 핵심부품안전성확보지원	신규	1,900	1,000	900	282	14.9
수소상용차실차기반신뢰 내구성검증기반구축	신규	2,400	1,300	1,100	247	10.3
수소상용차부품성능 검증기반구축	신규	2,400	1,200	1,200	393	16.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신규로 추진된 3개 내역사업의 경우 모두 2023년 연구비 대비 실제 집행률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장비도입 과제의 경우 입찰 및 조달, 실제 장비도입에 이르기까지의 집행절차가 소요되므로, 사전계획 수립을 철저히하고,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도입일정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소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집행부진 과제 중 '와이드밴드갭소재기반 차량용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 구축'(계속과제)의 경우, 핵심 장비인 KrF 스캐너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상 신규 장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신제품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중고 장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초 사업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의 과제 중 하나인 '와이드밴드갭소재기반 차량용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 구축' 과제는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초 2023년도 예산에 A사의 신규 KrF 스캐너를 도입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였음.[24)]

24) KrF 스캐너는 반도체의 포토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원의 한 종류인 KrF(Krypton Fluoride) 광원을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에 집적회로 패턴을 찍어내는 장비로서, 스테퍼(stepper) 방식은 마스크 전체의 이미지가 한 번에 웨이퍼에 형성되는 반면, 스캐너(scanner) 방식은 광원이 통과하는 렌즈의 부분 중 빛번짐 및

그런데 2023년 사업추진 도중 A사 신규 KrF 스캐너 가격이 당초 계획했던 35억 대비 1,189% 상승한 약 416억원(€28,223,940)에 이르는 등 신제품 가격이 폭등하였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R&D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KrF스캐너의 사양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FEC(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심의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당초 계획하였던 A사 신규 장비 구입을 보류하고 신제품 대비 가격이 1/10 수준인 N사의 중고장비를 도입 추진 중임.[25)]

[KrF 스캐너 도입 관련 변경 계획 상황(2024.6.기준)]

구분	KrF 스캐너
장 비 명	
예산(백만원)	3,500
장비상태	**중고**
구축시기	24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도입을 검토하는 N사의 중고장비의 경우 해상도가 180nm로 A사 신규 장비의 해상도 110nm에 비해 1.6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시중 업체인 △△사가 양산단계에서 활용하던 장비로서 제품검수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된 바 있어 보완조치를 시행 중임.

왜곡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부분으로만 광원을 투과시킴으로써 제조공정의 정확도 및 세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비임.

25) <세부추진현황>
① 심의 23. 09. 01.
② 입찰 24. 04. 16.
③ 계약 24. 04. 23.
④ 입고 24. 05. 24.
⑤ 구축완료 24. 09. 예정
* 설치/성능검증 추진 중

[중고장비에 대한 제품검수 및 보완조치 결과]

구분	검수 결과	보완조치 결과
Wafer Loader	Slider Unit, In-Line Unit 흔들림	흔들림 고정
Chamber	MLTC Rack Inverter 정위치 아님 AVIS, RYL, RYR Amp 미고정	각 부품 위치는 사용자 편의에 맞게 조정 가능하며 사업 상황에 맞게 조정 및 고정
BMU Inter Lock	해제후 사용중	Inter Lock 기능을 항상 작동으로 변경하여 사용
GIGA Laser Communication	작동 안됨	레이저와 스캐너간 신호체계 미스매치를 튜닝을 통해 정상 가동
Operation Unit DS 10	커버를 연 채 사용 중	장비커버 작동시 닫은 상태에서 사용
Contral Rack Cover	없음, 발열 발생	보호덮개는 탈부착이 가능해 부착하여 사용, 쿨링 팬을 활용해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발열문제 보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고려할 때, 중고장비에 대한 제품 검수 결과를 유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공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R&D 과제의 목표를 감안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0. 로봇산업진흥원 사업: 정부지원 사업으로 발생한 장비료 및 임대료 등 수익금의 직접비 투자 원칙 준수 필요

가. 개 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은 체계적인 로봇산업 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기관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8억 5,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6)]

[2023년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5,855	5,855	-	-	5,855	5,855	-	-	6,059

동 사업은 인건비 53억 1,400만원과 경상운영비 5억 4,100만원을 합한 58억 5,500만원의 기관운영출연금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전액 교부하였음.

나. 검토의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은 R&D 과제 수행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구축 결과물인 장비 또는 시설을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직접비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을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정보화사업에 충당하는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시행 2019.11.12.)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음.

26) 일반회계-한국로봇산업진흥원(3672-312)(산업정책실)

동 예규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 수행기간 동안은 적립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성과활용기간[27] 동안에는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2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은 2012년 동 예규의 적용을 받는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사업 내 **'로봇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간 국비 464억원을 투입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음.

2015년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 내 장비 및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수익이 발생하였고, 2019년부터는 신뢰성 바우처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판매수익이 추가로 발생하였음.

로봇산업진흥원은 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2017년 이후 5년의 성과활용기간(2017.7~2022.6) 동안 누적 임대료 수익으로 13억 9,500만원, 장비사용료로 7억 8,300만원, 신뢰성바우처 수익으로 1억 6,7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총 23억 4,500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하였음.

---

27)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음.

28)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시행 2019.11.12.)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① 수행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총수행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51조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시작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 종료	합계
임대료	44	201	230	223	174	181	144	198	1,395
장비사용료	82	50	110	74	122	94	124	127	783
신뢰성바우처	-	-	-	-	53	5	28	81	167
합계	126	251	340	297	349	280	296	406	2,34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진흥원은 누적 발생한 수익금 23억 4,500만원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인 2023년에서야 해당 적립금으로 정보화시스템 구축비로 13억 9,5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23일 정기이사회안건으로 '2023년 예산 변경 및 운영 계획' 안건을 상정·의결하였음.

[2023년 예산 변경 및 운영 계획 안건 내용 중 발췌]

(단위: 백만원)

비목	편성예산	상세내역
정보화시스템구축비	1,095	업무포털 재구축, 전산실 장비 교체, 물리적망 분리, 통신선로 공사, 원외 사무소 VPN 도입 등
정보전산유지보수비	300	전산실 및 업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합계	1,39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와 임대료 수익을 해당 시설의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비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위반하여 기관 내 여유자금으로 보유하였다가 성과활용기간이 끝난 후에야 집행을 추진한 것임.[29)]

29) 이에 대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9조의 문언상으로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은 2022년 6월에 종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된 지침이 아닌 이전 지침(2019.11.12. 시행)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2.12.30.)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전체 연**

뿐만 아니라 2023년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운영출연금 예산 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확정된 이후인 2023년 초에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 해당 수익금을 정보화 경비에 충당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기반조성 과제로부터 비롯된 누적 수익금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향후 산업기술혁신 기반구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이 해당 과제에 따른 산출물의 이용가치 증대를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11. 광해광업공단 출연 사업(종료): 수지차 지정해제에 따른 직전연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원칙 및 규정 정비 필요

가. 개 요

‘광해광업공단 출연’ 사업은 광해방지사업·광산지역 진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34억 2,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30)]

[2023년도 광해광업공단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광해광업공단 출연	103,422	103,422	-	-	103,422	103,422	-	-	(88,000)

주) 2024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지차보전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출연사업명이 ‘광해방지’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2024년도 예산액은 ‘광해방지’ 사업의 출연금 예산을 기재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기관 간 통합이 완료되었음.

통합 이전 舊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배당수익금을 자체수입으로 하는 수지차 보전 기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였던 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부실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기관 통합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을 주된 목표로 하였음.

다만, 기관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舊광해공단 관련 예산만 수지차 보전 대상으로 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합 이전 舊광물자원공사의 기관운영 및 사업부문에 대해

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광해광업공단 출연(5440-302)(자원산업정책국)

서는 수지차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舊광물자원공사의 기관운영 및 사업 부문 수행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지차보전기관에서 지정해제하고, 통합 이전 광해관리공단의 업무와 광물자원공사의 기관운영 및 국내 사업부문을 고유계정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음.

[한국광해광업공단 고유 및 해외자산계정 구분]

	고유계정		해외자산계정
예산	舊광해공단	+ 舊광물공사	
지출	정부위탁사업, 자체사업 및 운영경비	국내광업지원 사업 등 자체사업 및 운영경비	해외투자사업, 해외사업 소요경비
수입	출연금, 보조금, **자체수입(강원랜드 배당수익금)**	출자금, 보조금, 자체수입	출자금, 회사채, 차입금, 해외투자수익금

사업	**고유계정(지속사업)**	⇔ 계정 간 자금 이체 금지	해외자산계정(청산사업)
추진 사업	**(舊광해) 정부위탁사업 및 고유사업 + (舊광물) 고유사업 + 운영경비**		해외투자사업 및 경영
수입 재원	출연금, 보조금, 출자금, 자체수입		출자금, 회사채 등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종전에는 舊광해공단의 기관 운영 및 사업 부문에만 사용 가능하였던 강원랜드 배당수익금을 수지차 지정해제 이후 2024년부터는 舊광물자원공사의 기관 운영 및 고유사업[31]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31)

〈舊광물자원공사의 고유계정에 해당하는 사업 목록〉

사업구분	사업명
자원개발지원사업	국내자원개발 지원사업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북한자원개발 지원사업
자원개발융자사업	자원개발 융자사업
기관고유사업	자원개발 수주용역사업
	자원개발 기술개발
	광산물 비축사업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나. 검토의견

첫째, 舊광해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사업비로만 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던 강원랜드 배당 수익금이 기획재정부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결정에 따라 舊광물자원공사의 국내광업지원사업 등의 자체사업 수행에 쓰이게 되었으므로,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설립의 본래 목적인 폐광지역 지원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1998년 6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업임.

강원랜드는 舊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도개발공사, 폐광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약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舊광해관리공단에는 배당수익금이 발생하여 왔음.

강원랜드의 영업활동에 따른 배당수익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

다만 ① 강원랜드 영업허가[32]의 근거법률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하는 데에 있는 점[33], ② 같은 법 제11조제5항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이내 금액을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원랜드 운영 흑자에서 비롯된 배당수익금의 주된 사용 용도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

32)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③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의 근거가 된 「한국광업공단법 안 전부제정법률안(의안번호 1030, 제안일자 2020.06.26.)」에 대한 당시 검토보고서에서는 “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부채관리 목적 외 **인건비, 운영비 등과 같은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목적으로도 배당수익금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기존 원안에서는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강원랜드 배당수익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의하에 해외자산계정의 운용(인건비, 운영비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없도록 법률안이 수정된 바 있음.

[한국광업공단법 전부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한국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운용 및 부채관리를**----------.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1. (원안과 같음)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2 .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생 략)	3. (원안과 같음)
〈신 설〉	4. 舊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자료: 「한국광업공단법 전부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30) 위원회의결안에서 발췌, 2021.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舊광물자원공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이 심각하여 이를 충당하는 데에 강원랜드 배당수익금을 비롯한 자체수입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 과정에서 당초 강원랜드 영업허가의 목적인 폐광지역 경제회생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해외자산계정의 운용과 관련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배당수익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계정 분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지차보전기관은 자체수입의 예산 대비 초과 수납이 발생할 시 이를 이월결산잉여금에 반영하여 차년도 수지차보전지원액 산출과정에서 차감하는 구조인데, 2024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발생한 2023년 결산잉여금 391억 6,000만원의 예산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 요건으로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또는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 시점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제 이후의 예산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통상의 수치자보전기관 지원 소요액은 연간 기관의 지출총액에서 자체수입 예상액을 차감하고, 자체수입 안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자체수입 초과수납 등으로 인한 이월결산잉여금을 포함시켜 집행 부진 또는 자체수입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의 결산잉여금을 간접적으로 환수하고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2020년~2023년 수입·지출 및 결산잉여금 현황을 보면, 2023년에 391억 6,0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음.

[2020년~20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입·지출 및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정부 지원 수입(A)	출연금	120,028	120,028	155,399	155,399	95,161	95,161	103,422	103,422
		보조금	-	-	-	-	-	-	-	-
	자체 수입 (B)	사업수입	22,517	24,604	24,533	25,443	24,180	21,273	21,751	19,203
		사업외수입	82,979	71,959	823	2,138	889	8,268	904	30,099
		전년도 이월금	-	-	-	-	-	-	-	-
		전전년도 이월금	1,134	1,134	615	615	637	637	5,060	12,916
		기타	759	759	466	466	523	523	431	431
		계	107,389	98,456	26,437	28,662	26,229	30,701	28,146	62,649
	자체수입 수납률			91.7		108.4		117.0		222.6
	수입 합계(C=A+B)		227,417	218,484	181,836	184,061	121,390	125,862	131,568	166,071
	전체 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B/C)		47.2	45.1	14.5	15.6	21.6	24.4	21.4	37.7
지출 합계(D)			227,417	217,847	181,836	179,001	121,390	118,006	131,568	126,911
결산잉여금(C-D)			-	637	-	5,060	-	7,856	-	**39,160**

주)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2022년 결산잉여금 78억 5,600만원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해당 결산잉여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속 운영되었더라면 차년도나 차차년도 자체수입에 전년도이월금 또는 전전년도이월금으로 반영되어 수지차 보전 지원액에서 차감되었을 것이나, 기획재정부의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해제 결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舊한국광해관리공단을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할 당시(2017년) 전년도 결산잉여금인 388억 4,500만원을 공단 자체수입 예산으로 포함하여 편성한 바 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수지차 지정해제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에 지급되는 정부지원 수입이 1,034억 2,200만원에서 880억원으로 154억 2,200만원 감소하였으므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달리 舊광해관리공단이 2017년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총지출에서 자체수입 예상액을 제외한 차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지차보전기관과 동일하게 출연금 예산액이 편성되어 왔음.[34)]

34) 2016년 광해관리공단의 총지출액은 3,794억 7,800만원이었으나, 2016년 광해관리공단 출연금 예산은 2,848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전·후 예산편성 방식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지정 전)	2017년 예산 (지정 후)
총지출 예산(A)			379,478	329,787
자체수입 예상액	자체사업 수입	ㅇ 임대수입	5,653	5,653
		ㅇ 수주용역수입	5,337	5,822
		ㅇ 검정용역수입	19	25
		ㅇ 검사분석수수료 수입	51	66
		소 계(B)	11,060	11,566
	사업외 수입	ㅇ 배당금수입	68,600	85,402
		ㅇ 예금이자수입	774	1,677
		ㅇ 기타수입(잡수입 등)	-	155
		ㅇ 전기이월	14,190	38,845
		소 계(C)	83,564	126,079
	합 계(B+C)		94,624	137,645
광해관리공단 출연금 예산 편성액(A-B-C)			284,854	192,14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해당 감소분 154억 2,200만원 중 129억 6,500만원은 2023년 수지차보전지원 출연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대체산업융자[35] 지원금이 2024년부터 기존 대체산업융자 대출 실시 건들의 원리금 상환액을 이용하여 신규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므로, 정부 지원수입 감소분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23년 광해광업공단 출연금 1,034억 2,200만원은 강원랜드 배당수익금이 0원임을 전제로 편성된 수지차보전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2024년 광해광업공단의 정부직·간접지원 수입은 1,151억 1,600만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46억 9,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억 5,400만원만이 반영되었음.

35) 대체산업융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사업임.

[2023년 대비 2024년 광해광업공단 정부 직·간접지원 수입]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 (광해광업공단 출연)	2024년 예산 (광해방지)
정부 출연금(A)		103,422	88,000
대체산업융자 지출 차감(B)		12,965	-
간접 지원	배당수입 (전년도)(C)	-	27,156
정부 직·간접지원 수입(A-B+C)		90,457	115,1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수지차 지정해제 사례를 참고하여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해제 시점의 직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향후 예산 반영 방식에 대하여 원칙과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12. 갱도굴진사업자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별도 관리 자금의 결산 공시 및 공론화 필요

가.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부규정인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에 따라 한·미 정부 간 1960년에 체결한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협정”에 의해 설치된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정부를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음.

동 자금은 1960년 6월 29일 “한미정부간 사업협정(협정 490-0062호)”에 의하여 상공부 광무국에 KOMEP(Korea Office of Mineral Exploration Project)[36]이 설치되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탐광갱도굴진 지원을 위해 미화 85만 8,000달러를 출연(무상원조)한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음. 당시 합의사항에는 출연 결정 및 출연금 규모만 포함되었을 뿐, 운영관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었음.

이후, 해당 업무가 1962년 상공부 소속기관인 국립지질조사소에게 이관되었다가 1967년 “수정 한미정부간 사업협정(협정 629.2-7013호)”에 의거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現한국광해광업공단)가 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시작하였음.

[갱도굴진사업자금 재무상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969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	885	2,268	9,442	6,142	11,206	14,503	14,319	14,446	14,513
부채	25	42	27	38	2	70	3	2	1
자본	860	2,226	9,415	6,104	11,204	14,433	14,316	14,444	14,5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6) 6.25 전쟁중에 폐허가 된 광산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갱도굴진사업 지원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합동회의체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석탄광물(석회석 등)의 갱도굴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한국광해광업공단 내부의 별도 자금인 갱도굴진사업자금을 사용하여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만 관리·감독되고 있고, 국가결산상 자산에서도 누락되고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부규정인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하에 석유·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일반광)의 굴진비용에 대한 융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37)]

해당 자금의 계좌의 소유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38)]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운용실적 및 결산안」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총 26개 광산에 대하여 58억 1,2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결산상 굴진지원금 융자잔액은 148억 7,300만원이고, 현금예금 21억 1,800만원의 여유재원이 사업자금 안에 유보되어 있음.

---

37)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
제40조(자금운용계획)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금운용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요한 사항의 범위는 위원회가 정한다.

38) 「갱도굴진사업 융자 및 관리규정」
제42조(운용보고) ①매 회계년도마다 자금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보고서에는 예산실적대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3년도 광산별 갱도굴진 지원실적]

구분	광종	광산	지원량 (M)	지원금액 (백만원)	확보광량 (천톤)	가채광량 (천톤)
비금속	석회석	경기금산	270	273	690	619
	석회석	금산평창	185	188	426	383
	석회석	강원머티리얼	171	171	539	484
	석회석	대성단양	200	200	370	332
	석회석	대성삼척	427	427	1,321	1,186
	석회석	대성제천	122	122	244	218
	석회석	디에프씨	180	180	298	267
	석회석	삼호	250	250	47	42
	석회석	삼성옥동	280	280	877	788
	석회석	성신미네필드	223	223	414	372
	석회석	송경	200	203	419	375
	석회석	신동	326	332	974	874
	석회석	용연	110	112	285	254
	석회석	우룡	290	290	549	493
	석회석	지엠씨백운	80	80	240	216
	석회석	청림영월	150	150	293	263
	석회석	청림청삼	250	250	759	682
	석회석	충무정선	240	240	763	686
	석회석	에코이엠씨	211	220	499	446
	석회석	태령	260	263	795	714
	석회석	태영삼도	439	439	1,370	1,230
	석회석	태영청수	170	170	489	439
	백운석	대성석교	170	176	540	486
	백운석	비엠씨백산	170	170	466	417
	백운석	삼보단양	280	280	733	658
	규석	보명	100	123	300	269
소계	26개 광산		5,754	5,812	14,700	13,19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시의무가 있는 「국가회계법」상 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해석하여, 해당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갱도굴진사업자금을 국가 자산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역시 기업회계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3년도 갱도굴진사업자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2023	2022	증감	과 목	2023	2022	증감
□ 자 산	14,513	14,446	67	□ 부 채	1	2	△1
ㅇ 현금예금	2,118	2,129	△11	ㅇ 미지급금	1	2	△1
ㅇ 굴진지원금	14,873	14,730	143	ㅇ 비유동부채		-	-
(대손충당금)	△2,507	△2,438	△69	□ 자 본	14,512	14,444	68
ㅇ 미수수익 등	29	25	4	ㅇ 자본금	14,315	14,315	-
				ㅇ 이월이익잉여금	197	129	68
자산합계	14,513	14,446	67	부채와 자본 합계	14,513	14,446	6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자금은 1960년 미국이 대한민국의 탐광갱도굴진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무상원조로 출연한 미화 85만 8,000달러를 재원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자금이므로, 국가가 운용·관리하는 자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해광업공단은 갱도굴진사업자금을 통한 융자사업 수행 및 자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자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3.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존중하는 집행 필요

가. 개 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석유·가스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754억 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39)]

[2023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175,408	175,408	-	-	175,408	175,408	-	-	39,817
국내외 유전개발	172,716	172,716	-	-	172,716	175,408	-	△2,692	38,163
해외광물 자원개발	2,692	2,692	-	-	2,692	-	-	2,692	1,654

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 사업의 재원 26억 9,200만원을 다른 내역사업인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의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을 전액 국내외유전개발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석유·가스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음.

내역사업인 ‘국내외유전개발’ 사업은 해외 석유·가스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

3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5447-301)(자원산업정책국)

해 해외자원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는 국내외 유전개발 소요 336억 1,600만원, 투자위험보증사업 1,391억원이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은 해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는 2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내역사업별 편성 현황]

세사업 명	편성 근거
국내외유전개발	○ 국내외 유전개발 : 33,616백만원 * 10개 사업 융자 수요(305,599백만원) × 조정률 11% ○ 투자위험보증사업 : 139,100백만원
해외광물자원개발	○ 광물자원개발 : 2,692백만원 * 1개 사업 융자 수요(22,432백만원) × 조정률 1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3년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실제 융자 집행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2021~2023년도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내역사업명	연도	융자사업집행부문				
		융자사업 예산	계획		최종실적	
			금액	건	금액	건
국내외 유전개발	2021년	33,113	33,113	6	33,113	8
	2022년	89,278	89,278	7	90,158	9
	2023년	172,716	172,716	11	175,408	7
해외 광물자원개발	2021년	1,816	1,816	5	-	-
	2022년	880	880	3	-	-
	2023년	2,692	2,692	1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1년까지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자, 2022년부터 두 내역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융자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하고, 두 내역사업이 지원대상 및 목적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 사업의 예산을 전액 국내외유전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집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해 편성된 융자금 26억 9,200만원이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의 융자금과 함께 집행되어, 국내외 유전개발 융자금이 당초 계획 대비 26억 9,200만원을 초과한 1,754억 800만원만큼 최종 집행되었음.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 사업과 관련하여 2020~2022년은 코로나19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융자 수요기업의 사업추진이 지연 및 중단되어 융자 신청이 없었고, 2023년은 신청기업들이 융자 승인요건을 불충족하여 융자심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융자가 미집행되어 다른 내역사업인 국내외유전개발 융자에 미집행액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는 2023년 예산상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금 26억 9,200만원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14. 유전개발출자 사업: 해외 유망생산자산투자 출자금 불용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유전개발’ 사업은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석유공사의 유전(국내·외)개발사업 및 생산광구 운영을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271억 8,000만원 중 126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46.6%)되고, 145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40)]

[2023년도 유전개발사업 출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유전개발사업출자	30,130	30,130	-	-	30,130	15,609	-	14,521	48,140
유전개발	27,180	27,180	-	-	27,180	12,659	-	14,521	39,290

나. 검토의견

출자계획 미흡으로 인하여 145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으므로, 유전 개발 관련 지원사업 수행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전개발 사업에 27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내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내유전 사업에 91억 7,100만원, 해외유전 사업에 180억 900만원의 출자금 예산이 편성되었음.

4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유전개발사업출자(5444-301)(자원산업정책국)

[2023년 유전개발 사업 내내역사업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내역사업</th><th>편성 근거</th></tr>
<tr><td>국내유전</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비</th><th>출자율</th><th>출자액</th></tr>
<tr><td>6-1중·동부</td><td>3,015</td><td>40%</td><td>1,206</td></tr>
<tr><td>8·6-1북부</td><td>19,508</td><td>40%</td><td>7,803</td></tr>
<tr><td>4·5광구</td><td>403</td><td>40%</td><td>162</td></tr>
<tr><td>합계</td><td>22,926</td><td>-</td><td>9,171</td></tr>
</table>
</td></tr>
<tr><td>해외유전</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비</th><th>출자율</th><th>출자액</th></tr>
<tr><td>유망생산
자산투자</td><td>72,606</td><td>20%</td><td>14,521</td></tr>
<tr><td>세네갈</td><td>8,720</td><td>40%</td><td>3,488</td></tr>
<tr><td>합계</td><td>81,326</td><td>-</td><td>18,009</td></tr>
</table>
</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초 사업계획상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 유전 중 유망한 생산자산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여 일생산량 3,500배럴 규모 추가자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UAE·오만 등 중동지역 등의 해외유망광구 확보를 위하 국내외 기업과의 협상에 실패하여 투자가 불발되었음. 이에 따라 유망생산 자산투자를 위해 편성된 출자금 145억 2,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이관시점의 시가를 고려한 출자금 규모 산정 및 교부 필요

가. 개 요

‘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은 전기차·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금속 비축 확대를 위해 핵심광종의 신규 비축 구매, 희소금속 이관, 비축기지 확보로 공공 비축 확보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72억 3,2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41)]

[2023년도 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광해광업공단 출자	37,232	37,232	-	-	37,232	37,232	-	-	251,762

동 사업의 2023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비축일원화를 위해 조달청 보유 코발트의 이관비용 8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당 출자금은 전액 광해광업공단에 연내 교부되었음.

[2023년 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편성 내역]

구분	편성 근거
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 37,232백만원 - 비축확대 : 28,266백만원 * 코발트 구매 : 132.7백만원/톤 × 45일분 = 28,266백만원 - 비축일원화 : 8,966백만원 * 조달청 보유 코발트 이관 : 71.2백만원/톤 × 126톤 = 8,966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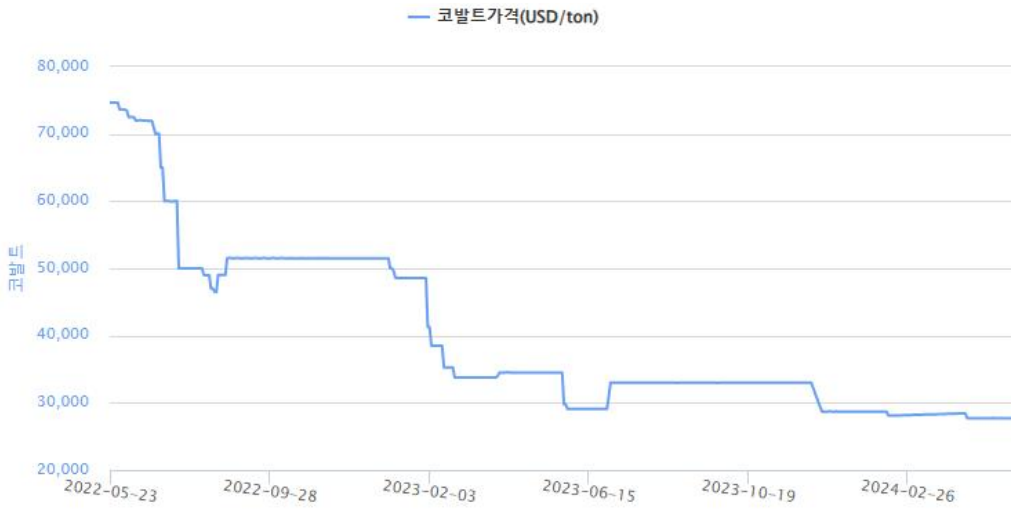
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광해광업공단 출자(5440-304)(자원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축일원화를 위한 출자금 89억 6,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산출근거 상 톤당 코발트 가격(7,120만원) 대비 코발트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실제 조달청에 지급된 거래대금은 52억 6,100만원이었으므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교부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출자 규모를 산정하고 출자금을 교부함으로써 공단 내 이관대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코발트의 톤당 단가를 2023년 예산안 편성시점인 2022년 하반기 시세 수준($50,000)에 근접한 7,12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자금 예산 8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최근 2년간 코발트가격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그러나 2023년 2월 초부터 코발트 시세가 급락하여 톤당 단가가 $30,00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광해광업공단이 조달청에 이관비용으로 지급한 이관대금은 52억 6,600만원이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관 세부조건에 따라 코발트(126톤) 이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3년 9월 26일이고, 실물 이관은 2023년 11월에 이루어지는 등 이관과 관련된 절차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시세 수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필요액만큼 교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더구나 국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주로서 기교부된 출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이 사실상 배당 또는 지분매각 외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금 교부 시에는 그 규모에 대해 교부시점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출자금 교부 시 출자 필요액을 교부 시점 기준으로 신중히 검증하여, 공단 내 이관대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6.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 실증사업비를 기관운영비로 지출 부적정

가. 개 요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은 포항 해상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장치) 실증사업의 사업 종료 후 해양 시설 및 시추공에 대한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저장소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비(非)R&D 사업으로, 2023년도 출연금 예산현액 1억 4,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42)]

[2023년도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146	146	-	-	146	146	-	-	-
사업출연금 (350-02)	141	141	-	-	141	141	-	-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5	5	-	-	5	5	-	-	-

나. 검토의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의 사업운영관리비로 편성된 실증사업비를 기획평가관리비와 같이 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정보화 용역 지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5201-313)(에너지정책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동 사업의 출연기관으로서, 1억 4,100만원의 사업출연금과 500만원의 사업운영관리비를 전액 교부받아 집행하였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관의 정보화사업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이관 데이터 검증 및 운영 전환 용역’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사업에 편성된 기획평가관리비가 부족함에 따라 동 사업의 사업운영관리비 500만원 전액을 사용하여 12월 15일 정보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2023년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이관 데이터 검증 및 운영 전환 용역 계약체결 현황]

계약명	계약기간		발주금액	낙찰액	관련 정부 지원 현황			
	시작	종료			회계·기금	세부사업	편성사유	금액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이관 데이터 검증 및 운영 전환 용역	’23.12.15	’24.08.14	350	345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5806-304)	기획평가관리비	340
					에특회계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비R&D)(5201-313)	사업운영관리비	5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에 반영된 사업운영관리비는 사업출연금(350-02목)이 아닌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통상의 기획평가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기관운영 소요에 충당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사업운영관리비 500만원의 편성근거는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구축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사업운영관리비를 반영한 것으로, 기획평가관리비와 같은 R&D 사업이 아닌 실증사업의 사업운영관리 소요에 쓰였어야 함.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목이 기관운영출연금이라는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성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와 함께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비R&D 사업에 반영된 사업운영관리비를 해당 사업의 운영관리 소요가 아닌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7.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일부 R&D 과제의 집행 부진 문제

가. 개 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은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R&D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23억 7,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43)]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R&D)	72,377	72,377	-	-	72,377	72,377	-	-	36,189

동 사업은 내역사업인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2023년 예산 533억 200만원)과 또 다른 내역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2023년 예산 190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액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연구개발활동비 출연금으로 교부되고 있음.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의 R&D 지출구조조정 기조에 따라 사업비가 2023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바 있음.

나. 검토의견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2023년도 예산 대비 과제비 최종집행률은 70.1%로 전년 대비 14.5%p 감소하였는데, 일부 R&D 과제에서 차년도 R&D 예산 감액

4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3362-301)(지역경제정책관)

에 따른 인력 확보 차질, 매칭지방비 임금 지연 등으로 인하여 최종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에 12개 시도 클러스터와 메가시티 강소도시 연계 3개 시도 클러스터에 대한 신규 R&D 과제비 507억 7,700만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을 위해 12개 시도 클러스터에 신규 R&D 과제비 216억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예산 대비 R&D 과제비 최종집행률을 살펴보면, 차년도 R&D 예산의 감액이 이루어진 해인 2021년과 2023년에 모두 최종집행률이 전년 대비 각각 8.7%p, 14.5%p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9~2023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 산(A)	59,203	75,088	75,400	67,058	72,377
최종집행액(B)	45,955	58,969	52,634	56,749	50,763
최종집행률(B/A)	77.6	78.5	69.8	84.6	70.1

주) 최종집행액은 각 연도 말 기준 연구비관리시스템 등록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신규 추진된 과제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집행부진 과제들이 다수 발생한 가운데 일부 과제의 경우 R&D 관련 재정지출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음.

먼저 ① 2023년 9월 신규 협약 과제로 추진된 A 과제의 경우, 2차년도인 2024년도 정부 R&D 예산 감액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최초 계획 당시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음.

[연차별 연구개발비 변경 전후 비교]

(단위: 백만원, %)

연구개발비		최초 계획				변경 계획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현금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00,000	150,000	300,000	750,000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6,000	35,463	35,463	76,925	6,000	18,000	35,463	59,463
	현물	74,750	102,994	102,994	280,738	74,750	76,800	53,194	204,744
합계		380,750	438,457	438,457	1,257,663	380,750	244,800	388,657	1,014,20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50% 감액됨에 따라 2차년도인 2024년도 인건비 예산을 당초 2억 1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음. 이로 인해 신규 연구 인력에 대한 연구비 지급 차질이 우려되자 동 과제 수행을 위한 2023년도 신규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 자체 부담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2023년 신규 추진된 과제의 집행부진 사례 중 차년도 과제비 부족으로 인한 과제 지연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과제 특성	2023년 관련 사항					집행부진 발생 사유
		2023년 연구비	국비 지원	국비 지원외	최종 집행액	집행률	
A과제	신규 (2023. 9월 협약)	306	300	6	40	13.1	2024년도 사업비 감액으로 계속비 이월 등 예산 집행 효율화 및 협약 변경(2024년도(2차년도)에 실질적인 개발에 집중하는 예산 집행 계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2023년도 국비 지원 과제비 3억원을 포함한 총 연구비 3억 600만원 중 4,000만원만 2023년 말 기준 최종집행되었음.[44]

다음으로 ② 2023년 8월 신규 협약 과제로 추진된 B 과제의 경우 2023년 연구비로

44)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년도 미집행 인건비(1억 6,500만원)와 함께 신규 인력 인건비로 연구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2024년도 정부 예산 확정 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하고, 2차년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감액 및 이에 따른 연구개발 정량 목표 등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5억 900만원이 책정되어 2,000만원의 R&D 과제비가 국비 지원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매칭 지방비의 입금이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음.

[2023년 신규 추진된 과제의 집행부진 사례 중 지방비입금 지연으로 인한 과제 지연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과제 특성	2023년 관련 사항					집행부진 발생 사유
		2023년 연구비	국비 지원	국비 지원외	최종 집행액	집행률	
B과제	신규 (2023. 8월 협약)	509	20	489	-	0.0	지방비 입금 지연 (2024년 1월)으로 집행 부진 발생 * 전체 사업비 중 국비는 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R&D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년도 R&D 예산 감액이나 지방비 입금 지연 등 재정, 행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R&D 구조조정에 따른 2023년도 신규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치 조정 현황>

정량지표 명 (주요성능 등)	지표 단위	연구개발 기관명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치 (변경전)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치 (변경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지표	건	㈜AA	서비스 설계 2건	서비스 제작 2건	서비스 검증 2건	서비스 설계 2건	서비스 제작 1건	서비스 검증 2건
㉡지표	set	㈜AA	컨텐츠 설계 2set	컨텐츠 제작 2set	시범운영 2set	컨텐츠 설계 2set	컨텐츠 제작 1set	시범운영 2set
㉢지표	건	BB산학 협력단	-	270	270	-	150	2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 출>

18.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재이월 승인 등 필요

가. 개 요

‘발전소주변지원기본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 및 공공사회 복지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를 보조하고,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38억 5,300만원 중 1,235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었고, 2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45)]

‘특별지원’ 사업은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34억 7,600만원 중 1,033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고, 1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46)]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원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23,853	123,853	-	123,853	123,566	-	287	127,630
특별지원사업	103,476	103,476	-	103,476	103,327	-	149	94,611

45) 전력산업기반기금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5451-301)(원전산업정책국)

46) 전력산업기반기금 - 특별지원사업(5451-302)(원전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보조금 중 지자체 교부 후 2년이 초과된 이월금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점검결과 발표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재이월금에 대해서도 회수를 유예하는 등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사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

「국가재정법」 제48조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재이월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47)]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1항은 보조금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나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등에 한하여 재이월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보조사업비의 재이월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엄격히 허용하여야 하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음이 명확함.[48)]

---

4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를 발표[49]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였음.

[보조금 이월금에 대한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2022.9.13.)]

구분	지적사항
미집행 지원금 잔액 233억원 미회수 방치 사례	4년(2017~2020년)간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원 중 교부 후 2년 초과된 이월금(잔액) 233억원 미회수

자료: 국무조정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2022년 말까지 집행되지 못하여 회수가 필요한 금액이 176억 5,700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00억 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등이 2022년 말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회수를 유예하였음.

[2020·2021년 교부 보조금의 회수 결정 현황]

교부연도	다음연도 말까지 집행액(억원)				심의위 의결사항 기준 회수액(백만원)			
	연말 잔액 (A)	차년도 집행액 (B)	차년도 반납액 (C)	차년도 말 잔액 (D= A-B-C)	심의위 의결 시점	회수 필요 금액 (D)	지출원인행위 완료 등 회수유예 금액 (E)	최종 회수 대상 금액 (D-E)
2020	566	378	6	182	2022년	18,214	11,781	6,433
2021	596	410	9	177	2023년	17,657	10,007	7,650

자료: 「제74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결과」 및 「제78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결과」

이는 합리적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심의기구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4분기에서야 지출원인행위 등 집행 여건이 마련된 보조금에 대해서까지도 암묵적으로 재이월을 승인하여 준 것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유예된 금액 100억 700만원 중 최종 집행이 이루어진 금액은 69억 9,800만원에 불과하였고, 30억원은 2024년 6월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49)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2022.9.13

[2021년 교부금 회수유예 결정액 중 미회수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수유예 결정액	집행액	회수금액 (2024.6월 기준)	미회수금액
2021년 교부금	10,007	6,998	9	3,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9월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 등에 따른 보조금의 재이월을 관련 규정과 달리 암묵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신규 보조금 교부 시 기존의 회수유예금액 중 미회수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의 3년 초과 이월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재정법」 제48조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이월비,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손실보상비, 경상적 경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50]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총 2건(서산시, 울진군)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장기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2021년에 일괄 지자체에 교부한 뒤 장기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3년을 초과하여 이월하는 것을 승인하였음.

---

50)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해당 2건의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직후 부지 매입 절차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2024년 현재까지 최종 집행된 금액이 2,300만원에 불과하며, 17억 7,7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4년 5월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음.

또한, 울진군의 ‘치유농업 시설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지매입과 관련된 협의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교부된 보조금 22억 9,000만원 중 22억 7,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2024년까지 이월되고 있음.

[2020~2023년 장기계획 수립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승인 년도	시행자	기간	사업내용	신청액	교부액 (2021년 교부)	실집행액 (24.5.기준)	이월액 (24.5.기준)
2021	울진군	5년	치유농업 시설단지 조성	2,290	2,290	12	2,278
	서산시	3년	라키비움 서산 건립	1,800	1,800	23	1,777
합 계				2,290	4,311	36.5	2,30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2(2019.7.9. 신설)는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3년 초과 이월을 허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51)]

그러나 동 시행령의 모법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52)] 해당 장기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의 3년

5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을 초과하여 이월을 승인할 수 있다는 근거는 미비함.

아울러 시행령에 따른 경우에도 장기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이월 한도는 재이월(3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53]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내 보조금의 3년 초과 이월을 승인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국가재정법」의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의 특례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이 있음.

「행복도시법」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9. 에너지캐시백 사업(신규, 종료): 당초 계획액을 초과한 예산집행 부적정 및 공공기관·전기 소비자 부담 전가 문제

가. 개 요

‘에너지캐시백’ 사업은 절감목표를 달성한 아파트 및 세대에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 캐시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5억 6,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54)]

[2023년도 에너지캐시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전력효율향상	51,802	96,802	-	96,802	96,802	-	-	163,374
에너지캐시백	2,560	2,560	-	2,560	2,560	-	-	-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직전 2년 동안의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되는 구조임.

[2023년 에너지캐시백 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	산출근거
에너지캐시백	2,560	**(세대)** 64,200세대 × 12,960원 = 832백만원 **(단지)** 1,440단지 × 1.2백만원 = 1,728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초과집행에 따른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전가하였으므로, 향

54)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5145-302)(에너지정책관)

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전기요금은 2021년 개편 이후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이중 기후환경요금은 전력량 요금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해왔던 요금제도로,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공유하고자 2021년 개편부터 도입되었음.[55]

[2021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개편前	
기 본 요 금	1,600
전 력 량 요 금	46,845
전기요금 계	48,445
부 가 가 치 세	4,845
전 력 기 금	1,790
원단위 절사	0
당 월 요 금 계	55,080
청구금액 합계	55,080

개편後	
기 본 요 금	1,600
전력량요금(=① +②)	45,095
①개편전 요금	46,845
②환경비용 차감	-1,750
기후환경 요금	1,855
연료비 조정액	-1,050
전기요금 계	47,500
부 가 가 치 세	4,750
전 력 기 금	1,750
원단위 절사	0
당 월 요 금 계	54,000
청구금액 합계	54,000

자료: 한국전력공사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2023년도 계획에 반영된 에너지캐시백 지원 사업비 25억 6,000만원을 초과하여 총 104억원을 2023년 한 해 동안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으로 일반 가구들에게 지급하였음.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약 78억원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요금 중 일부인 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등 산정방식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음.[56]

---

55)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용, 배출권 거래제 비용, 석탄발전감축비용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 항목별로 전년도에 투입되었던 전체 비용을 올해의 예상 전력 판매량으로 나누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임.

56) 실제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5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별표 7]에 반영되는 기후환경요금 산정식을 아

그러나 ① 2023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동 내역사업을 신규 편성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계획은 전기 등 에너지 절약 세대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 소요액 25억 6,000만원을 산출한 것임.

해당 지출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25억 6,000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도중 초과집행한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78억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뿐만 아니라, ②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5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초과집행한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만 수립하였을 뿐, 실제로 해당 계획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에 들어 2차례 전기요금을 공시하였는데(1.1, 4.1.), 2023년 초과집행한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78억원에 상응하는 기후환경요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임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초과집행에 따른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57]

래와 같이 개편하였고, 부칙에는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을 위한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에는 2023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소진에 따라 한전이 부담한 지원금액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한 바 있음.

〈기후환경요금 구성항목별 지침상 산출식(2023.5.이후 기준)〉

구성항목	산출식	비고
RPS 비용단가(원/kWh)	연간 RPS 비용(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ETS 비용단가(원/kWh)	연간 ETS 비용(원) /연간 판매전력량(kWh)	-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원/kWh)	연간 석탄발전비용(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원/kWh)	연간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원)/연간 판매전력량(kWh)	2023년 5월 신설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57)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난방비 대란,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요금 상승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가정의 에너지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이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3.5월)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가입률 제고 및 대국민 에너지절약 동참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음.

20.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손금 정산 보조금의 집행 부적정 등

가. 개 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전기 미공급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주체(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별 운영 결손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753억 5,800만원을 전액 한국전력공사에 교부하였음.[58)]

[2023년도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농어촌전기공급	132,638	175,526	-	175,526	175,526	-	-	146,016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130,394	175,358	-	175,358	175,358	-	-	144,563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가발전시설 22개와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자)가 관리하는 65개 시설로 나뉨.

2023년 당초 계획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가발전시설 22개의 연간 운영결손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120억 3,600만원, 그 외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자가발전시설 65개의 연간 운영결손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1,134억 5,900만원을 합한 1,303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운영 결손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사용하여 지자체 관리 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전력공사 운영 도서의 결손비는 자체 보전하는 방식임.

58) 전력산업기반기금 - 농어촌전기공급(5457-301)(전력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을 기존 도서지역 관리용역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수행기간을 2024년 1월로 연장하여 용역비를 초과지출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연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한전 및 지자체의 운영결손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449억 6,400만원 자체변경(증)하였고, 이를 전액 한국전력공사에 교부하였음.

[2023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내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3.12.22)	320	01	도서자가발전 시설운영지원	44,964	· 연료비 구매단가 상승
자체변경 (2023.12.22)	320	01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2,076	· 신규 공사(신안 노대도) 중단
합 계				42,88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당초 계획액 1,303억 9,400만원과 자체변경(증)된 사업비 449억 6,400만원을 합한 2023년도 보조금 교부액 1,753억 5,800만원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실집행액은 1,731억 600만원임.

그런데 세부항목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책정된 비용이 당초 632억 2,500만원보다 44억 1,800만원이 많은 676억 4,300만원만큼 집행되었음.

지급수수료는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 65개에 대해 운영관리 위탁용역을 발주·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임.

[2023년도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결과(결산)]

(단위:백만원)

사업구분				보조 사업비(A)	집행실적 (B)	잔액 (B-A)	비고
도서 자가 발전 시설 운영 지원 사업	지자체운영도서결손지원사업 ①			12,036	12,036	-	22개지자체운영결손
	자가발전시설기술지원사업 ②			1,176	1,151	25	지자체및주민도서지원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③			3,871	3,835	36	친환경발전시스템구축
	전기 사업자 운영도서 결손지원 사업	운영수입ⓐ		35,341	40,056	△4,715	전기요금상승으로수입증가
		운영비	연료비	87,948	90,744	△2,796	8,423만 l (사용량)*525.1원/ l (단가)
			수선유지비	16,154	15,197	957	계획예방정비,윤활유등
			지급수수료	63,225	67,643	△4,418	용역비용0.95억원(인당)*665명
			투자비	24,079	20,300	3,779	백령도증설등
			기타비용	2,210	2,256	△46	주변지역지원사업및제경비
			소계ⓑ	193,616	196,140	△2,524	
		결손액④=ⓑ-ⓐ		158,275	156,084	2,191	
	계①+②+③+④			175,358	173,106	2,25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같이 지급수수료가 당초 보조사업 계획을 초과하여 지출된 이유는 지급수수료의 주요 구성 항목인 총인건비가 당초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되어 있던 것에서, 1개월이 추가 연장되어 13개월 동안 인건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유가 등 변동성 증가로 인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추진하였을 당시보다 연료구매단가가 소폭 하락하여 불용이 예상되었고, 당시 도서전력 위탁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서 기존 사업자와의 용역수행기간 연장(2023.12.31→2024.1.31.)이 불가피하여 2023년 사업계획을 변경(2023.12.19.)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2024년 1월까지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항목으로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59] 기획재정부의 「2023

59) 「국가재정법 시행령」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기초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면 국고로 반납하였어야 함.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이월 없이 차년도인 2024년 1월의 용역비를 2023년 예산으로 선지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됨.

특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한 631억 7,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기간 연장을 하여 집행하였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결손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국고반납 조치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결손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투자비는 운영비용에 해당한다기보다 별도의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하여야할 성질의 사업비로 해석되므로,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아닌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지원대상 및 규모에 대한 국회 심의를 명시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음.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의 세부항목별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도 보조사업 계획상 투자비에는 투자비 240억 3,900만원이 반영되었음.

한국전력공사는 투자비의 구성항목별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백령도 증설과 관련된 기자재 비용 110억원, 발전동 및 사무동 내진보강 2억 2,100만원, 사옥 신증축비 3억원과 같이 자본적 경비 성격의 지출이 확인되고 있음.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2023년도 보조사업비 당초 계획상 투자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발전시설	백령도 증설	기자재비용	11,000
		설치공사비	5,645
		감리용역	400
	전기설비보강	축전지, 변압기 등	100
	기타경상비용	-	100
	소계		17,245
배전시설 투자비	배전설비 계획	설비보강	3,283
	배전설비 경상	설비보강	1,407
	고객요청 신규	설비보강	1,039
	지정전주 이설	당사부담	513
	차량충돌 복구	설비보강	5
	소계		6,247
업무시설 투자비	발전동 및 사무동 내진보강	설비보강	221
	사옥 신·증축	설비보강	300
	기타공사	실적단가	66
	소계		587
합계			24,07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자가발전시설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수입과 대응시킬 필요가 있는 운영비용이라기보다는, 도서 지역에 대한 인프라구축 사업에 필요한 별도 사업비로 해석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내 포함된 투자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명시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음.

【무역보험기금】

<수 입>

21. 기타경상이전수입: 미회수잔액에 대한 징수결정 및 수납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지급보험금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수금과 가격변동보험의 환수금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1조 5,230억 8,100만원 중 2,318억 900만원이 수납(수납률 15.2%)되고, 418억 3,7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1조 2,494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60]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경상 이전수입	346,112	346,112	1,523,081	231,809	41,837	1,249,435	15.2	202,534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을 일반보험회수금 등 5가지의 수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60) 무역보험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무역정책국)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구성항목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징수결정액	수납액
일반보험회수금(A)	국내외 사고채권 회수금	수출신용보증	13,047	134
		그 외	1,705	1,705
		소계	14,752	1,839
가격변동보험환수금(B)	약관에 따라 환율하락시 징수하는 이익환수금		296	296
임차보증금회수금(C)	사무공간 임차만료 등으로 인해 회수된 보증금		96	96
임직원대여금회수금(D)	임직원 앞 제공된 사내대출 회수원금		0.7	0.7
기타영업수익(E)			87	87
합 계(A+B+C+D+E)			15,231	2,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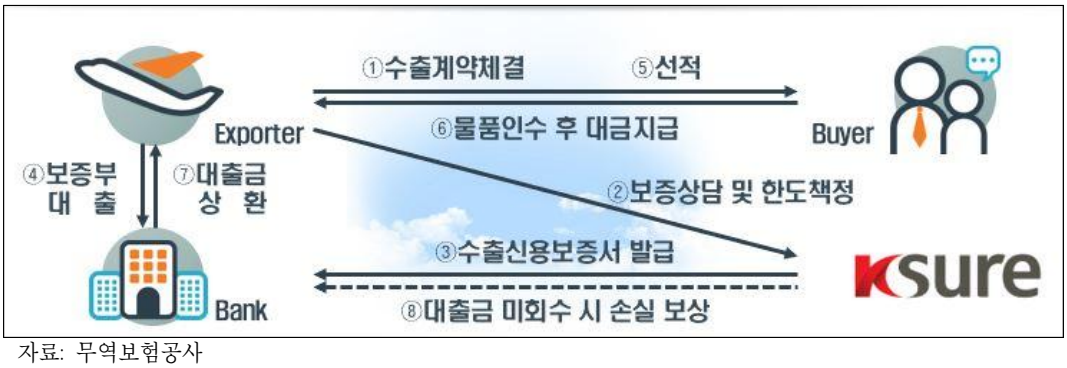
주) 수출신용보증 징수결정액은 구상채권 잔액과 旣상각한 채권잔액으로 구성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가 매년 징수결정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미회수잔액에 대한 징수결정이 이루어지는 수입은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금뿐으로, 그 외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채권회수금(1,705억원)이나,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임차보증금 회수금, 임직원대여금회수금 등에 대해서는 수납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만 수납액과 동일하게 징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출신용보증은 중소·중견 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임.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출자로부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상을 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설정하여 추심하게 됨.

[수출신용보증 구조도]



자료: 무역보험공사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의 사고발생으로 인해 취득한 구상채권의 잔액을 징수결정하여 수납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수납실적을 보면 채권잔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2023년 기준 2% 미만이므로 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구상채권의 연도별 신규 발생 및 회수·상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기준 구상채권의 회수액은 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하였고, 이를 연초 구상채권액에 신규 구상채권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인 회수율의 경우 2023년 1.4%로 2019년 이후 매년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2023년 구상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무역보험기금	연초 구상채권액(A)	11,902	11,582	11,568	11,349	8,733
	신규 구상채권액(B)	728	628	422	408	680
	회수액(C)	127	117	163	148	134
	상각액 등(D)	921	525	478	2,876**	462
	연도말 구상채권액(=A+B-C-D)	11,582	11,568	11,349	8,733	8,817
	회수율(=C/(A+B))(%)	1.0	1.0	1.4	1.3	1.4
	회수액 대비 상각액 등(D/C)(배)	7.3	4.5	2.9	4.3***	3.4

주 1)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및 회수불능 소각 건은 해당사항 없음
2) 출자전환된 채권금액(22년 7월 기준 누적 2,240억원 일괄 반영) 포함
3) (상각액 등(D)-출자전환된 채권금액(2,240억원))/회수액(C)

자료: 무역보험공사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정관리(회생·파산),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등), 임의상환(변제독촉,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회수액 대비 상각액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실제 환수노력을 통해 회수한 구상채권 회수액보다 출자전환, 추심의 실익이 없어 상각한 채권 등으로 인한 상각액이 3.4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구상채권 환수 노력을 통해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을 제고하는 한편, 구상채권이 상각되기 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이 아닌 다른 상품(수출보증보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미회수잔액(채권잔액)을 징수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미회수잔액에 대한 징수결정 및 적극적인 수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은 ①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는 '보증'(수출신용보증)의 사고발생으로 인해 취득한 구상채권의 미회수잔액, ② 종결금액(불납결손액), ③ 실제 수납액으로 구성됨.

즉, 수출신용보증이 아닌 다른 보험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매년 회수된 금액만을 징수결정하고 있음. 그 결과, 국가회계상으로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음.

수출신용보증 외 보험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인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보증수익자인 수입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임.[61]

이러한 보상과 동시에 수출자는 해당 보상금액을 무역보험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를 무역보험공사는 국내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수출보증보험 구조도]



자료: 무역보험공사

61) 이는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보증수익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건설 또는 선박 수주시장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선수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AP-Bond, RG)가 대표적이며, 수출자의 건설 또는 선박건조계약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자는 언제든 금융기관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음(Unconditional Guarantee).

그런데 ① 수출보증보험으로 인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된 국내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기말채권잔액이 1조 4,409억원에 이르는 반면, 회수액은 1억원으로 저조함.

[2020~2023년 무역보험공사 보유 국내채권(수출보증보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20	2021	2022	2023
기초채권잔액(A)	20,653	20,269	21,327	14,492
신규채권액(B)	166	1,650	33	0
회수액(C)	106	146	1	1
상각액 등(D)	444	401	6,912주)	82
기말채권잔액 (A+B-C-D)	20,269	21,372	14,492	14,409

주) 출자전환된 채권금액(5,120억원 일괄 반영) 포함
자료: 무역보험공사

② 또한, 앞서 밝혔듯이 무역보험공사는 2023년 미회수잔액인 기말채권잔액 1조 4,409억원을 징수결정하지 않고, 회수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국가 재무결산에서도 동 기말채권잔액을 미수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이 구상채권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자사 상품 중 수출신용보증으로 인한 채권만이 구상채권으로 분류되어 기타경상이전수입 상 징수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당 결산작성지침을 보면, 동 규정은 징수결정에서 누락하지 말아야 할 구상채권의 예시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임.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상 징수결정에 대한 규정]

☞ (유의사항) 수입징수관 등(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회계처리 담당자 포함)은 해당 회계연도에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액 전체(확정금액의 채권 발생액 중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함

※ <예시> 구상채권, 융자금, 연금부담금 징수결정액 산정 기준

구상채권 관련 수입	융자금 관련 수입	연금 부담금 등 관련 수입
확정금액의 채권 발생액 중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융자금 중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한 금액	부과금 등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금액 등
회수가능성 낮은 구상채권도 징수결정대상에 포함	융자금 연체금 등도 징수결정대상에 포함	전출입·퇴직자 등에 대한 부과금도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에서 발췌

오히려 동 지침은 확정금액의 채권 발생액 중 채무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가회계실체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전체를 징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아닌 국내채권(수출보증보험 등)에 대해서도 채권잔액을 징수결정하여 회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지 출>

22.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 부적정 및 자산취득비를 이용한 공사용역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온라인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82억원 중 78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0%)되고 3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62)]

[2023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8,200	8,200	-	8,200	7,875	-	325	13,072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3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세사업 명	편성 근거
중소기업마케팅심사분석	○ 810백만원 - 마케팅심사분석 : 610백만원 - 신용카드수수료: 수출신용보증 15백만원, 단기수출보험 54백만원 - 마케팅현지실사 : 131백만원
수출중소기업플랫폼 구축	○ 500백만원 - 사이버영업점 ISP/BPR 수립 컨설팅 비용: 200백만원(일반연구비) - 업무 자동화(RPA)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감리 예산: 157백만원(일반연구비) 및 143백만원(자산취득비)
빅데이터기반 디지털무역 금융플랫폼 고도화	○ 2,390백원 - **플랫폼개발비 1,230백만원(일반연구비),**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660백만원,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500백만원
지역거점수출중소기업 지원	○ 4,500백만원 **- 지역거점 수출중소기업 전담 고객센터 구축 비용 4,500백만원(자산취득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62) 무역보험기금 - 중소기업수출지원기반강화(1531-408)(무역투자실)

이 중, 내역사업인 **‘빅데이터기반디지털무역금융플랫폼고도화’**의 ‘플랫폼개발비’로 일반연구비 12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지역거점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는 지역거점 수출 중소기업센터 구축비용 45억원이 전액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빅데이터기반 디지털무역금융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용역비(일반연구비)의 일부를 당초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집행하였고,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타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를 데이터서비스 구독료로 집행하는 등 사업간 경계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빅데이터기반 디지털 무역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총 12억 3,000만원의 일반연구비를 편성하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용역을 발주하였음. 입찰 결과 빅데이터플랫폼 개발사업을 위해 7억 6,400만원, 감리용역을 위해 7,200만원, PMO 용역을 위해 1억 500만원을 합한 총 9억 4,100만원이 최종 낙찰금액으로 결정되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정보보안감사 또는 정보화사업 감리비 등 관련 소요로만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낙찰차액으로 단기수출보험 자동한도 모형 검증 용역,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자동한도 모형 검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신규 빅데이터 무역금융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대고객 보험한도 추천 서비스에 지난 2021년 旣구축된 보험·보증 자동한도 모형의 데이터가 활용되므로 데이터 정확성 재확인 등을 목적으로 자동한도 모형 검증 용역을 일종의 감리용역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이러한 설명에 따르는 경우에도 당초 발주한 감리용역비 7,200만원에 해당 2건의 용역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낙찰차액이 발생한 후에야 추가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2건의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동일업체(당초 2021년 자동한도 모형 구축 업체)에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다른 내역사업인 ‘수출중소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과업인 K-SURE 사이버영업점 관련 경비로 지출하였을뿐만 아니라, 빅데이터AI포럼 연회비 경비를 일반연구비로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경비로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지출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비로 집행가능한 용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2023년 빅데이터기반 디지털무역플랫폼 고도화 사업 내 낙찰차액의 일반연구비 주요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지출건명	지출결의 금액	자금이체 일자
K-SURE 사이버영업점 이용현황 설문조사 용역계약 관련 경비 지급	1,230	2023-04-05
단기수출보험 자동한도 모형 검증 컨설팅 용역계약 대금 지급	19,900	2023-11-09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자동한도 모형검증 컨설팅 용역계약 대금 지급	19,900	2023-11-15
빅데이터AI포럼 연회비 경비 지급	440	2023-05-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빅데이터기반 디지털무역플랫폼 고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분석 데이터 서비스 및 위험관리 데이터 서비스 구독을 위한 서비스 구독료로 총 1억 9,400만원을 직접적 관련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다른 세부사업인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지출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및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예산 집행 전반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역사업인 지역거점수출중기지원 사업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를 사용하여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실내 건축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확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지역거점 수출중소기업 전담 고객센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4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천안·아산 지역에 지역 거점 수출중기센터 운영을 위한 부동산 건물을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로 매입하였음. 매입대상 부동산은 천안아산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상업시설 2개 층, 5개 호실로 총 39억 4,8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사용하여 건물을 취득하였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건물 매입 과정에서 약 1,200만원 상당의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 용역, 세무자문 용역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음.

또한 건물 매입 이후 실내건축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용역을 별도의 세목조정 절차 없이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음.

[자산취득비를 사용한 공사 용역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공사 용역	지출일자	집행금액
실내건축공사 선금	2023.11.22	97
실내건축공사 잔금	2023.12.29	142
소방공사 대금	2023.12.20	14
전기공사 대금	2023.12.22	20
통신공사 대금	2023.12.29	19
합계		292

자료: 무역보험공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건물 또는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및 부대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 내 자산취득비로 감정평가 용역 및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1억 6,100만원(△1.5%)이 적은 6,202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5,100만원(2.9%)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93,816	794,587	843,539	48,952	867,220	867,220	851,542	△15,678	8,003
총수입	594,435	594,435	602,886	8,451	629,398	629,398	620,237	△9,161	17,351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8억 7,100만원(△1.6%)이 적은 5,299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400만원(1.8%)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93,816	794,587	786,627	△7,960	867,220	867,220	834,888	△32,332	48,261
총지출	547,445	546,599	539,871	△6,728	538,838	538,838	529,967	△8,871	△9,904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672억 2,000만원으로 8,515억 4,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67,220	867,220	-	867,220	851,542	851,542	-	-
- 손익계정	681,988	681,988	-	681,988	678,296	678,296	-	-
- 자본계정	185,232	185,232	-	185,232	173,246	173,246	-	-
합 계	867,220	867,220	-	867,220	851,542	851,542	-	-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672억 2,000만원으로, 이 중 8,348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고 323억 3,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67,220	867,220	-	±2,733	-	867,220	834,888	-	32,332
- 손익계정	681,988	681,988	-	±2,733	-	681,988	661,768	-	20,220
- 자본계정	185,232	185,232	-	-	-	185,232	173,120	-	12,112
합 계	867,220	867,220	-	±2,733	-	867,220	834,888	-	32,33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특허청 자산은 전년 대비 705억 5,300만원이 감소한 5,291억 3,7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532억 5,900만원, 투자자산이 119억 1,500만원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86억 9,900만원 증가한 2,367억 5,700만원으로 유동부채 111억 2,2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92억 5,200만원이 감소한 2,923억 8,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특허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98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6억 6,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92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8,4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특허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29,137	599,690	△70,553	△11.8
		유동자산	61,801	115,060	△53,259	△46.3
		투자자산	360,293	372,208	△11,915	△3.2
		일반유형자산	91,067	92,771	△1,704	△1.8
		무형자산	15,396	18,140	△2,744	△15.1
		기타비유동자산	579	1,512	△933	△61.7
	부 채		236,757	228,058	8,699	3.8
		유동부채	231,318	220,196	11,122	5.1
		장기차입부채	5,399	7,804	△2,405	△30.8
		장기충당부채	40	58	△18	△31.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92,380	371,632	△79,252	△21.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9,861	△45,198	△24,663	△54.6
	재정운영순원가		△60,337	△35,700	△24,637	△69.0
	재정운영결과		79,243	69,659	9,584	13.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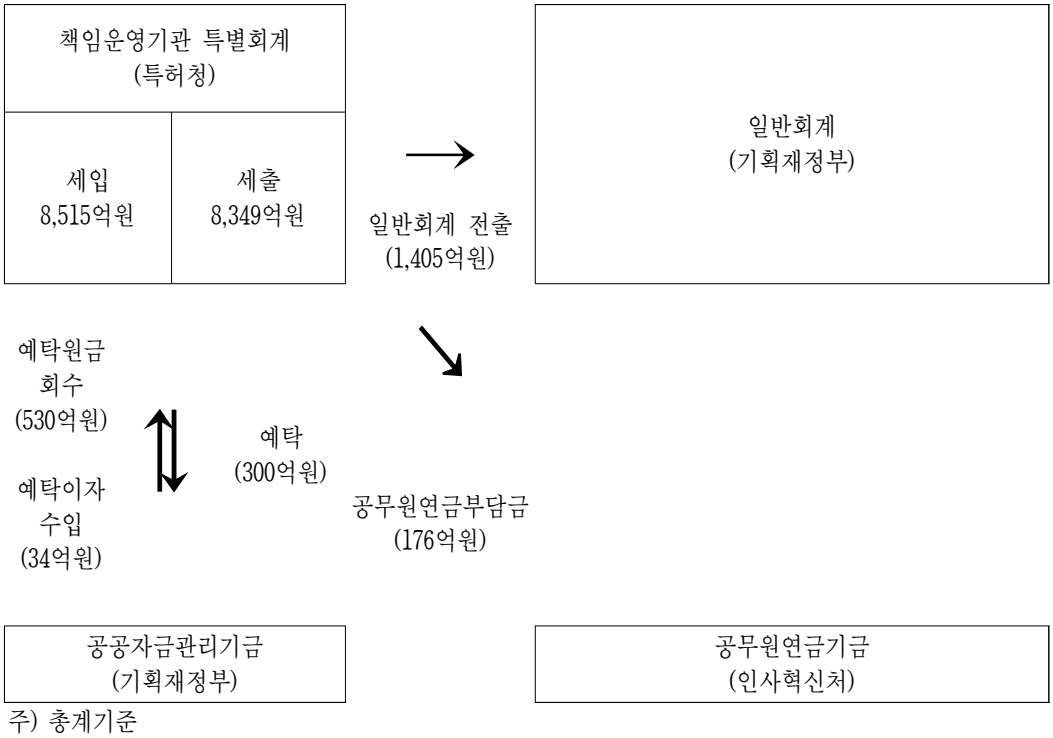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405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76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으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530억원의 원금이 상환되었으며 34억원의 이자수입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특허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도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신뢰받는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년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한 일부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 대상인 보조금의 일부를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관리비로 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전담기관인 발명진흥회는 회수전문기관에게 개별 담보IP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최대 40%까지를 성과보수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기준수익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담보IP의 매각수익금의 4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보조사업비를 보조사업과 지출목적이 다른 고유사업인 지식재산 경영인증 관련 방문심사수당 지급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고유사업과 보조사업간 구분을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특허청은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1억 5,900만원 중 9,7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화 용역을 낙찰차액으로 추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용역비 규모 역시 전년 900만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기술조사분석(R&D), IP-R&D 전략지원(R&D), 표준특허 창출지원(R&D) 사업 내 다수의 일반연구용역 과제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신규 용역을 추진하거나 국내여비 등 사업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및 IP나래프로그램 사업: 국회 예산심의 내역과 달리 지방비 매칭 보조금을 사업관리비로 충당 부적정

가. 개 요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식재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17억 1,8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2)]

‘IP 나래프로그램’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보유기술 경쟁력 강화 및 IP 기반 경영환경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IP 기술·경영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2억 5,6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3)]

[2023년도 IP기반 해외진출지원 및 IP 나래프로그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식재산 창출지원	18,968	18,968	-	±5	18,968	18,953	-	15	23,573
IP기반 해외진출지원	11,718	11,718	-	-	11,718	11,718	-	-	14,079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14,856	14,856	-	-	14,856	14,626	-	230	9,265
IP 나래프로그램	9,256	9,256	-	-	9,256	9,256	-	-	7,156

특허청은 2023년 예산안 심의 당시 두 내역사업에 대하여, 각각 673개사, 695개사의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 지식재산 창출지원(1232-300)(산업재산정책국)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 IP활용 창업·성장 지원(1232-310)(산업재산정책국)

지원목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를 국비·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음.

이에 따라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총 지원소요액 중 국비 보조율 30%에 해당하는 117억 1,800만원,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은 총 지원소요액 중 국비 보조율 35%에 해당하는 92억 5,600만원을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음.

[2023년도 IP 기반 해외진출지원 및 IP 나래프로그램 예산편성 근거]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편성 근거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식재산서비스 종합 지원	673개社 × 58백만원 × 30% = 11,718백만원 *** 특허청 30%, 지자체 30%,** 기업부담 40%
IP 나래 프로그램	초기 창업기업의 보유기술 경쟁력 강화 및 IP 기반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맞춤형 IP 기술·경영 전략 컨설팅 지원	695개社 × 38백만원 × 35%* = 9,256백만원 *** 특허청 35%, 지자체 35%,** 기업부담 30%

자료: 특허청 제출「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보조대상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두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 전국 27곳의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들에 재교부하고,[4] 지역지식재산센터들은 교부받은 국비에 지방비와 기업 자부담을 예산서에 기재한 비율대로 매칭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나. 검토의견

첫째, 특허청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과정에서 총 19억 8,700만원의 보조금을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관리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칭 보조금의 일부를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비로 배정한 것은 부적정한 집행에 해당함.

특허청이 제출한 두 내역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살펴보면,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국비 117억 1,800만원 중 실제 지역지식재산센터 재교부 후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진 사업비는 104억 2,300만원임.

4)「발명진흥법」 제23조는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머지 12억 9,500만원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재교부하지 않은 채 사업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결정하였음.

마찬가지로 IP 나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제 매칭이 이루어진 지방비는 85억 6,400만원이며 차액인 6억 9,200만원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재교부하지 않은 채 사업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결정하였음.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상 내역사업별 국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A)	지방비 (B)	차액 (A-B)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22,141	11,718	10,423	1,295
IP 나래 프로그램	17,820	9,256	8,564	692
합 계	39,961	20,974	18,987	1,987

자료: 특허청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지방비 매칭은 사업수행기관인 지역지식재산센터(2차 보조사업자)에 대한 재교부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허청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두 내역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편성 근거로 총 지원소요액에 매칭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지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고만 밝혔을 뿐,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두 내역사업에서 사업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한 19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와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친 바가 없음.

따라서 특허청은 국회의 예산 심의 당시 밝힌 보조금의 편성 근거 및 집행계획과 달리 매칭 보조금의 일부를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비로 배정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발명진흥회는 수탁보조사업 전반을 수행·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공통 소요인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를 두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로만 직접 충당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발명진흥회는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보조금 중 12억 9,500만원,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의 보조금 중 6억 9,200만원을 지방비 매칭

없이 직접 사용하였음.

한국발명진흥회는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사업관리비 12억 9,500만원 중 2억 2,7000만원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비로 지출하였음.

동시에,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 내 사업관리비 6억 9,200만원 중 9,770만원을 지역지식재산센터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용역사업비로 지출하였음.

[한국발명진흥회 내 지역지식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관련 용역비 지출]

(단위: 백만원)

내역보조사업명	결의일자	결의건 적요	금액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23-02-07	2022~2023 RIPC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선금	175
	23-12-16	2022~2023 RIPC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잔금	75
	23-12-16	감리비	12.2
	23-12-05	상용SW유지관리	5.6
	23-12-26	조달수수료	2.2
	합 계		270
IP 나래 프로그램	23-10-04	RIPC 기능고도화 선금	68.4
	23-12-20	RIPC 기능고도화 잔금	29.3
	합 계		97.7

자료: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산하 조직인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개별 수행하는 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임.

이에 대해 특허청은 26개 지역지식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①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상 예산편성 근거에는 편성된 보조사업비 전액이 모두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재교부되어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 매칭 없이 사용하여 정보화 용역을 추진한 것은 예산 심의 내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② 특허청이 제출한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용역의 제

안요청서에 따르면 동 용역은 2021, 2022년 기능고도화 사업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중소기업, 협력기관, 사업담당자, 심사위원 등) 운영 사이트를 RIPC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IP 디딤돌, 예산실적 관리시스템 등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사용자 편의성 기능 등을 개발하기 위한 과업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과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발명진흥회의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용역은 용역비 재원을 마련한 두 보조사업(IP기반 해외진출지원, IP 나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인 IP 디딤돌을 포함하여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등) 전반의 예산 및 실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두 보조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조직인 지역지식재산관리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관운영경비로 해석됨.

보조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2제1항[5]에 따라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특허청은 향후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지출이 개별 내역사업의 편성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지 세밀히 관리하고, 정보화사업과 같이 다수의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용역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과업에 따라 용역비 재원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2.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특허료 및 수수료 징수행정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필요

가. 개 요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심사청구 및 등록 시 납부하는 모든 수수료가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6,138억 2,4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6)]

[2023년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621,105	621,105	613,824	613,824	-	-	100.0	640,038

특허청은 당초 본예산에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으로 6,21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된 금액은 6,138억 2,400만원임.

나. 검토의견

2023년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 결정으로 인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93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심사국 소관 과오납금과 취소결정으로 인한 반환액의 경우 2022년 이전 수납금액의 비중이 40.5%, 65.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특허료 및 수수료 징수 행정 전반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

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49-491)(산업재산정보국)

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은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7)]

또한, 동 규칙 제31조는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8)]

특허청은 이와 같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오납 등의 사유로 기징수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 소요가 발생할 시 반환금 발생액만큼 발생연도의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에서 차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따라 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은 매년 과오납 및 취소결정, 특허심판원 취소심결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음.

다만, 수납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반환대상금액은 총 9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반환대상금액인 108억 1,500만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2021년 79억 8,000만원보다는 여전히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7)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 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21~2023년 반환발생원인별 반환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반환발생원인	2021		2022		2023	
	건	반환대상 금액	건	반환대상 금액	건	반환대상 금액
과오납	7,945	341	7,445	319	7,625	318
과오납(심사국)	5,695	2,006	4,858	1,692	4,200	1,461
무효심결	43	6	73	11	53	7
무효처분	689	45	715	40	708	44
불수리	8,166	1,348	8,008	1,438	8,982	1,653
수수료사후감면	1,420	734	1,742	3,129	1,298	729
우선심사심사국반환	489	64	515	67	512	64
일부불수리	17,694	716	15,926	824	16,932	1,107
취소결정	11,888	2,319	13,433	2,974	13,947	3,666
취하,각하결정등(심판원)	432	57	405	53	378	50
거절결정등취소심결(심판원)	1,172	345	908	268	743	235
총합계	55,633	7,980	54,028	10,815	55,378	9,334

자료: 특허청

특히 취소결정[9]으로 인한 반환금이 36억 6,600만원으로 전년 29억 7,400만원 보다 23.3% 증가하였음.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2021년 11월 17일에 시행된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제도[10]로 인하여 심사청구료 반환금이 2021년 20억 9,000만원에서 2023년 33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뿐만 아니라 반환대상금액을 최초 수납시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3년 반환대상금액 93억 3,400만원 중 2023년 최초 징수결정이 이루어진 금액은 59억 9,000만원이고, 2022년 이전 수납된 금액은 33억 4,400만원으로 전체 반환금액의 35.8%를 차지하고 있음.

9) 취소결정은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출원인이 최종적으로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출원절차를 취하하는 것을 의미함.

10)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제도 시행(2021.11.7.)
(당초) 선행기술조사 결과 통지 전 취소결정(출원절차 취하) 시 심사청구료 100% 반환
(제도 시행 이후) 거절이유 통지 전 취하 시 심사청구료 100% 반환
의견제출 기간 내 취하 시 심사청구료 1/3 반환

[2023년 반환대상 금액의 최종 수납시점별 분류]

(단위: 백만원, %)

반환발생원인	2023년 반환대상 금액 (A)	수납시점별 금액					
		2023년	2022년 이전 수납액				
			계 (B)	2022년 이전 수납 비율 (B/A)	2022년	2021년	2020년 이전
과오납	318	300	18	5.7	17	0.2	0.4
과오납(심사국)	1,461	870	591	40.5	581	10	-
무효심결	7	5	2	28.6	2	-	-
무효처분	44	31	13	29.5	12	0.2	0.3
불수리	1,653	1,564	89	5.4	83	0.1	6
수수료사후감면	729	718	11	1.5	11	-	-
우선심사심사국반환	64	51	13	20.3	13	-	0.2
일부불수리	1,107	1,096	11	1.0	11	0.4	-
취소결정	3,666	1,265	2,401	65.5	1,367	1,007	27
취하, 각하결정 등(심판원)	50	24	25	50.0	22	3	0.4
거절결정 등 취소심결(심판원)	235	66	169	71.9	112	53	4
총합계	9,334	5,990	3,344	35.8	2,231	1,075	38

주) 2023년 반환 대상 금액은 '20년 이전부터 '23년까지의 금액 전체 합산이며, 과오납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반환기간은 5년임

자료: 특허청

특히 심사국 소관의 과오납금[11]의 경우 2023년 반환대상금액 14억 6,100만원 의 40.5%에 해당하는 5억 9,100만원이 2022년 이전에 수납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취소결정으로 인한 반환금의 경우 2023년 반환대상금액 36억 6,600만원의 65.5%에 해당하는 24억 100만원이 2022년 이전에 수납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음.

과오납이나 취소결정 등 특허청의 심결 취소로 인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납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 특허청의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수용도를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은 특허료 및 수수료 징수 행정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 국제출원(PCT)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 기존 국제조사보고서나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반납하는 수수료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후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세 출>

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회수전문기관 성과보수 지급 체계 개편 및 사업출연금 이자수익·집행잔액 적정 사용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가. 개 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미상환 부실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특허권을 매입하고 활용하여, 은행권의 부실대출 회수위험을 낮추고 혁신 중소기업 대상 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억 7,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2)]

[2023년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775	775	-	-	775	775	-	-	1,686

동 사업은 전담기관인 발명진흥회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 2억 2,500만원과 사업출연금 5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32조의2[13)]에 따라 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담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운영 중이며, 정부와 은행이 각각 50%씩 출연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감독하고 있음.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IP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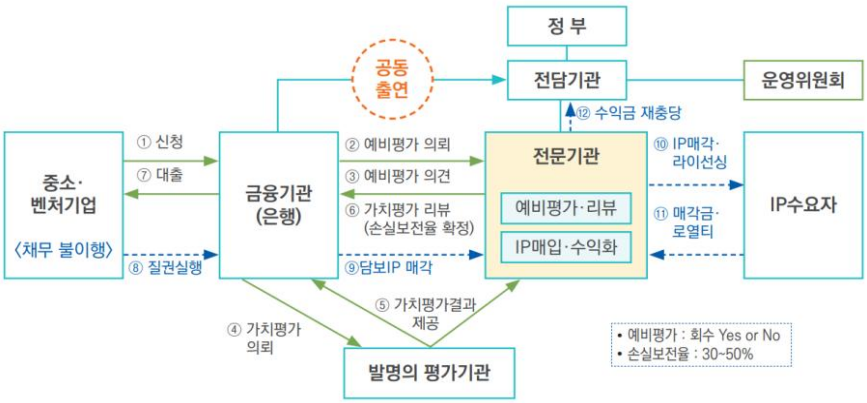
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산업재산정책국)

13)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주)△△)의 예비평가·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결정된 손실보전율로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담보 IP를 매입 결정하게 됨.

이때, 매입한 IP는 회수전문기관이 아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하게 됨. 회수전문기관은 매입한 IP를 향후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의 구조]



자료: 특허청

나. 검토의견

첫째, 발명진흥회는 회수전문기관에게 개별 담보IP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최대 40%까지를 성과보수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기준수익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담보IP의 매각수익금의 4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14]는 당해연도에 개별

14)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성과관리) ① 전담기관은 사업재원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재원운용의 개선 발전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전문기관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실적, 활용 실적 및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실적 등을 기준으로 연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이 당해연도에 개별 산업재산권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의 최대 50퍼센트를 운영

산업재산권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의 최대 50%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년도에 전문기관에 성과보수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담기관인 발명진흥회는 2022년 최초로 성과보수 대상 수익 5,000만원이 발생하자 회수전문기관((주)△△)에 2023년 성과보수 대상 수익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하였음.

[2021~2023년 회수전문기관 대상 성과보수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성과평가 등급	S	A	A	-
성과보수 대상 수익금	-	-	50	
지급비율	-	-	40%	
성과보수 지급액	-	-	20	

주) 2023년 성과보수 수익금(회생기업에 대한 실시료는 대상에서 제외)은 경영악화기업에 대한 라이선싱을 통한 실시료 1건

자료: 특허청

그러나 담보 IP 매입실적은 2023년 기준 총 41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음에 비해, 담보 IP 수익화 실적은 7,110만원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21~2023년 담보IP 수익화 실적]

(단위: 건, 개, 백만원)

구분	합계			매각			사용권 부여		
	건	IP 개수	금액	건	IP 개수	금액	건	IP 개수	금액
2021	2	2	3.4	-	-	-	2	2	3.4
2022	7	23	81.7	-	-	-	7	23	81.7
2023	11	18	71.1	3	4	53.0	8	14	18.1
합계	20	43	156.2	3	4	53.0	17	39	103.2

주) 2022년 사용권 부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화 실적 중 라이선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5,000만원이 최초의 성과보수 대상 수익금에 해당

자료: 특허청

특히 2022년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금 5,000만원이 최초로 발생하면서 성과보수 대상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40%의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년도에 전문기관에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개별 거래 수익금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④ 전담기관은 거래 수익금을 전문기관 성과보수,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및 권리이전 비용 등 실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회사별 사업계정에 납입한다.

참고로 타 정책펀드의 성과보수 지급규정 사례를 살펴보면, 성과보수의 책정 기준은 기준수익률 초과이익에 대하여 지급하고, 초과이익의 5~10% 수준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정책펀드별 모펀드 운용사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규정 사례]

<table>
<tr><th>정책펀드</th><th>관리보수</th><th>성과보수</th></tr>
<tr><td>중소기업
모태펀드</td><td>
<table>
<tr><th>납입출자금 규모</th><th>연율</th></tr>
<tr><td>3,000억 이하 분</td><td>1%</td></tr>
<tr><td>3,000억 초과 6,000억 이하 분</td><td>0.8%</td></tr>
<tr><td>6,000억 초과 1조 이하 분</td><td>0.7%</td></tr>
<tr><td>1조원 초과 1.5조원 이하 분</td><td>0.6%</td></tr>
<tr><td>1.5조원 초과 2조원 이하 분</td><td>0.55%</td></tr>
<tr><td>2조원 초과 분*</td><td>0.4%</td></tr>
</table>
* 2조원 초과 시 5호에 의한 금액에 2조원 초과분에 대해 0.4% 곱한 금액을 합산
</td><td>○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률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기준수익률 초과액)의 일부를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table>
<tr><th>기준수익률
초과액</th><th>성과보수액</th></tr>
<tr><td>300억원 이하</td><td>기준수익률 초과액의 10%</td></tr>
<tr><td>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td><td>30억원 + (300억원 초과액의 7%)</td></tr>
<tr><td>600억원 초과</td><td>51억원 + (600억원
초과액의 5%)</td></tr>
</table>
</td></tr>
<tr><td>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td><td>
<table>
<tr><th>납입출자금 규모</th><th>연율</th></tr>
<tr><td>3,000억원 이하 분</td><td>1%</td></tr>
<tr><td>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분</td><td>0.6%</td></tr>
<tr><td>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분</td><td>0.4%</td></tr>
</table>
* 1조원 초과시 1조 × 0.7% 금액만 지급
</td><td>○ 매년 자펀드의 청산에 따라 배분받은 수익의 합이 당해연도 청산 자펀드에 대해 모태조합의 기준수익률(5%)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0% 이내를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td></tr>
<tr><td>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보수율</th></tr>
<tr><td>혁신산
업펀드</td><td>2년 이내</td><td>약정금액×0.3%</td></tr>
<tr><td></td><td>2년 초과</td><td>(순자산총액 - 미투자자산)×0.3%</td></tr>
<tr><td>성장지
원펀드</td><td>2년 이내</td><td>약정금액×0.29%</td></tr>
<tr><td></td><td>2년 초과</td><td>(순자산총액 - 미투자자산)×0.29%</td></tr>
</table>
</td><td>없음</td></tr>
<tr><td>금융위원회
기업구조
혁신펀드</td><td>
<table>
<tr><th>구간</th><th>보수율</th></tr>
<tr><td>6년 이내</td><td>약정총액×0.2%</td></tr>
<tr><td>6년 초과</td><td>(순자산총액-미투자자산)×0.2%</td></tr>
</table>
</td><td>모펀드 기준수익률
초과이익의 5%</td></tr>
</table>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를 고려할 때, 기준수익률에 대한 고려 없이 수익화 실적 개별 건을 성과대상 수익으로 설정하고, 해당 수익의 4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동 사업의 성과보수 체계는 타 정책펀드 운용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에도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발명진흥회가 담보IP를 매입 및 수익화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매입한 특허권에 대한 지속적인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수익화 실적은 저조하여 결손금이 2023년 △15억 6,200만원으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0~2023년 특수목적회사(SPC) □□사의 재무상태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2020	2021	2022	2023
자산	당좌자산(매출채권, 부가세 등)	2	101	84	146
	무형자산(특허권)	312	1,930	4,427	7,330
자산 총계		314	2,031	4,511	7,476
부채	장기차입금 등	341	2,158	5,142	9,034
	미지급비용	-	-	2	4
	계	341	2,158	5,144	9,038
자본	자본금(10만원), 결손금	△27	△127	△633	△1,562
부채 및 자본 총계		314	2,031	4,511	7,476

주 1) 무형자산은 매입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을 인식하였음
2) 장기차입금은 특허권 매입비용(2023년 기준 누적 약 90억원) 지급을 위해 발명진흥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임

자료: 특허청

이에 대해 특허청은 개별 IP의 수익화 시 매각목표 등급제를 도입하고 매각 하한선을 부여하여 무분별한 저가매각을 방지하고, IP 매각액이 해당 IP의 매각 하한선을 하회하는 경우 성과보수의 수익금 대비 지급율을 하향 조정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 지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하였음.

매각 및 수익화되지 못한 IP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특수목적회사(SPC)의 자본 결손금이 △15억 6,2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개별 IP의 수익화 실적에만 근거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5)]

둘째, 담보 IP 매입을 위해 발명진흥회에 교부한 사업출연금 중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금액이 2023년 말 기준 100억 1,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특허청은 누적된 사업출연금 잔액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신규 출연금 소요 산정 시 반영하는 등 적정 사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에 편성된 사업출연금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00억 1,200만원의 사업출연금이 집행되지 못한 채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15) 이에 대해 특허청은 담보IP의 수익화는 일반 부동산 등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高난이도임에도 2년만에 수익화 실적을 달성하는 등, 개별 IP에 대한 수익화 실적은 성과보수의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음.

이는 2020년 최초 사업출연금이 편성된 이후로 2023년까지 신규 출연금 예산 편성액이 실제 담보IP 매입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교부된 출연금의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왔기 때문임.

[2020~2023년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내 사업출연금의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특허청			발명진흥회					
	예산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0	3,750	3,750	3,750	3,750	-	3,750	633	3,117	16.9
2021	9,040	9,040	9,040	9,040	3,117	12,157	1,471	10,686	12.1
2022	3,525	3,525	3,525	3,525	10,686	14,211	2,190	12,021	15.4
2023	550	550	550	550	12,021	12,571	2,559	10,012	20.4

자료: 특허청

현재 발명진흥회의 출연회계 내에는 정부의 출연금 집행잔액과 이에 상응하는 은행의 공동출연금 집행잔액 합한 총 200억 3,800만원의 출연금 잔액이 유보되어 있음.

또한, 특허청은 발명진흥회의 사업출연금 집행 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이 2023년 기준 4억 7,600만원, 2020~2023년 누적 기준 5억 4,200만원에 이르고 있음.

[2020~2023년 발명진흥회 담보 IP 매입 출연회계 내 이자수익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합계
기말 이자수익	18	22	26	476	542

자료: 특허청

사업출연금(350-02목)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의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사업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6)]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16) 「2023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206

사업출연금의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 달성에 충실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은 제외하고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7)]

실제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공단 회계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사업출연금(350-02목)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의 사용 근거(예시)]

구분	내용
출연금 집행잔액 등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규정한 경우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 제3항(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피출연자는 보험연도 내에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회계규정」** 제41조의2(출연금 집행 잔액의 처리) ① 출연금의 목적사업비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교부된 사업출연금이 당초 목적인 담보 IP 매입에 사용되지 않고 공공기관 내에 집행가능성이 낮은 채로 계속하여 이월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이월하지 않고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따라서 특허청은 2020년 이후 담보IP 매입을 위해 교부된 출연금과 은행의 공동출연금이 실제 담보IP 매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이자수익을 신규 출연금 규모 산정 시 반영하는 등의 적정 사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p.242

4.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기관 고유사업과 보조사업간 구분 준수 필요

가. 개 요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종합인프라 지원으로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89억 6,800만원 중 189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식재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17억 1,8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

[2023년도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식재산 창출지원	18,968	18,968	-	±5	18,968	18,953	-	15	23,573
IP기반 해외진출지원	11,718	11,718	-	-	11,718	11,718	-	-	14,079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살펴보면, 673개사에 대하여 평균 5,800만원의 지원소요를 책정하고 이 중 특허청이 부담하는 30%의 보조율을 곱하여 117억 1,8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음. 나머지는 지자체 30%, 기업부담 40%로 구성됨.

특허청은 해당 보조금을 전액 한국발명진흥회로 교부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전국 27곳의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해당 보조금을 재교부하면, 지역지식재산센터는 나머지 사업비를 지자체와 기업으로부터 각각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음.

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지식재산 창출지원(1232-300)(산업재산정책국)

[2023년도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예산편성 현황]

세사업 명	구분	편성 근거
IP기반 해외진출지원	본예산	673개社 × 58백만 × 30% = 11,718백만원 *** 특허청 30%, 지자체 30%,** 기업부담 40%

자료: 특허청

나. 검토의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보조사업비를 보조사업과 지출목적이 다른 고유사업인 지식재산 경영인증 관련 방문심사수당 지급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고유사업과 보조사업간 구분을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는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4년간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 혜택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진행절차는 신청기업이 자가진단 및 신청을 하면 운영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방문심사를 진행한 후 특허청에서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임.

한국발명진흥회는 동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6조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수수료 수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 및 지식재산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19)]

19)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6조(인증비용) ①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인증업무 운영기관이 인증 신청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3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 및 지식재산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경영인증시스템 인증수수료 수입 및 지출 차액]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인증수수료 수입(A)	8,200	29,800	45,500	53,400	65,200	62,200	49,200	48,700	362,200
지출(B)	593	1,347	11,105	12,929	41,318	68,742	73,094	95,550	304,677
수입-지출 차액 (A-B)	7,607	28,453	34,395	40,471	23,882	△6,542	△23,894	△46,850	57,523
집행률(B/A)	7.23%	4.52%	24.41%	24.21%	63.37%	110.52%	148.56%	196.20%	84.12%

자료: 특허청

인증수수료 수입과 지출 차액은 2020년까지 매년 흑자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지출 부문에 포함되는 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자로 전환되었음.

특허청이 제출한 2023년도 수수료 수납액의 지출처를 살펴보면,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방문심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5,219만원으로 전년 992만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2022~2023년 지식경영인증시스템 수수료 수납액의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운영비	방문심사수당 지급	9,923	52,190
	심사위원모집교육	475	935
	리플렛, 위촉장 등	15,264	-
	홍보무스 운영 용역비	25,481	-
	경영인증기업 간담회	21,041	-
	멘토링수당	-	23,100
	시스템개선용역	-	17,273
	회의비	-	1,600
국내여비		909	450
지출 합계		73,094	95,550

자료: 특허청

그런데 실제 발명진흥회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경영인증수수료로 지출된 방문심사수당 지급액의 대상기간은 2022년 12월 2,409만원, 2023년 4~6월 1,407만원, 2023년 11월 2차 수당 1,403만원이었음.

그 외 기간에 해당하는 2023년 2~3월, 2023년 7~10월, 11월 1차 수당 지급분 8,059만원은 지식경영인증시스템 수수료가 아닌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보조금

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 지식재산경영인증시스템 내 방문심사수당 지급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천원)

발명진흥회 내 사업명(사업분류)	결의일자	적요	금액
지식재산경영인증 수수료사업 **(고유사업)**	2023-01-10	방문심사위원 수당지급(12월)	24,090
	2023-08-18	방문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23년 4월~6월)	14,070
	2023-12-06	방문심사 수당지급(23년 11월 2차)(일반 34명)	14,030
	소 계		52,190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보조사업)**	2023-02-15	방문심사위원 수당지급(1월)	19,570
	2023-03-17	방문심사위원 수당지급(2월)	3,420
	2023-04-12	방문심사위원 수당지급(3월)	4,040
	2023-09-25	방문심사위원 수당지급(7, 8월분)	8,900
	2023-10-12	방문심사위원 수당지급(9월분)	4,660
	2023-11-09	방문심사 수당지급(10월)	12,680
	2023-12-06	방문심사 수당지급(11월 1차)(47명)	27,320
	소 계		80,590
합 계			132,780

자료: 특허청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경영인증 제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보조사업임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경영인증시스템의 수수료로 충당하지 못한 사업 소요를 관련성이 낮은 보조사업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여 충당한 것은 보조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20]은 보조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21]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기관 고유사업과 보조사업 간 구분을 준수하고, 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있음.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5. WIPO 국제분담금(ODA) 사업: 원화 편성에 따른 환차손 발생 문제 및 한국신탁기금 내 사업의 집행 부진

가. 개 요

'WIPO 국제분담금(ODA)' 사업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통해 세계지식재산 규정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4억 2,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2)]

[2023년도 WIPO 국제분담금(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WIPO 국제분담금 (ODA) 사업	1,424	1,424	-	-	1,424	1,424	-	-	1,730

동 사업은 WIPO 회원국의 의무분담금과 WIPO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신탁기금 등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WIPO 국제분담금(ODA) 사업 내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WIPO 의무분담금	ㅇ WIPO 의무분담금: ('22) 548 → ('23) 548백만원(전년동) - 산출내역 : WIPO 의무분담금 548백만원
WIPO 한국신탁기금	ㅇ WIPO 한국신탁기금 : ('22) 876 → ('23) 876백만원(전년동) - 산출내역 · IP 개도국 역량강화 : 400백만원 · 개도국 IP 인식제고 : 176백만원 · 개도국 IP 인력 개발 지원 : 300백만원

자료: 특허청

2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WIPO 국제분담금(ODA)(1035-301)(산업재산보호협력국)

나. 검토의견

첫째, WIPO 국제 의무분담금은 2019년 이후 매년 편성시점의 환율보다 집행시점의 환율이 높아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내역사업인 WIPO 한국신탁기금의 사업비 중 일부를 환차손액에 충당하거나 차년도 예산으로 부족액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IPO회원국으로서 매년 의무분담금으로 455,790스위스프랑(CHF)을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의무분담금이 매년 스위스프랑이 아닌 원화로 편성됨에 따라 편성시점과 집행시점의 환율 차이가 발생하여 매년 실제 분담금 납부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2019~2023년 WIPO 국제 의무분담금 환차손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원/CHF)

연도	분담금	예산액 (A)	집행액 (B)	편성환율	집행환율	환차손 (A-B)	집행일자	환차손 조달 재원
2019	341,842CHF	379	432	1,108.7	1,263.47	△53	2019. 8.13.	WIPO 한국신탁기금에서 충당
2020	341,842CHF	379	448	1,108.7	1,309.61	△69	2020. 7.29.	
2021	341,842CHF	379	429	1,108.7	1,254.96	△50	2021. 8.10.	
2022	455,790CHF	548	629	1,201	1,379.52	△81	2022. 8. 3.	
2023	455,790CHF	548	548 (678)	1,201	1,475.75	△130	2023. 6.30.	2024년 예산에 환차손 추가요구

자료: 특허청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19~2022년까지의 환차손은 동일 세부사업 내 WIPO한국신탁기금(2023년 기준 8.76억원)에서 충당하였고, 2023년은 원화 기준 금액만큼만 우선 송금 후 2024년 예산에 환차손 예산을 추가 요구하여, 2024. 1월에 1.3억원(8.4만 CHF)을 추가납부 하였음.

특허청은 WIPO 의무분담금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금은 외평기금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원화로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조정 및 자체전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다른 내역사업인 WIPO 한국신탁기금은 IP 개도국 역량강화, 개도국 IP 인식제고, 개도국 IP인력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에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사업으로 의무분담금과 다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른 사업임.

따라서 특허청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예산 편성 시 환율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환차손에 따른 부족액을 타 내역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거나 차년도 사업비에서 조달하는 등의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WIPO 한국신탁기금의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WIPO 한국신탁기금은 매년(n) 7월부터 다음연도(n+1) 6월까지 IP 개도국 역량강화, 인식제고, 인력개발 지원 등의 협력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획 및 기금 내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보고서의 형태로 다음연도(n+1) 말에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제출한 최신 결산보고서인 2022.7~2023.6까지의 WIPO 한국신탁기금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50만 8,000프랑(CHF) 중 76만 1,400프랑(CHF)이 집행(집행률 50.5%)되었음.

[2023년 WIPO 신탁기금 내 계정별 사업 집행 현황(대상기간: 2022.7~2023.6)]

(단위: CHF, %)

계정	기초 잔액 (22.7.1)	신규 적립 (22.8)	프로그램명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기말잔액 (23.6.30)
개발협력	461,492	260,184	IP 인식 및 역량 제고	449,416	239,027	53.2	286,779
			IP 레버리지 성공률 제고	235,000	195,074	83.0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IP 활용	74,000	-	-	
			행정관리비용	7,584	4,341	57.2	
			소계	766,000	438,441	57.2	
교육	570,758	316,269	학술프로그램 운영	95,000	58,329	61.4	564,076
			원격 특화교육	100,000	52,313	52.3	
			전문 개발프로그램	215,000	67,443	31.4	
			여성 및 청소년 프로그램	150,000	-	-	
			인적자원 관리	147,000	127,273	86.6	
			행정관리비용	35,350	15,379	43.5	
			소계	742,350	322,951	43.5	
합 계				1,508,350	761.392	50.5	850,855

주)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신탁기금 적립 사업비 8억 7,600만원은 2023.7~2024.6까지의 활동에 사용되고, 이후 2024년 말 결산보고서의 형태로 정산될 예정임

자료: 특허청

특히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인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IP 활용’ 프로그램과 교육분야의 ‘여성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편성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음.

이와 같은 집행 부진에 따라 WIPO 한국신탁기금 내 출연 잔액이 2023년 6월 말 기준 85만 프랑(CHF)에 이르고 있으므로, 특허청은 WIPO 한국신탁기금으로의 출연금 교부에 앞서 기금 내 자금이 실제 IP 개발협력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 낙찰차액을 사용한 신규 용역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시업의 내역사업인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은 특허심사·심판 및 대민 특허정보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식재산 데이터 구축 및 보급 교환, 서면 제출서류의 선진화, PCT 최소문헌 등 선행기술조사 자료 확보·제공,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발간·배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8억 5,400만원 중 127억 9,200만원이 집행되고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3년도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38,587	38,587	-	80 △80	38,587	38,390	-	197	36,182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12,854	12,854	-	-	12,854	12,792	-	62	11,632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에는 ① 데이터관리센터 운영비 24억 9,100만원, ② 전자화센터 운영비 24억 1,600만원, ③ 가공DB 구축 4억 9,400만원, ④ 기계번역 기타언어 API 사용료 4,600만원, ⑤ 공보발간 10억 100만원, ⑥ 표준기술문서 구축 3억 2,500만원, ⑦ 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 임차 20억 8,100만원, ⑧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발간 40억원을 합한 128억 5,400만원이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이 중 ‘공보발간’의 경우 산업재산권 공보 발간을 위해 기본용역비 9억 9,700만원과 직접경비 400만원을 합한 1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표준기술문서 구축’의 경우 검색용 표준기술문서 DB 구축을 위해 기본용역비 3억원과 직접경비 2,500만원

2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431-500)(산업재산정보국)

을 합한 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공보발간 및 표준기술문서 구축 내내역사업 단위 예산 편성 내역]

내내역사업명	2023년도 예산 편성 내역
공보발간	• 기본용역비 : ('22) 997 → ('23) 997백만원 (전년동) * 투입인력(총 17명) : IT시스템운용자 2명, IT테스터 1명, IT지원 기술자 14명 • 직접경비 : ('22) 4 → ('23) 4백만원 (전년동) * 데이터 이관용 DVD·CD 구매 등
표준기술문서 구축	• 기본용역비 : ('22) 300 → ('23) 300백만원 (전년동) * 투입인력(총 4명) : IT PMO 1명, IT시스템운용자 1명, IT지원 기술자 2명 • 직접경비 : ('22) 25 → ('23) 25백만원 (전년동) * 유료문서 구매, 저작권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기관(ETSI · 3GPP 등) 멤버십 가입비용

자료: 특허청

나. 검토의견

특허청은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1억 5,900만원 중 9,7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화 용역을 낙찰차액으로 추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용역비 규모 역시 전년 900만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은 공보발간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 10억 100만원과 표준기술문서 구축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합한 13억 2,600만원의 정보화 용역을 통합 발주하였고, 11억 6,700만원으로 최종 용역비가 결정됨에 따라 낙찰차액 1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음.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공보발간 및 표준기술문서DB 구축	1,167	159	· **2023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97백만원),** 조달수수료(9백만원), 불용(40백만원)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이 중 9,700만원을 사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화 용역인

‘2023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을 추진하였음.

특허청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여야 하나,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용역을 발주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3년도 해당 용역을 수행한 동일 업체가 2022년도 특허청으로부터 수탁한 용역인 ‘2022년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사업’의 경우 용역 금액이 900만원에 불과하였음.

[2022년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사업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세부내용
전산망 전투훈련 실시	○ 사이버 공격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실전형 전산망 침투 훈련 실시
취약점 점검	○ 대표 홈페이지 대상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여부 이행점검
보안담당자 교육	○ 전산망 침투훈련 및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및 개선사항 마련을 위한 정보시스템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보안 요구사항 준수	-

자료: 특허청

2023년도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위와 비교하여 보면, 2022년 용역의 과업범위 해당하는 대표 홈페이지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과 전산망 침투훈련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산하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감사 및 평가를 과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정보보안 관련 위탁 과업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년 정기적인 소요가 발생하는 정보보안 관련 예산 지출이 10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허청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에 필요한 적정 정보화 예산 소요를 산출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진단 및 강화 업무를 확대하여 외부로 위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특허기술조사분석(R&D) 등: R&D 사업 내 정보화 용역 추진 시 낙찰차액 사용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특허기술조사분석(R&D)’ 사업은 특허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통한 R&D 전략 수립 및 기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상표 빅데이터 분석,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및 활용 지원, 특허성과 종합관리, AI 기반의 특허행정 혁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73억 800만원 중 172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IP-R&D 전략지원(R&D)’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재권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94억 5,500만원 중 394억 4,200만원(집행률 100.0%)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표준특허 창출지원(R&D)’ 사업은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로열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0억 4,300만원 중 80억 4,100만원(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3년도 특허기술조사분석(R&D) 사업 등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특허기술조사분석 (R&D)	17,308	17,308	-	-	17,308	17,222	-	86	15,206
IP-R&D전략지원 (R&D)	39,455	39,455	-	-	39,455	39,442	-	13	39,455
표준특허 창출지원 (R&D)	8,043	8,043	-	-	8,043	8,041	-	2	7,532

24) 책임운영특별회계(손익계정)-특허기술조사분석(R&D)(1233-301)(산업재산정책국)

25) 책임운영특별회계(손익계정)-IP-R&D전략지원(R&D)(1233-303)(산업재산정책국)

26) 책임운영특별회계(손익계정)-표준특허 창출지원(R&D)(1233-306)(산업재산정책국)

나. 검토의견

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기술조사분석(R&D), IP-R&D 전략지원(R&D), 표준특허 창출지원(R&D) 사업 내 다수의 일반연구용역 과제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신규 용역을 추진하거나 국내여비 등 사업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허청은 특허기술조사분석(R&D) 사업, IP-R&D 전략지원(R&D), 표준특허 창출지원(R&D) 사업에 반영된 다수의 일반연구 용역 과제를 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하였음.

그런데 특허전략개발원이 이들 R&D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여야 할 낙찰차액을 인쇄 및 제본비, 기타 사업경비 등에 사용하거나, 당초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화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추가 용역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2023년도 특허기술조사분석 사업 R&D 과제비 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특허기술조사분석	2023년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고도화 용역	144	4.83	인쇄 및 제본비 등 비용 전용
	2023년 특허중심 연계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AI TASK 연구 및 시범서비스 구축 용역	241.45	4.96	특허-산업 연계 분류 모델 기능개선 연구 추가용역비로 활용
	2023년 특허 메가트렌드 포털 디자인 개편 및 기능개선 용역	138.6	11.4	메가트렌드 시장동향 등 추가용역비로 활용
특허기술조사분석 IP-R&D 전략지원	KISTA 전자계약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77.5	8.57	기타 사업경비(국내여비) 등 활용
표준특허 창출지원	KISTA IP통합지원포털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272	0.89	기타 사업경비 등 활용
표준특허 창출지원	선언표준특허 정보 수집 최신화 및 표준특허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70	0.44	기타 사업경비 등 활용
합 계		973	31	

주) KISTA 관련 용역은 3개 세부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용역 발주 및 계약
자료: 특허전략개발원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해당 사업들은 연구개발(R&D) 예산에 해당하므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 과업 등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화 사업을 재정유형별로 구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외에 일반재정사업 및 R&D사업(非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 성격의 사업도 모두 정보화 사업에 포함하여 동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유형별 분류에 따른 정보화 사업 예시]

재정유형		부처별 정보화사업 예시	
		부처	사업명
정보화	D-brain 상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일반재정	일반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의 내역사업인 ‘알리오 등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	‘등록관리’의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기록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
R&D	R&D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경제를위한블록체인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인 ‘블록체인기반기술’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R&D)’의 내역사업인 ‘한국학학술정보화사업’, ‘정보기반구축사업’

자료: 각 부처, 「2023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023.1.)」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를 고려할 때, R&D 사업 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라는 이유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특허청은 R&D 사업 수행기관이 R&D 과제비 내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본계정)】

<세 출>

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 책특회계 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지양 필요

가. 개 요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여유재원(자본계정의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은 잉여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7)]

‘일반회계 전출’ 사업은 책특회계 내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524억 8,100만원 중 중 1,404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1%)되고, 119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28)]

[202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및 일반회계 전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30,000	30,000	-	-	30,000	30,000	-	-	19,000
일반회계 전출	152,481	152,481	-	-	152,481	140,496	-	11,985	115,374

나. 검토의견

특허청은 특허행정 운영에 따라 발생한 손익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을 공공자금관리

2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본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510-850)(기획조정관)

2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본계정)-일반회계 전출(8010-800)(기획조정관)

기금 예탁 또는 일반회계 전출금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데, 2023년 총 여유재원 1,705억원의 82.4%에 해당하는 1,40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음.

특허청은 2016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손익계정의 흑자를 자본계정으로 전출하고, 자본계정 내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과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을 활용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내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여유재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의 비율이 2016년 기준 72.8%에서 2020년 66.2%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82.4%를 기록하였음.

[최근 10년간 여유재원 예탁 및 전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여유재원	공자기금 예탁금	532 (100)	1,008 (100)	285 (27.2)	412 (30.8)	530 (33.1)	428 (32.8)	379 (33.8)	63 (9.9)	300 (22.1)	300 (17.6)
	일반회계 전출금	-	-	762 (72.8)	927 (69.2)	1,072 (66.9)	875 (67.2)	743 (66.2)	571 (90.1)	1,055 (77.9)	1,405 (82.4)
	소계	532 (100)	1,008 (100)	1,047 (100)	1,339 (100)	1,602 (100)	1,303 (100)	1,122 (100)	634 (100)	1,355 (100)	1,705 (100)

자료: 특허청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내 여유재원 규모가 특허료 및 수수료 수입 증가로 인하여 최근 10년(2014~2023년)간 두 해를 제외하고 모두 1,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안정적인 수입-지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재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비율을 줄이고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특허·상표 및 디자인 실용실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 등의 사업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임.

이를 고려할 때, 매년 손익계정에서 발생하는 흑자를 자본계정으로 계정간 전출-전입한 후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의 지출부담을 특허행정 이용자들에게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료·수수료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9)]

29)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2024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은 2023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향후 일반회계 전출금 적정 규모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720억 1,700만원(9.4%)이 많은 7조 8,11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933억 300만원(21.7%)이 증가함.[1)]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84,654	184,654	173,898	△10,756	210,210	210,210	291,906	81,696	118,008
기 금	6,275,163	6,275,163	6,243,959	△31,204	7,455,133	6,928,933	7,519,254	590,321	1,275,295
총수입	6,459,817	6,459,817	6,417,857	△41,960	7,665,343	7,139,143	7,811,160	672,017	1,393,303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91억 5,700만원(△0.57%)이 적은 13조 9,20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조 4,492억 2,000만원(△77.3%)이 감소함.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513,254	6,767,050	6,757,970	△9,080	4,032,685	4,035,954	4,025,755	△10,199	△2,732,215
기 금	14,327,922	54,624,462	54,611,695	△12,767	9,487,842	9,963,648	9,894,689	△68,959	△44,717,006
총지출	18,841,176	61,391,512	61,369,665	△21,847	13,520,527	13,999,602	13,920,445	△79,157	△47,449,220

나.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102억 1,000만원으로 2,972억 6,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919억 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2%)되고 53억 5,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92,210	192,210	-	192,210	266,846	262,457	-	4,389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	3,384	3,38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000	18,000	-	18,000	27,035	26,065	-	970
- 지역지원계정	18,000	18,000	-	18,000	26,296	25,339	-	957
- 지역자율계정	-	-	-	-	351	338	-	13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139	139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249	249	-	-
합 계	210,210	210,210	-	210,210	297,264	291,906	-	5,359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7,701억 4,200만원으로, 이 중 5조 7,599억 4,300만원은 집행(집행률 99.8%)되었으며, 101억 9,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962,237	-	3,270	±2,188	-	4,965,506	4,955,839	-	9,66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8,298	-	-	-	-	218,298	218,298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6,338	-	-	-	-	586,338	585,807	-	531
- 지역자율계정	189,580	-	-	±4,446	-	189,580	189,043	-	531
- 지역지원계정	355.507	-	-	-	-	355.507	355.507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6.637	-	-	-	-	26.637	26.637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4,614	-	-	-	-	14,614	14,614	-	-
합 계	5,766,873	-	3,270	±6,634	-	5,770,142	5,759,943	-	10,19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0조 3,267억 2,800만원으로 29조 8,600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1조 4,702억 5,300만원이 수납(수납률 71.9%)되고 6,427억 8,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7조 7,470억 4,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239,834	10,715,104	11,984,306	10,710,770	337,981	935,556
기술보증기금	3,174,319	3,174,319	10,099,177	3,864,584	304,799	5,929,79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422,505	6,437,305	7,776,589	6,894,899	-	881,690
합 계	19,836,658	20,326,728	29,860,072	21,470,253	642,780	7,747,040

주)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0조 3,272억 6,400만원으로, 이 중 21조 4,702억 5,300만원은 지출(집행률 105.6%)되고 3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59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239,834	10,715,104	-	10,715,104	10,710,770	336	15,939
기술보증기금	3,174,319	3,174,319	-	3,174,319	3,864,584	-	29,50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422,505	6,437,305	536	6,437,841	6,894,899	-	543
합 계	19,836,658	20,326,728	536	20,327,264	21,470,253	336	45,98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자산은 전년 대비 7,193억이 증가한 49조 7,355억 6,8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34조 8,436억 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3조 1,019억 3,800만원 증가하고 기타비유동자산이 446억 3,4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7,233억 5,100만원 증가한 46조 6,298억 2,7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1조 6,361억 4,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40억 5,000만원이 감소한 3조 1,057억 4,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7조 734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조 9,030억 1,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조 5,417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1,591억 1,7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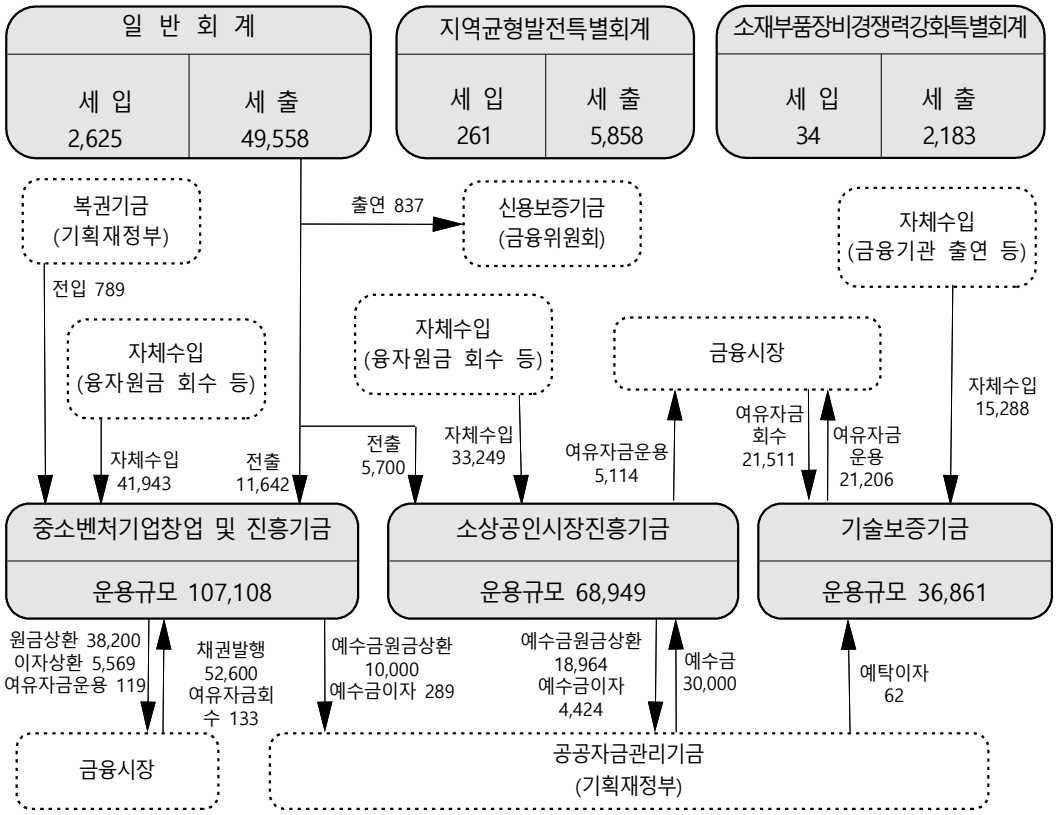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9,735,568	49,016,268	719,300	1.5
		유동자산	13,071,904	9,969,966	3,101,938	31.1
		투자자산	34,843,603	37,283,965	△2,440,362	△6.5
		일반유형자산	1,427,666	1,413,989	13,677	1.0
		무형자산	20,526	21,112	△586	△2.8
		기타비유동자산	371,870	327,236	44,634	13.6
	부 채		46,629,827	44,906,476	1,723,351	3.8
		유동부채	7,051,711	7,065,838	△14,127	△0.2
		장기차입부채	37,911,609	36,275,463	1,636,146	4.5
		장기충당부채	1,240,284	1,114,006	126,278	11.3
		기타비유동부채	426,223	451,169	△24,946	△5.5
	순자산		3,105,742	4,109,792	△1,004,050	△24.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7,073,430	49,976,441	△42,903,011	△85.8
	재정운영순원가		7,396,188	50,454,872	△43,058,684	△85.3
	재정운영결과		6,541,792	49,700,909	△43,159,117	△86.8

2. 2023회계연도 재정구조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는 3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와 3개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흐름도]

(단위 :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 하에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은 전반적으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종료과제의 정산 후 연구개발비 회수금·환수금 등의 징수실적이 미진하며, 기한 내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의 중간 이탈률 감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사업은 2023년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구축 완료된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부실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융자 원리금 회수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은 지양하여야 하고, 온라인 판로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실적 없는 소상공인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정보화마스터플랜(ISMP)을 추가로 중복 수행하고 본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연구개발(R&D) 사업: 기한 내 연구과제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일반회계(25개 사업, 1조 3,085억 400만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6개 사업, 1,882억 9,8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1개 사업, 2,589억 5,4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3개 사업, 101억 5,5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개 사업, 41억 4,500만원) 등 3개 회계 및 2개 기금의 47개 사업에 1조 7,700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1조 7,700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수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계획액)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A)							
일반회계	25	1,308,504	1,308,504	-	-	1,308,504	1,308,504	-	-	1,204,31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6	188,298	188,298	-	-	188,298	188,298	-	-	69,07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1	258,954	258,954	-	-	258,954	258,954	-	-	118,628
중소벤처기업 진흥기금	3	10,155	10,155	-	-	10,155	10,129	-	26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2	4,145	4,145	-	-	4,145	4,145	-	-	1,199
계	47	1,770,056	1,770,056	-	-	1,770,056	1,770,030	-	26	1,393,2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는 47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만 2,202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직전년도 대비 사업수는 4개, 과제수는 562개 감소한 것임.

[2020~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사업 및 과제 현황]

(단위: 개, 건, 백만원)

구분	사업 수	과제 수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0년	38	10,698	1,483,456	1,483,456	-	-
2021년	42	10,718	1,722,922	1,722,922	-	-
2022년	51	12,764	1,788,814	1,788,814	-	-
2023년	47	12,202	1,770,056	1,770,030	-	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종료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가 18%로 높은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과제의 종료 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연구과제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에서는 각 종료과제의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2] 2023년 5,573개의 종료과제 중 4,562개(82%)의 과제만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며,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78개의 과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2023년 종료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내 준수 현황]

회계/기금	사업명	종료과제 수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제출기한 미준수	미제출 건수('24.4월말)	기한 준수율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 혁신 신개발	380	314	56	10	83%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34	28	5	1	82%
	공정품질기술개발	394	365	28	1	93%
	창업성장기술개발	1,501	1,340	154	7	89%
	중소기업R&D역량제고	968	771	186	11	80%
	해외원천기술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0	6	4	-	60%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	25	22	2	1	88%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	47	40	7	-	85%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9	8	1	-	89%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	33	28	5	-	85%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33	31	2	-	94%
	건강기능식품개발지원사업	40	39	1	-	98%
	혁신제품고도화기술개발지원사업	30	26	4	-	87%
	중소벤처기업구조혁신지원R&D	61	56	4	1	92%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19	1	18	-	5%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	5	5	-	-	100%
	미세먼지저감실용화 기술개발	2	2	-	-	100%
	예비가젤형기술개발	10	7	3	-	70%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16	16	-	-	100%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51	41	10	-	80%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사업	1	1	-	-	1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54	138	15	1	9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427	366	58	3	86%
	창업성장기술개발	92	77	15	-	84%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계/기금	사업명	종료과제 수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제출기한 미준수	미제출 건수 ('24.4월말)	기한 준수율
특별회계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39	35	4	-	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학연 Collabo R&D	444	423	19	2	95%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100	94	3	3	94%
	기술지주회사자회사 R&BD	10	-	10	-	0%
	지역특화산업육성+	488	177	275	36	36%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	11	11	-	-	100%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10	10	-	-	100%
	산업단지대개조지역산업R&D	48	11	37	-	23%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18	15	2	1	8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29	27	2	-	93%
	스마트소상공인기술육성R&D	15	15	-	-	100%
기후대응기금	그린뉴딜유망기업100	19	16	3	-	84%
소계		5573	4562	933	78	82%

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최종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R&D사업 종료과제의 정산 후 누적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종료과제의 연구개발비 회수금 및 환수금 등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3]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4]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4년 4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③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월 말 기준 2023년 종료과제 5,573건 중 1,472건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

또한 정산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2018년도 종료과제 13억 9,700만원, 2019년도 종료과제 9억 8,200만원, 2020년도 종료과제 12억 3,500만원, 2021년도 종료과제 24억 6,300만원, 2022년도 종료과제 75억 6,300만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관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현황(2024.4월말 기준)]

(단위: 개, 백만원)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국고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19년	5,091	-	5,091	8,955	7,973	982
2020년	4,077	-	4,077	6,138	4,903	1,235
2021년	3,685	-	3,685	9,418	6,955	2,463
2022년	5,154	-	5,154	14,854	7,291	7,563
2023년	5,573	1,472	4,101	9,785	4,050	5,73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인 연구개발비 환수금 역시 환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연구개발환수금 결정액 162억 5,500만원 중 26억 2,400만원만 납부되고, 미수납 연구과제 122건에 대한 미수납액 136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미수납액은 499억 1,800만원임.

4.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5.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 금액
7. 관리지침의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제3항의 불인정 금액 및 다음 각 호에 대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 분담금 포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단, 지자체 분담금 회수절차는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직접비 사용 잔액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환수금 징수현황(2024.4월말 기준)]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환수결정액	주관/참여기관→ 전담기관 환수금 납부액	미수납 연구과제 수	미수납액	누적 미수납액
2016년	3,936	2,673	11	1,263	1,263
2017년	20,995	13,084	65	7,911	9,174
2018년	19,951	10,655	99	9,296	18,470
2019년	12,069	5,617	56	6,452	24,922
2020년	9,848	5,780	45	4,068	28,990
2021년	9,652	5,443	33	4,209	33,199
2022년	5,460	2,372	20	3,088	36,287
2023년	16,255	2,624	122	13,631	49,918

주) 법정소송 진행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5]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제재부가금 및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수결정액 및 정산금 회수를 위해 독촉·압류·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중소기업의 폐업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징수가 지연되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고 있다고 설명함. 장기 미납 기업의 대부분이 부도나, 휴·폐업 등 경영 악화 기업으로 추가적인 사후제재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6)]

그러나 연구개발환수금 등에 대해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2020회계연도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가 의결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하였으나,[7)] 수납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020회계연도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2020회계연도 결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 환수금 및 기술료 미수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할 것(제도개선)
○ 2021회계연도 결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환수금 및 기술료의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수납실적을 반영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R&D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과제 기간동안 지정기관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실제 부실화되어 연구개발비 회수금·환수금 등이 미반납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문제과제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지 않아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문제과제 판정 후 지체없이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연구기간이 중단된 연구과제(문제과제)는 202건이고, 주요 중단·제재사유는 자의중단 71건, 보고서 미제출 38건, 폐업중단 22건,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21건 등임.

[2023년 연구기간이 중단된 연구과제의 중단·제재사유]

(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건)

	자의중단	폐업중단	불량	부정집행	미제출	기타	소계
사유	71	22	7	21	38	43	202

주) 연구과제 1건은 폐업중단과 부정집행이 동시에 적용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5년 이상 장기 미납건 중 파산·청산 등은 33.6%, 휴업·폐업 등을 포함한 경영악화는 51.3%에 해당함.

7)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수결정액 및 정산금 회수를 위해 독촉기간 단축(60일→25일), 압류범위의 확대(예금→부동산, 임차보증금등 포함)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는 문제과제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고 제재처분 및 환수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8)]

그러나,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최초 제재처분평가단 개최일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① 최초 제재처분평가단 개최일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가 38건이고, ②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한 경우 중 문제과제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가 12건으로 총 50건의 연구과제가 제재처분평가단 개최기한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중단된 연구과제의 제재처분평가단개최일까지의 소요기간]

(2024년 4월 말 기준, 단위: 건)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	0일	1~91일	92~182일	183일~1년	1년 이상	소계
55	71	12	26	29	9	202

주) 2023년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최초 제재처분평가단개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단된 연구과제의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 기간]

(2024년 4월 말 기준, 단위: 건)

0~91일	92~182일	183일~1년	1년 이상	소계
0	43	10	2	55

주) 2023년 중단된 연구과제 중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 과제의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4월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과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 장기 미처리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2023년 신규 중단된 연구

8)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지침)
4) 제재처분평가단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령 제29조・제29조의2의 제재처분 및 환수 등과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극히 불량 등)과제의 제재처분 및 환수 심의
㉯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인 경우,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연구개발비 유용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처분 및 환수 심의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심의
㉱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처분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개최시기 : 문제과제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수사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 또는 판결 확정일을 문제과제 판정일로 본다.)
④ 시효기간 :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
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평가단 개최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소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임.

폐업중단, 자의중단된 연구과제는 시일이 도과할수록 연구자의 소재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부정사용액 및 제재부가금의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연구중단일으로부터 6개월 도과하기 전에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도록 하여 연구개발비의 정산 및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 건물 공사지연에 따른 도입 장비 활용 부진 등

가. 개 요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3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집행률 100%).[9)]

[2023년도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1,350	1,350	-	-	1,350	1,350	-	-	1,320

제조기술융합센터는 천안 아산 R&D 집적지구에 제조기술융합센터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장비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통합 운영시스템과 제조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조공정 스마트화 데모·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1~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사업임.

9) 일반회계-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2134-355)(중소기업정책실)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사업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

<table>
<tr><th>구분</th><th>1차년도
(2020.10.~
2021.4.)</th><th>2차년도
(2021.4.~
2021.12.)</th><th>3차년도
(2022.1.~
2022.12.)</th><th>4차년도
(2023.1.~
2023.12.)</th><th>5차년도
(2024.1.~
2024.12.)</th></tr>
<tr><td>센터건축</td><td>-</td><td colspan="2">설계</td><td colspan="2">착공</td><td>준공</td></tr>
<tr><td rowspan="2">클라우드 통합
운영시스템</td><td rowspan="2">클라우드 기반
통합운영시스템1</td><td rowspan="2">클라우드 기반
통합운영시스템2</td><td>추가모듈</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 rowspan="2">주요 업종별 실증기업 분석 및 시법 적용</td></tr>
<tr><td rowspan="2">제조데이터 분석서비스</td><td rowspan="2">-</td><td rowspan="2">제조기술융합
분석시스템 구축</td></tr>
<tr><td colspan="3">-</td></tr>
<tr><td>제조공정스마트화
데모・실증</td><td>제조공정 스마트화
데모공정 구축
(비전검사)</td><td>-</td><td>제조공정 스마트화
데모공정 구축
(수치제어가공기)</td><td>제조공정 스마트화
(사출성형취출
로봇/MCT가공)</td><td>제조공정 스마트화
(공정물류
자동화)</td></tr>
</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 사업은 해당 센터에 구축되는 장비 중 대다수를 센터 완공 전에 도입함에 따라 센터 완공 전까지 해당 장비의 온전한 사용이 어렵고 내구연한 및 무상 AS기간이 실사용 없이 도래하게 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시 건물 완공 시기에 맞추어 장비를 도입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 사업은 '제조기술융합센터'의 설계・공사는 지방비로, 해당 센터에 구축되는 테스트 장비 및 SW서비스 등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사출성형 취출 로봇 공정,[10] 가공공정 시범공정, 설비데이터 수집관리 관련 장비 3종 도입에 1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전산교육장・홍보시스템 솔루션 등 도입에 2억원이 집행되었음.

10) 사출성형 취출(取出) 로봇이란, 사출기에서 성형이 완료된 플라스틱 제품을 잡아서 빼는 로봇을 의미함.

[제조기술융합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연차별 투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 제조기술융합테스트베드 구축 (국비)	1,350	2,750	2,450	1,350	1,320	9,220
① 제조공정 스마트화 시범구축	380	-	450	1,050	-	1,880
- 사출·주변기기 로봇 시범공정	-	-	-	600	-	600
- 가공공정 스마트화 시범구축(MCT)	-	-	-	450	-	450
② 제조공정 스마트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950	1,450	1,730	100	650	4,880
- 설비 데이터 수집관리 장비	90	130	210	100	130	660
③ 제조데이터 분석 서비스	-	1,280	200	-	470	1,950
④ 기타	20	20	70	200	200	510
- 유틸리티성 기타 장비 및 전산교육장	20	20	70	200	200	510
2 센터운영 및 건축(지방비 현금/현물)	2,170	3,420	6,870	13,740	8,350	34,550
- 기반구축(설계, 건축 등)	1,670	2,620	5,570	12,060	6,850	28,770
- 사업운영(인건비, 간접비 등 포함)	500	800	1,300	1,680	1,500	5,780
2-1 제조기술융합센터R&D(민간 현물)	-	151.2	151.2	151.2	151.2	604.8
합 계(정부+지방비)	3,520	6,170	9,320	15,090	9,670	43,770
합 계(정부+지방비+민간)	3,520	6,321.2	9,471.2	15,241.2	9,821.2	44,374.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제조데이터 분석서비스 관련 도입 장비내역]

구 분	개 요	금액
사출성형 취출 로봇 공정	사출기 및 주변기기와 연계된 시범공정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 통신장비 및 IoT장비(진동·위치 센서 등)를 연동하여 가공설비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연계 추진	6억원
가공공정(MCT) 시범공정	협동로봇과 이송적재 장치 기반의 머신텐딩, 머시닝센터 기반 공정 지능화 및 머신텐딩 연계를 통한 MCT공정 스마트화 시범 구축	4억 5,000만원
설비데이터 수집관리 장비	중소기업 공정설비 및 검사장비 등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장비	1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장비는 제조기술융합센터가 아직 완공되지 않음에 따라 충남 테크노파크 데모룸에 임시로 설치되어 전시·운영 중에 있으나, 해당 구축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실제 테스트베드 공정에 온전히 투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임.[11]

11)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사업의 장비 설치는 목표(26대) 대비 24대가 구축되어 운영 중으로, 대형(데모용) 장비 2종(사출·다축가공장비)는 2024년 11월 센터 건축 후 신규 장비로 설치할 계획임.

건물 완공 전 도입된 다수의 장비는 본 센터 구축 전에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AS기간(1년) 및 내용연수의 적용을 받게 되어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건물 완공 후 해당 장비를 다시 이전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사업은 2024년 10월 완공예정에 비해 공정률이 미진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건물이 연내 완공되고 장비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 탕정지구에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2개월 간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내 건물을 완공하고 12월까지 기도입 장비를 이전하고 신규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사업 개요]

조감도	사업개요
	ㅇ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RD-1(②-1)(불당동 650-3) ㅇ 사업기간: 2023. 01 ~ 2024. 10. (22개월) ㅇ 건축비: 23,220백만원 - 건축비: 15,505백만원 - 설계, 감리 등 부대비용: 7,715백만원 ㅇ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대지면적 5,012.36m^2, 연면적: 6,675.57m^2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사업계획은 2023년 10월에 센터를 준공하여 당해 연도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센터 공사계획을 고려하여 장비도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사용허가 협의지연, 기본계획 수립지연, 설계변경(4층→6층), 당초 계획에 없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사업관리계획 재수립·심의, 폭염·혹한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 건축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장비 설치 역시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사업기간 22개월 중 18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현재 준공률이 53.2%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보다 완공일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건물 완공지연에 따라 국비로 투입되는 2024년 장비도입사업 역시 장비도입 이후 임시거치 및 이전문제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사업단 구성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주의

가. 개 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은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특화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5억 1,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2)]

[2023년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1,513	1,513	-	-	1,513	1,513	-	-	971

참고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지방비로는 인천 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 시설을 구축하고, 국비로는 의약·바이오 창업기업의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직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내외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해당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3년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구분	주요내용
개요	■ 지역·예산: 인천 송도, 2,726억원 (정부 1,095억원 + 인천 1,550억원 + 민간 81억원)
	■ 사업기간(9년): 2023~2031년, (2032년 이후 자립)
대상	■ 단백질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8대 분야 신약개발 창업기업
사업 내용	■ 시설·장비: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입주공간,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등
	■ 프로그램: 바이오 R&D 및 사업화, 산·학·병·연 협업 및 네트워킹, 시험분석·검사·제조 서비스, 법률·행정·특허 등 바이오 스타트업 특화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2) 일반회계-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5133-302)(창업벤처혁신실)

[K-바이오 랩허브 네트워크 구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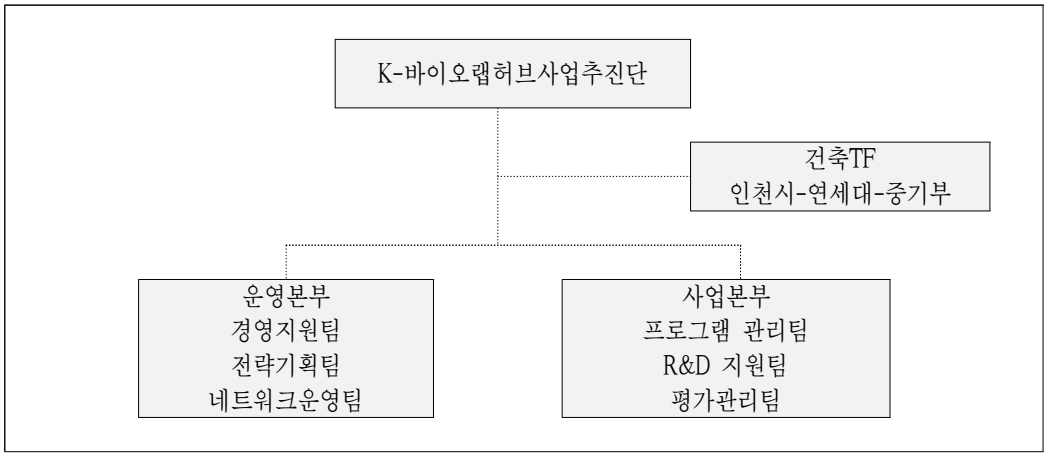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K-바이오 랩허브 사업추진단의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사업이 차년도로 이월 추진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향후 사업단 구성 시 인력미충원에 따른 사업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개요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K-바이오 랩허브 사업추진단은 사업단장은 전문가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이하 직원은 공고를 통해 인원을 충원고자 하였으며, 사업단 구성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인천시 및 연세대학교의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8월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023년 10~11월 사업추진단 구성을 위해 단장 선임 공모와 직원 채용을 공모하였으나, ① 공모에서 선임된 단장이 자진포기하였고, ② 팀장급 직원 채용공고 결과 적격자가 없어 결과적으로 2023년 11월~2024년 1월까지 단장과 팀장직을 재공고하여 선발하게 되었음.

채용 지연으로 인해 2023년 11~12월 직원 2명이 근무를 시작하고, 2024년 2월부터 단장 1인, 팀장 3인, 직원 9인으로 사업추진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음.

[2023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추진경과]

연월	추진 경과
2023.1.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기본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2023.3.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업무협약식(MoU)
2023.4.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업무협약식(MoU)
2023.8.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2023.9.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운영지침 마련
2023.10. ~11.	사업단장 선임을 위한 공모 및 직원 채용 공고 * 채용결과: 단장 자진포기(10.23.), 팀장 적격자 없음(11.20.), 직원 2인 채용(11.27., 12.4.)
2023.10.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사무공간 임차 계약
2023.11. ~2024.1.	사업단장 선임 재공모 및 직원 채용 공고 * 채용결과: 단장 1명, 팀장 3명, 직원 7명 [팀장 2명은 직무파견(기정원 1명, 연세대 1명) 형식으로 근무 중 ‘
2023.12.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4.2.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추진단 1단계 인력구성 완료 및 업무 개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추진단 채용지연은 해당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이어졌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3년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 3억 5,000만원 중 ① 사업추진단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2,000만원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수행하여 연내 완료하였으나 실제 대금은 이월하여 2024년 1월 지급하였고, ②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하여 2024년에야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ISP’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2023년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실집행 내역]

(2023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1,513	1,513	293	971
▪ (사업단 운영 및 관리)	1,163	1,163	293	621
▪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350	350	-	3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2024년 6월 현재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ISP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단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입찰공고, 7월 말 계약체결 후 사업기간(4개월)이 종료되는 대로 ISP 산출물을 바탕으로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본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 구축기관인 인천광역시의 건축공정 모니터링 및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차년도로 이월된 ISP 예산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ISP 사업의 연내 집행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ISP 최종산출물을 활용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계획]

일 자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24년	ISP 수립 용역	-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및 사업단 독립에 따른 ERP 구축을 위한 ISP 용역 발주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ISP 최종산출물 활용, 네트워킹 플랫폼의 3개년 단계적 구축(~2027년)
2025년	ERP구축	- 사업단 독립 前 재무·회계 시스템 필요성에 따른 ERP 구축 (ISP 최종산출물 기반 구축)
2026년	공통	-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홈페이지 및 ERP 유지보수
2027년	공통	- 네트워킹 플랫폼 오픈(2027년 말~) - ERP·홈페이지·네트워킹 플랫폼 연동 구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2023년 예산은 K-바이오 랩허브 사업단이 연초부터 운영될 것을 전제로 운영비가 편성되었으나 사업단 기획 및 인력충원이 늦어져 대부분의 운영비가 실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사업 예산에 K-바이오 랩허브 사업단의 운영비를 12개월분인 11억 6,300만원 전액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3년 8월에야 사업단 설치·운영방안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2023년 10월 사무공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력 미충원 등으로 인해 운영비 집행액은 2억 9,300만원으로 대부분 실집행되지 못하였음(실집행률 25.2%).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운영사업 관련 예산 편성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2023년 K-바이오 랩허브 사업단 세부편성내역]

세사업 명	편성 근거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R&D)	ㅇ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 1,513백만원 요구 (2022년 대비 순증) - 스타트업과 산·학·연·병·VC 협업 주체 간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소통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빅데이터화를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홈페이지 시스템 설계)비 350백만원 요구 - 사업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1,163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네트워크플랫폼구축 : 350백만원 x 12/12 = 350백만원 사업단 운영 및 관리비 : : 1,163백만원 x 12/12 = 1,163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 기술사관 육성사업: 사업 이탈률 증가 및 저조한 자격증 취득 실적 문제

가. 개 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은 특성화고(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을 양성하려는 ‘기술사관 육성’ 사업과 중소기업 재직자(채용예정자 포함)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려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205억 1,000만원 중 204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집행률 99.8%).[13)]

‘기술사관 육성’ 내내역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54억 7,400만원 중 5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기술사관 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학협력인력양성	51,260	51,260	-	-	51,260	51,260	-	90	48,185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20,510	20,510	-	-	20,510	20,464	-	46	20,510
기술사관 육성	5,474	5,474	-	-	5,474	5,450	-	24	5,474

나. 검토의견

기술사관 육성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미진학하는 비율(이탈률)이 증가하고, 산업기사 취득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인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일반회계-산학협력인력양성(5431-301)(중소기업정책실)

기술사관 육성 사업은 특성화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계고(2년)와 전문대(2년)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을 4년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하려는 것으로, 2023년 기술사관 17개 사업단을 통해 17개 전문대 463명, 34개 직업계고 576명의 현장기술인력을 교육하였음.

[2023년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사업단 교육현황]

(단위: 명)

사업단	2022년	2023년	사업단	2022년	2023년
두원공과대(기계)	95	75	대구보건대(치기공)	-	-
두원공고	3	8	경북공고	-	20
삼일공고	5	4	대구공고	-	12
이천제일고	7	17	대중금속공고	-	22
청강문화산업대	73	46	울산과학대	-	-
대덕대	50	49	울산공고	-	86
충남기계공고	-	-	동의과학대(반도체)	-	-
영남이공대(기계)	99	65	대광고	-	10
영남공고	4	7	동의공고	-	13
대구공고	10	14	영진전문대	-	-
제주관광대	45	39	대구여자상업고	-	20
한림공고	63	54	경북공고	-	20
동의과학대(기계)	136	131	영남이공대(반도체)	-	-
동의공고	32	28	경북기계공고	-	17
해운대공고	12	1	금오공고	-	7
경남공고	43	44	구미전자공고	-	-
부산공고	-	-	대구마이스터고	-	10
서정대	-	-	두원공과대(전기차)		
전곡고	5	3	일산고	-	8
의정부공고	4	21	고양고	-	17
대구보건대(환경)	-	22	세명컴퓨터고	-	16
경북공고	19	22	배화여자대	-	27
대구공고	19	19	선일빅데이터고	10	8
영남공고	14	12	경복비즈니스고	9	12
경남정보대	-	-	경기상업고	2	-
경성전자고		18	분당경영고	1	-
부산과기대	60	29	서울아이티고	1	-
울산공고	1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관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실제 전문대로 진학하는 비율은 47.8%임. 특성화고2년+전문대2년으로 구성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절반 수준의 진학률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전문대 과정을 거쳐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자 유도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사업단 교육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사업단 수 (협약 종료 사업단 제외)	고3 참여인원 (A)	대학진학인원 (B)	대학 미진학인원 (C=A-B)	진학률 (B/A)	미진학률 (C/A)
2020	10	315	273	42	86.7	13.3
2021	9	348	159	189	45.7	54.3
2022	10	189	86	103	45.5	54.5
2023	16	312	147	165	47.1	52.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기술사관 육성’ 사업의 졸업생인 전문대생 졸업생의 취업률은 76.9% 산업기사 취득률은 63.7%로 산업기사 취업률은 69.3%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사업을 이수한 학생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거나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자격을 획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술사관 사업의 중소기업 취업 및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현황]

구분	2020년 사업 (2021.2. 기준)	2021년 사업 (2022.2. 기준)	2022년 사업 (2023.2. 기준)	2023년 사업 (2024.2. 기준)
기술사관 취업률	65.3%	74.1%	71.2%	76.9%
산업기사 취득률	50.4%	61.1%	69.3%	63.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술사관 졸업생(전문대졸업생)의 취업 및 기사 자격증 취득 현황]

(단위: 명, %)

사업단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기사 취득수	취득률	사업단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기사 취득수	취득률
두원공과대(모델링)	17	17	100	17	100	부산과학기술대	4	2	50	1	25
두원공과대(전기차)*	-	-	-	-	-	대구보건대(환경)*	-	-	-	-	-
청강문화산업대	19	7	36.8	4	21	대구보건대(치기공)*	-	-	-	-	-
대덕대	18	17	94.4	16	88.9	서정대*	-	-	-	-	-
영남이공대(기계)	28	11	39.3	17	60.7	배화여자대*	-	-	-	-	-
영남이공대(반도체)*	-	-	-	-		영진전문대*	-	-	-	-	-
제주관광대	12	11	91.7	0	0	경남정보대*	-	-	-	-	-
동의과학대(기계)	39	19	48.7	15	38.5	울산과학대*	-	-	-	-	-
동의과학대(반도체)*	-	-	-	-	-	합계	137	84	61.3	70	51.1

주) 2022년 및 2023년도 신규참여 사업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은 정원구조[14] 상 대입단계에서 참여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부담과 일반대 진학 희망 등 진로변경으로 인해 필수불가결하게 탈락하는 인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산업기사 취득률은 2021년 말부터 기술사관 별도교육시간을 축소함에 따라[15]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단의 자격증 취득 특별반 추가 운영을 유도하여 산업기사 취득률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임.

기술사관 육성 사업은 특성화고 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성화고와 전문대 과정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관리할 필요가 있음.

14)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학년별 20명으로 각 고등학교의 정원은 총 40명 내외이고, 전문대 입학정원은 총 30명 내외로 대입단계에서 구조적인 탈락이 발생한다고 설명함.

15) 2021년 12월 정규교육과정 외 별도 교육시간 부담에 따라 중도탈락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별도 교육시간을 축소(200~400시간→150~200시간 내 자율선택)하였음.

5.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부진의 분석 및 점검 필요

가. 개 요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해 국가-사업주-근로자의 매칭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등의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현액 2,078억 9,900만원 중 2,045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4%)되고 33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내역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197억 9,100만원 중 164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33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인력유입인프라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력유입인프라	211,174	211,174	-	-	211,174	207,823	-	3,351	123,339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207,899	207,899	-	-	207,899	204,548	-	3,351	121,68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9,791	19,791	-	-	19,791	16,440	-	3,351	-

나. 검토의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년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부진 사유를 분석·점검하여, 향후 유사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6) 일반회계-인력유입인프라조성(5431-302)(중소기업정책실)

근로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사업에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였음.

①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부터 운영 중으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천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근로자 33%: 기업 67%)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 중임.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근로자 24%, 기업 40%, 정부 36%)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2022년 말 종료되었음.

③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년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동일 비율로 공동 적립 후 3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1,800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근로자 33%, 기업 33%, 정부 33%), 2023년 말 종료되었음.

[2023년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현황]

구 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 내일채움공제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연도		2014년~	2018~2022년 (2023년 이후 신규 가입 불가)	2023년 (2024년 이후 신규 가입 불가)	2016~2023년 (2024년 이후 신규 가입 불가)
가입대상	재직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근로자
	연령	-	만 15~34세 이하	만 15~34세 이하	만 15~34세 이하
	소득	-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업종	모든 업종 (단, 주점업 등 일부 제외)	모든 업종 (단, 주점업 등 일부 제외)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영위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영위기업
가입기간		5년	5년	3년	2년
납입금액		근로자:기업 = 1:2(이상) (월 최소 34만원)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청년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2023년 예산		15.3억원	1,866억원	198억원	6,403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종전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으로서 청년 취업인력이 부족한 ‘소규모(50인 미만) 특정업종(제조·건설업) 중소기업 저소득 청년 재직자’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기조 하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인원은 5,465명으로, 목표인원 15,000명의 36.4% 수준이며, 이에 따라 예산액 197억 9,100만원 중 60억 9,900만원만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30.8%로 저조하였음.

[2023년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상품	신규가입	2023년 말 유지인원	2023년 예산액	2023년 실집행액	실집행율	비 고
내일채움공제	12,422 (목표 10,000)	36,579	1,533	1,429	93.2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69,083	186,575	160,021	85.8	2022년 말 (가입)종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5,465 (목표 15,000)	5,246	19,791	6,099	30.8	2023년 말 (가입)종료
합 계	17,887	110,908	207,899	167,549	80.6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부처 예산요구안 편성 시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모든 업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업종 제한(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가입 가능한 대상인원이 422만명에서 20만명으로 95.3% 감소하였고, 가입요건 강화로 인해 가입 가능대상이 한정되어 지원프로그램 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저축’을 신설하여 추가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였는데,[17]

청년재직자 자산형성 상품을 새로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참여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중도해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전략」발표”, 2024.5.1.

[2024년 중소기업 도약 전략 중 장기 재직유인 관련 주요내용]

❶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 다양화,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수요맞춤형 제도로 개편강화

* 가입목표 : (2023) 1.2만명(실적) → (2024) 1.4만명 → (2025) 2.0만명 → (2026) 2.5만명

** 현행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및 혜택

: (기간) 최소 5년 이상 ※ 中企 평균 근속연수 3.9년(통계청) 고려 검토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연계(7년) 시 격려금 400만원

❷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추가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저축 통장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신설 검토

* 매월 일정금액 불입(청년 근로자) + 가산금리 우대(은행+中企)

❸ 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운영하여 우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공동 발굴·확대*강화

* (例)「(중기부)참 괜찮은 중소기업」+「(고용부)강소기업」=「가칭참 괜찮은 강소기업」으로 통합

** (안) 부처별 각각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통합 제공하고, R&D·수출 등 가점 추가발굴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6. 지식산업센터(자율, 제주, 세종): 지식산업센터 실집행 부진 및 공실률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비수도권지역(자율), 제주, 세종지역에 중소기업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1,234억 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고, ‘지식산업센터(제주)’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100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으며, ‘지식산업센터(세종)’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59억 9,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8)]

[2023년도 지식산업센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식산업센터(자율)	123,408	123,408	-	-	123,408	123,408	-	-	63,770
지식산업센터(제주)	10,001	10,001	-	-	10,001	10,001	-	-	4,249
지식산업센터(세종)	5,995	5,995	-	-	5,995	5,995	-	-	5,200

2023년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대해 1,234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19)] 지식산업센터(제주) 및 지식산업센터(세종) 사업은 각각 1개 사업에 대해 100

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지식산업센터(제주)(5151-302),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중소기업정책실)

19) 춘천(37억 8,000만원), 나주(37억 8,000만원), 영광(43억 7,000만원), 창원(93억 1,800만원), 부산에코델타(60억원), 대구(61억 3,100만원), 광주광역시(94억 5,000만원), 제천(68억 2,200만원), 홍성(94억 5,000만원), 전주(104억 5,000만원), 광양(61억 2,100만원), 충주(30억원), 영동(76억 8,300만원), 아산(37억 8,800만원), 서천(37억 8,700만원), 화순(30억원), 경산(16억원), 광주광역시(12억 5,000만원), 강릉(12억 5,000만원), 금산(12억

억 100만원, 59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음.[20]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다수의 사업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국비 예산 총액을 면밀히 계산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실집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교부된 31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중 21개의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이고, 이 중 7개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보다 당해연도 집행액이 적어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재이월되었으며, 5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집행액이 전무하였음.[21] 또한, 15개의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사업은 2023년 교부된 국비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자율계정 특성 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교부 받고 있어 중앙 부처 차원의 실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건축 공사 특성 상 행정절차 지연 및 건설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22] 중소

5,000만원), 김제(52억 5,000만원), 순창(65억원), 영천(20억원), 김해(12억 2,000만원), 광주광역시(10억원), 울산(10억원), 천안(10억원), 순천(10억원), 밀양(6억 4,000만원)

20)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단계에서는 2023년도 교부액 1,378억 8,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2억 5,400만원, 전전년도 이월액 65억 2,100만원을 합한 1,746억 6,100만원 중 794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952억 3,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21) 보조금의 재이월 사업(7개): 광주창업기반성장지원센터, 아산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화순바이오헬스지식산업단지, 제천천연물지식산업단지, 금산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김해오픈이노베이션지식산업단지, 세종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0원 사업(5개): 화순바이오헬스지식산업단지, 강릉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금산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김해오픈이노베이션, 세종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부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가능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총액만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예산의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소요기간 및 사업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기존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보조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사업진도, 집행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임.

[2023년 지식산업센터 사업별 실집행 현황(실집행률 70% 미만)]

(단위: 백만원, %)

단지 명 (00지식산업단지)	사업기간 (연도)	부처 집행내역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피보조기관명	국고보조율 (%)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전전년도 재이월액)	예산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에코델타	20-26	6,000	6,000	6,000	100	부산광역시	57.3	6,000	1,154	-	7,154	1,154	6,000	-	16.1
북구 임대형	20-25	6,131	6,131	6,131	100	대구광역시	69.6	6,131	59	-	6,190	1,249	4,941	-	20.2
창업기반성장지원센터	20-25	9,450	9,450	9,450	100	광주광역시	40.7	9,450	2,982	184	12,616	215	12,401	-	1.7
제천 천연물	20-24	6,822	6,822	6,822	100	충남제천시	54.6	6,822	4,479	-	11,301	4,226	7,075	-	37.4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20-24	10,450	10,450	10,450	100	전북전주시	57.1	10,450	-	-	10,450	5,302	5,148	-	50.7
광양공공임대형	20-24	6,121	6,121	6,121	100	전남광영시	59.2	6,121	3,025	-	9,146	3,237	5,909	-	35.4
영동 일라이트	21-24	7,683	7,683	7,683	100	충북영동군	51.9	7,683	-	-	7,683	411	7,272	-	5.3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단지 명 (00지식산업단지)	사업 기간 (연도)	부처 집행내역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예산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피보조기관명	국고보조율 (%)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전전년도 재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아산공공임대형	21-25	3,788	3,788	3,788	100	충남 아산시	51.1	3,788	1,000	-	4,788	525	4,263	-	11.0
서천바이오특화	21-25	3,787	3,787	3,787	100	충남 서천군	69.9	3,787	397	-	4,184	1,881	2,303	-	45.0
화순바이오헬스	21-25	3,000	3,000	3,000	100	전남 화순군	47.2	3,000	305	-	3,305	-	3,305	-	-
경산	21-26	1,600	1,600	1,600	100	경북 경산시	38.1	1,600	21	-	1,621	1,210	411	-	74.6
광주에너지산업	22-25	1,250	1,250	1,250	100	광주 광역시	44.0	1,250	-	-	1,250	246	1,004	-	19.7
강릉공공임대형	22-25	1,250	1,250	1,250	100	강원 강릉시	64.0	1,250	-	-	1,250	-	1,250	-	-
금산공공임대형	22-25	1,250	1,250	1,250	100	충남 금산군	59.5	1,250	500	-	1,750	-	1,750	-	-
김제전기특장	22-25	5,250	5,250	5,250	100	전북 김제시	53.7	5,250	-	-	5,250	41	5,209	-	1.0
김해오픈이노베이션	22-25	1,220	1,220	1,220	100	경남 김해시	34.0	1,220	500	-	1,720	-	1,720	-	-
탄소중립에너지벤처집적	23-27	1,000	1,000	1,000	100	울산 광역시	59.5	1,000	-	-	1,000	39	979	-	3.9
천안	23-27	1,000	1,000	1,000	100	충남 천안시	53.6	1,000	-	-	1,000	21	979	-	2.1
순천생물전환바이오특화	23-27	1,000	1,000	1,000	100	전남 순천시	50.0	1,000	-	-	1,000	52	948	-	5.2
세종공공임대형	21-26	5,995	5,995	5,995	100	세종	32.1	5,995	1,000	-	6,995	-	6,995	-	-
제주	21-24	10,001	10,001	10,001	100	제주	53.5	10,001	-	-	10,001	4,505	5,496	-	4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이미 구축된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산업센터 구축 이후에도 입주율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의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4월 현재 18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고, 해당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16.4% 수준임.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형으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임차료 등의 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10% 이상인 지식산업센터가 10개소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임.

2023년 현재 48개의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산업센터 구축 완료 후 국비 투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식산업센터의 중소기업 입주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률 관련 사후 인센티브·페널티 등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23)]

나아가 공공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 지식산업센터 역시 과잉구축됨에 따라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 지식산업센터가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까지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식산업센터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2024년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공실 현황]

(단위: 개소, %)

	지자체	센터명	개소일	2023년 (연말기준)						2024년 (4월기준)					
				전체 실수	입주 기업 수	입주 실수	공실 수	입주율	공실율	전체 실수	입주 기업 수	입주 실수	공실 수	입주율	공실율
1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금곡점)	2017.3.	68	39	66	2	97.1	2.9	68	38	68	-	100	**0.0**
2	대구 북구	대구지식산업센터	2016.11.	46	25	37	9	80.4	19.6	46	26	40	6	87.0	**13.0**
3	광주 동구	I-PLEX광주 (광주지식산업센터)	2016.7.	63	54	59	4	93.7	6.3	64	57	61	3	95.3	**4.7**
4	대구 수성구	SW융합 테크비즈센터	2019.3.	50	31	36	14	72.0	28.0	50	34	39	11	78.0	**22.0**
5	대전 동구	대전지식산업센터	2020.4.	51	29	48	3	94.1	5.9	51	32	51	-	100	**0.0**

23)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부터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편성이 지원계정에서 자율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계정의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교부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일괄적으로 구축시기를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나, 향후 효율적인 센터운영, 입주기업지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관하 지역 센터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임.

(단위: 개소, %)

	지자체	센터명	개소일	2023년 (연말기준)						2024년 (4월기준)					
				전체 실수	입주 기업 수	입주 실수	공실 수	입주 율	공실 율	전체 실수	입주 기업 수	입주 실수	공실 수	입주 율	공실 율
6	경남 진주	진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0.1.	60	30	53	7	88.3	11.7	66	31	54	12	81.8	**18.2**
7	대구 달서구	제봉뜰 두류봉제 지식산업센터	2021.1.	29	28	29	-	100	0.0	29	28	29	-	100	**0.0**
8	충북 청주	미래누리터	2019.12..	38	23	38	-	100	0.0	38	24	38	-	100	**0.0**
9	전북 전주 (덕진구)	전주 혁신창업허브	2020.8.	55	44	49	6	89.1	10.9	55	48	51	4	92.7	**7.3**
10	울산 남구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2020.10.	56	26	38	18	67.9	32.1	56	31	39	17	69.6	**30.4**
11	전북 전주 (완산구)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2022.5.	31	22	31	-	100	0.0	31	21	28	3	90.3	**9.7**
12	경북 포항	포항지식산업센터	2021.3.	52	25	50	2	96.2	3.8	52	21	44	8	84.6	**15.4**
13	부산 남구	부산지식산업센터 (우암점)	2023.6.	40	9	11	29	27.5	72.5	40	11	13	27	32.5	**67.5**
14	강원 원주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2021.12..	83	31	77	6	92.8	7.2	83	34	70	13	84.3	**15.7**
15	충남 천안	충남지식산업센터	2023.1.	53	25	43	10	81.1	18.9	53	26	44	9	83.0	**17.0**
16	전남 고흥	고흥 드론센터	2021.10.	22	19	19	3	86.4	13.6	22	18	18	4	81.8	**18.2**
17	전북 남원	남원 화장품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2022.7.	36	24	28	8	77.8	22.2	36	25	29	7	80.6	**19.4**
18	전남 영광	영광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2023.8.	47	19	23	24	48.9	51.1	47	21	25	22	53.2	**4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지 출>

7.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병행사업의 적정 사업방식 검토 필요

가. 개 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수출 10만달러 미만) 또는 시설·운전자금(수출 1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당초 계획액은 1,038억 5,500만원이었으나 1,500억원을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한 계획현액 2,538억 5,500만원 중 2,53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99.9%).[24)]

[2023년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3,855	253,855	-	253,855	253,574	-	281	200,500
내수기업수출기업화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	100,000
수출기업글로벌화	3,855	153,855	-	153,855	153,574	-	281	100,500

‘수출기업글로벌화’ 내역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을 대상으로 설비도입, 원부자재 매입비용 등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차보전 예산 38억 5,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한 후 이를 직접융자 사업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계획현액 1,538억 5,500만원 중 1,53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중소기업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각종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이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을 병행하는 대신,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방식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각종 융자 사업 중에서

① 당초 직접 융자 방식으로 수행하던 융자사업(신성장기반지원자금사업 중 혁신성장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유망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② 당초 이차보전 방식으로 수행하던 융자사업(신시장진출지원자금사업 중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에 대해 자체변경을 통해 직접융자 방식을 병행하여 지원하였음.

[2023년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및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의 지원방식별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구분	계획액	집행액	지원 내용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지원	융자	745,000	745,000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이차보전) 최대 3%p 이내
		이차보전	4,200	3,716	
		전체	749,200	748,716	
	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	435,000	435,000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차보전) 최대 3%p 이내
		이차보전	2,700	2,294	
		전체	437,700	437,294	
	Net-Zero유망기업	융자	45,000	45,000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이차보전) 최대 3%p 이내
		이차보전	1,200	1,018	
		전체	4,6200	46,018	
	스케일업금융	융자	60,000	60,000	(금리) 신용평가등급별 및 발행증권별 차등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	100,000	100,000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	0 (+150,000)	150,000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차보전) 최대 3%p 이내
		이차보전	3,855	3,574	
		전체	153,855	153,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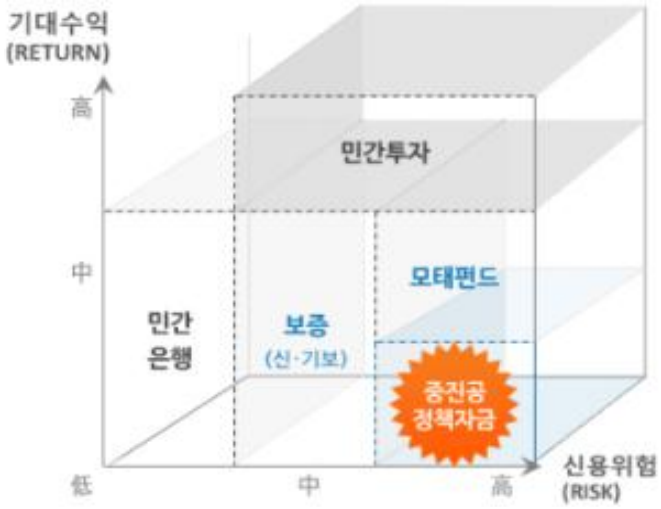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융자 방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심사를 수행함에 따라 매출액·수출실적이 적은 시중은행의 대출심사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저신용기업 등 금융시장 소외영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만기 상환 시 융자금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환입되어 다른 융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반면, 대출심사 및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차보전 방식은 시중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친 융자에 대해 이자비용의 일부를 경감하는 것으로 대출심사·관리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져 리스크가 적으며,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기업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반면, 창업초기, 저신용기업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예산은 지원금으로 소모될 뿐 기금으로 환입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둔 목적이 "민간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초기, 저신용기업 등 금융시장 소외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면, 이미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서 포함할 것인지, 지원해야 한다면 적절한 정책금융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자금체계]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고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는 4대 재정혁신 방안 중 하나로서 정책금융에 대해 직접금융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25]

중소벤처기업부는 외형적인 예산규모 절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지원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둘째, 2023년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사업은 당초 이차보전 방식으로 기금운용계획이 편성되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의 신규 융자사업을 신설하여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기금 자체변경을 통한 사업 확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수출기업 글로벌화 내역사업을 2023년부터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3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체변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하여 해당 예산을 직접융자로 집행하였음.

[2023년도 수출기업글로벌화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수출기업글로벌화	3,855	153,855	-	153,855	153,574	-	281	100,500
(기타민간 융자금)	-	150,000	-	150,000	150,000	-	-	89,370
(이차보전금)	3,855	3,855	-	3,855	3,574	-	281	11,130

①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1년간 수출실적의 합계가 10만 달러(1억 3,16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상대적으로 민간금융 활용 가능성이 높아 그 성질상 이차보전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②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은 2023년부터 이차보전지원 방식으로 사업수행방식이 바뀌었는데, 해당 내용으로 정부 기금 편성 및 국회 심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자체변경을 통해 사실상 신규 융자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금 계획안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며,

25) 4대 재정혁신(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
(정책금융)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는 절감하되 수혜규모는 확대 (예,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 방식 전환)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검토

③ 자체변경을 통한 증액 규모가 1,500억원으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세부사업의 당초 계획액 1,03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세부사업의 신설에 맞먹는 상당한 기금의 자율적 운용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였고, 이차보전 지원 시 민간 금융 활용이 어려운 수출기업에 대해 직접융자가 필요하여 치차보전 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직접융자사업을 추가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 긴급한 소요, 기존사업 보완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26]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기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융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 제한 취지에 더욱 부합하지 않음.

---

2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8. 연수사업: 강원테크노파크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축 사업 보조금 전액 교부 부적정

가. 개 요

‘연수사업’ 사업은 중소기업의 재직자의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연수원 및 배움터 등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427억 2,900만원 중 425억 4,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99.6%).[27)]

[2023년도 연수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연수사업	42,729	42,729	-	42,729	42,542	-	187	23,910
반도체교육센터장비구축	20,000	20,000	-	20,000	20,000	-	-	-

강원도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테크노파크(주관기관)에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를 건립(지방비 260억원)하고, 반도체 교육 실습장비를 구축(국비 200억원)하는 것으로,

[강원도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 개요]

□ (사업명)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축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6월 23일 ~ 2025년 12월 31일(30개월)
□ (사업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연수사업) 2023년도 장비 구축 예산 200억원
□ (장비구축 현황) 교육센터 장비 36종 140대 확정(2023.9.) 및 계약완료(2023.12)
○ (도입확정) : 36종 140대
- 설계교육장비 : 반도체회로설계 및 전산장비 등(3종 67대)
- 공정교육장비 : 산화 및 포토, 식각, 증착장비 등(17종 40대)
- 측정·분석교육장비 : 구조, 원소, 형상 분석 장비 등(9종 11대)
- 유틸리티 : GAS CABINET, SCRUUBER 등 부대설비(2종 3대)
- 유지보수 : 유지보수 기기능사 실습장비(1종 10대)
- XR교육장비 : 하드웨어, Etcher 교육 프로그램 등(4종 9대)
○ (계약완료) : 35종 119대
□ (향후계획) 현재 교육센터 건물 건립 및 교육장비 제작 중이며, 장비는 계약일정에 따라 순차 도입 후 예산 집행 예정(중도금, 잔금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7)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연수사업(5451-307)(중소기업정책실)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원기관으로서 교육센터 장비구축 예산 사업비 지급 및 집행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해당 사업 예산 200억원(민간자본보조)은 강원테크노파크에 전액 교부되었고 이 중 선금인 48억 8,0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2023년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축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테크노파크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20	07	강원TP	20,000	20,000	20,000	20,000	-	20,000	4,880	20,000	4,880	-	-	24.4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6월 강원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축 사업 예산 200억원 전액을 강원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교부할 것을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강원테크노파크에게 장비 구축사업 관련 예산을 지급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수요기관으로서 각종 반도체 교육장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도입·구축하는 사업임.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2023~2025년) 동안 강원테크노파크가 업체에 두 세 차례 부분대금 지급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장비도입사업의 낙찰차액, 장비도입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하여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28)]

2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강원TP의 도입장비 확정(2023.9.12.)이 완료되기 이전에 강원TP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2023.6.23.) 이후 예산을 1회 전액 교부(2023.6.30.) 하였음.

1회 교부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교부할 것을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전액 교부 역시 강원도 TP의 장비 도입계약 완료 후 실제 장비 계약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실시와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미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시·연차 점검, 현장점검, 사업비 정산 등도 철저히 이행 관리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또한, 반도체 교육센터 시설구축 사업은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축 사업의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반도체 교육장비 구축사업 역시 시설구축이 완료된 2026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이 사전에 예상됨.[29)]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반도체 교육센터 시설 구축에 연계되는 반도체 교육장비구축 관련 사업관리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9) ‘반도체 교육센터 시설건축사업’ 은 2024년 10월 기본・실시설계가 종료되어 2024~2026년 건립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축사업’ 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내용에는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5년 연말 해당 시설로의 설치까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장비구축 사업은 시설건축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비구축사업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됨.

9. 전북연수원 건립 사업: 연수원 구축사업 감리비의 부적정 편성에 따른 예산 미집행

가. 개 요

‘전북연수원 건립’ 사업은 전라북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8억 4,000만원 중 4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48.5%).[30]

[2023년 전북연수원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 전북연수원 건립	840	840	-	840	407	407	407	-	433	6,795
- 실시설계비	407	407	-	407	407	407	407	-	-	-
- 공사비	-	-	-	-	-	-	-	-	-	6,782
- 감리비	433	433	-	433	0	433	0	-	433	-
- 시설부대비	-	-	-	-	-	-	-	-	-	13

전북연수원 건립사업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 교육거점을 구축할 목적으로 2020~2026년 총사업비 286억 1,700만원(국비 100%)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실시설계비 4억 7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감리비 4억 3,3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2023~2024년 전북연수원 건립사업은 공사비와 감리비를 동시에 반영하지 않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계획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건물 건립사업 시 건축공사 일정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전북연수원 건립(5451-309)(중소기업정책실)

일반적으로 건물 건축사업의 공사와 감리는 동시에 진행되므로, 동 사업의 공사비와 감리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전북연수원 건립사업은 2023년 공사비 없이 감리비만 편성되어 감리비를 전액 불용하였고, 2024년 감리비 없이 공사비만 편성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2023년 공사비 없이 감리비만 편성한 이유에 대해, 당초 설계 완료 후 2023년 예산으로 감리업체 선정 후 선금 등을 지급하고,[31] 2024년 초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2023년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편성하였고,

② 2024년 감리비 없이 공사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 2024년 말까지 건립부지 조성 및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실제 예상 착공 가능 시점인 2025년에 감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2025년에 감리비를 편성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2023년의 경우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와 감리 모두 진행할 수 없어 감리비가 전액 불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 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2024년의 경우, 공사비를 바탕으로 연내 공사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공사업체 우선협상대상자 기술협상 과정에서 감리업체와의 의견조율 과정이 생략되어 공사-감리업체 간 의견교환에 따른 재차 대조검토(cross check)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2025년 감리업체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사실상 공사를 개시할 수 없어 추가적인 공사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전북연수원 건립사업 추진일정]

사전절차 진행 및 사업계획 수립	➡	건축설계 및 공사발주 준비(現)	➡	건축공사 및 완공	➡	연수원 개원
•총사업비 반영・등록 •부지선정・매입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준비		•설계안 공모 및 선정 •기본설계 •중간・실시설계 •건축인허가 •공사발주(조달청)		•공사계약 및 착수 •공사, 감리시행 •공사완료 •공사비정산 •준공, 건물사용승인		•개원준비 (인테리어 등) •시운전, 하자보수 •개원
2020.1월 ~ 2022.8월		2022.9월 ~ 2024.9월		2024.10월 ~ 2026.9월		2026.7월 ~ 2027.1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1) 조달청 계약 절차에 따라 감리업체 선정계약(2개월 소요)이 공사 업체 선정계약(3~4개월)보다 빠르기 때문에 감리업체 지급 예산은 2023년에 편성하였다는 의견임.

【기술보증기금】

<지 출>

10. 구상권 관리: 구상권 관리 계획액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를 통한 보증재원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구상권 관리’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및 상각채권 등을 관리하기 위한 구상채권 관리 및 법원 공탁금 등으로, 2023년도 계획액 203억 700만원 중 98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104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48.7%).[32]

[2023년도 구상권 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구상권 관리	20,307	20,307	-	20,307	9,885	-	10,422	16,688

나. 검토의견

첫째, 구상권 관리 사업은 매년 계획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 폐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상권 관리 사업의 계획액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0~2023년 구상권 관리 사업의 집행률은 2020년 48.6%, 2021년 37.9%, 2022년 35.9%, 2023년 48.7%로 매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낮은 상황임.

32) 기술보증기금-구상권관리(2441-304)(창업벤처혁신실)

[2020~2023년 구상권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24,008	24,008	-	24,008	11,669	48.6	48.6	-	12,339
2021	27,030	27,030	-	27,030	10,247	37.9	37.9	-	16,783
2022	23,230	23,230	-	23,230	8,349	35.9	35.9	-	14,881
2023	20,307	20,307	-	20,307	9,885	48.7	48.7	-	10,4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상채권 및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부실발생이 이연되었고, 연대보증 면제로 인해 연대보증 인수가 감소하는 등 구상권 관리 지출 소요가 감소됨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함.[33]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결산 심사 시에도 구상권관리 사업의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으며,[3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계획액을 매년 전년대비 30억원 가량 감액하여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관리 사업의 불용액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33) 고금리 등 복합위기 심화로 사고율은 증가(2022년 2.7% → 2023년 4.2%)하였으나, 팬데믹 기간 정부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팬데믹 이전 사고율(2019년 4.6%)보다 낮고, 연대보증 면제 보증기업의 사고 확대 등으로 채무자 수 감소, 대외채무조정(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신청 등) 활성화* 및 새출발기금 구상채권 매각** 등으로 직접적인 구상권 관리 대상도 축소되어 계획 대비 집행 낮은 수준임.
* 연대보증인 수 : (2020) 14,801명 → (2021) 12,314명 → (2022) 10,116명 → (2023) 8,594명
채무조정 신청기업 수 : (2021) 767개 → (2022) 835개 → (2023) 1,313개
** 새출발기금 매각 업체 수: 2022년 0개社 → 2023년 623개社

34)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조치에 따른 사고율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동향 등을 전망하여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심사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20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둘째, 2023년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발생액 대비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은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구상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9,596억원, 기본재산 대비 대위변제율은 3.4%, 운용배수는 8.0배로, 2022년에 비해 대위변제액 규모는 94% 증가하고, 대위변제율은 1.5%p 상승하였으며, 운용배수도 0.2배 증가하였음. 2024년의 경우에는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의 증가로 대위변제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본재산 감소와 운용배수의 상승이 예상됨.

[2019~2024년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
기본재산(A)	16,751	21,504	29,625	34,215	35,341	28,725
보증잔액(B)	221,122	257,045	264,929	266,989	282,803	288,000
보증공급액	220,020	254,398	254,903	260,355	287,234	275,000
운용배수(B/A)	13.2	12.0	8.9	7.8	8.0	10.0
대위변제액(C)	7,959	6,420	4,906	4,946	9,596	11,578
대위변제율(C/A)	3.6	2.5	1.9	1.9	3.4	4.0
법정 운용배수	기금법, 시행령 상 20배					
적정 운용배수	10.0배 이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및 구상권발생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회수액은 2,114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은 19.0%이나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은 3.2%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내수부진 및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19~2024년 현재 대위변제, 구상권 발생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3월
대위변제순증(B-C)		7,561	6,028	4,385	4,493	8,991	2,630
누계(A)		30,086	36,114	40,499	44,992	53,983	56,613
구상권발생액(B)		9,882	8,380	6,734	6,701	11,105	3,154
회수	연도중(C)	2,321	2,352	2,349	2,208	2,114	524
	누계(D)	9,907	12,259	14,608	16,816	18,930	19,454
구상권잔액(E)		65,567	62,430	57,090	55,773	58,881	60,838
대위변제 대비 누계 회수율(D/A)		32.9	33.9	36.1	37.4	35.1	34.4
구상권발생액 대비 연도중 회수율(C/B)		23.5	28.1	34.9	33.0	19.0	16.6
구상권잔액 대비 연도중 회수율(C/E)		3.0	3.2	3.4	3.5	3.2	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 출>

11. 소상공인지원(융자): 소상공인 융자 부실률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 마련 필요

가. 개 요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3조원 중 2조 9,458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541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35)]

[2023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상공인지원(융자)	3,000,000	3,000,000	-	3,000,000	2,945,876	-	54,124	3,710,000
일반경영안정자금	500,000	517,877	-	517,877	517,877	-	-	1,110,000
특별경영안정자금	1,300,000	1,287,173	-	1,287,173	1,244,471	-	42,702	1,800,000
성장기반자금	1,200,000	1,194,950	-	1,194,950	1,183,528	-	11,422	800,000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의 부실률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소상공인 융자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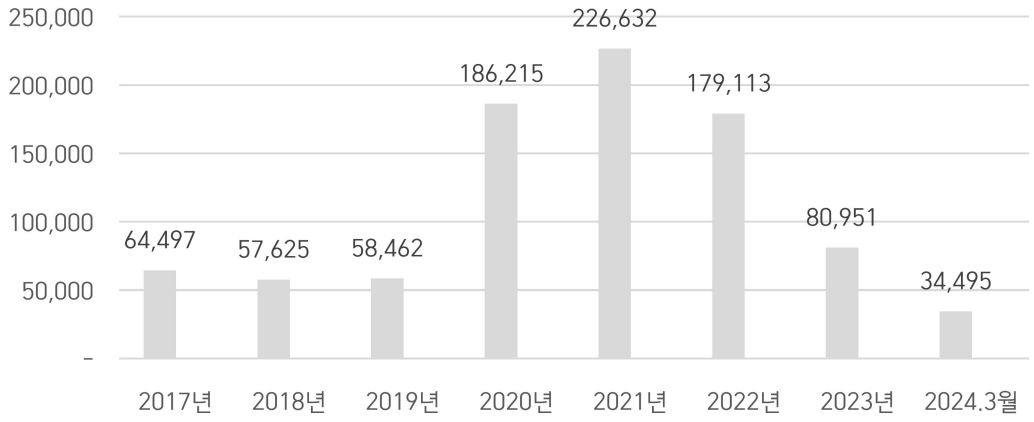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정책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

3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 지원(융자)(4151-301)(소상공인정책실)

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참고로,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건수는 8만 951건, 대출액은 2조 9,459억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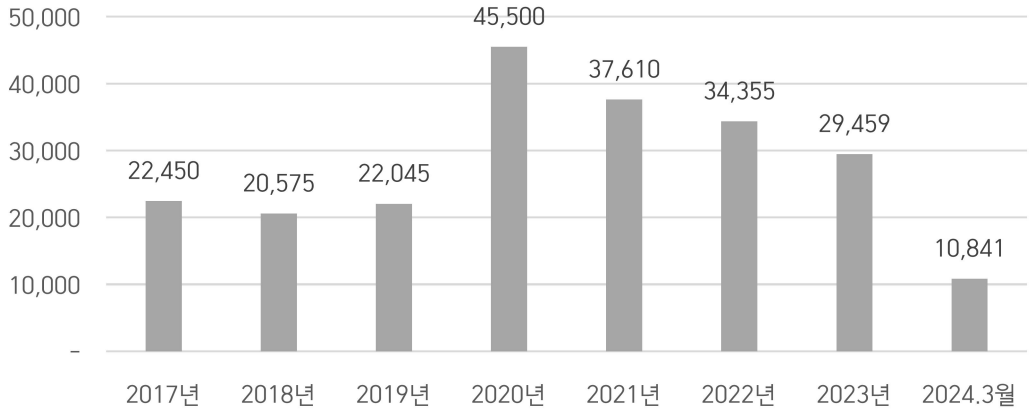
[2017~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기업·소상공인 연도별 대출건수]

(단위: 건)



[2017~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기업·소상공인 연도별 대출금액]

(단위: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소상공인 융자의 부실률은 2023년 10.0%로 2021년 1.6%, 2022년 2.8%에 비해 급증하였음. 이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시행되었던 각종 대출의 거치기간(2년)이 도래함에 따라, 2023년부터 원리금균등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됨.

[2018~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형별 정책자금 부실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잔액	43,575	54,760	403,747	1,293,510	1,276,679	1,006,361
	부실건수	71	86	28	871	2,288	7,283
	부실금액	2,903	3,050	536	10,996	29,632	111,986
	부실률	6.7%	5.6%	0.1%	0.9%	2.3%	11.1%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잔액	40,733	130,664	944,658	2,722,968	3,993,065	4,459,097
	부실건수	0	63	1,084	3,133	13,513	38,327
	부실금액	0	1,553	15,391	38,040	155,144	600,245
	부실률	0.0%	1.2%	1.6%	1.4%	3.9%	13.5%
성장기반자금	대출잔액	1,258,498	1,538,622	1,474,370	1,360,675	1,361,652	1,458,911
	부실건수	831	1252	1219	696	386	△1,568
	부실금액	47,431	59,036	51,932	36,630	25,137	63,603
	부실률	3.8%	3.8%	3.5%	2.7%	1.8%	4.4%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대출잔액	0	0	8,444	37,017	83,665	278,937
	부실건수	0	0	0	2	24	147
	부실금액	0	0	0	51	1078	6063
	부실률	-	-	0.0%	0.1%	1.3%	2.2%
기타	대출잔액	0	0	0	0	1,154,865	1,053,279
	부실건수	0	0	0	0	3,542	14,585
	부실금액	0	0	0	0	8,506	42,100
	부실률	-	-	-	-	0.7%	4.0%
합계	대출잔액	1,342,806	1,724,046	2,831,219	5,414,170	7,869,926	8,256,585
	부실건수	902	1,401	2,331	4,702	19,753	58,774
	부실금액	50,334	63,639	67,859	85,717	219,497	823,997
	부실률	3.8%	3.7%	2.4%	1.6%	2.8%	10.0%

주) 부실건수 산식: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발생계좌건 -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해제계좌건 - 회수된 원금상환건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소상공인 융자사업의 부실률이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간이심사로 신속하게 지급한 정책자금이 부실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함.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부실률이 상승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규 대출심사 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3년 부실률 높은 세부 대출 사업별 현황]

구 분		부실률		지원대상	심사방법
		22년말	23년말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0.03%	8.4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졸업)생	직접심사
	1천만원 긴급대출	8.54%	31.01%	청년·장애인·여성기업 중 저신용(6등급 이하) 소상공인	간이심사
	2천만원 긴급대출	3.63%	18.56%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간이심사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1.52%	7.97%	집합금지업종 중 사업장 유상임차 소상공인	간이심사
특별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자금	7.26%	14.51%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	간이심사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1.91%	8.98%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간이심사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4.91%	19.76%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중 저신용(5등급 이하) 소상공인	간이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2.06%	11.91%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직접심사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	12.40%	업력 90일 이상의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심사
	희망대출	3.29%	16.66%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심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90일 이상 연체 등으로 인해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조속히 시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여야 하는 부실대출의 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새출발기금 분기별 채무조정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2년 4/4분기	2023년 1/4분기	2023년 2/4분기	2023년 3/4분기	2023년 4/4분기	2024년 1/4분기
부실 차주	신청자수	1,882	3,040	2,438	1,963	2,858	2,810
	채무조정 대상부채액	257	542	438	359	729	722
	매각자수	1,522	3,030	2,236	1,644	2,925	3,423
	채권매각액	81	179	147	119	237	235
부실 우려 차주	신청자수	2,179	1,271	1,078	1,362	1,350	1,900
	채무조정 대상부채액	484	239	266	357	263	437
	채무조정자수	106	1,352	1,648	1,392	1,227	1,274
	채무조정 확정액	23	304	341	324	234	317
전체	신청자수	4,061	4,311	3,516	3,325	4,208	4,710
	채무조정 대상부채액	741	781	704	716	992	1,159
	채무조정자수	1,628	4,382	3,884	3,036	4,152	4,697
	채권매각·채무조정확정액	104	483	488	443	471	552

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고,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소상공인지원(융자)의 기금 운용계획 편성 시 사업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자체변경을 통한 다른 사업의 재원 활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내 일반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② 특별경영안정자금 내 장애인기업지원자금·위기지역지원자금 및 청년고용연계자금, ③ 성장기반자금 내 스마트자금은 당초 계획액 대비 3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데 반해,

① 특별경영안정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도전특별자금과 ② 성장기반자금 내 소공인특화자금과 및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는 집행률이 26.4~72.7%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음.

융자사업은 각 내역사업마다 지원목적·대상 또는 지원액 등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융자사업의 실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안을 편성하고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의 자금 융통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식	계획		실적			
			당초 계획액(A)	변경 계획액(B)	집행액 (C)	건수 (D)	집행률 (C/A)	집행률 (C/B)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	498,000	515,051	515,051	16,850	103.4	100.0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	직접	2,000	2,826	2,826	80	141.3	100.0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	50,000	68,502	68,502	1,327	137.0	100.0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	50,000	65,190	65,190	1,417	130.4	100.0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	100,000	100,000	64,328	1,074	65.2	65.2
		직접			852	20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	100,000	177,781	177,781	4,947	177.8	100.0
	재도전특별자금	직접	200,000	60,776	52,894	1,505	26.4	87.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직접	800,000	814,924	814,924	29,474	101.9	100.0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직접	600,000	436,018	436,018	7,702	72.7	100.0
	성장촉진자금	대리	420,000	477,237	477,237	11,491	113.6	100.0
		직접	30,000	34,660	34,660	597	115.5	100.0
	스마트자금	직접	110,000	207,035	207,035	4,336	188.2	100.0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	40,000	40,000	28,578	131	71.4	71.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1월 말 특별경영안정자금에서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436억원을 자체변경하였다가, 1달 후 다시 일반경영안정자금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257억 2,300만원으로 자체변경하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사업의 자금 소진속도를 면밀히 계산하여 불필요한 자체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사업 관련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2023. 11.27.	소상공인 지원 (융자)	일반경영 안정자금	43,600	소상공인 지원(융자)	특별경영 안정자금	△43,600	(자체변경) 세부자금별 과부족에 따른 예산조정
2023. 12.29.	소상공인 지원 (융자)	특별경영 안정자금	30,773	소상공인 지원(융자)	성장기반자금	△5,050	(자체변경) 세부자금별 과부족에 따른 예산조정
				소상공인 지원(융자)	일반경영 안정자금	△25,72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 사업은 대내외 경제 환경, 재해 발생 등 불확실한 외부변수 영향을 많이 받아 편성 시 예상수요와 실제수요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나, 융자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별 부진 사유를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자체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부적정 등

가. 개 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위한 교육·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944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6]

[2023년도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상공인성장지원	141,654	141,654	-	-	141,654	141,654	-	-	294,625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94,400	94,400	-	-	94,400	94,400	-	-	-

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101,930백만원)”은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계획안 편성 시 세부사업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으로 이관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구조고도화·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진기금의 목적 및 성격에 맞는 계획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중 채널진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20% 이내 범위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23년 동 사

3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정책실)

업의 세부추진계획서 작성 시 각각 ‘역량강화’와 ‘채널진출지원’ 내내역사업에서 20%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변경(2023.3.3.) 과정에서 소상공인만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채널진출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중소기업을 최대 20% 지원하였음.

[2023년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내내역사업	지원규모		지원액				수행기관
		목표	실제	예산	집행액 (2024.2.)	이월액	불용액	
역량강화	온라인시장 진출교육	15,000	18,723	4,080	3,855	-	225*	소진공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1,500	1,518	2,500	2,497	-	3	유통센터
	상품 개선 컨설팅	2,000	2,018	7,500	7,490	-	10	유통센터
	전담셀러	3,000	3,185	6,300	6,292	-	8	유통센터
	컨텐츠 제작 등	2,400	2,475	7,950	7,937	-	13	유통센터
	소계	23,900	27,919	28,330	28,071	-	259	-
채널진출지원	홈쇼핑, 온라인몰, 라이브 커머스 등	14,700	15,656	42,550	42,511	-	39	유통센터
	O2O플랫폼 활용지원	14,640	14,792	7,320	7,258	-	62	소진공
	구독경제	1,100	1,513	5,000	4,995	-	5	유통센터
	소계	30,440	31,961	54,870	54,764	-	106	-
기반조성	가치삽시다 플랫폼	9,000	9,004	2,000	1,998	-	2	유통센터
	소담스퀘어	5,600	5,784	5,600	5,600	-		유통센터
	소담상회	3,000	3,144	3,600	3,599	-	1	유통센터
	소계	17,600	17,932	11,200	11,197	-	3	-
합계		71,940	77,812	94,400	94,032	-	368	-

주) 특성화대학 집행잔액 165백만원 발생(사업관리 부실 수행기관(경상대) 참여제한 조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접객효과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이 확대될 수 있고, 중소기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거 소상공인만 지원하였던 지원사업에 대해 중소기업도 최대 20%까지 지원하였다는 의견임.[37]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38]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및 연계 생산 등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39]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향후 기금의 목적 및 법적 근거를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7)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기획전 內 일부 중소기업 제품이 구매고객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시장성 등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 개선 가능성이 확대(온라인기획전 등 동일사업 참여기업 제품 간 비교·분석 기회 제공 등)될 수 있다고 설명함.

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생 략)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3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둘째,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홈쇼핑・온라인몰・O2O 플랫폼[40] 등의 채널진출 지원을 받았으나 해당 플랫폼에서의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온라인플랫폼 채널지원과 관련하여 플랫폼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온라인 쇼핑몰) 40개의 온라인 쇼핑몰에 5,040(상세페이지 제외)개사의 소상공인을 입점지원하였고 지원업체 당 플랫폼 내 평균 매출액은 1억 8,900만원이었으나, 지원업체 중 500개사는 해당 유통플랫폼에서 매출액이 전무(全無)함(매출액 미발생률 9.9%).

② (미디어커머스) 7개의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에 1,000개사의 소상공인을 입점지원하여 지원업체당 플랫폼 내 매출액은 4,700만원이었으나, 지원업체 중 171개사는 해당 유통플랫폼에서 매출액이 전무함(매출액 미발생률 17.7%).

③ (해외쇼핑몰) 6개의 해외쇼핑몰에 435개사의 소상공인을 입점지원하여 지원업체당 플랫폼 내 매출액은 5,100만원이었으나, 지원업체 중 132개사는 해당 유통플랫폼에서 매출액이 전무함(매출액 미발생률 30.3%).

④ (구독경제 지원) 민간플랫폼(6개), 지자체몰(7개), 자사몰(6개) 등에 1,513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원업체당 플랫폼 내 매출액은 2,670만원이었으나, 지원업체 중 96개사는 해당 플랫폼 내 매출액이 전무함(매출액 미발생률 6.3%).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해당 플랫폼 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해당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배제 등 긍・부정적 환류(feedback)를 통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40) O2O(Online to Offlin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것으로, 종전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함. 대표적인 O2O 플랫폼으로, 요기요, 패스오더, 지그재그, 숨고 등이 있음.

13. 소상공인성장지원: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쇄적인 ISP, ISMP 추진 및 본사업 지연 부적정

가. 개 요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내역사업은 공동마케팅 지원, 물류운영혁신, 유통정보제공 등 사업운영인프라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기업의 협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85억 5,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41]

[2023년도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상공인성장지원	141,654	141,654	-	-	141,654	141,654	-	-	294,625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8,558	8,558	-	-	8,558	8,558	-	-	7,416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서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보화마스터플랜(ISMP)을 다시 수행하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거듭 수행하였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3~7월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3년 3~7월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였음.[42]

4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정책실)

42)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이고,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은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위해 목표시스템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관련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성능, 품질, 보안)·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하는 활동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 및 복잡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ISP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T 거버넌스를 도출하고 ISP를 바탕으로 실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및 SW 상세분석 설계, 제안요청서(RFP) 등을 마련하기 위해 ISMP를 다시 추진하였다고 주장함.

[2022년 ISP 및 2023년 ISMP 비교]

구분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
사업명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마스터 플랜(ISMP) 수립
사업기간	2022.3.14.~7.12.	2023.3.23.~7.21.
예산액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집행액	1억 4,700만원	2억 4,360만원
수행사	A 사	A 사
사업내용	· 중소물류 내외부 환경 및 업무현황 분석 · 중소물류 세부과제별 중점분석 ·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방향 수립 ·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 이행계획 수립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도출	· 차세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현황 파악 및 개선 · 차세대 중소유통물류 통합정보시스템의 분석 설계 · 개발계획 수립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도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ISP 및 ISMP의 산출물을 검토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시스템 재구축 및 신규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전준비도에 따라 양자 중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43]

ISP의 현황분석 단계에서 실사용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으며, 목표모델 설계 단계에서 '업무프로세스 설계',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데이터 구조설계', '기술 및 보안구조설계'가 포함되어 있고, ISP 산출물에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SP 산출물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다면 IT 거버넌스 및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도출을 위해 추가적으로 ISMP를 수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 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7판」, 2023., p.14.

중소벤처기업부가 동일한 내용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ISP와 ISMP를 차례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ISP를 포괄하는 내용의 상세한 계획인 ISMP를 2022년에 편성·집행하였다면 불필요한 사업을 위한 시간·인력·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둘째, 본 사업인 '중소유통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은 ISMP의 사업 종료 후 ISMP를 바탕으로 본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연말에서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차년도에 수행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 7월 종료된 ISMP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2023년 12월 하순에서야 '중소유통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음. 이는 12개월 사업의 대부분이 차년도에 수행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2024년 말 사업수행의 지연으로 인해 기금의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유통 디지털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유통 디지털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ㅇ 사업기간 : 2023.12.21. ~ 2024.12.15. ㅇ 사업예산 : 8,90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주요 사업내용 - 디지털 통합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 표준 마스터(상품, 사업자) 데이터 운영 체계 구축 -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 現 중소유통물류 시스템 사용자의 기본 마스터 정보, 설정 정보, 실적 정보 정제 및 이관

셋째, 중소유통물류 통합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사업은 감리사업의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어 본 사업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황에서 3단계 감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의 초반부에 시행되어야 할 요구정의 단계 감리를 뒤늦게 수행하였음.

'중소유통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은 사업기간 12개월 사업비 87억 7,700만원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3단계 감리 사업(사업비 20억 초과, 사업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고, '요구정의 단계 감리'가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함.[44]

44) 3단계 감리는 ①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요구정의 단계' 감리, ② 설계 산출물이 과업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구현가능하도록 구체화되었는지 점검하는 '설계 단계' 감리, ③ 과업 내용의 이행여부를 실증적으로 점검하는 '종료 단계' 감리로 구성됨.

요구정의 단계 감리는 본 사업을 착수한 단계 직후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감리업체가 점검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데, 동 감리 사업은 본 구축 사업기간의 40%가 도과한 5월 중순에야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는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요구정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요구정의 단계 감리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움.

14.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종료): 이미 보급된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의 장기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핀테크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제로페이) 시스템의 인프라(QR키트, 리더기)를 구축하고 홍보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8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그 중 51억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조금이 집행되어 이 중 15억 6,3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실집행률 30.6%), 7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이 집행되어 5억 3,766만원을 실집행하고, 잔액 1억 6,234만원을 국고반납처리 하였음.[45]

[2023년도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22,827	22,827	-	-	22,827	22,827	-	-	14,448
소상공인전용 결제시스템	5,800	5,800	-	-	5,800	5,800	-	-	-

나. 검토의견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의 제로페이 QR키트 사용률이 미진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운영기관)과 함께 2024년 QR키트 보급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미 보급된 QR키트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4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지원인프라(4131-319)(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은 QR키트 및 리더기 보급 등 제로페이 인프라를 조성하고, 페이백·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제로페이 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5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며, 위탁사업자는 QR 키트·리더기 등을 제작·보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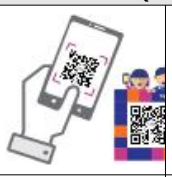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내역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예산 지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보조금 세부계획 수립, 사업 진행·관리·감독 - 위탁사업자 선정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 등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QR키트 데이터 생성 및 결제 검증 - 가맹점 계약 등
위탁사업자	• 위탁사업 수행 - QR키트 및 리더기 제작·보급 - 간편결제 홍보·마케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은 ① (QR키트) 가맹점 비치형 QR 키트를 소비자가 스캔하여 결제하는 것과, ② (리더기) 소비자 스마트폰에 QR 또는 바코드를 생성하면 가맹점 리더기로 스캔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관련 QR키트 및 리더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결제 방식]

소비자 촬영 방식(MPM)			리더기 스캔 방식(CPM)		
					
❶ 간편결제 앱 실행	❷ 매장 비치 QR코드 촬영	❸ 금액입력	❶ 간편결제 앱 실행	❷QR코드 생성 (소비자)	❸QR코드 스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2024년 현재 QR키트, QR결제리더기의 보급 및 POS업데이트 현황]

(단위: 천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
QR 키트	413	671	247	176	40
QR결제리더기	25	35	45	-	-
POS업데이트	118	147	100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2023년 말 기준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가맹점 수는 179만 5,000개, 2019년부터의 누적 결제액은 6조 8,609억원으로 나타남.

[소상공인결제시스템 누적 가맹점 및 결제액 현황]

(단위: 천개,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적가맹점	324	729	1,383	1,626	1,795
누적결제액	767	11,575	36,229	56,079	68,60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2023년 말 기준 누적 보급된 QR키트 179만 5,000개 중 116만 5,055개의 가맹점에서 1년 이상 결제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실제 QR키트의 1년 내 사용률은 35%에 불과한 상황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소비자의 제로페이 미사용 이유로 민간 간편결제사에 비해 제로페이는 낮은 접근성과 소비자 혜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년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민간간편결제사 연동 서비스를 개시하고 제로페이 QR을 통해 민간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음.[46)]

동 사업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서 편성되지 않아 QR키트 및 QR리더기의 추가적인 보급은 더 이상 없을 계획이나, 지금까지 보급된 QR키트 및 QR리더기는 국내 간편결제 및 해외 직불결제(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미 구축된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로페이-카카오페이 연동,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2024.4.16.

15.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적정 계획수립 및 집행 필요 등

가. 개 요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2,897억 8,700만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전액 교부되었음(집행률 100.0%).[47)]

동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지류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모바일상품권은 비즈플레이·하나은행, 카드형상품권은 KT·비씨카드에 위탁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시중 금융기관(지류) 및 전용 모바일앱(모바일·카드형) 등을 통해 판매되고, 개별가맹점에서 사용됨.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등)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게 됨.

[2023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A)						
시장경영혁신지원	359,498	359,498	-	-	359,498	359,498	-	420,669
온누리상품권 발행	289,787	289,787	-	-	289,787	289,787	-	351,348

나. 검토의견

첫째,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은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회수금액에 맞는 기금 계획액 편성이 필요함.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금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 1,088억 3,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986억 2,500만원 중 3,031억 1,200만원을 실집행액하고 941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음(실집행률 67.5%).

4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소상공인정책실)

[2023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당초	수정 (A)						교부 현액	집행액 (C)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289,787	289,787	289,787	289,787	108,838	398,625	303,112	289,787	195,633	94,154	-	67.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온누리상품권을 4조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조 242억원만 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집행액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013~2022년 온누리상품권의 목표발행액 대비 실제발행액이 유사한 것과 달리, 2023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은 목표 대비 절반 수준만 발행하였음.

[최근 10년간 온누리상품권 목표발행액 및 실제 발행액 비교]

(단위: 억원)

구분	목표발행액	실제발행액	구분	목표발행액	실제발행액
2013년	5,000	5,000	2019년	20,000	20,074
2014년	7,000	6,360	2020년	40,000	40,487
2015년	7,000	7,381	2021년	31,500	31,573
2016년	10,000	10,030	2022년	35,000	35,391
2017년	12,000	12,850	2023년	40,000	20,242
2018년	15,000	15,016	2024년 3월	50,000	7,47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부진 사유로, 2022년부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축소하고 디지털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인지도·사용처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2022년 하반기 출시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2023년 1조 9,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해 3,963억원만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발행 실적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6월말)
지류	20,000	39,000	28,000	20,000	30,000	17,000	12,890	14,000	10,743
전자	8	8	2	-	-	-	-	-	-
모바일	66	1,479	3,571	5,000	4,831	4,000	3,389	10,000	2,663
카드	-	-	-	10,000	560	19,000	3,963	26,000	2,413
계	20,074	40,487	31,573	35,000	35,391	40,000	20,242	50,000	15,819

주) 2022년 발행계획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발행개시 이후 수립한 계획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2024년 6월 현재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발행실적은 여전히 각각 계획 대비 26.6%, 9.2%에 그쳐 2024년 말까지 계획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행실적을 달성하는 것도 다소 도전적인 상황으로 보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실집행단계에서 이월된 941억 5,400만원을 고려할 때 2024년 교부된 보조금 역시 일부가 차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2023년 온누리상품권의 계획 대비 축소발행으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누적 미판매·미회수액이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 발행액의 64.8% 수준으로 많은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후 판매되고 판매된 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서의 구매로 이어져야 금융기관으로 다시 회수되므로, 미판매액·미회수액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후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금액을 의미함.[48]

2023년 말 기준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을 보면, 누적 미판매액은 7,070억원, 누적 미회수액은 6,037억원으로, 총 1조 3,107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판매·소비되지 않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남아있는 상황임.

2023년 온누리상품권 미판매·미회수액은 전년 2조 3,428억원에서 1조 321억원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 발행액 대비 미판매·미회수 비중은 2022년 66.2%, 2023년 64.8%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48) 참고로, 미회수액에는 소비되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누적 발행액 (A)	판매액	누적 판매액 (B)	누적 미판매액 (A-B)	회수액	누적 회수액 (C)	누적 미회수액 (B-C)	누적 미판매+미회수 [(A-B)+(B-C)]
2018년	15,016	64,197	14,916	60,610	3,587	14,704	58,518	2,092	5,679
2019년	20,074	84,271	16,853	77,463	6,808	16,622	75,141	2,322	9,130
2020년	40,487	124,758	40,139	117,602	7,157	34,085	109,226	8,376	15,532
2021년	31,573	156,331	31,721	149,323	7,008	33,809	143,034	6,289	13,297
2022년	35,391	191,722	27,034	176,357	15,365	25,260	168,294	8,063	23,428
2023년	**20,242**	**211,964**	**28,537**	**204,894**	**7,070**	**30,563**	**198,857**	**6,037**	**13,107**
2024년 3월	7,472	219,436	9,482	214,376	5,060	9,468	208,326	6,050	11,1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감소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는 미판매액·미회수된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고려하여 발행액을 전년 대비 감축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조절을 통해 미판매·미회수 규모를 감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용을 통한 소비활성화 효과가 촉진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적정 수준의 발행규모를 추산하고 계획액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지류에 비해 가맹점이 적어 활용도가 낮고 발행액도 적은 상황이므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이 소비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非지류형 가맹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2022년 8월부터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시작하였고,[49] 지류형 대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49)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란 소비자가 기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충전한 후 실물카드결제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8월 29일부터 판매를 개시하였음.

2023년에는 발행 비중을 지류상품권 42.5%(1.7조원), 모바일상품권 10.0%(0.4조원), 카드형상품권 47.5%(1.9조원)으로 조정하여 지류상품권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실제 온누리상품권 발행 비중은 지류상품권 63.7%(1.29조원), 모바일상품권 16.7%(0.34조원), 카드형상품권 19.6%(0.40조원)으로 나타나 여전히 지류 상품권의 발행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온누리상품권의 유형별 당초 계획 대비 판매실적]

구분	계획(목표)		실적(판매액)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
지류	17,000	(42.5%)	21,185	(63.7%)	125%
모바일	4,000	(10.0%)	3,389	(16.7%)	85%
카드	19,000	(47.5%)	3,963	(19.6%)	21%
계	40,000	(100%)	28,537	(100%)	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3년 말 기준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전국 가맹점 현황을 보면, 지류 가맹점은 19만 9,600개, 모바일 가맹점은 9만 4,200개, 카드형 가맹점은 9만 5,800개로 유형별 편차가 큰 상황이고, 지류 가맹점 대비 모바일 가맹점 수는 47.2%, 카드형 가맹점 수는 48.0%에 불과함.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모바일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판매 후 사용처가 부족함에 따라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의 발행 확대계획에 맞추어 가맹점 확보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1~2023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가맹점포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전체영업 점포 대비 가맹률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전체영업 점포 대비 가맹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전체영업 점포 대비 가맹률
2021년	196,091	79.9	-	-	74,267	30.3
2022년	197,694	80.6	84,981	34.6	86,684	35.3
2023년	199,602	81.4	95,826	39.1	94,249	38.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6.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복합청년몰 공실률 해소를 위한 사업 평가 환류체계 개선 필요

가. 개 요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복합청년몰을 선정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청년상인에 대한 교육 및 판로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56억 2,000만원은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0]

[2023년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시장경영혁신지원	359,498	359,498	-	359,498	359,498	-	-	420,669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5,620	5,620		5,620	5,620	-	-	5,620

나. 검토의견

첫째,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복합청년몰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조성된 복합청년몰의 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행사, 상품개발 외에 다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매년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 43곳 중 일부 청년몰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온·오프라인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개 복합청년몰에 대해 국비 50%, 지방비 50%로 매칭하여 지원하였음.

그러나 2023년 활성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몰 6개소 중 4개소의 연말 공실률이 20% 이상인 사업으로,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대한 만큼의 매출액 증가 또는 유동인구 확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즉 해당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이 필요함.

5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소상공인정책실)

[2023년 청년몰 활성화 선정시장 별 주요 지원내역과 2023년 말 공실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시군구	시장	총사업비	국비	주요 지원내용	2023년말 공실률
1	경북 김천시	김천평화시장	360	180	• 알람체계 개선, 오프라인 행사, 공동상품 개발	36%
2	경남 거창군	거창전통시장	300	150	• 온·오프라인홍보, 배달수수료 지원, 선진지 견학	31%
3	전북 익산시	익산중앙시장	360	180	• 오프라인 행사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 교육·컨설팅	6%
4	제주 제주시	제주중앙로상점가	400	200	• 오프라인 행사, 온라인 홍보, 청년몰 리플렛 제작	63%
5	경기 안산시	다농마트전통시장	300	150	• 문화행사, 온라인홍보, 공동상품 개발	20%
6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300	150	• 야시장 운영, 온라인홍보, 공동포장재개발	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청년몰 활성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개 시장(김천・제주)은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1개 시장(제주)은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이 해당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2023년 청년몰 활성화 사업 정량평가 내역]

평가지표	평가 세부내용	김천 평화시장	거창 전통시장	익산 중앙시장	제주중앙로 상점가	다농마트 전통시장	경동시장
매출액 증가율	전년도 하반기 매출액 대비 사업연도 하반기 매출액	△40%	51%	5%*	△37%	15%	34%
청년상인 영업률	사업연도 말 영업률	63%	69%	94%	38%	80%	100%
사업비 집행률	사업종료일 기준 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93%	96%	100%	100%	100%	100%
유동인구 증가율	전년도 대비 사업연도 증가율	40%	16%	41%*	△15%	93%	67%

주) 익산중앙시장은 2023년 3월 신규개장하여 전년도 매출액 및 유동인구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 시장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아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적정한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①정량평가(매출액, 유동인구 증감 등), ②정성평가, ③가감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성과등급을 S・A・B・C 4단계로 부여하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 중 S등급에 한해 차년도 청년몰 지원사업 육성공로자 포상 대상자(사업수행자 또는 해당 청년몰) 추천 및 청년몰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복합청년몰 성과평가 중 S등급은 부여된 바 없어 성과평가의 환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

[청년몰 활성화 성과평가 항목 및 내역]

항목	배점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평가주체
성과(정량)	40점	청년상인 매출증감률, 영업률, 집행률, 만족도 등	공단(본부)
역량(정성)	60점	사업달성도, 효과성, 사후관리, 상생협력 등 발표평가	외부 전문가
가감점	±3점	월간보고 제출여부, 평가자료 제출 지연, 제재 등	공단(본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1~2023년 청년몰 활성화사업의 성과평가를 비교해보면, ① (김천・설악) 직전년도에 낮은 성과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다시 선정되거나, ② (안산・정선・제주) 연이어 청년몰 사업을 지원받은 일부 시장의 경우 전년도에는 높은 성과평가를 받았다가 차년도 성과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21~2023년 청년몰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급	2021년	2022년	2023년
S (90점 이상)	-	-	-
A (80~90점)	**안산 다농마트전통시장**(조성) **정선 사북시장**(활성화)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	서울 경동시장
B (70~80점)	거창 전통시장(조성) 김제 전통시장(활성화)	거창 전통시장 **제주 중앙로상점가**	**안산 다농마트전통시장** **익산중앙시장** 거창전통시장
C (70점 미만)	**김천 평화시장**(조성) 대구 약령시장(활성화) **설악 로데오거리상점가(활성화)**	삼척 중앙시장 금산 금빛시장 김제 전통시장 **정선 사북시장**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김천 평화시장** **제주 중앙로상점가**

주) 2021년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청년몰 조성사업과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나누어 각각 평가 등급을 부여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몰의 매출액 또는 유동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 평가방안을 면밀히 설계하고, 페널티 부여 등 해당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이 제대로 환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부진 등

가. 개 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통합·개방하고 소상공인 통계를 제공하며 상권정보 및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1억 8,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1]

[2023년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9,189	9,189	-	-	9,189	9,189	-	-	2,345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계약체결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실집행단계에서 이월이 발생(실집행률 72.9%)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①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개방)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수급·연계하고, 가공·융합하며, 민간에 일부 개방하며, ② (소상공인 통계 제공 등) 소상공인 통계를 대국민·내부에 제공하며, ③ (맞춤형 서비스) 기존 입지분석서비스 이외에 신규 서비스로서 사업장 경영진단, 맞춤형 정보제공, 특색 상권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것임.

5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131-327)(소상공인정책실)

해당 사업은 사실상 2006년부터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중기부 및 소진공 이외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임.

[상권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 비교]

	상권정보시스템(AS-IS)	빅데이터 플랫폼(TO-BE)
데이터	■ 11종*, 약 200만개 * 상가업소, 매출, 인구, 교통, 부동산, 임대시세, 소득, 지리정보, 행정 ■ 폐쇄적 데이터 제공·운영	■ **18종*, 약 650만개** * **현행DB + POS, 신용카드, 관광, 배달, 택배, 포털, SNS(비정형) 등** ■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생태계 창출
서비스	■ 상권분석 서비스 - 단순 정보 제공 수준 - 정보 문해력 필요 - 연계 지원서비스 부족 - 관리자 관점의 운영 효율화	■ **상권분석 서비스(기존)** * 향후 분석 항목, 차원 고도화 예정('25년) ■ **내 사업장 경영진단 서비스(신규)** ■ **이용자 맞춤형 정보 안내(신규)**
정책분석	■ 소상공인 통계 정보 부족으로 실태파악 및 적시 지원 미흡 ■ 단순 상가정보 외 수급 불가로 성과측정 불가	■ **전국 소상공인 통계·분석 정보 제공** * 지역별·업종별 통계분석 대시보드 제공 ■ **소상공인24 연계, 빅데이터 기반 정책 성과측정 및 신규 정책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2021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ISP'를 수행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는 등 사전준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1일에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17일 계약요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조달청) 후 조달청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8월 10일에야 계약을 체결하였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당초 사업기간을 8개월(240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데이터 가공·연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며, 2024년 6월에야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91억 8,900만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실집행 단계에서 이 중 66억 9,900만원만 집행하고(실집행률 72.9%) 24억 9,0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2023년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교부 현액	집행액 (C)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9,189	9,189	9,189	9,189	-	9,189	6,699	9,189	6,699	2,490	-	72.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연계 문제로 인한 운영리스크가 높은 만큼,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빅데이터의 상호연계가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소상공인 관련 각종 데이터의 가공·결합이 전제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관련 가명정보의 결합·가공이 용이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52)]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고, 결합된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등을 지원하며, 반출심사 후 결합정

5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 반출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매출액・임대료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자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통신회사・결제사 등의 데이터도 결합하여 상권 정보, 맞춤형 가게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성격 상 가명정보의 결합・가공이 필연적으로 수반됨.[53]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미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3) 해당 정보를 가명정보 결합・가공 없이 단순 데이터만 반영하는 경우, 해당 상권에 대한 단순값(평균매출액, 평균 방문자 수)만 반영하게 되어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가치가 크게 낮아지고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8.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쪼개기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정보보호체계 운영 및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 계획액 61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54]

[2023년도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6,120	6,120	-	-	6,120	6,120	-	-	7,477

나. 검토의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관리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은 소진기금 내 각 세부사업에 나누어 집행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사업을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에 일괄 통합편성하여 투명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관련 대내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며 헬프데스크 등의 운영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12월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17억 8,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후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의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 내에 동 사업 관련 예산을 6억 9,900만원만 편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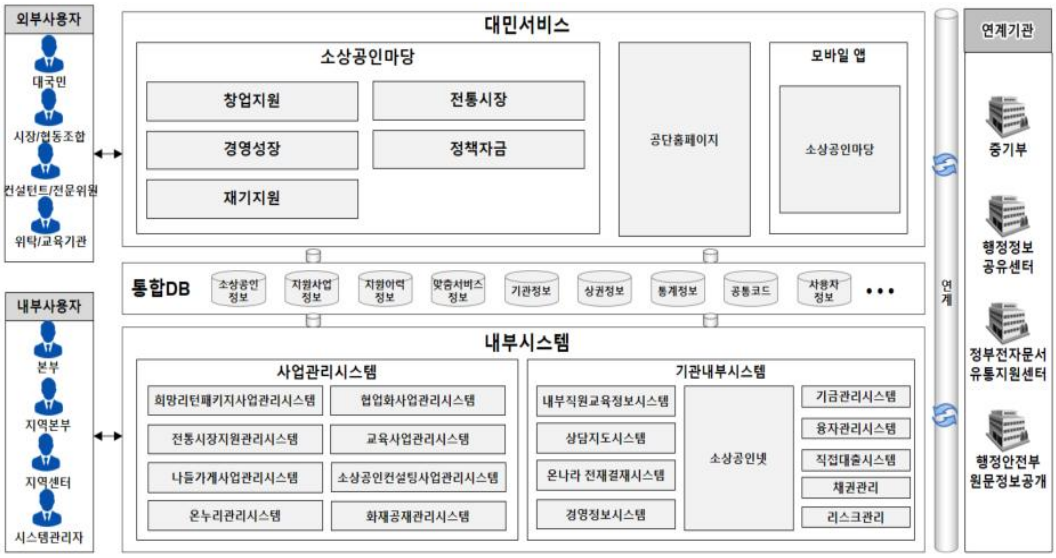
5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7277-201)(소상공인정책실)

[2023년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 (사업기간) 2023. 1. 1 ~ 12. 31.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액) 17억 6,042만원 ○ 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 내용 - 소상공인, 전통시장, 홈페이지 등 대·내외 응용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및 운영 - 법 개정사항 및 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데이터 관리 및 해당 데이터의 외부기관 시스템 연계 -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및 문의사항 접수처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유지보수 대상인 사업관리시스템 구성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계획 편성 시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은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사업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이 대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경영혁신지원 등 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7개 세부사업의 보조사업 세부추진 계획에 이를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단에 해당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음.[55)]

55)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사업 발주금액 17억 8,000만원과 계약액 17억 6,042만원의 차이인 낙찰차액 1,958만원은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 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 세부사업에서는 각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발주금액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정산하였음.

[2023년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용역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	시장경영 혁신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합계
계획액	699	-	-	-	-	-	-	-	699
발주 금액	139	121	100	455	605	60	206	94	1,780
집행액	119	121	100	455	605	60	206	94	1,760

주 1) 계획액은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발주금액은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보조사업 계획 상 예산 산출금액을 기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정이 필요함.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관련 적정 예산 규모 대비 과소한 예산(40%)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말에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발주하여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둘째, 시장경영혁신지원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보조사업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지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업이 임의로 지출되었음.

셋째, 다수 사업관리시스템에 관한 통합유지보수비용을 각 보조사업별로 배분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을 사업 종료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실집행액과 정산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계적 투명성 및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그 성격상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에 일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당 사업의 수행 후 낙찰차액 및 발생이자를 정확히 정산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